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10~13세기 高麗 王室의 構造와 編制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黃 香 周

10~13세기 高麗 王室의 構造와 編制

지도교수 남 동 신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황 향 주

황향주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록】

10~13세기 高麗 王室의 構造와 編制

黃 香 周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본고는 10~13세기 고려 왕실의 인적 구성과 법제적 위상을 구명하고, 왕실의 권위 및 특권의 기반이 되었던 체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고려 왕실의 혈통 관념과 폐쇄적 재생산 방식, 국왕의 가족들을 공적 영역에 配屬하여 왕실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 왕실의 역사성을 구명하였다.

고려 왕실은 太祖 王建의 혼인과 자녀생산을 통하여 성립되었다. 고·중세 전환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고려 왕실은 骨品制가 사라진 사회에서 왕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권위를 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초기 왕실에서는 두 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왕위계승권을 갖는 왕실 구성원들을 관료집단과 분리시키는 '宗親不仕' 원칙이 확립되었다. 태조 말년에 이르러 仕宦 여부는 왕실과 非왕실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士'층의 정치적 역량을 골품제와 같은 폐쇄적 체제로 제약하지 않았던 고려에서는 '종친불사'를 원칙화함으로써 관료제라는 틀 속에서 왕실과 관료집단이 경쟁하는 상황을 피하였다. 나아가 國政 전반이 왕위계승 분쟁에 휩쓸렸던 신라 下代의 혼란상을 되풀이하지 않았고, 정치적 현안마다 왕실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둘째, 왕실 남성과 호족·관료집단 출신 여성의 통혼을 허용하면서도 왕실 구성원 간의 근친혼을 반복하여 왕실의 혈통을 차별화하였다. 태조 자녀세대는 태조가 기구축한 인척관계망 내에서 호족·관료집단과 통혼하는 한편 혼인적령기의 남녀가 확보될 시 왕실 구성원 간의 근친혼을 우선하여 왕실과 외척의 외연을 제한하였다. 태조는 생전 이복남매 관계인 왕자와 왕녀를 혼인시켜 왕실의 禁婚 범위를 同母兄弟姉妹로 최소화하였다. 이후 고려초 왕실에서는 遠親에서 近親으로 갈수록 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왕실 여성에게 왕실 남성과의 혼인을 강제하는 內婚 규범이 성립되었다. 태조 자녀세대 이후 왕실에서는 부모 양측의 혈통을 따져 구성원을 階序化 하였다. 부모의 內婚 여부에 따라 태조의 손자녀들에게는 왕위계승권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차등적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실의 외척들은 외손을 매개로 재결합하였으며, 외손을 두지 못한 외척들은 納妃하지 않은 자식을 상호간 통혼시키는 방식으로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초기 왕실의 근친혼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었다. 첫째, 왕실은 순혈이면서 통치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국왕의 사위를 간택하는 행위가 곧 왕위계승후보자들의 범주를 조정하는 행위였던 만큼 왕실이 국왕에게 緊束되었다. 셋째, 근친혼으로 결속된 왕실 구성원 사이에 前代의 유산이 안정적으로 상속되었다.

중국의 封爵制를 도입하여 왕실제도를 정비하기 이전 고려에서는 생존 중인 왕위계승권자에게 正胤·東宮·太子, 그 외의 왕위계승후보자들에게 '宮院名+君' 형식의 공식 칭호를 부여하였다. 母后 혹은 자신의 궁원명을 기반으로 한 '君'칭호는 남성을 여성(부인과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한국 고유의 宅號 문화와 연관성을 가지며, 택호 문화는 總系的 사회구조 및 男歸女家 혼속의 잔재로 이해된다. 현재 ≪高麗

史≫ 宗室傳에 초기 왕실 남성의 상당수가 '○○太子', '○○大王'으로 입전되어 있는데, 이는 생전의 공식칭호가 아닌 시호이고 이러한 追諡法은 늦어도 景宗代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종대에는 開寧君과 같이 궁원명 기반의 '君'과 성격을 달리하는 칭호도 나타났다. 光宗代부터 진행된 체제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경종은 작고한 왕실 구성원과 생존한 왕실 구성원에 대한 편제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의 봉작제를 고려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실 편제를 체계화 한 시기는 顯宗代다. 현종대에는 當代의 다원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반영하여 君爵을 王爵 위상에 두는 봉작제가 성립되었다. 唐代 봉작제는 황실을 작위체계의 상층부인 國王·郡王·國公·郡公에 위치시키고 관료를 공훈에 따라 군왕 이하에 차등적으로 봉작하는 일원적 작위체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고려 현종은 唐制를 수용하여 王爵을 君爵으로 대체하고 국공 이하 작위체계를 도입한 뒤, 唐末宋初의 관행에 따라 왕자들을 君·국공에 위치시켰다. 문종 즉위 후 왕실의 세대구성이 복잡해지면서 君은 公·侯로 분화되었으나 그 실체가 王爵이라는 인식은 諸王 의식으로 이어져 고려중기까지 온존하였다.

현종대에서 宣宗代에 이르는 오랜 기간 고려에서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봉작제를 고려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졌다. 종법질서에 기반한 중국의 봉작제는 고려와 습합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고려 왕실에서는 종법질서와 單系혈통원칙을 찾아볼 수 없고, 근친혼으로 인하여 친속관계망이 가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는 嫡長이라는 생득적 요소에 근거하여 왕실 봉작을 상속시키지 않고,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에게 司徒·司空과 같은 爵位化된 관직만 허용하되 이들이 內婚으로 국왕의 직계가족에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한 채 伯爵을 운영하였다. 왕실 작위체계 상층의 公·侯·伯과 하층의 사도·사공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고려 특유의 왕실 봉작제는 특정 王代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華風的 요소(봉작제)와 土風的 요소(태조 聖訓 및 토속의 가족관념)를 조화시키려는 치열한 고민과 시도 속에 이루어졌다.

종법질서를 황실의 계서적 질서와 연동시킨 중국식 封爵令은 고려에서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귀납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고려 왕실의 初封 수여 원칙을 찾았다. 통설에 따르면 고려에서는 국왕의 기본가족과 그 결연자들을 왕실 봉작의 기본 단위로 하였다. 통설을 활용하여 現王으로부터 최대 어느 범주의 친속까지 동시기 법제적 왕실로 존재할 수 있는지 도식화해보면 인류학의 일차친척·이차친척과 유사한 친족구조가 확인된다. 이러한 친족구조는 종법질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심지어 고려에서는 왕실의 內婚 규범에 의하여 역대 국왕과 왕실 구성원 사이에 복수의 친속관계가 설정되었다. 즉, 한 명의 왕실 구성원이 도식화된 친족구조 안에서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었다. 고려 왕실에 대한 정치제도사적 연구와 사회문화사적 연구를 통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 왕실은 왕실 여성의 배우자를 '宗室' 출신으로 제한하여 왕실의 혈통과 특권을 보존하는 혼인규범을 갖고 있었다. 본고는 이를 '宗室內婚'으로 명명하였다. 왕녀·종녀가 사촌 이내의 왕실 남성들과만 혼인하도록 제약한 고려초 內婚 규범이 왕실 봉작제 성립 이후에는 '종실내혼'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실'은 법제적 왕실인 諸王과 더불어 諸王이 파생시킨 기본가족 일부를 포괄하였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법제적 왕실 범주에서 벗어나 왕실 주변부에 존재하였고, 그들의 최종 소속을 결정하는 데 외부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국왕과 '親'이 남아있는 존재로서 혈통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서는 국왕의 后妃 또는 王壻가 간택될 수 있었다. 이들의 최종 소속은 혼인에 따라 달라졌다. 관료가문과의 혼인을 계기로 諸王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사라

져버린다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仕宦權을 완전히 회복하여 왕실에서 배제되었다. 가문계승·상속을 매개로 諸王들이 이들에게 강한 귀속권을 행사할 시에는 '종실'로서의 정체성이 확정되지만 그 여파로 배우자의 혈통과 家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려가 왕실 여성의 혼인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왕실의 규모를 통제하여 왕위계승권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였다. 둘째, 화풍과 토풍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었다. 중국 부계혈통사회의 산물인 姓 문화를 도입하여 문물제도 정비에 활용하고 대내외적으로 고려를 王氏의 왕조로 각인시켰음에도 고려는 토풍을 부정하지 않고 여성을 통한 王統의 계승을 인정할 수 있었다. 셋째, 왕녀·종녀를 종실내혼에 구속시킨 결과 사회적으로 합의된 남녀균분상속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왕실의 자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넷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려 왕실은 아내를 취하는 자(wife-taker)의 입장만 취함으로써 왕실과 관료집단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그 배타적 우위를 공고히 하였다.

고려 왕실은 봉작제와 '종실내혼'이 연동된 구조 위에 존속하였다. 종남 출신의 王壻·妃父·王壻父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고려중기까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실내혼'을 계기로 국왕의 近屬에 편입된 종남들은 초봉과 進封 과정에서 왕자들과 차등대우를 받았다. 왕자들이 20세를 전후하여 侯에 초봉되었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公으로 진봉되었던 반면 王壻는 伯에 초봉되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야 侯로 진봉되었다. 이때의 진봉은 연령에 따른 예우일 수도, 새로운 국왕과 항렬에 따른 친속관계가 재설정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王壻의 자녀세대에서 국왕 자녀들과의 '종실내혼'이 이루어지면 항렬이나 王壻 간 서열을 무시한 진봉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확대 적용되어 국왕 또는 그 자녀에게 배우자를 제공하여 '결연자' 위상에 오른 '종실'들은 모두 진봉

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은 대몽항쟁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변형되었는데, 그 단초를 최씨무신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충헌은 전통적인 '종실내혼' 체계를 부정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왕실의 외연을 침식하며 家格을 높이고 輔政의 정당성을 찾았다.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최씨무신정권의 의중에 좌우되고 국왕은 고유의 결재권만을 유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씨무신정권은 왕실과의 '파격적' 혼인에서 파생된 친속관계를 봉작을 통하여 공식화하고 이로써 기존 왕실 범주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다. 최씨무신정권의 붕괴 이후 미세한 균열은 점차 확대되었다. 對蒙 외교에 동원된 '종실'에게 보상 또는 포상 차원의 봉작이 남발된 결과 국왕은 점차 왕실의 외연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였다. 최종적으로 충선왕대에 이르러 종래의 '종실내혼'이 공식 부정됨에 따라 '종실내혼'을 기반으로 성립한 고려 왕실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주요어: 왕실, 宗室, 근친혼, 內婚, 宗室內婚, 封爵制, 일원적 작위체계, 諸王, 華風, 土風

학 번: 2011-30032

목 차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정리 ····· 1
2. 연구의 시각과 분석 史料 ····· 12
3. 논문의 구성 ····· 19

一. 고려 왕실의 성립과 초기 편제 ····· 22

1. 太祖~穆宗代 왕실의 구조 ····· 22
   1) 太祖 왕실의 인적 구성과 '宗親不仕' 현상 ····· 22
   2) 인척관계망 계승에 따른 왕실 구심력 강화 ····· 29
   3) 폐쇄적 內婚網에 기반한 왕실 階序化 ····· 41
   4) 초기 왕실 구조의 역사성 ····· 56
2. 太祖~穆宗代 왕실의 공식 칭호와 편제 ····· 66
   1) '大王'·'太子' 추증제도의 시행 ····· 66
   2) 왕실 남성의 '正胤'·'君' 편제와 변화 모색 ····· 77

二. 왕실 封爵制 도입과 법제적 왕실의 劃定 ····· 99

1. 顯宗~宣宗代 왕실 封爵制의 성립 ····· 99
   1) 封爵制의 기원과 기본 체계 ····· 99
   2) 다원적 천하관에 기반한 封爵制 변용 ····· 110
   3) 혈통·'종실내혼'을 고려한 階序的 편제 ····· 127
2. 왕실 封爵制의 운영원리 ····· 138
   1) 종법질서를 탈각한 封爵制 운영원리 ····· 138
   2) 가변적 친속관계망을 반영한 왕실 封爵制 ····· 147

三. 왕실 封爵制와 '종실내혼'의 연동 구조 ·····160
1. '종실내혼'의 차별적 구속력과 왕실 외연 통제 ·····160
1) 사례 분석을 통한 왕실 內婚 단위의 복원 ·····160
2) 왕실 여성에 대한 혼인규범으로서의 '종실내혼' ·····180
2. '종실내혼'과 왕실 편제의 推移 ·····201
1) 가변적 近屬 관계에 따른 初封·進封 체계 ·····201
2) '종실내혼'의 동요와 왕실 편제의 변형 ·····224

결론 ·····241

참고문헌 ·····251
Abstract ·····262

표 목 차

<표 Ⅰ-1> 태조 자녀들의 출생연도 및 혼인(추정)시기 ····· 33
<표 Ⅰ-2> 태조 자녀세대의 왕실 내 근친혼 현황 ····· 39
<표 Ⅰ-3> 태조 왕자의 입전항목명 ····· 70
<표 Ⅰ-4> 唐 睿宗 皇子 일람표 ····· 72
<표 Ⅰ-5> 고려초 왕위계승권자 지칭 사례 ····· 78
<표 Ⅰ-6> 태조 왕자·왕손에 대한 當代 지칭 ····· 90
<표 Ⅱ-1> 唐宋의 작위체계 ·····102
<표 Ⅱ-2> ≪高麗史≫ 爵條의 작위체계 ·····111
<표 Ⅱ-3> 현종 자녀의 현황과 봉작 사례 ·····112
<표 Ⅱ-4> 현종~문종초 왕실 책봉호 비교 ·····121
<표 Ⅱ-5> 고려 현종~문종초와 唐宋의 작위체계 비교 ·····122
<표 Ⅱ-6> 고려 왕실 봉작제의 시기별 변화 ·····129
<표 Ⅲ-1> 中原公 昷의 부계조상과 고려 국왕의 친속관계 ·····163
<표 Ⅲ-2> 太子 출신 국왕들의 初婚 상대 ·····172
<표 Ⅲ-3> 承慶宮主·恭化侯瑛 딸의 혼인 對象群 추정 ·····189
<표 Ⅲ-4> 고려 왕실의 初封·進封 시점 ·····203

그 림 목 차

<그림 Ⅰ-1> 고려초 왕실 내 근친혼맥도(1) ····· 43
<그림 Ⅰ-2> 고려초 왕실 내 근친혼맥도(2) ····· 44
<그림 Ⅰ-3> 신라하대 왕실의 근친혼맥도 ····· 61
<그림 Ⅱ-1> 唐代 封爵制의 구조 ·····104
<그림 Ⅱ-2> 唐 皇室의 封爵 수여 범위 ·····106
<그림 Ⅱ-3> 고려시대 왕실 봉작(초봉) 수여 원칙에 관한 통설 ···139
<그림 Ⅱ-4> 고려 왕실 봉작의 구조와 위계 ·····144
<그림 Ⅱ-5> 諸王의 친속 지위 ·····150
<그림 Ⅱ-6> 이차친척 도식 ·····151
<그림 Ⅱ-7> 江陵侯 溫 가족의 위상 변화 ·····155
<그림 Ⅲ-1> 의종과 莊敬王后 金氏의 친속관계 ·····166
<그림 Ⅲ-2> 현종 이후 고려 왕실의 內婚 관계망 ·····169
<그림 Ⅲ-3> 王梓와 부인 王氏의 가계도 ·····175
<그림 Ⅲ-4> 인종 왕녀 昌樂宮主의 가계도 ·····214
<그림 Ⅲ-5> 고종과 淮安公(始興伯) 侹의 친속관계망 ·····221
<그림 Ⅲ-6> 최충헌 가문과 고려 왕실의 통혼망 ·····227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정리

본고에서는 高麗 王室의 인적 구성과 법제적 위상을 구명하고,[1] 왕실의 권위 및 특권의 기반이 되었던 체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왕실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역사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왕실(Royal family)은 그간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술용어다. 광의의 왕실은 국왕의 먼 후손인 祖宗苗裔를 포괄하고[2] 때로는 왕조 그 자체를 의미한다. 지배질서와 계급구조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는 국왕과의 '公認된' 가족 관계를 토대로 왕위계승권을 공유하거나 왕위계승권의 재분배에 관여할 수 있는 협소한 단위만을 왕실로 규정하기도 한다. 본고의 핵심 개념어인 '왕실'은 후자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宗親·宗室·諸王 등 협의의 왕실을 함의하는 용어들이 통용된 바 있으나, 종친은 조선전기 宗親府 職制하에 편제된 제한된 범주를 연상시키고 諸王은 고려 전·중기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범용성이 떨어진다. 종친과 諸王 모두 왕실 여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고는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왕실이 고려라는 토대 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였는지 구

---

1) 노명호, 1986 <高麗初期 王室出身의 '鄕里'勢力>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에서는 고려초부터 왕실이 양측적 친속 관계를 기반으로 내부를 조직화하고 왕실 외부와의 결속을 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노명호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고는 '王族'이 아닌 '王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族'은 單系親族集團을 전제한 개념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 김기덕,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 청년사, 225~232쪽에서는 고려 왕실을 1차적 구성, 2차적 구성, 3차적 구성으로 나누고 諸王 범위와 일치하는 1~2차적 구성까지를 협의의 왕실로 한정한 바 있다. 3차적 구성은 宗室疎屬·祖宗苗裔 등으로 지칭되는 집단으로서 광의의 왕실에 해당한다.

명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세계사 차원에서 비교문화적 맥락을 갖출 수 있는 '왕실'을 핵심 개념어로 채택하였다. 다만 특정 시기의 왕실을 전후 시기와 구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上記 동의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當代 사료를 토대로 그 뜻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규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3)]

검토 대상이 되는 시기는 10~13세기, 즉 고려 건국 이후부터 무신집권기까지다. 왕실의 보수적 속성상 최상층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려 왕실은 前代의 新羅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으나, 骨品制라는 폐쇄적 신분제가 새로운 중세사회와 공존할 수 없었던 내부 상황 및 급변한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나갔다. 고려가 시대에 조응하며 구축한 왕실 체제는 무신집권기까지 장기 지속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이라는 이질적 세계는 고려가 내·외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리적 충돌은 곧 문화적 충돌로 이어졌으며 그 파장으로 인하여 원간섭기 이후 고려 왕실은 '단절'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4)] 본고가 무신집권기까지로 연구시기를 한정하고 원간섭기 왕실

---

3) 본고에서 왕실 封爵制 성립 이후부터 고려중기까지의 왕실을 特稱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는 '종실'이다. 고려중기 작성된 묘지명에서는 公·侯·伯, 司徒·司空에 봉작될 수 있는 왕실 남성과 이러한 지위를 배우자에게 代受시킬 수 있는 왕실 여성이 當代에 종실로 통칭되었으며 종실이 內婚 단위로서 유의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작위의 有無를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었던 諸王에 비하여 종실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모호하였다. 司徒·司空의 자녀세대는 향후 諸王으로 편입될 가능성과 관료로 정착할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실은 경우에 따라 司徒·司空의 자녀세대 가운데 일부를 포괄하게 되었다. 관련한 상세 분석은 본고 三장 1절 참조.

4) 채웅석, 2021 <고려중기 정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려중기 정치사의 재조명≫, 일조각, 24~29쪽에서는 文臣 對 武臣이라는 지배층의 분열과 대립에만 주목하여 무신정변으로 인한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하였던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12세기 전반부터 고려전기 확립된 지배체제가 동요·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며 '고려중기론'을 제기하였다. 채웅석은 고려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발전한 전기(10~11세기)", "역동적 변화의 중기(12세기초~13세기중반)", 원간섭기 이후 "몽골의 제국 질서에 조응하여" 특징적 정치구조와 지배세력이 형성된 '후기(13세기말~14세기)'로 三分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고려 왕실 연구에서도 유효하여, 본고는 원간섭기 이후를 왕실 역사에서 '단절'의 시기로 파악하고 연구시기를 10~13세기로 한정하였다.

의 역사를 별도의 고찰 대상으로 남겨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왕실은 왕조사회의 최상위 집단이다. 특정 혈통에게 왕위 독점권을 허용하는 폐쇄적 사회에서 왕실은 王權에 가장 맞닿아 있는 존재들로서, 통치범위 내에 있는 여타 지배층과 비교하여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우위를 확보해야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전근대 왕조사회에서 이데올로기 권력(ideological power)은 체제의 안정성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5] 국왕의 이데올로기 권력은 국왕의 기원인 왕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명명하고 인식하는가에 크게 좌우되었다. 왕실의 '비범성'은 왕조사회가 지속하는 한 사회 전반에서 끝없이 인정받아야만 하는 덕목이었다. 따라서 왕실이 어떠한 내적 논리와 公的 체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존재감을 구비하였으며 공공연하게 배타적 특권을 향유하고 상속하였는지 해명하는 것은 왕조사회의 본질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하지만 한국전근대사를 통틀어 왕실은 그 동안 매력적인 연구 소재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이후의 정치사·사회사 연구가 대체로 왕조사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지방사회·民의 역할에 천착하였기 때문에 국왕과 왕실이 왕조사회에서 갖는 위상이나 그 권력의 원천에 대한 근원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왕실은 泛泛한 지배계급의 하나로, 국왕은 관료층과의 역학 관계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단순하게 평가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국왕과 왕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주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양상에 방점을 맞추었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물론 왕실은 왕권에 가장 근접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충분히 변모·분열할 수 있는 '정

---

5) 본고의 '권력(Power)' 개념은 Michael Mann의 이론을 참조하였다. 정치학자 Michael Mann에 따르면, 현실에 작동하는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은 크게 네 가지 원천(source)의 중첩된 작동을 통하여 발생된다. 네 가지 원천은 군사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이데올로기 권력을 지칭한다(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17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치집단'이기 때문에 국왕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제로섬 관계로 파악하는 데 그친다면 왕실과 여타 정치집단이 차별화되는 지점, 바로 왕권의 원천으로서 왕실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사라져버린다. 기본적으로 왕실은 왕위계승권을 공유한다. 다른 세력의 上位에서 영속적이고 배타적으로 최고권(Sovereignty)을 소유하기 위하여 왕실은 최고권의 행사자이자 그 자체로 최고권의 顯現이었던 국왕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강력한 왕권이 왕실의 안정에 도움이 될 때 왕실은 적극 국왕에게 협조할 것이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국왕을 배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왕실은 권력의 집중과 배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역사를 통틀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제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외연을 통제해왔다. 왕실의 경계를 획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왕실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것을 구명하는 것이 當該 왕조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핵심 작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왕실이 지배층·특권층이기에 앞서 국왕의 가족이라는 특성 또한 왕실의 본질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왕실은 국왕의 私的 가족을 공식화한 존재다. 왕실의 배타적 특권은 어디까지나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왕실이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국왕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광범한 친속관계망 속에서 어디까지를 가족의 범주에 넣을 것이며, 가족의 세대교체 사이클에 맞추어 국왕으로부터 용인된 특권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는 사회구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즉, 왕실은 정치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집단으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정치사와 사회문화사를 통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가족은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가 규정한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집단이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내부적으로 혈연관계

에 기반한 개인들로 구성되고 외부적으로 법률적 유대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 곧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두헌은 뒤르켐의 견해를 수용하되, “관습, 법률, 기타 문화는 곧 가족의 형식을 규제하고, 또한 역사적 변천에 따라서 가족구성의 형태가 규정된다”고 주장하였다.[6] 혈연관계망과 더불어 동일 가족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고찰하여야 가족의 全貌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여러 인류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한다. 따라서 왕실 또한 가족을 정의하는 當代의 제도 및 관습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실은 비범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그 비범성을 증명하여 이데올로기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집단이기도 하였다.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보편 문화의 영향 하에 놓였으나 때로는 보편 문화에 역행할 수도 있었던 것이 왕실의 특수한 속성이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고려에 한하여 前述한 왕실의 두 가지 일반적 속성 외에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 첫째, 고려는 한국사에서 최초로 ‘宗親不仕’의 원칙을 확립한 왕조다. ‘종친’이 최고의 爵祿과 내외 중요관직을 독점하던 삼국 및 통일신라와 달리 고려는 ‘종친’의 작록만 후하게 지급하고 사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7] 종친불사 원칙이 직접 거론된 자료가 ≪益齋亂藁≫, ≪高麗史≫ 恭讓王代 기사와 같은 고려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초까지 소급하여 볼 수 없다는 異見도 제출될 수 있겠다. 그러나 太祖 王建 말년 이미 成年의 나이에 들어선 定宗·光宗 등의 왕자들이 전혀 관직을 兼帶하지 않았던 사실을 볼 때, 적어도 후삼국 통일이 완료된 이후에는 종친불사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興德王·忠恭의 사례

6) 김두헌, 1949 ≪朝鮮家族制度硏究≫, 을유문화사, 3쪽.
7) 김성준, 1964 <宗親府考> ≪史學硏究≫ 18, 11쪽. <宗親府考>에서 김성준은 ‘종친불사’ 원칙이 고려시대에 실재하였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종친불사’ 원칙이 언제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본고 一장 1절 참조.

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신라 下代에 국왕의 형제 또는 조카와 같은 最近親이 上大等·侍中 등의 고위직을 역임하며 왕위계승권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것과 대조된다.[8] 즉, 고려 왕실은 국왕의 통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최상의 정치집단으로서 차별화된 권위와 권력을 향유하였다. 이것을 가능케 하였던 고려 當代의 정치 공학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려는 唐이 확립한 문물제도가 동아시아 典範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시기에 존속하였던 나라다. 중국을 경유하여 儒敎·佛敎 등 세계 종교를 수용하고 동시대의 唐을 경험하였던 한국 고대사회 또한 중국을 참조하며 체제 변화를 꾀하였으나, 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토속의 제도와 언어는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고려는 장기간에 걸쳐 唐의 문물제도를 연구하고 成宗代를 기점으로 唐과 유사한 중앙정치제도를 구현하였다.[9] 이후 외래의 華風과 재래의 土風 가운데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으나 顯宗의 治世를 거치며 고려는 양자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안정적 체제를 형성하였다.[10] 신라의 전통·관습이라는 토대 위에 唐制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중국적 外皮 안에 고려적 內實을 채웠고, 때로는 과감하게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였다.[11] 이는 고려가 고

---

8)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김창겸, 2002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上大等> ≪白山學報≫ 63; 손흥호, 2016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硏究≫ 83; 이재환, 2017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3; 홍승우, 2018 <신라 副君과 月池宮> ≪東洋學≫ 70.

9) ≪고려사≫ 권76, 志30 百官1, "高麗太祖, 開國之初, **參用新羅泰封之制, 設官分職, 以諧庶務, 然其官號, 或雜方言**, 盖草創未暇革也. 二年, 立三省六尙書九寺六衛, **略倣唐制. 成宗, 大新制作**, 定內外之官, (중략) 於是, **一代之制, 始大備**"; 박재우, 2005 <국정운영 체계의 형성과 지향>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신구문화사, 27~44쪽; 변태섭,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2~83쪽.

10) 노명호, 2019 <문명의 보편성과 개성: 高麗 初 儒敎政治文化 도입과 文化接變> ≪진단학보≫ 133; 구산우, 2015 <고려시기 제도와 정책의 수용과 배제: 성종대 화풍과 토풍의 공존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2.

11) 변태섭, 1971 앞의 책, 2~83쪽; 노명호, 1981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한국사연구≫ 33; 황향주, 2011 <고려 起復制와 14세기말 起復論爭> ≪한

유의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동아시아 다른 세계들과 교류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무대 속 하나의 행위주체로 자리 잡기 위하여 화풍을 활용하면서도 토속적 요소를 주체적으로 접목시킨 국가가 고려였다. 원간섭기 이전의 고려가 중국 封爵制를 수용하여 왕실의 제도적 형식과 공적 특권을 마련하였음에도 중국 황실과 전혀 다른 매커니즘으로 왕실을 영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려 왕실 연구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고려 왕실의 통혼망과 가족관계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왕실과 국왕이 혈연·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통혼망과 배우자 선택 원리, 왕실 친·인척관계망 내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사회적·정치적 위상 등을 구명하는 데 집중하였다.[12]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인물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왕실보다도 '外戚'에 방점을 두었다. 왕실 출신 后妃가 꾸준히 배출되었던 고려의 특수한 상황 상 왕실과 외척이 전혀 별개의 존재였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외척을 문벌가문으로 한정하고 혼인에 따른 王權과 臣權의 조화 또는 길항을 살펴본 것이 왕실 통혼망 및 가족 연구의 경향이었다.

고려시대 왕실이 곧 국왕의 혼인 파트너였다는 사실에 천착하여 최초로 왕실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자는 鄭容淑이다.[13] 정

국사론≫ 57.

12) 김갑동 외, 2015 ≪고려의 왕비: 내조자와 국모로서의 삶≫, 경인문화사; 김창현 2006 <고려시대 천추태후와 인예태후의 생애와 신앙> ≪한국인물사연구≫ 5; 류선영, 2013 ≪高麗 太祖의 6王后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수정, 2015 <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왕실 근친혼과 관련하여> ≪여성과 역사≫ 23; 신수정, 2018 <자매간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 ≪사학연구≫ 131; 이정란, 2006 <고려시대 后妃府에 대한 기초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20; 이정란, 2011 <太祖妃 天安府院夫人과 天安府>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용숙, 1992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13) 정용숙, 1988 ≪高麗王室族內婚硏究≫, 새문사.

용숙은 고려 왕실의 혼인을 “왕족 간 혼인하는 族內婚”, “귀족가문과 혼인하는 族外婚”, “원간섭기라는 특수한 국제관계 속에 맺어진 元公主와의 혼인”으로 三分하고, 족내혼은 다시 顯宗 등장 이전 태조 자손 가운데 忠州劉氏系와 黃州皇甫氏係의 밀착된 족내혼 체제가 강화된 시기와 현종 이후 기존 통혼권을 부정하고 족내혼이 ‘변질된’ 시기로 대비된다고 이해하였다.[14] 특히 그는 현종 즉위 이후부터 다수의 ‘귀족가문’ 출신 后妃가 등장하고 그 소생이 왕위를 계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사위와 일부 后妃를 지속적으로 ‘족내혼’하였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王族을 ‘公主族’과 ‘王族’으로 구분한 뒤 양자 간 혼인이 연속되는 양상을 도식화하였다.

정용숙은 1980년대초까지 한국사학계를 지배하던 부계친족집단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의 혈통이 왕실 재생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공주족’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것으로 이해된다.[15] 그러나 인류학의 모측교차사촌혼(모방교차사촌혼; system of matrilateral cross-cousin marriage) 이론을[16] 차용하여 공주족과 왕족 간 세대를 거듭한 혼인을 설명하는 방식은, 고려 왕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유형의 ‘족내혼’에 적용하기 어려운 분석법일 뿐 아니라 잘못된 개념 이해에 기반을 두었다는 문제점 역시 안고 있다. 교차사촌혼 이론은 대개 “單系 혈연친족집단의 가장 보편적 특징”인 外婚制와 연관된다.[17] 그 정체성과 귀속 원리가 분명한 복수의 族 사이

14) 위의 책, 5쪽 및 88~134쪽. 정용숙은 異姓后妃가 다수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현종 이후 족내혼의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정용숙, 1997 <高麗와 日本의 王室婚姻에 대한 검토: 10~12세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9, 20쪽).

15) 정용숙에 앞서 인류학자 李光奎는 1977년 초판 발행된 ≪韓國家族의 史的硏究≫에서 고려 왕실 내부의 근친혼을 ‘족내혼’으로 규정하고 부계 촌수 위주로 근친혼 당사자들의 친속관계를 파악하였다(李光奎, 1990 ≪韓國家族의 史的硏究≫, 일지사(6판), 55~61쪽). 이에 정용숙은 이광규가 파악한 부계 촌수에 ‘母系’ 촌수를 병기함으로써 여성을 매개로 한 혈통까지 고려할 경우 근친혼 당사자들의 친속거리가 보다 가까워진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의 三장 1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가 추가로 파악한 촌수에는 ‘母系’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

16) 박정석, 2010 ≪외사촌 누이와 혼인하는 사람들≫, 민속원(초판 2쇄), 70~71쪽.

17) 죠지 피터 머독 지음, 조승연 옮김, 2004 ≪사회구조≫, 서경, 79쪽 및 206~208

에 여성을 교환하면서 교환 대상을 '아버지의 자매의 딸' 또는 '어머니의 형제의 딸'로 한정하는 것이 교차사촌혼이며, 이는 외혼제 문화를 보유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배타적 특권을 유지하고자 선택하는 혼인 방식이다. 즉, 교차사촌혼 이론은 父系 혹은 母系 일방이 압도적 우위를 갖는 單系 혈통규정과 더불어 공동의 계보의식을 기반으로 한 친족집단이 전제되고, 집단 사이의 외혼이 '사회적 체계'로 존재할 때 유의미하다.[18] 왕족 간 혼인을 '족내혼'으로 규정할 시 모측교차사촌혼 이론과 논리적으로 整合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고려에서는 국왕의 자녀와 혼인하는 왕실 인물이 공주의 자녀로만 국한되는 '사회적 체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족내혼'으로 분류되어 온 왕실 혼인을 분석해 보면 부측과 모측을 모두 포괄하여 교차사촌혼·평행사촌혼·오촌혼 등 다양한 유형의 근친혼이 확인된다.[19]

쪽; Martine Segalen, *Historical anthropology of the fami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57, "The simplest form of the marriage 'outside the group' is the systematic exchange of sisters, a type that becomes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within the same principle. In the kinship terminology of certain societies there is a basic difference between cousins. Those who are the children of close relatives of the same sex are called 'parallel' cousins, and those who are children of close relatives of the opposite sex are called 'cross'-cousins."

18) 박정석, 1999 <모방교차사촌혼(matrilateral cross-cousin marriage)에 관하여: 남인도 텔란가나(Telangana) 지역에서의 사례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2-1, 114쪽 주4)에서 인용한 Irawati Karve의 연구에 따르면, 모방교차사촌혼을 수용한 남인도 사회는 부계 7대조와 모계 5대조 이하의 후손들을 동일 혈족으로 상정하는 兩系的 Sapinda 규정에서 벗어나 單系的 gotra 규칙을 따르는 족외혼 부계씨족 체계로 전환하였다. gotra는 '부계 혈족의 공동가옥·가축우리'에서 부계 집단으로 語義가 확장되었다(박정석, 2010 앞의 책, 17~18쪽).

19) 인류학자 신인철에 따르면, '혼인'을 중심으로 인류사회를 분석하는 결연이론(alliance theory)에서는 특정 친족 간 혼인이 규정혼이거나 선호호인 경우를 기본체계로 명명하고 모측교차사촌혼과 부측교차사촌혼 체계를 기본체계로 분류한다. 반대로 특정 친족범위 내의 혼인만 금지되는 경우는 복합체계로 명명하는데, 복합체계는 일반적으로 '미분화출계(filiation indifférencié, cognatic descent; 총계)' 사회에서 나타난다고 이해된다. 복합체계에서도 교차사촌혼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체계(시스템)'가 아니라 금혼단위가 극히 좁고 계급내혼 지향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부분적 '현상'일 뿐이다. 하나의 복합체계 사회에서 특권층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략에 따라 모측교차사촌혼·부측교차사촌혼·모측평행사촌혼·부측평행사촌혼을 모두 행할 수 있다. 신인철은 신라와 고려 모두 '복합체계의 미분화출

즉, 고려 當代에 '공주족'과 '왕족'은 실체가 없었던 개념이다. 따라서 종래 '족내혼'으로 규정되어 왔던 고려 왕실의 특징적 혼인 현상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이론을 엄밀하게 차용하면서 고려 왕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유형의 '족내혼'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20]

두 번째로 왕실이 법적·제도적으로 '공인된' 가족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왕실을 둘러싼 제도적 형식이나 왕실에 주어진 공적 특권을 구명한 연구를 들 수 있다. 河炫綱, 金成俊, 黃雲龍, 金基德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현강과 김성준은 고려 왕실이 부여받은 특권의 실체에 집중하였다. 하현강은 <高麗食邑考>를 통하여 食邑을 매개로 왕실이 향유한 경제적 특권을 검토하였다.[21] 金成俊의 <宗親府考>에서는 고려의 '종친불사' 원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처음으로 조명하고 고위의 實職을 독점하지 않고도 고려 왕실이 특권을 영위할 수 있었던 시스템에 대하여 고민하였다.[22] 다만 <高麗食邑考>는 봉작과 결부된 食邑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왕실의 경제적 특권에 대한 구체적 검토로 나아가지 않았다. <宗親府考> 또한 조선시대 종친부가 성립하기까지의 前史로서 고려 왕실을 다루어, 고려 왕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 어렵다.

황운룡의 <高麗諸王考>는 唐代 諸王制度에 대한 이해 위에 고려 '諸王'의 실체를 구명하고 '外王內帝'의 이상이 고려시대 왕실 운영체

계 사회'로서 기본체계의 부계친족집단사회인 중국과 본질적으로 달랐음을 주장하는데, 그의 분석 결과는 고려 왕실 연구사와 인류학을 접목시킬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신인철, 1995 ≪한국의 사회구조: 미분화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문덕사(개정판), 11~47쪽 및 319~375쪽 참조).

20)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사 연구자들이 기본 전제로 삼았던 부계친족집단설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당시로서 최신의 친족인류학 이론을 한국 친족제도사와 접목시킨 대표적 연구자로 노명호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親族·親屬·父系·母系·總系 등의 용어는 노명호, 1988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쪽에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21) 河炫綱, 1965 <高麗食邑考> ≪歷史學報≫ 26.

22) 김성준, 1964 앞의 논문.

제에서도 구현되었음을 최초로 입증한 논문이었다는 점에서 큰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23] 그는 諸王制가 도입된 시점, 諸王의 신분과 자격, 諸王에 대한 待遇 등을 검토하여, 後學들에게 왕실의 법제적 위상이라는 핵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端初를 남겨주었다.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全無한 상황에서도 황운룡은, 顯宗代 최초의 諸王이 등장하였으며 諸王의 자격은 왕실 혼인과 깊은 상관성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왕의 孫子보다도 駙馬나 妃父라는 자격이 더 우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의 지적은 이후 발표된 연구 성과를 참작하면 매우 예리한 것이었다.

고려 왕실의 편제와 재생산 원리를 본격적으로 밝힌 연구자는 김기덕이다. 김기덕의 박사학위논문을 底本으로 출간된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는 비록 왕실이 아닌 봉작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현재로서는 고려 왕실의 편제 및 운영 원리를 통시적으로 검토한 유일무이의 저작이다.[24] ≪高麗史≫ 宗室傳序에 왕실의 階序와 봉작 원리에 대한 추상적 서술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고려가 국왕의 친속들을 어떠한 원칙과 제도에 근거하여 왕실이라는 집단 속에 차등적으로 배치하였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김기덕은 종실전에 수록된 인물들의 初封과 進封 사례를 추적하는 귀납적 접근법을 통하여 왕실 봉작제의 전모를 밝혔다.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가 갖는 가장 큰 연구사적 의의는, 고려 왕실의 봉작이 일괄적인 代數를 기준으로 상속되는 귀속지위가 아니라 국왕 직계가족과의 통혼에 따라 획득되는 성취지위임을 밝힌 데 있다. 김기덕에 따르면, 왕실과 관료를 막론하고 고려시대의 봉작은 상속되지 않았으나 종실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는 司徒·司空으로서

---

23) 黃雲龍, 1974 <高麗諸王考>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1989 ≪高麗閥族硏究≫, 동아대학교출판부(개정판)에 재수록).

24) 김기덕, 1998 앞의 책, 청년사.

관료체제 내 최상의 지위를 차지하며 말단의 諸王으로 존재하였다. 사도·사공은 '近親婚'이라는 특징적 婚俗에 힘입어 국왕의 사위 또는 妃父로 친속 지위를 변동시키며 각각 伯과 侯에 초봉되어 왕실의 작위체계로 편입되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 또는 後代의 조선과 차별화되는 고려 왕실의 공시적·통시적 특수성을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김기덕은 고려시대 봉작제의 거시적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미시적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겼다. 또한 書名에 드러나듯 고려 전시기를 통틀어 왕실과 관료에 대한 봉작의 제도적 추이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에 고려 왕실이 어떠한 원칙에 의거하여 근친혼 대상을 선택하고 이 혼인을 매개로 재편·재생산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전면에서 다루지 않았다.[25]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정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권력의 분배와 집중을 왕실 자체적으로 조율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혈통적 우위를 기반으로 왕실의 비범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도 '근친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통·가족 등을 정의하는 광범한 사회문화적 관념이 혼인 성립 시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왕실 통혼망 및 가족관계에 천착한 또 다른 연구사적 흐름을 왕실 제도에 대한 연구와 접목시켜야 하는 이유다.

2. 연구의 시각과 분석 史料

고려 왕실의 인적 구성과 법제적 위상, 재생산 과정을 가장 함축적

25) 김기덕, 1993 <高麗時期 王室의 構成과 近親婚> ≪국사관논총≫ 49에서 고려 왕실의 근친혼 문제를 주제로 삼았으나, 이 연구는 특정 왕실 인물이 국왕의 사위 또는 后妃로 간택된 이유 자체보다는 근친혼의 결과 관련 인물들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으로 드러내는 當代人의 言說은 “世附近屬, 克襲公侯伯”이다.[26] “대대로 近屬에 附屬됨으로써 公·侯·伯을 능히 세습하였다”로 해석되는 이 언설에서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는 고려 왕실의 법제적 위상과 그 자격이다. 고려가 近屬 여부에 따라 公·侯·伯의 공적 지위를 부여하여 왕실의 범주를 획정하고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아홉 개의 글자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世附近屬”의 행간에서는 왕실 재생산 매커니즘과 관련한 단서 또한 포착할 수 있다. 고려 왕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遠親化되는 친속을 근속으로 묶어두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왕실의 영속성과 배타성을 담보하였다는 사실이 “世附近屬”의 행간에서 읽힌다. 국왕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왕실 구성원과 그로부터 파생된 가족들을 국왕의 近屬으로 묶어둘 수 있었던 핵심 장치, 그것은 바로 선행연구에서 ‘족내혼’ 또는 ‘근친혼’으로 명명되었던 고려 왕실의 혼인 문화였다.

고려의 왕실 봉작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차등적 친속관계를 제도적으로 공인한 시스템이었다는 측면에서 동·서양의 여타 국가들과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초봉 이후의 진봉, 그리고 다음 세대가 前代 왕실의 공적 지위와 특권을 이어가는 매커니즘은 다른 지역이나 시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적 양상을 보였다. 고려는 嫡長이라는 생득적 요건에 따라 襲封과 진봉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라 왕실의 ‘근친혼’ 문화를 답습하여 고려에서는 기존 왕실 구성원들을 근친혼 대상으로 묶어 當代 혹은 後代 국왕과의 친속관계를 재편하였고, 재편된 친속관계를 기반으로 왕실을 편제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왕실을 둘러싼 제도적 형식과 왕실에 주어진 공적 특권을 정치제도사적 관점에서

---

26) 「大元高麗國故壽寧翁主金氏墓誌銘」, “(전략) 年十四以右姓而賢, 配于王氏諱昷. 故藥城府院大君, 寔顯王第四子, 文王之母弟, 平壤公諱基十世孫也. **世附近屬, 克襲公侯伯**. 父帶方公諱澂, 在世祖皇帝時, 率本國子弟, 宿衛于內, 天子嘉其勞寵賚, 歲至累百”(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王昷妻金氏墓誌銘’ 및 김용선, 202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下, 한림대학교 출판부(개정 3판), 810~813쪽). 이 사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고 三장 1절을 참조.

밝히면서도 제도의 실질 운용 과정에서 혼인 및 친속관계망이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가족’의 속성에 대한 법적·관습적 합의와 더불어 當代人이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는 것이 곧 왕실의 본질에 대한 탐색으로 직결되므로 다음의 세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첫째, 왕실의 핵심부보다는 왕실의 경계에 집중하여 ‘近屬’, 즉 가족으로 공인되어 차별적 권위를 누릴 수 있었던 범주를 추적하였다. 기본적으로 국왕과 태자, 그리고 이들의 后妃는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여 왕실의 최소단위로 존재한다. 왕실의 구조는 결국 왕위계승에서 배제된 왕자·왕녀 및 이들로부터 파생된 친속들을 어떠한 위상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단적인 예로 고려에서는 生母의 신분에 따라 국왕의 자녀를 왕실과 非왕실로 철저히 분리한 반면 조선에서는 생모의 신분을 막론하고 국왕의 자녀를 왕실에 소속시켰다.[27]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오스만제국과 같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왕자들을 모두 살해하여 現王의 형제들이 왕실 구성원으로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왕조도 확인할 수 있다.[28] 이러한 사회에서 왕실은 現王의 기본가족(elementary family)과[29] 親生 관계의 母后, 여자형제만으로 구성될 것이며 세대교체와 무관하게 동일한 구성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의 경계에 주목한다면 도리어 왕실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그 역사성을 고찰할 수 있다.

---

27) 이정란, 2003 <高麗時代의 小君과 國庶> ≪한국사연구≫ 122.

28) 이은정, 2010 <오스만제국 근대개혁기 군주의 역할: 셀림 3세에서 압둘하미드 2세에 이르기까지> ≪역사학보≫ 208, 107~108쪽. 오스만제국 왕실의 형제살해 관행은 15세기 메흐메드 2세의 법전에 조항으로 등재되었다.

29) ‘기본가족(elementary family)’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개념어로 핵가족(nuclear family), 부부가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가족’이라는 개념어를 적용할 때에는 一夫一妻를 상정하지만,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왕과 같은 특정 신분의 남성에게만 多妻의 특권이 허용되고 부인의 출신이 비슷할 시 소생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본고는 시대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가족’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둘째, 시간이 개인의 생애와 친속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고는 왕실 구성원들의 출생 및 초봉·진봉 연도와 봉작의 계기를 인물별로 파악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향성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왕실 구성원들의 나이와 생몰연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봉작 계기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봉작제의 성립 및 변화 시점 자체를 잘못 추론하기도 하였다. 기실 왕실 봉작은 포상이라는 非定例的 요소를 배제하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차등적 친속관계를 왕실의 계서에 반영하는 것이 봉작의 기본 원칙이므로 왕실 봉작제의 미시적 운용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왕과 왕실 구성원들이 각 시점별로 어떠한 친속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친속관계를 뒤틀어버렸던 고려 왕실의 '근친혼'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왕실 구성원이 국왕의 사위 혹은 妃父가 되어 近屬으로 재편입된 배경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던 태도를 지양하고 왕실의 생애주기 및 인물별 나이와 연관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정략혼이라 할지라도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에서 기대하는 바는 전략적 연합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인류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고려 왕실의 친족구조(structure of kinship and marriage)를 분석하였다. 족내혼·부계·모계와 같은 인류학 개념을 잘못 이해한 채 연구에 도입할 경우 왕실의 실체에 접근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族'을 계급(카스트)이나 정치단위로서의 部族이 아닌 同姓 단계혈통집단으로 이해하였음에도 '족내혼' 개념을 도입한 것, 출계이론(descent theory)에서 최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부계·모계혈통 개념만을 도입하여 제한적으로 친족구조를 분석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고려에서도 공식적으로 계보를 언급할 때에는 단계혈통규정을 좇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姓이 곧 직역 계승과

관련 있고 전근대 사회에서 직역의 담당자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부계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기인한다.[30] 그러나 고려시대에 권리와 의무의 계승이 수반되는 실질 가족관계는 姓의 계승관계와 무관하였으며, 양자의 무관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지 않았다.[31]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가족문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족내혼' 또는 '근친혼'으로 명명해왔던 특징적 婚俗으로 인하여, 고려 왕실의 조직 체계 및 존재양태는 단계혈통규정과 整合할 수 없기 때문에[32] 본고에서는 부계·모계로 편향된 연구시각을 탈피하고 인류학 개념을 다채롭게 도입하여 왕실의 친족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려시대 왕실 연구에서 핵심 사료가 되는 것은 단연코 ≪高麗史≫ 后妃傳·宗室傳·公主傳이다. 이 외에 世家, 百官志, 食貨志, 그리고 ≪高麗史節要≫의 편년기사들을 통하여 산재된 왕실 관련 규정과 왕실 인물들의 행적을 모아볼 수 있다. 墓誌銘·碑文 등 금석문 자료, ≪東國李相國集≫·≪益齋亂藁≫ 등의 고려시대 문집을 통하여 왕실을 둘러싼 고려 當代人들의 심성(mentalités)을 엿볼 수 있으며, ≪東人之文四六≫이나 ≪東文選≫ 같은 文選에서는 국왕과 왕실 구성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식문서(表文·敎書)를 매개로 왕실에 대한 공적 대우를 구명할 수도 있다.

---

30) 노명호, 1989 <고려시대의 토지상속> ≪중앙사론≫ 6; 채웅석, 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125~144쪽.

31) 노명호, 1988 <高麗時代 鄕村社會의 親族關係網과 家族> ≪韓國史論≫ 19; 채웅석, 위의 책, 125~144쪽.

32) 죠지 피터 머독 지음, 조승연 옮김, 2004 앞의 책, 75~79쪽에 따르면, 內婚的 결합이 "기대되는 친족원의 공간적·사회적 배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친족집단이 완전하게 非外婚的인 단계사회는 일반적으로 양계혈통(bilateral descent)으로 이해된다. 같은 책에서 조사한 178개의 표본 가운데 완전한 내혼제가 이루어진 단계혈통 사회는 10개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사회 대다수에서 친족집단은 불완전한 조직 체계를 보이거나 쇠퇴하고 있었다. 양계혈통은 부계혈통과 모계혈통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혈통(double descent)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부계·모계·이중혈통은 분화출계의 하위범주이며, 양계혈통은 분화출계와 대비되는 미분화출계(총계)를 의미한다(신인철, 1995 앞의 책, 46쪽).

고려가 중국 제도를 援用하여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왕실과 관료 대상으로 唐宋 봉작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본고는 중국측 典章書와 正史를 참고하여 고려 왕실과 중국 황실에 대한 정치제도사적 비교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먼저 ≪唐六典≫·≪通典≫에 수록된 唐制의 原形을 추적하여 고려에서 어느 수준까지 唐宋 봉작제를 典範으로 삼았으며 중국의 제도에 토풍적 요소를 가미하여 어떠한 변형을 가하였는지 해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봉작자의 형법상 특권이 명시된 ≪唐律疏議≫, 황실 구성원의 생애가 담긴 ≪舊唐書≫·≪宋史≫ 列傳 등을 토대로 唐宋 봉작제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동양사학계에서는 일본 학자들의 활발한 律令 연구에 힘입어 唐代 봉작제의 전모가 비교적 일찌감치 밝혀졌으나,[33] 제도의 실질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화상은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특히 唐末宋初를 거치며 唐制의 세부적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선행 정치제도사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唐制는 대개 盛唐의 제도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고는 唐宋 황실 구성원들의 개별 봉작 사례를 다룬 사료 및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唐制를 動態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사료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것은 ≪고려사≫ 宗室傳과 百官志 爵條다. 宗室傳을 통하여 고려 왕실 남성들의 계보와 행적을 총람할 수 있고 百官志 爵條에서는 봉작제의 기본적인 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 역시 연구 과정에서 두 사료를 가장 많이 분석하고 인용하였다. 그런데 ≪고려사≫는 고려 멸망 이후 조선시대 史家들에 의하여 편찬된 사료이기 때문에 금석문·문집과 같은 當代 사료에 비하여 보다 면밀한 사료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고는 ≪고려사≫ 宗室傳과 百官志 爵條를 적극 활용하되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에 유념하며 사료 간 교차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종실전의 底本이 되었던 왕실계보도는 원간섭기 李齊賢 단계

33)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唐代의 封爵과 食封制> ≪역사와 교육≫ 10, 306~314쪽.

에서 크게 변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사≫ 종실전은 이제현이 작성한 종실전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제현에 따르면, 원간섭기까지 金寬毅의 ≪王代宗錄≫과 任景肅의 ≪瓊源錄≫이 전해지고 있었으며 두 책의 왕실계보도는 ≪고려사≫ 종실전을 통하여 복원할 수 있는 계보도와 현저하게 달랐다.[34] ≪고려사≫ 종실전의 구성과 인물 배치 순서를 따라 복원한 왕실계보도가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에 수록된 <高麗王室의 構成員 世系表>다.[35] 김기덕은 종실전의 구성을 준수하되 후비전·공주전에서 선별한 정보를 추가 반영하여 <高麗王室의 構成員 世系表>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완성된 왕실계보도에서는 부계 단계혈통 원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주와 왕실 출신 后妃를 제외한 왕실 여성의 정보가 모두 누락되어, 계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고려 왕실의 친족구조는 조선후기 족보에서 나타나는 부계 문중의 친족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제현의 증언에 의거하면, 김관의와 임경숙이 활동하던 고려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왕실계보도에서는 宗女와 宗子를 병렬한 뒤 이들의 통혼망과 그로부터 파생된 친속관계망을 충실히 기록하였다. 현재로서는 이제현이 직접 보았던 김관의·임경숙의 왕실계보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으나, 원간섭기 이전 고려인들은 나름의 원칙하에 總系的인 왕실계보도를 작성하여 후대로 전수하였다. ≪고려사≫ 종실전을 토대로 복원한 왕실계보도는 고려 當代의 실질 가족관계와 무관한, 관념화 된 계보도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모두 조선전기의 치열한 直書·改書 논쟁을 거쳐 탄생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토풍이나 다원적 천하관

34) ≪益齋亂稿≫ 권9下, 史傳序「宗室傳序」.

35) 김기덕, 1998 앞의 책, 부록 참조. 최초로 ≪고려사≫ 종실전의 구성과 인물 배치 순서를 따라 왕실계보도를 그린 연구자는 이광규다. 이광규는 종실전을 토대로 복원한 왕실계보도가 조선후기 족보와 유사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려 왕실을 부계친족집단으로 이해하고 왕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근친혼을 '족내혼'으로 명명하였다(이광규, 1990 앞의 책, 52~61쪽 및 別表 참조).

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다.[36] 대표적인 예로 백관지 爵條의 피상적 서술을 들 수 있다. 현전하는 ≪고려사≫ 백관지에 爵條가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爵條에 수록된 규정만으로 고려 봉작제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원간섭기 이후 '봉작제 = 황제국 제도'라는 확고한 전제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 史家들이 고려 봉작제의 구체적 실상을 전면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爵條의 서술에만 의존하여 고려시대의 봉작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실 편제라는 주제를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 시기별 봉작 實例, 典範이 되는 중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도 도입 직후의 원형을 복원한 뒤 중국에서 유래한 봉작제가 고려의 필요에 의하여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고려 사회의 역사성을 드러내야 한다.

3. 논문의 구성

一장에서는 고려 왕실의 성립 과정과 초기 편제를 검토할 것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는 고려 건국 직후부터 왕실 봉작제가 성립하기 이전까지다. 중국에서 유래한 봉작제는 왕실을 정의하는 제도적 형식과 사회적 관념의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봉작제 도입을 전후로 왕실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건국초는 중국의 화풍이 전래되기 이전 신라로부터 이어진 토풍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고대의 폐쇄적 질서가 단절된 반면 문화는 상당히 연속되어 고려 특유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

36) 노명호,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해석 방향의 정립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사.

고려 왕실은 太祖 王建의 혼인과 자녀생산을 통하여 성립되었다. 따라서 一장에서 첫 번째로 관심을 둔 주제는 고려초 왕실 혼인이다. 초기 정치사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태조 后妃 가문에 주목하며 중앙과 지방의 전체적인 역학구도를 밝히는 데 천착하였으나, 본고는 왕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어 태조보다는 태조 자녀와 손자녀세대의 혼인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복남매간 극단적 근친혼까지 가능하였던 초기의 왕실 婚俗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그 遺産을 검토함으로써, 骨品制를 극복한 고려 왕실이 신라의 문화를 참조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와 조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보였는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관심을 기울인 주제는 초기의 왕실 편제다. 현전하는 ≪고려사≫ 종실전에 초기 왕실 구성원들은 太子와 君, 또는 大王 등으로 그 칭호가 무분별하게 뒤섞인 채 입전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종실전 입전항목명에 근거하여 '太子'와 '大王'을 태조 왕자·왕손들의 생전 공식 칭호로 이해하고 고려 왕실이 이원적으로 편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본고는 입전항목명의 造名法 차이, 當代 기록에서 왕실 구성원을 지칭하던 방식 등을 폭넓게 참작하여 선행연구의 立論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고려초 단수의 '왕위계승권자'와 복수의 '왕위계승후보자'들이[37] 실제 어떻게 지칭되었는지 분석하여 왕실 편제의 시원적 형태를 복원하고, 중앙정치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왕실 관련 제도 또한 어떠한 추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밝히는 데 一장의 목적을 둔다.

二장에서는 전·중기 왕실의 외연과 법제적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던 왕실 봉작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의 정치질서 및 친족구조를 토대로 성립된 봉작제가 고려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문제의식 하에, 고려가 다원적 천하관에

37) 본고에서는 왕위계승권이 미칠 수 있는 최대 범주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왕위계승후보자'로, 법제적으로 태자(정윤)에 책봉되어 嗣位가 예정된 사람을 '왕위계승권자'로 구분하였다.

기반한 국가체제, 토속의 친족문화, 태조 이래의 왕실 婚俗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왕실 봉작제를 창출해나갔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명해보고자 한다. 종래에는 왕실 편제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도 고려 정치제도사 연구의 일반적 경향을 따라 文宗代 관제개편에만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는 원간섭기 이제현의 기록을 소급하여 爵條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현종대의 開城國公 책봉을 '이상한' 사례로 치부하며 도출한 결론이다. 본고는 唐宋 봉작제뿐 아니라 唐宋 봉작제로 귀결되기까지 중국 역대 왕조들이 고안한 다양한 왕실 편제를 검토함으로써, 고려가 唐宋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典故들을 참조하며 독자의 제도를 운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봉작제 성립 이후의 왕실 외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봉작 대상이 되는 국왕의 친속 범위를 도식화해볼 것이며, 인류학 이론을 활용하여 고려 왕실의 친족구조를 분석할 계획이다.

三장에서는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완성된 이후 왕실이 재생산되는 매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1절에서는 고려 왕실의 근친혼이 단순 취향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왕실의 구조를 좌우하는 '체계'였음을 증명하면서 체계화된 근친혼속을 개념화하기 위한 역사용어를 고민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족내혼'과 '근친혼'이라는 개념은 왕실 봉작제가 성립한 이후부터 원간섭기 이전까지 고려 왕실에서 행해진 특징적 혼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종실내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종실내혼'과 왕실 운영체제의 상관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고려전기 성립된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종실내혼' 체계와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단절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몽골이라는 이질적 세계가 고려에 충격을 가하기 이전, 무신정권이 왕실과 공존하며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종래의 왕실 체제가 변형되고 왕실의 외연 또한 침식되어갔음을 드러내는 데 2절의 목적을 둔다.

一. 고려 왕실의 성립과 초기 편제

1. 太祖~穆宗代 왕실의 구조

1) 太祖 왕실의 인적 구성과 '宗親不仕' 현상

고려 왕실은 太祖 王建의 혼인과 자녀 생산을 통하여 성립되었다. 고려에서는 태조의 3대 조상을 추숭하고 그 世系를 신화적으로 각색하여 국왕의 神聖性을 提高하였으나,[38] 태조의 先代에서 파생된 친속들에게 왕위계승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의 친속을 우대하는 것과 그들에게 왕실이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태조는 구체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으로 새로운 권위를 창출한 존재였다. 그 권위에 기반한 王統을 단순히 부모·조부모를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태조의 친속이 상속할 수 있는가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태조의 친속관계망에만 의거하여 건국 직후의 고려 왕실을 복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기 왕실의 인적 구성을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목해 온 지표는 仕宦 여부다. 고려는 '宗親不仕' 원칙이 성립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江原正昭는 태조 재위기 甄萱에게 인질로 파견된 태조 從弟 王信이 타 문무관과 동일하게 元尹이었던 사실과 또 다른 종제 王式廉이 平壤大都護府使였던 사실 등을 들어 이들을 '왕족'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태조 왕건의 先代에서 파생된 개성왕씨 계보와 태조 이후의 왕실 계보를 호족 왕씨와 왕족 왕씨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3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2년 3월 신사, "追謚三代, 以曾祖考爲始祖元德大王, 妃爲貞和王后, 祖考爲懿祖景康大王, 妃爲元昌王后, 考爲世祖威武大王, 妃爲威肅王后"; ≪고려사≫ 고려세계.

견해를 제시하였다.[39] 이는 '종친불사' 원칙이 고려의 건국과 동시에 확립되어 예외 없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도출된 견해다.

현재로서는 '종친불사' 원칙이 고려 건국 직후부터 확립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왕조의 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 後百濟와의 전쟁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태조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친속을 近臣으로 삼아 정치와 군사를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다만 아래의 사료를 검토해본다면, 통일 전쟁이 종료된 이후 태조의 친속은 사환된 존재와 사환되지 않은 존재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후자가 왕위계승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A-1] 王式廉은 三重大匡 平達의 아들로 太祖의 從弟다. 사람됨이 충직하면서 용맹하고, 근실하면서 신중하였다. 처음에 軍部書史가 되었다가 여러 번 관직을 옮겼다. 태조가 平壤이 황폐하다고 여겨 民을 옮겨 이곳을 채우고 왕식렴에게 명하여 가서 진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安水·興德 등의 鎭에 성을 쌓도록 하니, 공을 세워 누차 승진하여 佐丞이 되었다. (중략) 惠宗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王規가 다른 뜻을 품었다. 定宗은 비밀리에 왕식렴과 모의하여 변란에 응하였다. (중략) 왕이 그에게 의지하고 더욱 중하게 여겨 조서를 내려 褒奬하기를, "왕식렴은 三代의 元勳이며 一邦의 柱石이다 (중략) 이제 匡國翊贊功臣의 號를 내리고 大丞을 더해 資級을 높여 나의 마음을 표시함으로써 不朽의 공로를 표창한다. 단지 君臣의 義分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고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길 바란다 (중략)."라고 하였다. (정종) 4년에 사망하자 시호를 威靜으로 하고 虎騎尉 太師 三重大匡 開國公에 추증하였으며 정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40]

---

39) 江原正昭, 1966 <高麗王族の成立-特に太祖の婚姻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 朝鮮史研究會, 61쪽. 江原正昭의 논문은 고대의 族團과 羅末麗初의 族을 동일시한 점에서 1980년대 이래 축적된 고려시대 사회사 연구와 동떨어진 면이 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의 先代에서 파생된 개성왕씨 계보와 태조 이후의 왕실 계보를 호족 왕씨와 왕족 왕씨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고려 왕실의 始原과 초기 범위 등을 연구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다.

40) ≪고려사≫ 권92, 열전5 諸臣 王式廉.

[A-2] 광종 12년 궁궐을 수리하자 正匡 王育의 집으로 移御하였다.[41]

上記 사료에 등장하는 왕식렴과 王育은 태조의 종제들이다. 왕육은 927년(태조 10) 후백제와의 質子外交에 동원되었다가 견훤에게 살해당한 원윤 왕신의 아우다.[42] 사료에 기록되었듯 이들은 태조의 친속이었으나 고려 건국 직후 문무관과 같은 官階를 띠고 국왕의 근신으로 활약하였다.

[A-1]과 [A-2]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 것은 왕조의 기반이 공고해지고 한반도 내 경쟁할 만한 정치체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태조의 두 종제가 여전히 官階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태조 말년 상당수의 태조 왕자·왕녀들이 20대를 전후한 성년이 되었으나 이들 가운데 官階를 받아 태조의 정치에 참여한 인물은 없다. 태조의 왕자 가운데 父王의 명으로 관료와 군사를 통솔한 사람은 惠宗이 유일한데, 그의 정치 참여는 왕위계승권자라는 자격 덕분에 가능하였다. 944년(天福9, 甲辰; 혜종 1) 건립된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陰記에 따르면,[43] '官階+(姓)名' 형식으로 기록된 조정 관료나 태조 妃父들과 달리 태조 왕자들은 '성명+君'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대두법의 적용을 받았다.[44] 이러한 형식은 태조 왕자들에 대한 當代人의 인식을 담고 있다. 태조 왕자들은 王統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上位의 존재로서

41)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2년, "修宮闕, 移御正匡王育第."
4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1월 乙丑, "甄萱送王信之喪, <u>遣信弟育</u>, 迎之."
43) 「興寧寺 澄曉大師塔碑」에는 "天福七年歲在甲辰"으로 건립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복7년은 942년, 갑진년은 944년에 해당하여 시기가 들어맞지 않는다.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干支에 주목하여 건립연대를 944년으로 본다. 고려초 금석문에 중국 연호를 잘못 算定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 또한 선행연구의 견해를 따른다. 아울러 본고에서 元年을 起算할 시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의 踰年稱元法에 의거하였음을 추가적으로 밝힌다. ≪고려사≫·≪고려사절요≫를 핵심 사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금석문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原文을 존중하여 실제 금석문에 기록된 연호·간지 정보를 모두 제시하겠다.
4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https://portal.nrich.go.kr/)의 허흥식 판독문 및 이인재, 2008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 고려 혜종대 정변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9 참조.

관료집단과 구분되었다. 실제 해당 陰記에 등장하는 두 왕자 王堯君과 王照(昭)君은 고려초 왕위계승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왕식렴은 王堯君, 즉 定宗을 옹립한 인물이다. 평양을 鎭守하던 그는 廣州院君을 옹립하려던 王規의 계획을 무력으로써 저지하고,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혜종의 뒤를 이어 정종을 추대하였다. 당시 왕식렴은 정종의 5촌 堂叔에 해당하였으나 결코 왕실의 웃어른 자격으로 왕위계승 분쟁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다. [A-1]의 詔書에서 왕식렴은 왕실을 보필한 累代의 공신으로 표현되었으며, 정종과 그의 관계 역시 '군신관계'로만 정의되었다. 조서 어디에서도 태조 혹은 정종과 왕식렴의 혈연관계, 一家로서의 동질감을 드러내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왕식렴 사후 추증된 太師·三重大匡은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태조의 공신과 妃父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위다.

왕식렴·왕신·왕육은 태조의 친속이면서 태조의 先代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은 유력 호족이었다. 따라서 태조와 이들 사이에는 가족관계와 군신관계가 착종되었다. 견훤이 外甥 眞虎를 인질로 보내자 그에 답하여 태조가 종제 왕신을 후백제에 보냈던 사례에서 확인되듯 當代人들의 관념에서 종제는 혈연을 바탕으로 태조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가진 존재였다.[45] 한편 또 다른 종제 왕식렴이 태조의 명령을 받아 평양을 개척하고 土豪化한 과정을 볼 때, 종제는 태조에게 귀부한 여느 호족들과 같이 자신의 능력과 기반을 활용하여 국가에 기여하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아 정치적 입지를 다녀야 하는 신하이기도 하였다. 즉위 직후 미성년의 왕자 한 명 밖에 두지 못하였던 태조의 입장에서 종제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속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은 태조에게 연합한 각지 유력 호족들과 상대화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태조가 고려 건국 또는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유력 정치인들과 통

45) 견훤의 外甥과 태조의 종제를 인질로 교환하는 거래가 성립한 것을 볼 때 후백제와 고려의 질자외교는 '왕실'이라는 공적 집단보다는 국왕의 사적 가족관계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혼하고 다수의 자녀를 얻게 되면서 가족관계의 중심은 后妃와 그 소생들에게 옮겨졌다. 특히 후삼국 통일이 완료된 시점에는 건국 직후 출생한 왕자·왕녀들이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방계의 형제들이 태조의 상속자로 대두할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가족에 관한 사회적 통념상 태조 왕자·왕녀들의 권리는 종제들보다 우선하였다. 방계의 형제들은 先代의 유산에 불과하였던 반면 后妃와 자녀들은 태조의 의지에서 창출된 진정한 가족이었다. 태조에게 협력한 유력 정치인들 역시 태조와 그들의 결연 관계에서 출생한 왕자·왕녀에게 태조의 권리가 상속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태조의 협력자들은 태조를 국왕으로 선택한 것이지 기존에 존재하던 태조의 가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태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파생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고려의 王統이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태조의 종제들에게 기존 官階를 유지시켰던 반면 왕자·왕녀들에게 어떠한 관직이나 官階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양자에 대한 공적 대우를 확연히 구별하였다.

최초의 '종친불사'는 왕위계승권에 관여할 수 있는 태조의 자녀들을 관료집단과 분리시키는 현상이었다. 태조대의 현상이 이후 국왕들에게 典故 혹은 成憲으로 인식되며 왕실과 관료는 다른 방식으로 공적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중기 毅宗이 "侯王의 아들로서 貢士가 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는 논리로 江陵侯 溫의 아들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았던 일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고려에서 왕실과 관료의 길은 엄격히 분리되었다.[46]

---

46)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문종 朝鮮公燾 附 恭化侯瑛, "(전략) 毅宗初, 爲殿中內給事, 請赴試, 王嘉其志, 然以侯王之子, 下從貢士, 非例不允". 본래 王瑛은 司徒 溫의 아들로서 왕실 봉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왕실 봉작제가 성립한 이래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사환권을 회복하며 왕실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왕영은 前例에 따라 전중내급사가 되어 관료로서의 삶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왕영은 그 누이가 인종의 태자비(莊敬王后 金氏)로 간택되자 갑자기 侯王의 아들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사도·사공의 자

‘종친불사’는 신라 下代의 모순을 목도한 羅末麗初 지식인들이 골품제가 사라진 사회에서 왕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권위를 확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도출한 결론이었다. 眞骨만이 최고위 관등에 올라 중요 관직을 독점할 수 있었던 골품제 하에서 국왕은 믿을 만한 친속을 고위직에 두어야 국정장악력을 증대하고 다른 진골 가문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47] 下代 국왕의 동생이나 조카들이 20~30대의 젊은 나이에 上大等·侍中에 임명되었다가 국왕의 후사가 불분명할 시 유력한 왕위계승후보자로 대두하였던[48] 연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혈통이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는 폐쇄적 사회였기에 이와 같은 국정운영에 일면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결국 신라는 심각한 모순을 경험하였다. 국왕의 친속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 현안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들 스스로 져야 했음을 의미하였다. 왕위계승후보자들이 국정을 빌미로 서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치 전반이 왕위계승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후자는 신라 下代의 모순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종친불사’가 “국왕의 친척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李齊賢의 해석은[49]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듯하다.

‘종친불사’의 긍정적 효과는 왕실의 정치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정

녀세대였던 왕영 자신이 사도·사공세대로 격상되어 諸王 범주에 들게 된 것이다. 관련한 상세 설명은 二장 2절 참조.

47) 中代 이후 신라 왕실은 진골귀족 가문 가운데 하나였다. 元聖王의 즉위 과정에서 나타나듯 국왕의 후사가 불분명할 시 진골귀족은 왕위계승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재환은 근친혼, 사위의 왕위계승권 인정, 국왕 至親의 仕宦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신라 왕실과 진골귀족의 경계가 모호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재환, 2015 ≪新羅 眞骨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3~99쪽).

48) 신라 제42대 興德王 재위 시 從弟 金均貞은 상대등을, 처남 金明과 김균정의 아들 金祐徵은 시중을 역임하였다. 김명·김균정·김우징 모두 흥덕왕 사후 치열한 왕위계승 분쟁을 주도하였다. 김명은 신라 제44대 閔哀王, 김우징은 제45대 神武王으로 즉위하였다. 이들은 원성왕의 손자 혹은 증손자로서 흥덕왕의 至親이면서 동시에 흥덕왕의 인척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49) ≪益齋亂稿≫ 권9下, 史傳序「宗室傳序」, “國家之制, 宗室稱諸王 (중략) 不使之莅官臨民, 祖宗所以保親戚也.”

을 안정시키는 데 국한되지 않았다. 사환되지 않았던 왕실은 관료제라는 틀 속에서 관료집단과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고려는 혈통에 따라 정치적 지위를 제약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限品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으나, 신라와 비교하여 고려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웠고 최상층 관료집단인 문벌의 특권·영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50] 골품제 하에서 능력만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었던 6두품 이하 지식인들은 고려가 건국된 이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국왕은 혈통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측근을 선택하였다. 국왕으로서는 관료집단의 신망을 얻은 인물을 중용하는 것이 국정을 장악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었다. 더 이상 관료제의 틀 안에서 왕실의 위상을 확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고려의 '종친불사' 현상은 고대 질서의 붕괴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건국 직후에는 태조의 王統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집단에게 독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왕실의 실체가 불분명하였다. 時宜에 맞추어 태조는 先代에서 파생된 방계의 친속들을 근신으로 삼아 국정 운영이나 후백제와의 경쟁에 활용하였다.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 왕자·왕녀들이 성년에 이르고 가족관계의 중심이 이들에게 맞춰지자 비로소 사환되었던 기존 친속들은 태조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을 잃었다. 고려에서는 태조의 王統을 계승할 왕자·왕녀들을 대우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민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왕위계승후보자들과 관료집단을 분리시키는 길을 택하였다. 태조 말년에 이르러 사환 여부는 왕실과 非왕실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왕실이 왕조 사회의 최고권을 독점하되 사환되지 않는 체제는 골품제 붕괴 이후 성립된 사회구조와 整合하였다.

---

50) 채웅석, 2021 앞의 책, 51쪽.

2) 인척관계망 계승에 따른 왕실 구심력 강화

고려 최초의 왕실은 태조와 后妃들, 그의 직계자녀만으로 구성되었다. 태조가 생산한 '기본가족'이 곧 왕실이었기에, 최초의 왕실에서는 구성원들의 친속지위와 관계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문제는 태조 자녀들의 혼인 결과 복수의 기본가족이 결합된 형태로 왕실이 확대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확대된 친속관계망 내에서 어느 범위까지만 왕실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고려 왕실의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태조의 后妃들이 남긴 수많은 왕자와 왕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태조 死後 왕실의 재편 양상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였다.

초기 왕실 연구에서 가장 이목을 끈 주제는 태조 자녀세대의 이복남매혼 현상이었다. 호족연합정권설이 고려초 권력구조와 국정운영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유효하던 시기,[51] 태조 자녀세대의 이복남매혼은 유력 豪族 가문의 정치적 결연 혹은 미약한 왕실의 생존전략으로 이해되었다. 호족의 정치적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연구자는 江原正昭다. 그는 이복남매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내재적 요인을 고려의 妻訪婚 풍습에서, 외재적 요인을 王規의 亂이라는 정치적 변란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친정에 거주하던 태조의 后妃와 그 소생은 왕실보다는 호족 가문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지녀 이복남매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왕규의 난으로 위협을 느낀 호족들은 "왕족인 외손의 혼인을 매개로" 상호 연합을 추진하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였다.[52]

---

51) 하현강, 1968 <高麗 惠宗代의 政變> ≪史學硏究≫ 20; 하현강, 1974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高麗貴族社會의 成立≫, 국사편찬위원회; 하현강, 1970 <高麗國初 權力構造의 性格> ≪史學會誌≫ 16.

52) 江原正昭, 1966 앞의 논문, 69~74쪽. 江原正昭의 관점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이수건은 태조의 妃父들이 외손인 왕자와 결합하여 권세를 부렸고, 왕실이 강성해지는 것을 저해하며 擅權을 유지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각 妃父들이 분열되어 혜종에서 현종에 이르

하현강은 호족의 力關係보다 왕실의 정치적 利害를 부각시켜 이복남매혼의 動因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태조의 后妃들이 각지 유력 호족의 딸이라는 전제 위에 하현강은 태조의 정략혼이 자녀세대에 남긴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조 자녀세대의 이복남매혼은 첫째 "견고한 세력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던" 태조가 유력 호족을 왕실 세력으로 재결속하고자 추진한 것이었고, 둘째 后妃 및 그와 연계된 호족들을 이중의 가족관계로 묶어 왕을 정점으로 왕실 세력을 공고화하려는 목적 하에 기획한 것이었으며, 셋째 왕실과 동일한 家格의 他姓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현강은 특히 이복남매의 극단적 근친혼이 이루어진 주원인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주목하며 혼인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53]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밀접히 연관된 세 번째 또한 향후 고려초 왕실을 살펴보며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1980년대 이후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고려초 后妃 가문의 성격, 왕실혼의 動因과 결과 등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달라졌다. 태조의 后妃 가문을 유력 호족으로만 볼 수 없으며 고려초 왕실의 권위가 시종일관 호족과 동등하거나 낮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54] 그러나 反호족연합정권설의 입장에서 고려초를 조명한 선행연구 또한 왕실의 본질적 속성보다는 왕실 내부와 외부의 역관계에 집중하여 이 시기를 설명해왔기 때문에 초기 왕실의 위상, 재생산 방식, 역할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고려초 정치·사회 변동의 중심에 왕실이 있었음에도 정작 왕실 자체에 대한 고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기까지 치열한 정쟁을 지속하였다고 보았다(이수건,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 일조각, 142쪽). 이 지점에서는 외척들의 정치적 연합을 강조한 江原正昭와 의견차가 보인다.

53) 하현강, 1968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이대사원≫ 7, 2~8쪽.

54) 김갑동, 1990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엄성용, 1986 <高麗初期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왕실은 왕위계승권을 상속할 수 있는 인물들의 집합이다. 왕조국가는 '일정한 규모'의 왕실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왕위를 승계할 수 있어야 지속성과 생명력을 갖는다. 따라서 신생국가 고려는 일차적으로 적정 수준의 후손을 생산하는 데 신경을 쏟아야만 하였다. 40세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왕자밖에 두지 못한 태조가 건국 직후 적극적으로 重婚에 나섰던 데에는 빈약한 왕실 규모에 대한 염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려는 왕위계승권의 지나친 확대와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실 규모의 통제에 신경을 쏟아야 하였으며, 왕위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계승권을 갖고 있는 인물들에게 강고한 유대감과 소속감, 책임감을 부여해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왕실 구성원들이 母后 가문보다 태조의 혈통임을 자각하도록 만들고, 공동의 이해관계로 그들을 緊束시켜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 고려초 왕실의 급선무였던 것이다. 태조 이후 고려 왕실이 재생산되는 과정은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려초 왕실과 외척, 외척들 상호간의 관계 또한 그들이 최상층 지배층으로서 공생 관계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의 유력자 혹은 중앙 관료 출신의 妃父들이 태조 사후 남겨진 자신의 딸과 외손들을 중심으로 별도 세력화할 경우, 중앙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왕조 체제의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태조의 혼인으로 외척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국왕을 매개로 왕조사회 최상층을 점유한 외척 가문들은 기본적으로 왕조의 보존을 우선하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왕실 역시 여타 세력에 비하여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점해야 하였으나, 왕실의 보호막이 되는 외척을 무조건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왕실 규모의 조절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왕실 내부의 과제, 왕실과 외척의 공동 이해 추구라는 왕실 외부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태조 자녀세대의 혼인을 검토하고 그

것이 왕실에 미친 영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태조는 재위기부터 자녀 세대의 혼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Ⅰ-1>에 정리한 태조 자녀들의 출생연도 및 혼인(추정)시기를 살펴보면, 태조 재위기 추진된 것이 거의 확실한 혼인은 惠宗, 太子 泰(王泰), 定宗, 安貞淑儀公主(樂浪公主)의 혼인이다. 태조 자녀세대의 혼인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때 이들의 혼인이 제1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왕실 내에서의 근친혼이 光宗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태조 재위기 광종과 大穆王后의 혼인이 먼저 이루어졌고 혜종의 왕녀였던 慶和宮夫人이 후처로 들어왔을 것이라 추정한다.[55] 그러나 태조 왕자들 가운데 국왕이었던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한 명의 처만 두고 있었고 이후 세대에서도 왕과 태자를 제외한 왕실 남성들 모두 重婚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혜종이 광종에게 자신의 딸을 후처로 보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56]

따라서 <표 Ⅰ-1>에서는 광종의 초혼 상대를 경화궁부인으로 확정하고 왕태와 興福院夫人 소생 공주의 혼인을 태조가 주도한 최초의

---

55) 김갑동, 2001 <고려왕실에는 왜 근친혼이 있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5, 5쪽; 정용숙, 1988 앞의 책, 81쪽; 1997 앞의 논문, 19쪽. 정용숙은 광종과 대목왕후의 혼인이 '족내혼'의 시작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왕태가 광종보다 연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려사≫ 후비전에 신명순성왕태후의 소생으로 제일 처음 기재된 왕태가 광종보다 어렸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현전하는 왕실 인물들의 묘지명을 보면 ≪고려사≫ 후비전이나 종실전에 기재된 순서가 나이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王源墓誌銘에서는 왕원을 朝鮮公 燾의 제2자로 기록하고 있는데(김용선, 2021 앞의 책, 333~334쪽 참조), ≪고려사≫의 조선공도 열전에서도 "爵其子滋檢校太保上柱國, 源檢校司空柱國, 溫檢校工部尙書柱國"이라고 하여 王滋, 王源, 王溫 순으로 기재하였다(≪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조선공도). 이 외에도 묘지명과 ≪고려사≫ 열전의 동모형제자매 기재 순서가 일치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6) 광종의 장남 景宗의 출생연도를 보아도 대목왕후와의 혼인이 초혼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종은 955년(광종 6) 출생하였는데, 광종 왕녀 千秋殿夫人과 寶華宮夫人이 경종의 손위라고 가정하더라도 940년 초반에 혼인한 광종과 대목왕후가 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장녀를 낳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화궁부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얻지 못한 광종이 후계자 생산을 위하여 즉위 후 대목왕후를 추가 납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표 Ⅰ-1> 태조 자녀들의 출생연도 및 혼인(추정)시기

입전 항목명	모후	동모 형제 次序	출생 연도	태조 사망시(943) 나이	혼인(추정) 시기	배우자
혜종	장화왕후 오씨	-	912년	32세	921년(추정) (10세)	의화왕후 임씨 (林曦女)
					940년대 (추정)	후광주원부인 왕씨 (王規女)
태자 泰	신명순성 왕태후 유씨	1	918 ~922년	22~26세	930년대 후반 ~940년대 초반	공주 (흥복원부인 소생, 태조女)
정종		2	923년	21세	940년대 초반	문공왕후 박씨 (朴英規女)
광종		3	925년	19세	945년 (21세)	경화궁부인 임씨 (혜종女)
문원대왕 貞		4	926년 이후	18세 이하	945년 이후	문혜왕후 유씨 (정덕왕후1녀, 태조女)
안정숙의공주 (낙랑공주)		장녀	918 ~922년	22~26세	935년	경순왕 김부
대종 旭	신정 왕태후 황보씨	-	926년 이후	18세 이하	945년 이후	선의왕후 유씨 (정덕왕후2녀, 태조女)
안종 郁	신성 왕태후 김씨	-	936 ~944년	8세 이하	991~992년 (私通)	헌애왕후 황보씨 (대종 2녀, 경종后妃)

※ 나이 추정이 가능한 자녀들만 기재함.

※※ 대종은 "王弟旭卒."(≪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20년 11월)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광종의 동생임이 확인되므로 926년 이후 출생으로 기재함.

이복남매혼으로 간주하였다.[57] 나아가 945년(혜종 2) 태조와 혜종의 妃父였던 王規가 王堯(정종)·王昭(광종) 형제를 참소하자 혜종이 두 왕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으로 왕녀의 혼인을 결정하였는데[58] 이때 형인 정종이 아니라 광종이 선택되었던 사실을 통하여 당시 정종이 이미 혼인한 상태였으리란 추정을 하였다. 文恭王后의 가계를 본다면 後百濟 핵심 세력의 흡수라는 정치적 고려 하에 태조가 정종의 혼인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에 정종은 늦어도 태조 말년에 혼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1기의 혼인에서는 자녀의 배우자를 왕실 외부와 내부에서 찾는

57) 본고와 같이 광종과 慶和宮夫人의 혼인을 초혼으로 본 선행연구도 있다. 江原正昭는 왕규의 난 이후 태조의 后妃 가문들이 "왕족인 외손을 매개로" 적극적인 상호 결연을 도모하였다고 주장하였고(江原正昭, 1966 앞의 논문, 74쪽), 이태진은 혜종이 왕규를 견제하려는 목적 하에 장녀 경화궁부인을 광종의 처로 삼아 王子·王女 간 혼인의 첫 번째 사례를 남겼다고 주장하였다. 경화궁부인이 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음에도 후비전에 '왕후'가 아닌 '부인'으로 입전되고 대목왕후보다 후순위로 밀린 연유에 대하여 이태진은 定宗 즉위 이후 惠宗系가 몰락하고 서경세력 黃州皇甫氏系의 영향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하였다(이태진, 1977 <金致陽亂의 性格: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7, 84쪽). 이에 정용숙은 광종과 경화궁부인의 혼인을 초혼으로 볼 경우 광종이 21세에 혼인하는 셈이 되어 혜종의 초혼 연령인 10세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정용숙, 1988 앞의 책, 81쪽 주81) 참조). 그러나 태조의 여타 왕자·왕녀들이 혜종과 비슷한 연령대에 혼인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고려에서는 10세의 나이로 혼인하는 것이 이례적이었다. 혜종의 혼인은 正胤 책봉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정치적 이벤트였을 뿐이다. 고려 전·중기에도 태자와 일반 왕자의 혼인 연령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문종의 태자였던 順宗이 1064년(문종 18) 18세의 나이로 태자비를 맞았던 반면(≪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8년 11월 己卯, "以太子納妃, 告景靈殿"), 그의 同母弟인 宣宗은 1077년(문종 31) 29세의 늦은 나이에 초혼을 하였다(≪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1년 2월 壬寅, "王子國原公祁納妃"). 또 다른 동모제 肅宗은 장남 睿宗의 출생 연도가 1079년(문종 33)인 것을 참작할 때 선종의 혼인이 성사된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혼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077년(문종 31) 숙종의 나이 24세였으므로 그의 혼인 역시 2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추진된 것이다.

58)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광종 경화궁부인, "惠宗二年, 王規譖王弟堯及昭有異圖, 惠宗, 乃<u>以女妻昭</u>, 以强其勢"; ≪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2년, "一日, 規譖王弟堯及昭有異圖 (중략) 王意規謀害堯昭之應, 亦不罪規, 乃<u>以長公主妻昭</u>, 用强其勢. 公主從母姓, 稱皇甫氏". ≪고려사절요≫ 撰者들은 왕규의 참소를 계기로 광종과 혼인한 '長公主'를 대목왕후 황보씨로 이해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長公主가 現王의 자매에 대한 책봉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오다. 혜종의 장녀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長公主를 ≪고려사절요≫ 撰者들이 중국식 책봉호로 이해하면서 혜종의 자매였던 대목왕후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우가 모두 확인되며, 이복남매혼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아직 태조의 왕실이 초월적 존재로 격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족과의 연합이 우선되었다고 설명하는 연구가 있으나,[59]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혜종과 정종이 이복자매 가운데 배우자를 찾지 않았던 원인은 첫 번째로 이들의 나이에서 찾아야 한다. 태조가 건국 전 얻은 자식은 혜종이 유일하다. 후비전에서 신명순성왕태후 이하 나머지 后妃들은 고려 건국 이후 장기간에 걸쳐 納妃된 것으로 추정되며,[60] <표 Ⅰ-1>에서 확인되듯 비교적 이른 시기 납비된 后妃일지라도 그 소생은 대체로 920년대 초중반 이후 출생하였다. 따라서 혜종이 태자에 책봉되어 태자비를 들일 당시 태조의 왕녀들은 출생 직후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정종 또한 형 왕태의 혼인이 먼저 추진된 이후 자신은 혼인적령기가 맞는 이복자매를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각 자녀의 혼인마다 태조의 정치적 고려가 다르게 작용하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혜종의 경우 그의 혼인은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원활한 권력승계를 위한 기초작업이었다는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 혜종은 921년(태조 4) 正胤 즉 태자 책봉을 즈음하여 비교적 이른 나이에 태자비를 맞이하였다.[61] 혜종의 초혼 상대인 의화왕후 임씨는 918년(태조 1) 兵部令에 임명된 林曦의 딸이다.[62] 혜종의

59) 정용숙, 1988 앞의 책, 81쪽. 태조가 추진한 초기의 자녀혼이 모두 호족과의 혼인이었다는 주장은 王泰가 신명순성왕태후의 장남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55)를 참조.

60) 말년의 궁예가 태조 세력의 離反을 예측하고 집중 견제하였던 것을 볼 때, 고려 국왕으로 즉위하기 전 태조가 각지의 유력가문과 복수의 혼인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년 6월 乙卯, "騎將洪儒裴玄慶申崇謙卜智謙等密謀, 夜詣太祖第, 共言推戴之意 (중략) 裔聞之驚駭曰, '王公得之, 吾事已矣.' 乃不知所圖, 以微服, 出自北門亡去, 內人淸宮以迎."; 권92, 열전5 諸臣 崔凝, "一日, 裔召太祖, 誣以謀叛, 太祖辨之. 凝爲掌奏, 在裔側, 佯墜筆, 下庭取之, 因趍過太祖, 微語曰, '不服則危.' 太祖悟, 遂誣服, 由是得免").

61)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혜종 의화왕후임씨, "(전략) 太祖四年十二月, 冊惠宗爲正胤, 以后爲妃".

6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년 6월 신유.

모후 세력이 側微함을 걱정한[63] 태조가 병권을 관장하던 임희를 혜종의 妃父로 삼아 든든한 후견인을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이후 혜종은 王規의 딸인 後廣州院夫人을 次妃로 맞이하는데, 이 혼인이 이루어진 시기 또한 태조 말년일 가능성이 높다. 태조의 근거리에서 임종을 지켰을 뿐 아니라 추후 태자의 처분을 따르라는 태조의 遺命을 백관들에게 선포한 인물이 바로 왕규였다는 점에서[64] 태조와 왕규, 혜종의 밀착된 관계가 파악되기 때문이다.

정종과 朴英規 딸의 혼인, 안정숙의공주와 敬順王 金傅의 혼인은 후삼국 통일기의 時宜性을 반영한다. 이전 왕조에 대한 예우 및 포섭 차원에서 태조가 후백제와 신라의 왕실 세력을 고려 왕실로 흡수한 것이다. 박영규의 딸이 甄萱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후백제의 왕족이라 표현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견훤의 왕자들이 최후까지 고려에 저항하여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후백제 王統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견훤의 외손들이었으므로 태조와 박영규 가문의 결연을 후백제 왕실 세력의 흡수를 위한 정략혼으로 규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처럼 혼인의 목적과 대상은 달랐으나 혜종과 정종, 안정숙의공주 모두 태조의 인척관계망 내에서 배우자를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65] 태조비 肅穆夫人은 鎭州人 名必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명필은 918년(태조 1) 徇軍部令에 임명되어 임희와 함께 병권의 또 다른 한 축을 관장하던 林明弼로 추정된다.[66] 즉, 숙목부인과 의화왕후는 동

---

63)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태조 장화왕후오씨.

64) ≪고려사절요≫ 권1, 태조 26년 5월 정유 및 병오.

65) 지배계층의 통혼을 인척관계망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인류학 연구로 宇野伸浩, 1999 <チンギス・カン家の通婚関係にみられる対称的婚姻縁組>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別冊20號 및 박정석, 2010 앞의 책 참조.

66) 이수건, 1984 앞의 책, 일조각, 131~132쪽에서는 숙목부인의 아버지 名必이 鎭州人이라는 후비전 기록을 토대로 그가 진주의 대호족 진주임씨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용숙, 1992 앞의 책, 61쪽 및 신수정, 2015 앞의 논문, 136쪽에서는 숙목부인의 아버지 名必을 순군부령 林明弼로 보았다. 고려초에는 토속 고유명사를 음차하는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여 동일한 고유명사를 다른 한자어로 나타

일 가문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정종의 后妃 문공왕후와 文成王后는 태조 后妃 東山院夫人의 자매다. 안정숙의공주와 敬順王 金傅의 혼인이 神成王太后의 납비와 연계되어 진행된 일종의 교환혼이었다는 사실[67]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태조는 이복남매혼을 할 수 없었던 자녀들에게 새로운 외척 세력을 맺어주기보다 기존 인척관계망을 계승시켰다. 이로써 태조 말년에야 혼인이 이루어져 고려 왕실과의 유대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가문들은 주로 태조 자녀세대와의 재결합을 통해 고려 왕실의 친속으로서 다시 한 번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태조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면서도 왕실과 외척의 규모를 통제할 수 있었다. 태조와 외척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현재로서 태조가 추진한 것이 확실한 이복남매혼은 왕태와 흥복원부인 소생 공주의 혼인이다. 혜종 즉위 후 성년이 된 정종과 광종에게 위협을 느낀 왕규가 두 왕자를 참소하면서 정종보다 손위의 왕태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미 사망한 후였기 때문일 것이다.[68] 944년(天福9, 甲辰; 혜종 1) 정종·광종 및 충주유씨의 후원 하에 건립된「興寧寺 澄曉大師塔碑」음기에 왕태가 등장하지 않고 '王堯君'이 가장 상단에 음각되었던 사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왕태의 이복남매혼은 태조 생전 태조의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왕태의 혼인은 혜종, 정종, 안정숙의공주의 경우와 달리 이복남매간 근친혼이었다는 점에서 외형상 달라 보이지만, 혼인의 목적과 결과면에서 위의 세 혼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복남매혼을 통하여 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필자 또한 두 연구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67)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태조 신성왕태후김씨;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태조 안정숙의공주.

68) 강희웅, 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3-2, 일지사, 84면 주59)에서도 왕태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왕규가 왕요·왕소를 참소하며 왕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조가 기구축한 인척관계망 내로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권이 제약되었고 태조의 인척관계가 계승되었다. 이로써 태조와 외척 세력들 모두 왕실과 외척의 규모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기존 핵심 세력들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표 Ⅰ-2>에서는 왕태와 흥복원부인 소생 공주와 같이 왕실 내에서 이복남매 혹은 삼촌 간 근친혼을 한 태조 자녀들을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줄을 제외하면 모두 태조 사후 추진된 혼인이므로 두 번째 줄 이하를 제2기의 혼인으로 볼 수 있다. 제2기의 태조 자녀세대 혼인에서는 왕실 내 근친혼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왕실 내 근친혼을 하지 않았던 혜종과 정종조차 자신들과 나이차가 많이 나는 이복형제를 사위로 두었던 사실이 이러한 선호도를 방증한다.[69] 제2기부터 적극적으로 왕실 내 근친혼이 행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고려 건국 후 납비된 태조의 后妃들이 비슷한 시기 수많은 왕자·왕녀들을 생산하였던 데 있다. 이복남매들과 큰 나이차를 보인 혜종 또한 이른 혼인의 성과로 동생들과 혼인적령기가 일치하는 자녀들을 생산함으로써 배우자의 범주를 확장하였다.

≪고려사≫ 종실전과 후비전을 통하여 태조는 25명의 왕자와 9명의 왕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왕녀들 가운데 경순왕 김부와 혼인한 2명의 왕녀,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1명의 왕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왕녀는 각각 6명의 왕자와 혼인하였다. 혜종과 정종의 왕녀처럼 三寸叔과의 나이차가 크지 않은 태조 손녀들 또한 태조 왕자들의 통혼 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고려초 왕실은 왕녀 혹은 宗女의 수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왕자들의 근친혼을 추진하였다.[70]

---

69) 혜종의 왕녀는 삼촌이었던 광종과, 정종의 왕녀 또한 삼촌이었던 효성태자와 혼인하였다. 정종 왕녀와 효성태자의 혼인은 정종 사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종이 949년 2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자녀들은 父王의 재위기 혼인적령기에 들어서지 못하였다.

70) ≪益齋亂稿≫ 권9下, 史傳序「宗室傳序」와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즉위년 11월 辛未 기사에서는 고려시대 왕실 자제들이 宗子(男)·宗女로 지칭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語義만 놓고 볼 때 종자(남)·종녀는 왕실 전체를 아우르는

<표 Ⅰ-2> 태조 자녀세대의 왕실 내 근친혼 현황

夫			婦			자녀
입전 항목명	母后(父)	母后(父) 출신	입전 항목명	母后(父)	母后(父) 출신	
태자 泰	신명순성 왕태후	忠州 劉氏	공주	흥복원 부인	洪州 洪氏	無嗣
광종	신명순성 왕태후	忠州 劉氏	경화궁 부인	혜종	太祖의 子	無嗣
				의화 왕후	鎭州 林氏	
			대목 왕후	신정 왕태후	黃州 皇甫氏	경종, 문덕왕후 등
문원 대왕 貞	신명순성 왕태후	忠州 劉氏	문혜 왕후	정덕 왕후	貞州 柳氏	천추전군 헌의왕후
대종 旭	신정 왕태후	黃州 皇甫氏	선의 왕후	정덕 왕후	貞州 柳氏	성종, 헌애왕후 헌정왕후 등
원장 태자	정덕왕후	貞州 柳氏	흥방 궁주	신명 순성 왕태후	忠州 劉氏	흥방궁대군 대명궁부인
의성부 원대군	의성부 원부인	義城 洪氏	공주	정덕 왕후	貞州 柳氏	無嗣
효성 태자 珠琳 (琳珠)	천안부 원부인	慶州 林氏	공주	정종	太祖의 子	無嗣
				문성 왕후	昇州 朴氏	
안종 郁 (정식혼인 아님)	신성 왕태후	慶州 (新羅) 金氏	헌정 왕후 (정식혼인 아님)	대종 旭	太祖의 子	현종
				선의 왕후	太祖의 女	
수명 태자	헌목 대부인	慶州 平氏	순안 왕대비	정목 부인	溟州 王氏	홍덕원군圭 (선정왕후

집합명사지만, 역대 국왕의 아들·딸은 일반 왕실 구성원들과 다른 위상 및 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대 국왕의 아들·딸은 王子·王女로, 그 외의 왕실 남성·여성은 宗男·宗女로 구분하였다.

			(추정)			父)

※ 표의 음영은 세대차가 발생한 혼인을 나타냄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1명의 왕녀는 順安王大妃다. 공주전 입전 항목명에 왕대비라는 왕실 칭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녀는 후대 국왕과 밀접한 친속관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표 Ⅰ-2>의 文元大王妃 文惠王后, 戴宗妃 宣義王后처럼 왕후가 된 딸을 두거나 왕이 된 아들을 둔 태조의 왕녀들이 후대 고려 국왕에 의하여 추존 왕후가 되었던 데 반하여 순안왕대비는 后 하위의 妃로 추증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앞에 大가 부가되어 특징적이다. 고려초 大妃 칭호의 유일한 용례는 成宗妃 文和王后 金氏의 후비전 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화왕후는 成宗妃이면서 동시에 顯宗妃 元貞王后의 母后였던 인물이다. 성종과 현종 재위기 延興宮主, 玄德宮主로 호칭되던 그녀는 1029년(현종 20) 大妃에 책봉되었다.[71] 왕후의 母后이면서 前王 成宗의 后妃였기 때문에 생전 太后 하위의 大妃로 책봉되었던 듯하다.

문화왕후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순안왕대비에게만 宣義王后·文惠王后와 차별화된 칭호가 부여된 연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왕대비는 왕후보다 손위의 왕실 여성을 지칭한다. 즉, 순안왕대비의 손자녀세대에 국왕 또는 왕후가 존재하여 그녀의 자녀세대가 추존 국왕·왕후에 비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안왕대비의 시호에 추존 국왕·왕후보다 손위를 의미하는 大가 부가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태후 하위의 대비로 시호가 결정된 연유는 추증이 이루어질 당시 순안왕대비의 혈통이 국왕보다는 왕후와 직접 연결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한 세대 더 내려가 순안왕대비의 손자녀세대, 즉 태조의 증손자녀세대에서 先代 정보가 누락된 인물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穆宗妃였던 宣正王后의 祖母 정보만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발

71)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文和王后 金氏.

견하였다. <표 Ⅰ-2>는 이를 토대로 순안왕대비의 배우자가 선정왕후의 祖父 壽命太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72]

종합해보면, 태조는 后妃 가문의 구성원을 자녀의 배우자로 간택하거나 혼인적령기가 맞는 왕자·왕녀의 이복남매혼을 추진함으로써 왕실혼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외형상 태조가 추진한 혼인은 外婚과 內婚으로 대비되지만, 자녀세대의 혼인에서 태조가 기대한 바는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의 의도는 왕실과 외척을 제한된 규모로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척관계망을 온전히 후대로 계승시켜 고려 최상층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태조는 신라 왕실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이복남매혼을 몸소 추진하여 왕실의 禁婚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조정하였다. 창업주 태조의 先例는 곧 고려 왕실이 의거할 典範이 되었다. 태조가 부여한 명분을 바탕으로 왕실과 외척은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극단적 근친혼을 추진하였고, 고려초 왕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폐쇄적인 內婚網을 형성하게 되었다.

3) 폐쇄적 內婚網에 기반한 왕실 階序化

태조의 손자녀세대에서는 윗세대와의 삼촌혼, 동세대와의 四寸婚이 모두 진행되었다. 이복남매혼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도적 지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혜종 이후 국왕들이 태조만큼 많은 처를 두지 않았고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한 명의 처만 두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현종 자녀세대에 이르러 母后가 다른 왕자·왕녀들 간의 이복남매혼이 부활한 것을 참조한다면,[73] 고려초 왕실에서 最近

72) 정용숙, 1988 앞의 책, 180쪽 주33)에서도 수명태자의 후손이 왕실에서 유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순안왕대비가 수명태자의 부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73) 현종 왕자 德宗은 이복자매인 元惠太后 소생의 孝思王后, 元順淑妃 소생의 敬成王后를 배우자로 맞이하였고, 文宗은 元城太后 소생의 仁平王后를 배우자로 삼았

親 관계인 이복남매간의 혼인을 선호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그림 Ⅰ-1>에서는 태조의 자녀세대를 망라하여 근친혼 관계를 표시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가족관계를 기재하였다. 태조의 왕자들 가운데 종실전에 ○○君으로 입전된 인물들은 빠짐없이 無嗣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早卒하여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였으며,[74] 출가한 인물 또한 혼인 및 자녀 생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근친혼 관계의 남녀는 동일한 색으로 나타내었다. 근친혼 관계에서 생산된 자녀들을 기록할 때에는,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역대 국왕과의 친속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속성을 반영하여 父와 母 가운데 국왕과 친속관계가 보다 가까운 쪽에 配屬하였다. 나아가 현전하는 자료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當代의 혼속 상 혼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붉은 색으로 칠하고 ● · ■ 등의 기호로 배우자를 구분하였다.

다. 문종의 왕녀 積慶宮主 또한 仁敬賢妃 소생의 扶餘侯 燾와 이복남매혼을 하였다. 특히 宣宗은 동모제 적경궁주의 혼인을 주선할 당시 平壤公 基 소생인 사촌 王瑛을 제쳐두고 異母弟 부여후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선종의 행보를 통하여 이복남매혼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적경궁주의 혼인 과정에서 여타 문종 왕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선종은 保寧宮主의 혼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왕영을 간택하여 사촌혼을 추진하였다. 자세한 관련 서술은 본고 二장 1절 참조.

74) 태조 왕자들 중 ○○君으로 입전된 인물은 王位君·仁愛君·助伊君·法登君·資利君이다. 이들은 호칭만 놓고 보아도 (府)院君이나 太子·大王으로 입전된 다른 왕자들과 이질적이다. ≪고려사≫ 종실전 太祖條에 資利가 곧 "季子의 方言"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으므로 資利는 토속어의 음차가 확실하다. 助伊 또한 한자 풀이만으로 의미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토속어의 음차로 볼 여지가 크다. 王位·仁愛·法登은 고려시대 책봉호나 시호와 같은 공식 칭호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들로 구성되어, 토속어의 음차이거나 토속어를 의역한 단어로 추정된다. 특히 王位·仁愛·法登은 신라 智證王의 생시 智大路·智度路·智哲老 등의 이름이 智證과도 병용되었던 현상을 상기시킨다(신종원, 1977 <신라의 불교전래와 그 수용과정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22, 159쪽). 이처럼 5명의 왕자는 호칭 외의 관련 기록이 全無할 뿐 아니라 유일한 정보인 호칭마저 정식 이름이 아닌 兒名 또는 별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왕실에 편제될 수 있는 적정 나이대에 이르기 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려사≫ 종실전은 일찍 사망할수록 관련 기록을 누락시키는 경향이 크다. 태조 后妃 信州院夫人 康氏는 자신의 아들이 일찍 죽자 광종을 입양하여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태조 信州院夫人 康氏), 신주원부인의 소생은 종실전에 입전되지 않았다. 顯宗 后妃 元和王后 崔氏도 왕자 秀를 출산하였으나(≪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7년 6월 庚辰), 왕녀 출신 왕후가 낳은 적자임에도 王秀는 종실전에 입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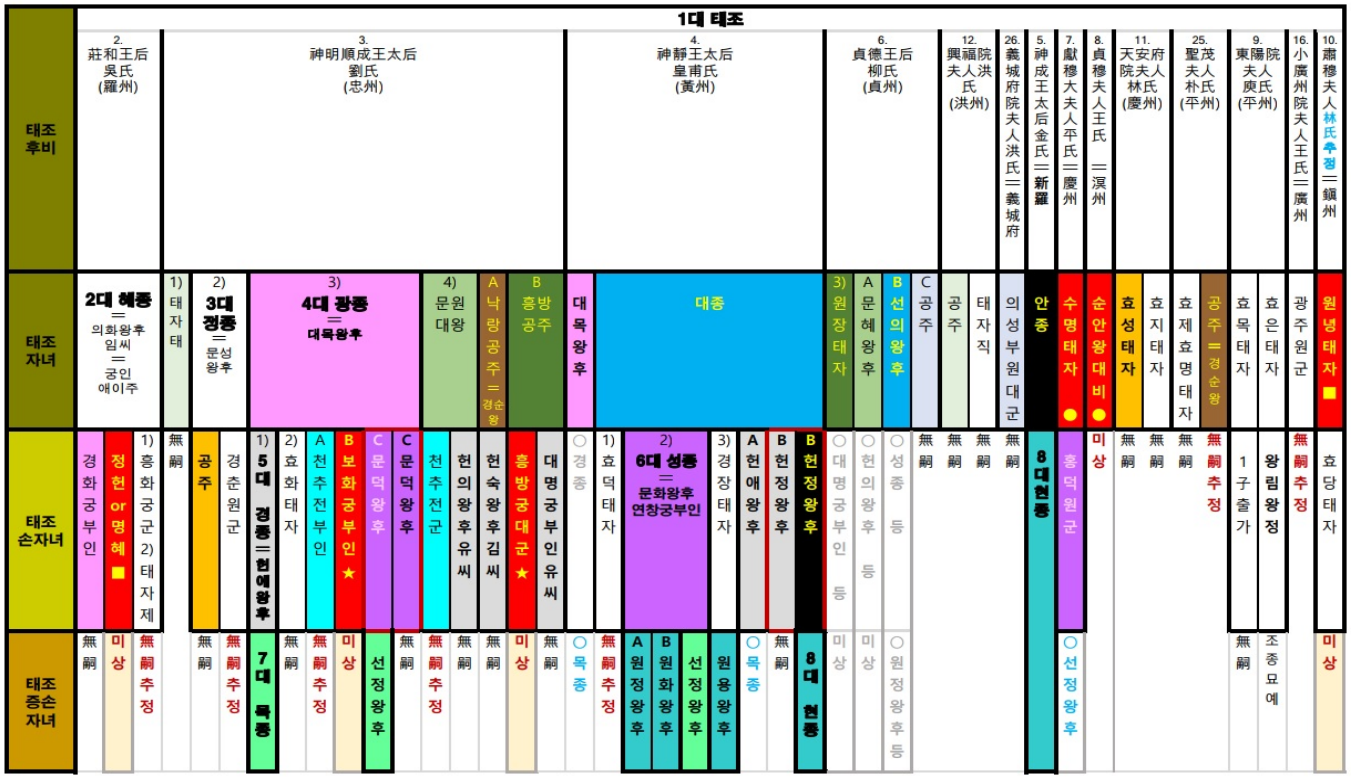

<그림 Ⅰ-1> 고려초 왕실 내 근친혼맥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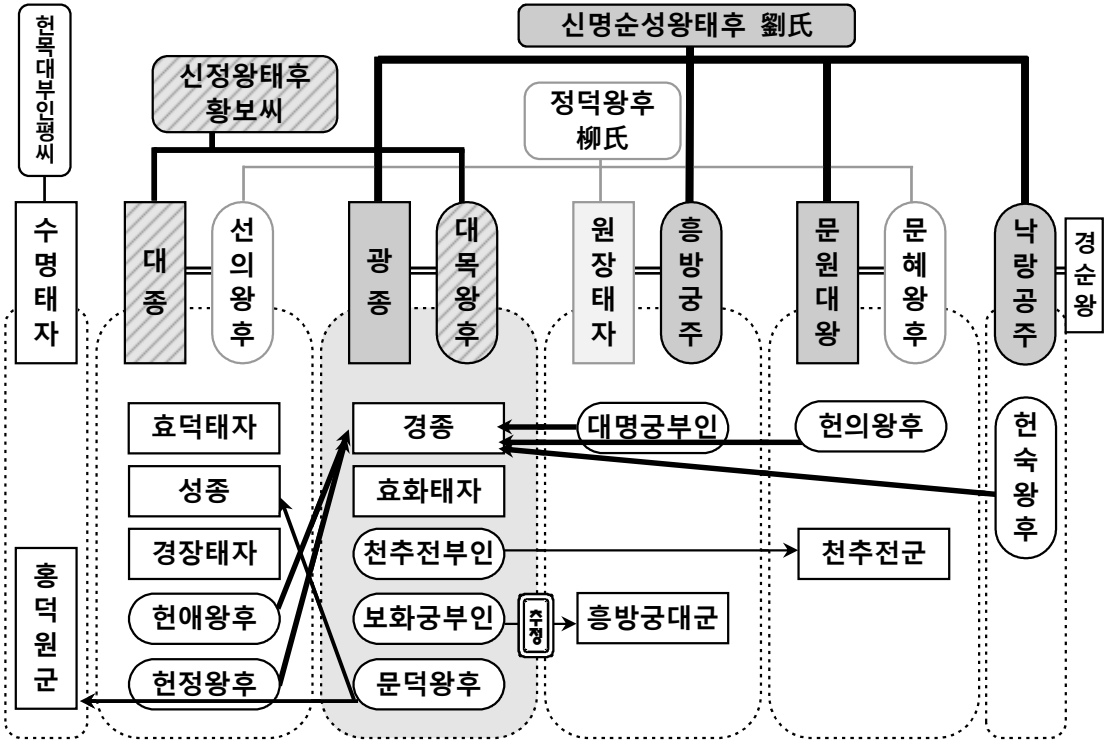

<그림 Ⅰ-2> 고려초 왕실 내 근친혼맥도(2)

<그림 Ⅰ-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네 가지다. 첫째, 왕실 내 근친혼을 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간 위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태조 왕자인 太子 稷, 孝祗太子, 孝悌太子, 孝明太子, 廣州院君은 모두 종실전에 "無嗣", 즉 후사를 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광주원군은 왕규의 난에 연루되어 주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75] 효제태자와 효명태자는 모두 '早卒'이라는 사유가 확인되지만, 그 외의 왕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無嗣"로 기록되어 있어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배우자에 관한 정보가 全無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조 왕녀 또는 손녀를 배우자로 맞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정보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 세대에서 왕실 내 근친혼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소생 또한 왕실로부터 소외되어 기록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문원대왕과 문혜왕후, 대종과 선의왕후, 元莊太子와 興芳宮主는 소생에 대한 정보가 매우 상세할 뿐 아니라 각각의 소생이 광종 자녀와의 혼인을 통해 국왕의 近屬으로 재편입됨으로써 차기왕위계승권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다.

한편 종실전에서는 弘德院君·孝當太子·王琳·王禎과 같이 生母 정보가 불분명함에도 입전된 태조 손자들을 볼 수 있다. 태조 손자녀세대의 왕실 귀속 여부가 부모, 특히 생모의 혈통에 좌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宗男이 입전된 사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홍덕원군과 효당태자는 왕녀 소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홍덕원군은 선행연구와 본고 모두 태조 왕녀 순안왕대비의 소생으로 비정하였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할 예정이지만, <그림 Ⅰ-1>에 표현하였듯 효당태자는 혜종 왕녀인 貞憲公主 또는 明惠夫人의 소생으로 보인다. 결국 종실전에서 왕실 여성을 생모로 두지 않은 태조 손자는 孝隱太子의 아들인 왕림과 왕정뿐이다.[76] 두 사람의 이름이 종

75)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太祖 廣州院君, "史逸其名. 惠宗二年, 外舅王規, 欲立以爲王, 謀逆見誅, 君亦不知所終."

실전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계기 덕분이었다. 왕림과 왕정은 광종에 의하여 효은태자가 사사된 뒤 민간에 숨어 살았는데, 현종을 옹립한 康兆가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왕실의 빈약함을 염려하여 宗籍에 복귀시켰다고 전해진다.[7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면, 왕실에서 소외된 태조 손자들 가운데에는 끝내 소식이 단절되어 宗籍에 수록되지 못한 인물들도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태조 손자녀세대에 이르러 고려 왕실에서는 純血度를 기준으로 동세대 내에서의 위계서열을 나누고 이를 왕실혼에 반영함으로써 왕실 내부의 경쟁자를 축소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왕실 내 근친혼 여부로 태조 자녀들과 그 소생들을 차별한 것은 신라시대 母의 신분을 기준으로 제1골과 제2골을 나누고 동일 骨 내에서의 결합이 아닌 경우 族降시켰던 역사의 흔적을 상기시킨다.[78] 다만 고려의 경우 왕실 내 근친혼이 불가능하였던 왕자와 그 소생들을 族降시켜 왕실 범주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왕실의 주변부에 위치시켜 핵심부와의 차등을 두었던 데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둘째, 태조 자녀세대가 기구축한 근친혼망 내에서 손자녀세대의 근친혼이 이루어진 결과, 왕실의 외척가문이 제한되어 광종대 이후 대다수 왕실 인물들의 조모와 외조모는 신명순성왕태후 劉氏, 신정왕태후 황보씨, 貞德王后 柳氏 중에서 결정되었고 혼인 후에도 배우자를 통해 이어지는 계보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79] 이와 같은

---

76) 효은태자의 同母兄 孝穆太子 義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그가 출가하였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전해지지 않는다.

77)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태조 孝隱太子.

78) ≪新唐書≫ 卷220, 列傳154 東夷 新羅, "其建官, 以親屬爲上, 其族名第一骨第二骨以自別.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 常爲妾媵."

79) 혜종 왕자와 정종 왕자는 광종 즉위 후 역모에 연루되어 제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孝隱太子의 두 아들 또한 광종이 효은태자를 賜死한 이후 민간에 숨어 왕실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고려사절요≫ 권3, 顯宗元文大王 3년 3월), 광종 치세를 거치며 태조의 손자녀 가운데 신명순성왕태후, 신정왕태후, 정덕왕후의 혈통이

표면적 현상을 놓고 선행연구에서는 신명순성왕태후의 충주유씨계와 신정왕태후의 황주황보씨계, 정덕왕후의 정주유씨계가 고의적으로 결집하여 고려초 왕실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景宗→成宗→穆宗으로 사위계승이 이루어진 결과 정주유씨계마저 탈락하였다는 해석을 내놓았다.[80] 이는 호족연합정권설의 시각에서 왕실과 외척의 관계를 분석하였기에 도출된 결론이다. 경종과 성종, 목종의 왕실계보를 부계 單系로 파악하고, 왕실 인물들과 연계된 외척에 조선후기 세도가문과 같은 부계 친족집단의 이미지를 오버랩한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그림 Ⅰ-2>에서 확인되듯 광종대 이후 태조 손자녀세대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父側(patrilateral)과 母側(matrilateral)을 통해 모두 정덕왕후의 가문과 연결되었다.[81]

충주유씨계, 황주황보씨계, 정주유씨계로 명명되어왔던 가문들이 태조의 여타 后妃 가문과 단절된 배타적 친족집단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82] 비록 자료의 양에 한계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고려초 왕실 외척의 친족조직이 복잡다단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한다.

[A-3] 金致陽은 洞州 사람으로 <u>千秋太后 皇甫氏의 外族</u>이다.[83]

[A-4] 康兆는 穆宗을 폐위하여 讓國公으로 삼은 뒤 閤門通事舍人 傅巖 등으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하였고, 병사를 보내어 金致陽 부자 및 庾行簡 등 7인을 살해하였으며 그 당여와 **<u>태후의 친속 李周禎</u>** 등 30여 인을

아닌 왕실 인물은 홍덕원군과 효당태자만 남아 있었다.

80) 정용숙, 1988 앞의 책, 88~108쪽.

81) 인류학 개념어인 父側(patrilateral)·母側(matrilateral)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노명호, 2017 <고려시대 새로운 영역의 연구에서 사료와 개념체계의 관계: 실제 사례를 통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100, 118~124쪽(노명호, 2019 앞의 책, 184~193쪽 재수록) 참조.

82) 노명호, 1986 <高麗初期 王室出身의 '鄕里'勢力>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노명호, 1988 앞의 논문.

83)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 金致陽, "洞州人, 千秋太后皇甫氏外族."

해도에 유배하였다.[84]

天秋太后의 情夫 金致陽은 [A-3]에 따르면 본래 그녀의 外族이었다.[85] 천추태후의 양친 모두 태조의 자녀였기 때문에 외족은 조모인 신정왕태후 또는 외조모인 정덕왕후와 연결된 친속을 의미한다.[86]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치양이 洞州 출신이었다는 사실이다. 태조의 后妃 가운데 동주 김씨로는 大西院夫人과 小西院夫人이 확인되는데, 천추태후의 친속이라는 家格을 생각한다면 김치양은 두 后妃 가문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A-4]에서 천추태후의 친속으로 기록된 또 한 명의 인물 李周禎 또한 아래 사료를 통하여 그 출신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5] 陜州는 본래 신라의 大良州郡이다【良은 耶로도 쓴다】. (중략) 顯宗이 大良院君으로서 왕위에 올랐는데, 또다시 皇妃 孝肅王后의 鄕이라고 하여 知陜州事로 승격시켰다.[87]

顯宗母 孝肅王后는 景宗妃 獻貞王后와 동일인물이다. 천추태후의 同母弟이면서 같은 배우자를 두었던 효숙왕후가 천추태후와 동일한

84)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 康兆, "兆廢穆宗, 爲讓國公, 使閤門通事舍人傅巖等守之, 遣兵殺致陽父子及行簡等七人, 流其黨及太后親屬周禎等三十餘人于海島."

85)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으나 그 관계는 當代에 공인되지 않았다. 1006년(統和24, 목종9) 완성된 寫經 ≪紺紙金泥大寶積經≫의 跋文에서는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同心發願"으로 사경이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발문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紺紙金泥大寶積經 卷三十二 寫經跋文' 참조). ≪고려사≫에 김치양은 천추태후와 "사통"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6년, "是年, 太后皇甫氏與金致陽通, 生子"; 권127, 열전40 叛逆 金致陽, "(전략) 後太后生子, 是私致陽所生也").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나 공인되지는 못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情夫'이기에 본고는 김치양을 천추태후의 '情夫'로 정의하였다.

86) 하현강과 노명호는 천추태후의 조모 신정왕태후 황보씨와 관련된 친속일 수 있다고 보았다(노명호, 1986 앞의 논문, 70~71쪽).

87)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합주.

친속관계망을 가지는 건 당연하므로 [A-4]의 이주정은 효숙왕후의 친속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현종이 즉위 전 대량원군으로 불렸으며 대량(야)주군은 母后 효숙왕후의 연고지이기도 하였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태조의 后妃 가운데 陜州 출신의 後大良院夫人 李氏를 찾아볼 수 있고, ≪世宗實錄≫ 地理志에서는 이씨가 합주의 토성이었다는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이주정을 후대량원부인 가문과 연결된 인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88]

고려초 왕실이 지나친 권력 분산과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 하에 근친혼을 활용하여 외척가문을 축소하는 동안 태조와 통혼한 가문들은 납비되지 않은 자녀들을 다른 后妃 가문과 혼인시키며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太祖妃 聖戊夫人의 형제이자 夢良院夫人의 부친이었던 朴守卿이 혜종 재위기부터 정종과 광종의 당여로 활동하며 두 왕의 즉위에 공헌한 것은 왕실 외부에 이들을 결집시킬 만한 요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89] 선행연구에서 누누이 강조하였듯 이 시기 가장 효과적인 결집 수단은 혼인이었다. 대서원부인이나 후대량원부인과 같이 태조와의 관계에서 소생을 두지 못한 后妃 가문, 또는 성무부인처럼 그 소생이 모두 早卒하여 차기왕위계승권을 기대할 수 없는 后妃 가문은 태조 사후 왕실과 소원해질 것을 대비하여 자연히 태조의 자녀를 많이 출산한 后妃 가문과의 결합을 추구하였을 것이다. 천추태후의 친속이자 핵심 族黨으로 김치양, 이주정과 같은 異姓의 인물들이 확인되는 것은 지배층의 이러한 동향 때문이었으리라 이해된다.

셋째, 왕실 내 근친혼을 추진할 때 后妃 가문의 위세보다 혈통과

---

88) 본고와 달리 이태진은 김치양과 黃州皇甫氏를 西京勢力으로 규정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집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주정 또한 洞州 출신 李周憲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이태진, 1977 앞의 논문, 103쪽).

89) ≪고려사≫ 권92, 열전5 제신 朴守卿.

혼인당사자의 나이차가 우선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외척의 상호 결연이 우선되었고, 혼인은 결연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실제 혼인 사례를 분석해보면 배후세력은 부차적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근친혼은 태조의 자녀 혹은 손자녀 가운데 비슷한 나이대의 남녀를 선별하여 한 가정 내에 '정상적 생애주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혼인의 결과로서 배후세력 결집이 이루어졌다. 天安府院夫人 林氏 소생 孝成太子와 정종 왕녀의 혼인, 獻穆大夫人 平氏의 손자 弘德院君과 광종 왕녀 文德王后의 혼인이 이를 증명한다.

태조비 천안부원부인 임씨는 太守 林彦의 딸로 慶州 출신이다. 임언은 927년(태조 10) 後唐에 使行을 다녀온 官歷이 있는데,[90] 후비전에도 그의 관계가 아닌 관직명이 기재되어 태조의 여타 妃父들과 이질적인 것을 볼 때 관료적 성격이 강한 인물로 추정된다. 딸의 宮院名에 포함된 천안부와 임언의 출신지 경주 어디에도 토성 林氏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91] 또한 임언의 재지기반이 미약하였음을 방증한다.[92] 그럼에도 천안부원부인의 아들 효성태자는 정종의 사위로 간택되었다. 정종이 불과 2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혼인은 광종에 의하여 주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 당사자 간의 세대차를 보면 광종이 사촌들보다 연령대가 높은 정종의 왕녀를 배려하여

9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12월.

91) 江原正昭, 1966 앞의 논문, 66쪽; ≪世宗實錄≫ 권149, 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天安郡; 권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92) 김갑동, 2002 <나말려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한국사연구≫ 117, 49~51에서는 康州 세력가 王逢規 휘하에 있던 임언이 고려로 귀순한 후 天安都督府使 弟弓(皇甫悌恭 추정)을 보필하며 천안부에 정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갑동의 견해에 따른다면, 임언은 930년(태조 13) 6월 태조가 천안부에 행차하여 都督을 둔 이후 비로소 천안부에 연고를 갖게 된 셈이 된다. 한편 이정란, 2011 앞의 논문, 46~53쪽에서는 강주 왕봉규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고려로 투항·복속한 임언이 927년(태조 10) 후백제의 강주 점령으로 연고지를 잃게 되자 새로운 연고지를 물색하여 천안에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임언이 천안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연고지로 삼은 시기는 920년대 후반부터 930년대 초중반에 해당할 것이며 천안부원부인의 납비 또한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태조 말년 출생한 태조의 왕자와 맺어준 것으로 예상된다.

헌목대부인 평씨 또한 재지기반이 약한 인물이다. 헌목대부인은 천안부원부인과 같은 경주 출신으로 전해지지만 경주의 토성 가운데 평씨는 없다. 이수건은 헌목대부인이 경주 유력 토성 가문 출신으로서 후대에 姓을 망실한 사례이며 후비전의 姓 정보는 ≪고려사≫ 撰者들이 父名 平俊의 첫 글자를 姓으로 誤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93] 태조 왕자를 생산하고 累代에 걸쳐 왕실 내 근친혼 관계망에 포함되었던 헌목대부인이 姓 정보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平'을 姓이 아닌 父名의 첫 글자로 본다 하더라도 후대에 이들의 성이 전승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본관 경주에서 헌목대부인 가문의 姓이 갖는 의미가 미미하였다는 방증이 된다.

平俊의 官階가 후비전에 佐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윤은 대다수 태조 妃父가 겸대한 大匡에 비하여 한참 하위에 위치한다.[94] 초기의 官階가 당사자의 재지기반이나 정치적 역량 등에 대한 척도였음을 고려한다면, 官階만으로도 平俊의 출신 또는 건국 및 통일 과정에서의 활약상을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헌목대부인의 손자 홍덕원군은 광종의 세 번째 사위로 간택되었고,[95] 그의 소생인 선정왕후가 목종의 왕후가 되었다. 나아가

93) 이수건, 1984 앞의 책, 130~131쪽. 고려 건국 직후에는 姓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중앙 또는 지방 유력자들을 이름으로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庾黔弼은 「五龍寺法鏡大師碑」에 黔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의 친속으로 보이는 여성 또한 같은 비문에 黔氏로 등장한다(이종서, 2009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사, 181쪽). 하지만 광종 이래의 중앙정치제도 정비 과정에서 姓을 병기하는 중국식 문화 또한 정착되어, 黔弼이 사후 庾黔弼로 알려졌듯이 고려초 중앙 정계의 핵심 인물들은 대체로 姓 정보를 남기게 되었다.

94) 박용운, 1997 ≪高麗時代 官階·官職 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33~37쪽에 따르면, 大匡이 2품, 中大匡·三重大匡이 1품인 반면 佐尹은 6품에 불과하였다. 960년(광종 11) 마련된 公服 제도에서 최고층인 紫衫層은 元尹이상으로 규정되었는데, 원윤은 좌윤과 같은 6품이지만 좌윤보다 上等이었다고 한다.

95) 홍덕원군 사후 광종 왕녀 文德王后와 성종의 재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혼 상대를 결정할 당시 성종 또한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을 것이다. 경종이 母后의 조카였던 성종을 제치고 홍덕원군을 여동생의 배우자로 선택한 사실만 보아도 혼

홍덕원군의 조모였던 평씨는 후대 국왕으로부터 '獻穆'이라는 시호를 받고 태조 후비전에 유일한 '大夫人'으로 등재되었다. 신정왕태후가 976년(경종 1) 경종의 외조모이자 처조모로서 明福宮大夫人에 책봉된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96] 시호에서 확인되는 헌목대부인의 지위와 신정왕태후의 생전 지위가 동등한 것을 볼 때 왕실 내에서 두 여성이 갖고 있었던 위상은 비등하였을 것이다.

일찍이 江原正昭는 헌목대부인처럼 后妃의 지위와 后妃父의 位階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두고 后妃의 위상은 왕과 '姻族'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왕조 내부, 즉 왕의 친속관계망 내에서 后妃가 갖는 존재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97] 후대의 연구자들이 주로 왕실과 외척의 역관계에 방점을 두고 고려초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江原正昭의 가설은 그간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배후세력과 같은 왕실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이 后妃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이었음을 포착한 것은 예리한 통찰이었다. 그의 가설을 后妃에 국한하지 않고 고려초 왕실 전체로 확대 적용해보면, 왕실구성원의 위상이 배후세력보다는 왕실 내부의 가족질서·혈통·계보의식에 일차적으로 구애되었을 것이라는 본고의 분석 결과와 상통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Ⅰ-1>에서는 왕실 여성의 혼인에 대한 구속력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의 자녀세대와 달리 손자녀세대에서는 혼인적령기의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혜종과 정종의 아들들은 광종 치세에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져 있고[98] 孝隱太子의 두 아들 또한 부친이 광종에게 사사되자 민간에 숨어 왕실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99] 본격적으로 태조 손자녀세대의

인 과정에서 배후 가문의 위세는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96)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원년 6월 경신, " 黃州院二郎君, 並加元服, 改院號, 爲明福宮";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2년 7월 임술, "明福宮大夫人皇甫氏薨".

97) 江原正昭, 1966 앞의 논문, 67쪽.

98) ≪고려사≫ 권93, 열전6 諸臣 崔承老,

혼인이 이루어지던 광종 말년부터 경종 초년까지 <그림 Ⅰ-1> 가운데 생존 중인 남성은 광종 소생의 경종과 孝和太子, 문원대왕 소생의 千秋殿君, 흥방궁주 소생의 興芳宮大君, 대종 소생의 孝德太子·성종·敬章太子, 수명태자 소생의 홍덕원군, 元寧太子 소생의 孝當太子 밖에 없었다. 총 9명의 남성 중 천추전군은 광종의 첫 번째 사위가 되었고, 흥방궁대군·효덕태자·효당태자 중 1인은 광종의 두 번째 사위가 되었을 것이며,[100] 홍덕원군과 성종은 광종의 마지막 사위가 되었다. 효화태자는 경종이 사망할 시 광종의 直子로서 성종을 제치고 왕위계승권자가 되어야했으나 경종대 그의 행적이 전무한 것을 볼 때에 혼인적령기에 들어서기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즉, 9명의 남성 중 왕녀 외의 종녀들과 혼인할 수 있는 사람은 경종을 포함하여 최대 4명에 불과하였는데, 그마저도 경종은 경순왕의 딸과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101] 반면 종녀는 문원대왕 소생의 헌의왕후, 흥방궁주 소생의 대명궁부인, 대종 소생의 헌애왕후와 헌정왕후가 혼인적령기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태조 자녀세대에서는 혼인적령기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를 상회할 시 호족 또는 관료가문 여성을 받아들여 왕자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손자녀세대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종녀가 발생하자 고려 왕실은 국왕의 重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 결과 경종은 前代의 혜종~광종, 後代의 성종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后妃들을 맞이하였고, 그의 后妃 5명은 모두 종녀 출신이었다. 물론 역대 국왕과 혈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여성들을 택하여 어떻게든 순혈의 후계자를 생산하려는 경종의 의지에서 중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

99)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太祖 孝隱太子.

100) 광종 자녀들의 혼인패턴을 보면 광종의 동모형제 집안에서 배우자를 찾으려는 경향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림 Ⅰ-1>에서는 흥방궁대군과 보화궁부인의 혼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

101) 경종이 경순왕 김부를 尙父로 삼은 시점이 그의 즉위년인 것을 볼 때(≪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6년 2월), 첫 번째 부인 헌숙왕후는 태자 시절 납비되었던 것 같다.

다. 그러나 경종과의 나이차가 큰 헌애왕후·헌정왕후 자매가 추가 납비된 뒤[102] 대명궁부인까지 입궁한 것을 볼 때에 경종의 중혼은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종녀들에게 혈통의 권위에 걸맞은 혼인 기회를 제공한 일종의 배려로도 읽힌다.[103]

동일한 현상은 현종 즉위 후에도 확인된다. 현종은 즉위 직후 성종의 두 딸을 왕후로 맞이하였다.[104] 이 혼인은 성종의 사위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즉위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현종이 추진한 정략혼이었다고 이해되어왔다. 물론 성종 왕녀 元貞王后·元和王后와의 결합은 현종 즉위에 대한 세간의 의혹과 반발을 해소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혼인을 정략혼으로만 볼 수 없다. 사위 지위의 획득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두 왕녀를 동시에 왕후로 맞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종은 고려 왕실에 태조의 父系孫, 특히 역대 국왕들과 복수의 친속관계로 얽힌 정통 男孫이 절멸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혼외자식이라는 불미스러운 출생에도 불구하고 왕위계승권자로 지목될 수 있었다.[105]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사통

---

102) 경종은 955년, 헌애왕후는 964년에 출생하였다(≪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헌애왕후황보씨, "(전략) 顯宗二十年正月, 薨于崇德宮, 壽六十六, 葬幽陵"). 따라서 헌애왕후의 동모제인 헌정왕후와 경종의 나이차는 10살 이상이었을 것이며, 정황상 헌정왕후보다 늦게 입궁한 것이 확실한 대명궁부인 유씨와의 나이차는 이보다 컸을 것이다.

103) 태조 손자녀세대에 이르면 이복남매간 근친혼에 기인한 유전적 질환이 발생하여 많은 왕실 남성들이 단명하였던 것 같다. 신라 景文王의 사례를 보면 왕의 直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을 시 사위의 서열에 따라 계승권이 주어졌는데(≪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憲安王 4년·5년), 경종은 광종의 마지막 사위인 성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경종 말년 광종의 첫 번째 사위와 두 번째 사위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이다. 실제 첫 번째 사위 천추전군은 종실전에 "일찍 사망하여 사서에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전해진다(≪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태조 文元大王貞附 千秋殿君). 문덕왕후가 첫 번째 남편 홍덕원군을 잃고 성종과 재혼하였던 사실, 경종과 성종 각각 27세와 38세의 나이로 단명한 사실 역시 고려초 왕실의 유전적 질환이 남성에게 보다 많이 발생하였음을 방증한다.

104)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顯宗 元貞王后金氏·元和王后崔氏; 권94, 열전7 諸臣 智蔡文, "(전략) 夜賊又至, 侍從臣僚·宦官·嬪御皆亡匿, **唯玄德·大明二王后**, 侍女二人, 承旨良叶·忠弼等侍."

105)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蔡忠順, "蔡忠順, 史失世系. 穆宗朝 (중략) 王曰, "朕疾漸危篤, 朝夕入地, **太祖之孫, 唯大良院君在**. 卿與崔沆, 素懷忠義, 宜盡心匡

하여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대량원군(현종)의 암살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은 현종 사망 시 태조의 父系孫이 아닌 자가 어머니의 王統을 근거로 즉위할 수 있을 만큼 왕실에 남성이 부족하였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성종이 남긴 왕녀들, 현종의 외사촌이기도 하였던 두 여성은 현종이 아니라면 혈통의 권위에 걸맞은 배우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종의 重婚은 두 왕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추진된 측면도 있었다.

종합해보면, 태조 생시 추진된 왕자·왕녀의 이복남매혼으로 인하여 고려 왕실의 禁婚 범위는 동모형제로 최소화되었다. 초기 왕실은 태조의 先例를 명분 삼아 기존 왕실 구성원끼리 혼인을 통하여 재결연하는 폐쇄적인 內婚 경향성을 보이며 권력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왕실 내 근친혼은 일종의 정략혼이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혼인 당사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정상적 생애주기의 가족을 형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점에서 특징적이다. 왕실 남성과 여성에게 內婚 규범의 구속력이 다르게 작용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조 자녀세대 이후 왕실에서는 부모 양측의 혈통을 따져 구성원을 계서화하였다. 부모의 內婚 여부에 따라 태조의 손자녀들에게는 왕위계승권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차등적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실의 외척들은 외손을 매개로 재결합하였고, 외손을 두지 못한 외척들은 納妃하지 않은 자식을 상호간 통혼시키는 방식으로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고려 왕조 초기의 최상위 지배계층은 태조가 확보한 인척관계망이 왕실과 더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생산을 반복하며 창출한 것이다.

扶, 使社稷不屬異姓.""

4) 초기 왕실 구조의 역사성

근본적으로 고려초 왕실 내 근친혼은 강고한 특권의식의 상징이자 타 세력에 대한 우위를 露呈하는 장치였다. 250개 사회의 근친상간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인류사회는 보편적으로 근친상간 금기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금기가 적용되는 친속 범위에 차이가 존재할 뿐 원친에서 근친으로 갈수록 높은 강도의 금기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06] 반면 고려초 왕실에서는 이복남매의 혼인을 일차적으로 선호하고 불가피할 경우 3촌, 4촌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갔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보편의 문화와 역행하는 특별한 행보를 통하여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였으며, 태조 자손들의 특권적 지위를 배타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도모한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왕실 내 근친혼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가졌다. 첫째,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고려 왕실에서는 근친혼으로 상호 연결된 친속관계망을 통하여 왕위계승후보자들의 범주를 劃定하고, 계승권의 우위를 결정하였다. 왕실 정점의 국왕과 얼마나 중첩된 친속관계망을 형성하였는가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복수의 왕실 남성은 왕의 直子가 아니더라도 혼인과 같은 성취적 요소를 통하여 왕위에 근접할 기회를 얻었다. 예

106) 피터 머독 지음, 조승연 옮김, 2004 앞의 책, 35~36쪽 및 342~346쪽 참조. 피터 머독은, 근친상간이 특권적 지위를 드러내는 척도로 인식되어 최상층 귀족에게만 허용되거나 쌍둥이 남매에 대한 신비적 해석 때문에 쌍둥이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경우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예외적 사례들은 역설적으로 근친상간 금기의 보편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250개 사회 가운데 단일 '핵가족(기본가족; elementary family)' 내에서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또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의 성관계나 혼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단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同父異母 남매는 엄격히 말하면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동일 핵가족 단위에 소속되지 않지만, 이들의 근친상간 또한 4촌 이상 남매의 근친상간보다 높은 강도로 금기시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광규에 따르면,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近親禁婚을 동물과 인간, 즉 자연과 문화의 分界點으로 보았고 이후 인류학자들은 "아무리 원시적인 민족이고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근친금혼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한다(이광규, 1990 앞의 책, 일지사(6쇄), 18~19쪽).

를 들어 천추전군과 성종은 경종의 사촌이었으나 광종의 사위로 간택되어 경종의 친형제 반열에 오름으로써 유력한 왕위계승후보자가 되었다. 경종이 임종 시 2살에 불과한 直子 목종을 제치고 성종에게 讓位하며 그를 '正胤'으로 명명한 사실,[107] 고려가 宋에 성종의 즉위를 알리며 경종의 從弟·堂弟가 아닌 '弟'로만 기술한 사실[108] 모두 경종과 성종의 관계에 대한 當代人의 인식이 현대와 매우 달랐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왕이 자신 혹은 전왕의 사위를 간택하는 행위는 곧 왕위계승권에 관여할 수 있는 왕실 구성원의 범주를 조정하는 행위였다. 왕위계승권자의 필수요건으로 국왕의 적장자라는 속성보다 직접 통치에 임할 수 있는 나이와 지배자로서의 카리스마를 중시하던 분위기[109] 속에 사위들은 국왕의 直子가 어릴 경우 유력한 왕위계승후보자로 대두하였다. 국왕은 가까운 친속을 사위로 삼아 복수의 친속관계로 묶어둠으로써 유고 시를 대비하여 순혈이면서 통치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확보하였다.[110]

둘째, 왕위계승후보자들의 범주와 계승권의 우위가 국왕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만큼 왕실은 국왕에게 緊束되었다.

---

107)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6년 7월 갑진.

108) ≪宋史≫ 권4, 본기4 태종1 太平興國 7년 12월 무인.

109) ≪宋史≫ 昭憲杜太后 열전에는 太宗의 즉위 과정을 粉飾하기 위한 에피소드가 수록되어 있다. 두태후는 周 世宗이 어린 아들에게 양위하여 혼란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宋이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力說하며 태조에게 추후 임종 시 동생을 '長君'으로 세우겠다고 맹약할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金櫃之盟으로 알려진 이 에피소드는 태종 즉위 이후 정치적 의도에서 각색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장성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군주를 내세워야만 황실과 국가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광범한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당시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110) 고려의 왕위계승시스템은 적임자계승제(Tanistry)와 달랐다. 혈통과 항렬 상 차등이 없는 왕실 일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차기 국왕 선출에 참여하였던 것이 아니라 국왕이 한 명의 계승자를 지명하는 시스템이었다. 지명은 태조의 자손이라는 큰 전제 하에서도 역대 국왕의 아들과 사위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6] 집정 王詵을 외방으로 추방하였다. 왕이 일찍이 선대의 조정에서 참소를 입은 자손들에게 복수를 허용하니 마침내 서로가 함부로 살해하여[擅殺] 다시 원통함을 호소하는 데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왕선이 복수를 핑계 삼아 태조의 아들 天安府院郞君을 죽였다. 그러므로 왕선을 폄척하고, 곧 함부로 살해하여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111]

[A-7] 다만 天安과 鎭州 두 낭군은 본래 황가의 자손[枝葉]이었습니다. 광종마저도 몸소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끝내 법으로써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종조에 이르러 번병으로 삼기 충분하였으나 도리어 權臣의 피해를 입고 돌아가시어 지하의 원귀가 되셨으니 宗盟에 있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112]

두 사료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天安府院郞君은 효성태자 또는 그의 동생 孝柢太子를 가리킨다.[113] 앞서 효성태자는 외가의 세력이 미약하였음에도 광종에 의하여 정종 사위에 간택된 인물이라고 서술하였다. 태조의 수많은 왕자 중 한 명에 불과하였던 효성태자는 광종의 선택을 계기로 정종의 아들 반열에 올랐고 동시에 현 국왕인 광종의 조카가 되었다. 동모제 효지태자 또한 형의 인맥을 통하여 광종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A-6]에서 확인되듯 천안부원낭군은 경종대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광종 재위기 피해를 입은 인물들로부터 큰 원한을 살 만큼 광종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7]에서는 광주원군, 효은태자 등 정적이 될 만한 형제들을 가차 없이 제거한 광종이 오히려 천안부원낭군에 대하여 관용적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료는 참란한 행위를 할 만큼 천안부원낭군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그가 위세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광종의 비호 덕분이었음을 보여준다.

---

111)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원년 11월.
112)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崔承老.
113)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太祖 天安府院夫人 林氏.

[A-7]에 천안부원낭군과 함께 언급된 진주낭군은 숙목부인의 아들 원녕태자를 지칭한다. 앞서 숙목부인은 혜종비 의화왕후와 같은 진주 임씨 출신이며, 의화왕후의 딸 경화궁부인이 광종의 后妃였음을 서술하였다. <그림 Ⅰ-1>에서는 혜종 왕녀 貞憲公主 또는 明惠夫人이 원녕태자와 혼인하였을 가능성을 표시하였는데, 경화궁부인의 선례와 같이 혜종이 異母弟를 왕녀의 배우자로 간택하였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외가를 통하여 상호 연결된 원녕태자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아들이 효당태자로 명명되어 왕실 일원으로 인정받았던 사실 또한 원녕태자 부인의 家格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광종과 원녕태자는 동서지간일 가능성이 크고, 설령 원녕태자가 혜종의 사위로 간택되지 않았을지라도 두 사람은 경화궁부인을 통하여 복수의 친속관계망을 갖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광종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한 원녕태자 또한 광종 재위기 국왕의 비호를 바탕으로 위세를 부렸다는 사실이다. 태조의 왕자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광종과의 개인적 친속관계에 따라 개인의 처지가 크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근친혼으로 결속된 왕실 구성원 사이에 前代의 유산이 안정적으로 상속되었다. 여기서의 유산은 인적 네트워크, 기반 세력을 포함한 광범한 개념이다. 광종 말년부터 경종 초년까지 정치적 이변이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태조의 后妃 가문이 뒤얽혀 천추태후와 목종의 친속으로 자리한 것을 본다면, 세대교체를 거듭하는 와중에도 태조의 인척관계망이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실 내 근친혼을 매개로 한 유산 상속은 고려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국의 국가·정치집단과 전혀 다른 상속 방식이었다. 同姓不婚 원칙이 확고하였던 漢族 왕조에서는[114] 他姓으로 시집간 공주의 가문 또는 전왕이나 전전왕의 처가에서 왕실 배우자를 선정함으로써 前代의 인척관계망을 흡수하였고,[115] 匈奴·突厥과 추후 등장하는 女眞·몽

114) 민후기, 2011 <西周왕조의 族의 재배치와 同姓不婚: 東征 이후 西周王朝의 族 통일정책에 대한 검토> ≪東方學志≫ 153, 182~194쪽.

골 등 엄격한 族外婚 풍습을 강조하던 유목사회에서는 娶嫂婚과 收繼婚을 통하여 前代와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116] 특히 족외혼과 취수혼 문화는 부여를 거쳐 삼국시대의 고구려까지 이어진 것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117] 고려초 왕실에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왕실 문제에 한하여 고려는 역사의 典故나 동시기 중국이 아닌 신라 왕실의 문화를 철저히 모방하였다.

신라는 특히 元聖王 즉위 이후 협소한 친속관계 내에서의 근친혼을 추진함으로써 왕실의 권력을 보존하고 그 권위를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中代 왕후의 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下代 왕후의 가계는 <그림 Ⅰ-3>에 나타나듯 대체로 원성왕 후손들의 친속관계망 내에서 확인된다. 더불어 치열한 왕위계승전에 참여한 인물 대부분 父側·母側·妻側 중 두 개 이상의 계보가 원성왕으로 연결되어 역대국왕과 복수의 친속관계망을 맺고 있었다. 원활하게 후계자를 지명하여 왕위를 계승한 경우에도 후계자는 전왕의 直子라는 단일한 정체성보다 복수의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고려와 같은 극단적 이복남매혼은 下代만이 아니라 신라의 역사를 통틀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에서는 부부와 직계자녀로 구성된 '기본가족'을 禁婚 범위로 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였을 것으

---

115) 漢 武帝는 고모(館陶長公主)의 딸 陳皇后와 혼인하였고, 무제의 동생 平陽公主는 무제의 처남이었던 衛靑과 혼인하였다(≪史記≫ 世家 권49, 外戚世家 衛皇后 및 陳皇后 참조). 미천한 출신의 위청이 평양공주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것은 누이 衛氏가 황후에 책봉되면서 그가 列侯에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漢에서는 열후의 신분이어야 황실의 부마로 간택될 수 있고 또 그 딸이 皇后에 책봉될 수 있었다(안대회 편역, 2010 ≪한서열전≫, 까치, 89쪽 및 343쪽 참조). 漢 왕조에서는 여성의 교환으로 형성된 인척관계망이 後代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

116) 이차적 혼인의 일종인 Levirate는 娶嫂婚·受繼婚 등으로 번역되는데(노태돈, 1983 <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80쪽 주2) 참조), 일부 사회에서는 家長 사후 그 후계자가 아버지의 첩 가운데 生母를 제외한 여성을 물려받는 경우까지 Levirate에 포함시키므로(고병익, 1953 <元代의 法制> ≪歷史學報≫ 3, 33~35쪽) 본고에서는 형제간의 娶嫂婚과 부자간의 受繼婚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117) 노태돈, 위의 논문 및 2004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4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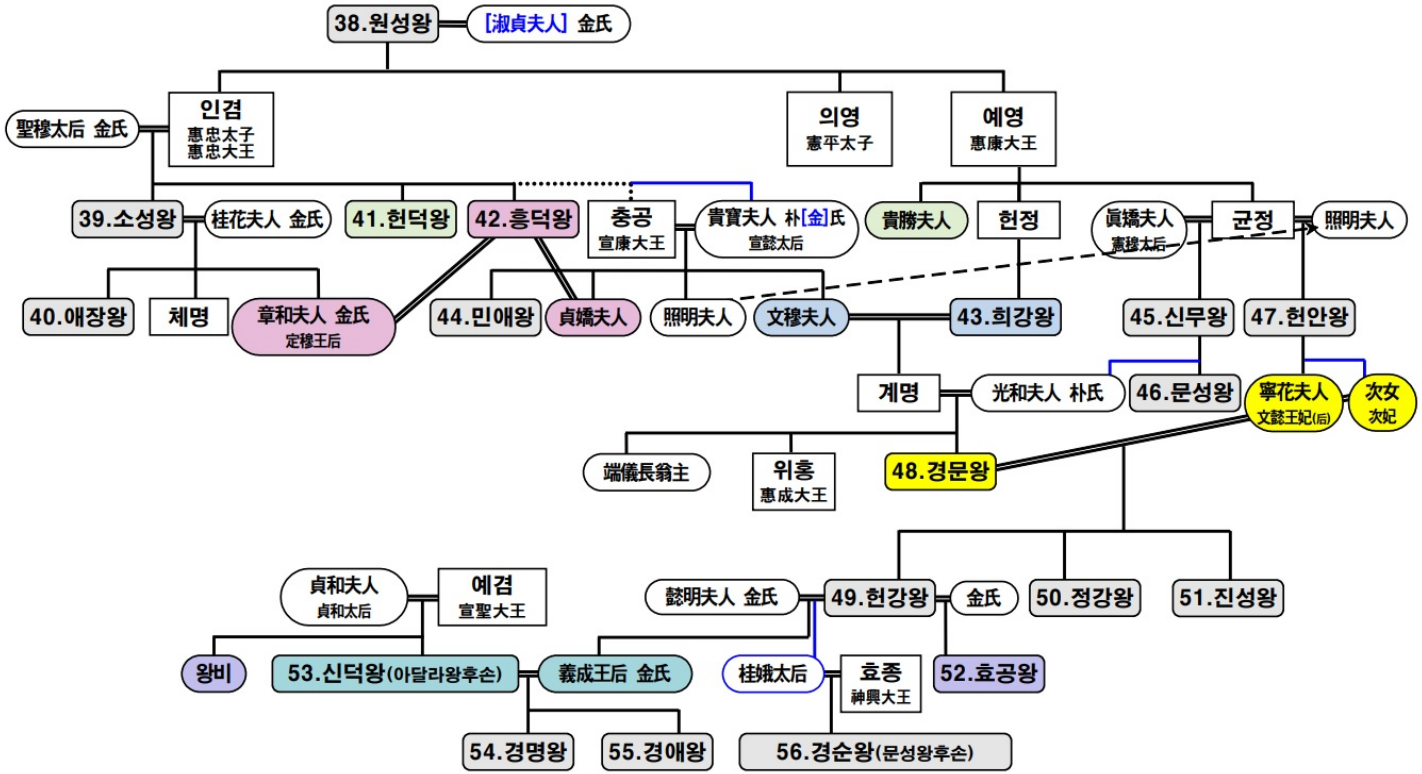

<그림 Ⅰ-3> 신라하대 왕실의 근친혼맥도

로 추정된다.[118] 또한 골품제의 구속력 때문에 后妃의 출신이 제한되어 이복남매가 생산되기 어려웠고, 설령 이복남매가 존재하였더라도 母后의 신분차가 자녀간 신분차를 야기하여 혼인이 성립할 수 없었던 사회체제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조적으로 고려에서는 골품제라는 폐쇄적 신분제가 붕괴된 이후 지배층을 규정하는 요소가 보다 다양해져 后妃를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졌다. 그 결과 각 后妃들이 생산한 이복남매간 신분적 격차가 최소화되어 이들 사이의 혼인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신라를 모방하여 근친혼이라는 방식으로써 왕실의 결속과 재생산을 도모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고대와는 다른 시대로 도약하였다는 사실을 이러한 측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면서도 고려가 철저히 신라 왕실의 문화를 모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신라 下代의 기억을 간직한 지방 세력과 기층민들에게 왕실의 특수성·신성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下代의 신라 왕실은 3~5촌 범위의 근친혼을 累代에 걸쳐 반복하며 순혈의 신성성을 내세웠다. 895년(진성왕 9) 眞聖王이 동모형 憲康王의 庶子를 태자에 책봉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이면서[119] 남다른 骨法을 내세워 태자의 혈통에 대한 세

118) ≪新唐書≫ 卷220, 列傳154 東夷 新羅에서는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이라고 하여 이복남매혼을 제외하고 신라 왕실의 婚俗을 소개하였다. ≪新唐書≫가 신라의 실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上代부터 下代까지의 왕실 혼인사례를 분석한 신인철 역시 신라 왕실의 '금혼범위'가 국왕의 기본가족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신인철, 1995 앞의 책, 319~375쪽).

119) 효공왕(嶢)이 헌강왕의 庶子였다는 기록을 부정하고 진성왕은 어린 왕자가 적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으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헌강왕의 동모제로서 즉위한 정강왕이 嶢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누이 曼(진성왕)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無嗣子"를 이유로 들었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김선주, 2020 <신라 진성왕의 양위 과정과 배경> ≪여성과 역사≫ 32, 203~208쪽). 당시 정강왕은 진성왕에게 총명한 자질과 더불어 대장부와 유사한 骨法이 확인되므로 선덕왕·진덕왕의 古事를 따를 만하다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定康王 2년 5월, "王疾病, 謂侍中俊興曰, '孤之病革矣, 必不復起, 不幸無嗣子, 然妹曼天資明銳, 骨法似丈夫, 卿等宜倣善德真德古事, 立

간의 의혹을 종식시켰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120] 신라 국왕은 순혈만이 갖출 수 있는 특정 유전적 형질을 공공연하게 내세웠으며 이는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정치적 언설로서 여전히 유의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신라의 질서에 반발하여 봉기한 각지의 유력자들 또한 부와 권력의 집중을 위하여 신라 왕실의 문화를 모방하였다는 사실이다. 「高麗世系」에 따르면 金寬毅의 ≪編年通錄≫에는 태조의 선조 寶育이 동모형 伊帝健의 딸 德周와 삼촌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121] 즉, 下代 왕실의 혼인문화는 지배세력의 혈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사회문화적 토대가 동시기 동아시아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던 데 기인한다. 인류학의 결연이론(alliance theory)과 출계이론(descent theory)을 도입하여 한국의 사회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122] 신라와 고려는 복합체계의 총계사회로서[123] 기본체계의 부계친족집단사회인 중국과 대비된다. 기본체계가 특정 친족간 혼인만 규정혼·선호혼으로 여기는 긍정적 혼인규정을 전제로 하는 반면 복합체계는 특정 친족범위 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부정적 혼인규정을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혈연자와 결연자를 동일시하는 친족어휘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복합체계의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전근대 복합체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났

之可也'"). 庶子 孝恭王의 즉위가 신라에서 이례적이었던 이유, 효공왕의 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선주, 2021 <신라 하대 효공왕의 왕위계승과 최치원> ≪신라사학보≫ 51, 142~155쪽 참조.

120)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眞聖王 9년 10월, "立憲康王庶子嶢爲太子. 初憲康王觀獵, 行道傍見一女子, 姿質佳麗. 王心愛之, 命後車載, 到帷宮野合, 即有娠而生子, 及長, 體貌魁傑, 名曰嶢. 眞聖聞之, 喚入内以手撫其背曰, '**孤之兄弟姊妹骨法異於人, 此兒背上兩骨隆起, 眞憲康王之子也**.' 仍命有司, 備禮封崇."

121) ≪고려사≫ 고려세계 참조.

122) 신인철, 1995 앞의 책, 247~253쪽 및 369~371쪽.

123) 위의 책에서는 불어의 filiation indifférencié를 직역한 '미분화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분화출계사회'는 한자어 '未'의 어감 상 분화체계보다 선행하는 사회로 해석되어 향후 분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사의 보편적 발달 과정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고는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cognatic descent와 그 번역어인 總系를 사용할 것이다.

던 婚俗이 바로 근친혼이라는 사실이다. 기본체계에서는 교차사촌혼만이 '사회적 체계'로 작동하지만, 복합체계에서는 근친상간금지의 범위가 좁고 계급내혼적 성향이 높은 사회일수록 삼촌혼·평행사촌혼·교차사촌혼 등 다양한 방식의 근친혼을 선호하게 된다. 신라 왕실과 귀족, 그리고 고려 왕실이 다양한 친족범위의 근친혼을 행한 역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를 거듭하며 협소한 친속관계 내에서만 근친혼을 반복한 결과 고려 왕실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목종의 즉위를 전후하여 고려 왕실은 건국 이후 축적해 온 인척 네트워크를 끌어안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현종을 옹립한 康兆가 왕실의 빈약함을 염려하여 효은태자의 아들 王琳과 王禎을 찾아 宗籍에 복귀시켰다는 일화를 통해 당시 고려 왕실이 봉착한 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124]

그러나 왕림과 왕정은 祖宗苗裔로서 復籍되었을 뿐 왕실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왕림은 1031년(현종 22) 檢校右僕射 羅州牧使에 임명된 뒤 관료의 삶을 영위하다 尙書左僕射로 사망하였고, 동모제 왕정 또한 太子詹事 上輕車都尉로 사환되었다.[125] 특히 왕림은 나주목사를 역임하는 동안 전라도 일대에 기반을 마련하고, 南原의 望族 출신인 梁能讓을 사위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는 현종~문종대를 거치며 개경 고위 관료층의 문벌화가 진행되었는데, 왕림이 이들의 통혼망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 것을 볼 때 태조의 손자였음에도 그의 家格은 當代 문벌에 미치지 못하였던 듯하다.[126] 왕실

124)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효은태자.

125)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2년 5월 정묘, "以王琳檢校右僕射羅州牧使";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효은태자, "琳尙書左僕射卒, 禎太子詹事上輕車都尉, 顯宗三年卒, 諡溫潔, 贈工部尙書."

126) ≪訥齋集≫ 卷5, 雜著 「世寶失傳記」(梁誠之), "先祖兵部侍郎, 娶高麗左僕射王琳之女."; ≪訥齋集≫ 권6, 「南原梁氏族譜序」(李淑瑊), "南原古帶方國也. 土之姓有九, 曰梁,鄭,晉,尹,楊,黃,李,林,宋也, 而梁最爲望族. 高麗時, 有曰能讓, 娶宗室左僕射王琳之女, 任本府爲兵部郎中, 是鄕職也." 「南原梁氏族譜序」의 저자 李淑瑊이 王琳을 '宗室'로 명명하였으나, 이는 조선전기 문인들이 공유하던 왕실 관념을 대

의 중첩된 친속관계망으로부터 소외된 왕림과 왕정은 고려의 중앙 지배층사회에서 태조의 '庶孫'으로 분류되어[127] 적통의 계승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128]

현종은 태조의 前轍을 따라 새로운 인척관계망을 개척하고 왕실의 번성을 기도하였다. 원정왕후와 원화왕후에게서 자녀들을 보았음에도[129] 왕실 외부에서 여러 后妃를 맞이하였다. 이후 이복남매들이 출생하자 현종은 이전의 극단적 근친혼을 반복하였다. 왕실의 이복남매혼이 부정되기까지는 반세기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1086년(선종 3) 동모제 積慶宮主와 異母弟 扶餘侯 遂를 혼인시키고자 한 宣宗이 동모제와 異母弟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난 이후에야 왕녀를 이복형제가 아닌 여타 왕실 남성에게 下嫁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변하는 용어에 불과하다. 왕림 생전 當代人들이 그를 왕실 구성원으로 인정하였는가는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訥齋集≫의 편찬 주체인 梁誠之 가문을 현창하고자 李淑瑊이 고의로 고려 왕실과의 관련성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27)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문대왕 3년 3월, "太子詹事禎卒, 太祖庶孫也, (후략)."

128) 김기덕이 확보한 ≪高麗聖源錄≫에는 효은태자의 동모형인 孝穆太子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庾方의 夫人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氏族原流≫에는 庾方夫人이 효은태자의 딸로 등장한다(김기덕, 2002 <고려시대 왕실 선원록의 복원 시도: 『고려성원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3, 151~153쪽). 이 자료를 토대로 김기덕은 왕녀 외의 종녀들이 他姓과 혼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종녀의 지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조모 동양원부인의 가문에서 배우자를 찾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庾方夫人을 효목태자의 딸로 보든 효은태자의 딸로 보든 동양원부인의 아들과 손자녀들이 광종대 역모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효목태자의 유일한 아들이 출가한 것은 東陽君으로 통칭되는 인물들에 대한 세속의 위협 때문이었을 것이다. 庾方夫人과 동일한 혈통을 지닌 왕림·왕정이 끝내 왕실로 편입되지 못한 것처럼 庾方夫人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129)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문대왕 2년 1월 신사일 기사에서는 제2차 거란침입으로 현종이 몽진할 때 원정왕후(玄德王后)가 임신 중이었음을, ≪고려사≫ 후비전과 공주전에서는 원화왕후가 孝靖公主와 天壽殿主를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화왕후는 1016년(현종 7) 元成太后 金氏가 德宗을 출산한 다음 달 왕자 秀를 낳기도 하였다(≪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7년 6월 경진, "王子生於恒春殿, 賜名秀";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원화왕후최씨, "元和王后崔氏, 亦成宗之女, 生孝靜公主·天壽殿主, 初稱恒春殿王妃"). 다만 원정왕후와 원화왕후의 소생은 모두 단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왕녀의 혼인이 문제된 것은 왕자와 마찬가지로 왕녀가 王統을 계승하는 하나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의 사회문화적 토대에서 아들과 딸의 권리는 동등하다고 인식되었다. 고려는 前朝 신라에서 上代부터 下代에 이르기까지 사위의 왕위계승권이 꾸준히 공인되었던 역사 또한 알고 있었다.[130] 이에 초기 고려 왕실에서는 同母 관계가 아닌 왕자와 왕녀의 혼인을 선호하였다. 왕위계승권에 근접한 왕실 남성들 가운데 사위를 선택하여 그가 왕녀의 王統을 중복 계승하도록 만들었고, 이로써 왕녀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왕위계승후보자들의 혈통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한 선종이 또 다른 동모제 保寧宮主를 사촌혼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왕녀의 혼인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고려초 왕실혼 문화는 이후 세대에 깊은 영향을 미쳐, 봉작제 성립 이후 여성을 봉작의 매개로 삼는 端初를 제공하였다.

2. 太祖~穆宗代 왕실의 공식 칭호와 편제

1) '大王'·'太子' 추증제도의 시행

고려초 왕실 編制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료는 현전하지 않는다. ≪고려사≫ 百官志 宗室諸君條에 "國初에 종친은 院君과 大君을 칭하였다가 현종 이후 公·侯에 봉하고 아래에 있는 자[下者]를 元尹·正尹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131] 이것은 조선전기 ≪고려사≫ 찬자들이 附記한 서문일 뿐 고려초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개별 인물들의 實例를 통하여 고려초 왕

130) 이재환, 2015 앞의 박사학위논문, 74~93쪽.
131)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종실제군, "國初, 宗親稱院君大君, 顯宗以後封公侯, 下者爲元尹·正尹 (하략)."

실 편제 문제에 접근하였다. 종실전의 입전항목명과 當代 자료인 금석문에서 왕실 일원에 대한 칭호를 추출하였고, 특히 입전항목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초 宗室 칭호가 君과 太子로 大別되었다고 보았다.[132]

君은 當代 금석문에 등장할 뿐 아니라 고려말부터 조선시대까지도 종실에 대한 공식 칭호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연구자들의 관심은 태자칭호로 집중되었다. 종실전에 복수의 태조 왕자 및 왕손들이 '○○태자'로 등재된 현상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선 입전항목명의 '태자'가 '왕위계승권자', 즉 嗣位가 예정된 인물이라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창겸은 신라의 태자제가 고려로 전래되었기 때문에 건국 직후에는 왕위계승권자를 태자로 명명하였으나 광종대 이후 皇帝를 칭하며 일반 왕자의 칭호를 태자로 격상하고 왕위계승권자의 법제적 칭호를 正胤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종실전에 복수의 태자가 등재된 것은 광종대 개정된 칭호가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133] 김선미는 태조 재위기부터 태자는 태조 자손들에 대한 범칭이면서 작위와 같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조는 본래 왕위계승권자를 뜻하던 태자칭호를 복수의 자손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불교용어에서 태자가 여러 왕자들을 의미하였던 것 또한 태조에게 영향을 미쳤다.[134] 두 연구자는 태자칭호의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고려초 '태자'가 의미 변환되었으며 태조 왕자 및 왕손들의 생전 공식 칭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서 의견을 같

132) 변태섭, 1982 ≪「高麗史」의 硏究≫, 삼영사, 103쪽; 김기덕, 1998 앞의 책, 25~52쪽.

133) 김창겸, 1993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한국상고사학보≫ 13, 171~174쪽. 이 논문에 앞서 변태섭이 고려초 태자가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바 있으나(변태섭, 1982 ≪「高麗史」의 硏究≫, 삼영사, 103쪽), 이는 의도성을 갖는 주장이라기보다 종실전에 대한 분석 결과였다. '태자'의 記意가 달라졌다는 설은 김창겸의 논문에서 비로소 쟁점화 되고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

134) 김선미, 2011 <高麗前期 王位繼承과 太子 冊封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9쪽.

이 하였다.

다음으로 입전항목명의 '태자'가 '왕위계승권자'를 含意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호족연합정권설을 수용한 김기덕은 호족과 연결된 태조 后妃들이 자기 소생이 왕위계승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저마다' 태자칭호를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광종대 호족억제 및 왕권강화를 계기로 태자보다 상위의 '王太子'칭호를 설정하여 단수의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게 되었으며, 점차 종실들의 태자칭호 사용을 금지하고 "地名을 관하여 봉해주는 封君制"로 왕실을 재편해나갔다고 설명하였다.[135]

왕권이 미약하였다는 가정 하에, 태조 왕자들이 왕위계승권자가 되길 기대하며 '○○태자'를 자칭하였다고 이해한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동일 后妃의 소생 안에서 군칭호와 태자칭호가 병용되었던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태조비 정덕왕후의 왕자로는 王位君·仁愛君·元莊太子·助伊君이, 성무부인의 왕자로는 孝悌太子·孝明太子·法登君·資利君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두 后妃가 왕자들마다 군칭호와 태자칭호를 차별적으로 사용한 까닭이 해명되지 않는다. 둘째, '○○태자'의 첫 번째 글자를 보면 대체로 元·孝가 사용되어 돌림자 성격을 보이므로 后妃들이 '저마다' 사용한 칭호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 시기 국왕 또는 조정에서 추인하여 '○○태자'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36] 셋째, 921년(태조 4)부터 왕위계승권자를 正胤으로 책봉하기 시작하였고 태조의 왕자 대다수가 그 이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后妃들이 굳이 태자라는 칭호에 집착하며 왕위계승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넷째, 태자칭호를 가졌던 인물들의 세력 기반이 균질하지 않다. 혜종이 왕

135) 김기덕, 1986 논문 및 1998 앞의 책, 31~41쪽 및 47~52쪽 참조.

136) 김창겸, 1993 앞의 논문, 183쪽 주79)에서도 태자의 名號에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현상이 확인되기 때문에 태자칭호는 특정 시기 일률적으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김창겸은 광종이 황제를 표방하며 태조의 男孫들을 태자로 책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위계승권자로 공인된 이후에도 태조의 왕자들이 외가인 호족의 비호하에 제각각 태자칭호를 자칭한 것이라면, 유력 호족의 외손은 반드시 태자칭호를 사용한 반면 미약한 세력 기반의 외손은 태자칭호를 사용하지 못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헌목대부인 평씨나 천안부원부인 임씨와 같이 호족적 기반이 약한 后妃들의 소생 또한 종실전에 태자로 입전되어 있다. 오히려 유력 호족의 외손이었던 정종과 광종, 대종은 성년에 나이에 이르러서도 태자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當代 금석문을 통하여 확인된다.

전술한 네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태조 왕자 및 왕손의 태자칭호에는 왕위계승권자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실전에 등재된 '○○태자'를 生前의 공식 칭호 또는 작위로 볼 수도 없다. 封爵制 하에서 公·侯·伯으로 왕실을 편제한 것과 같이 고려초에 군과 태자칭호로 왕실을 이원적 편제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적' 영역에서 왕자와 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까지 왕위계승권자를 제외한 일반 왕자·왕손을 '태자'로 명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태자'라는 고유명사는 왕실 일원으로서 특권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았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국왕이 死後 추증한 諡號일 가능성이 높다.[137]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초 금석문에서 태조의 왕자와 왕손들을 '○○태자'로 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현전하는 금석문의 숫자가 적어 충분한

137) 김아네스, 2019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및 현종민, 2021 <고려 초기 正胤과 太子 검토> ≪서강인문논총≫ 62에서도 고려초 태자 가운데 정윤을 제외한 16명의 인물은 사후 추증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특히 현종민의 연구에서는 태자 추증제도의 시행 시점과 그 의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다만 현종민은 태자를 시호로 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자를 생전의 공식칭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현종민, 위의 논문, 145쪽 주24) 참조). 태자 추증제도를 시행한 의도 또한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고와 차이가 있다.

<표 Ⅰ-3> 태조 왕자의 입전항목명

<table>
<tr><th colspan="3">군칭호</th><th colspan="3">태자칭호</th></tr>
<tr><th>造名法</th><th>입전항목명</th><th>모후명</th><th>입전항목명</th><th>별칭</th><th>모후명</th></tr>
<tr><td rowspan="5">궁원명
+君</td><td>義城府院大君</td><td>의성부
원부인</td><td colspan="2">太子 泰</td><td>신명순성
왕태후</td></tr>
<tr><td rowspan="4">廣州院君</td><td rowspan="4">소광주
원부인</td><td>孝穆太子 義
孝隱太子</td><td>東陽君</td><td>동양원부인</td></tr>
<tr><td colspan="2">太子 稷</td><td>흥복원부인</td></tr>
<tr><td>元寧太子</td><td>鎭州
郞君</td><td>숙목부인</td></tr>
<tr><td colspan="2">元莊太子</td><td>정덕왕후</td></tr>
<tr><td rowspan="6">토속어
+君</td><td>王位君
仁愛君
助伊君</td><td>정덕왕후</td><td colspan="2">孝悌太子
孝明太子</td><td>성무부인</td></tr>
<tr><td rowspan="3">法登君
資利君
(資利, 方言季子)</td><td rowspan="3">성무부인</td><td>孝成太子 珠琳
孝祗太子</td><td>天安府
院郞君</td><td>천안부원
부인</td></tr>
<tr><td colspan="2">壽命太子</td><td>헌목대부인</td></tr>
</table>

사례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만약 정말 태자가 후대의 鷄林君·平壤公과 같은 공식 칭호 혹은 작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 최소한 태조 왕자들이 살아있을 때 조성된 금석문에서는 각 왕자들이 '○○태자'로 등장해야 한다. 하지만 944년(天福9, 甲辰; 혜종 1) 정종과 광종이 주도하여 건립한 「興寧寺 澄曉大師塔碑」에 두 왕자는 각각 '王堯君'과 '王照君'으로, 950년(光德2, 庚戌; 광종 1) 건립한 「大安寺廣慈大師碑」에 대종은 '黃州院王旭郞君'으로 기록되었을 뿐이다.[138] 각 비가 건립될 당시 왕요와 왕소, 王旭은 모두 20대 초중반에 이르러 일반적인 봉작 연령을 훨씬 상회하였다.

둘째, 군칭호와 태자칭호의 造名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군은 모

138)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https://portal.nrich.go.kr/)의 허흥식 판독문 참조.

후의 宮院名 또는 왕자들의 본명으로 추정되는 토속어와 결합된 반면 태자는 敬章·元莊과 같은 지극히 중국적인 漢語와 결합되었다. 두 칭호가 계통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태자'에 사용된 한어가 시호로 자주 활용되었던 글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9]

태자에 책봉된 바 없는 황자들을 '○○태자'로 추증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형제들과의 우애가 지극하였다고 전해지는 唐 玄宗은 형 申王 李成義를 惠莊太子로, 동생 岐王 李隆範과 薛王 李隆業을 각각 惠文太子와 惠宣太子로 추증하였다. 현종은 父皇 睿宗의 적장자였음에도 황태자 자리를 자신에게 양보한 異母兄 寧王 李成器에게 讓皇帝라는 시호를 내리기도 하였다.[140] 이는 단순히 지극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종의 형제 가문에 보다 높은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는 조처였다. 唐의 封爵制에 따르면, 황자가 사망할 시 嫡長의 후계자 한 명만 嗣王으로서 작위를 계승하고 일반 황손들은 郡公에 봉작되었던 반면 황태자의 아들들에게는 郡公보다 상위의 郡王 작위가 주어졌다.[141] 이러한 원칙에 따라 讓皇帝·惠宣太子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태자 추증을 계기로 대거 군왕에 책봉되었다.[142]

唐 현종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황자들에게도 태자 시호를 내렸다. 장자이지만 어떠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황태자에 책봉되지 못한 李嗣直을 靖德太子로, 그 동모제인 李嗣玄을 靖恭太子로 추증하였

---

139) 이민홍 편역, 2005 ≪諡法: 諡號, 한 글자에 담긴 인물評≫, 문자향.

140) ≪舊唐書≫ 卷95, 列傳45 睿宗諸子. 淸初 역사가 趙翼의 ≪二十二史箚記≫에서도 唐代 태자 추증의 禮가 남발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趙翼 저, 박한규 역, 2009 ≪二十二史箚記≫ 4, 소명출판, 255~260쪽).

141)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唐代의 封爵과 食封制> ≪역사와 교육≫ 10, 306~314쪽.

142) 唐 현종은 형제와 조카들을 극진히 우대한 대신 皇親을 재상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여 정계에서 배제하였다. 開元 연간 형제들을 刺史로 삼아 지방에 파견하였으나 이는 황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앙 정계로부터 이격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 통치의 보조자로 쓰기 위한 조처였다(김명희, 2003 <唐 玄宗의 治世에 관한 一考: 開元年間을 중심으로> ≪전남사학≫ 21, 155~156쪽 참조). 고려가 건국 이후 종친불사 원칙을 확립한 데에는 開元之治를 이상적으로 보던 지배층의 시각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Ⅰ-4> 唐 睿宗 皇子 일람표

	封號	諡號	이름	비고	
1	寧王	讓皇帝	李成器 (→李憲)		10子
2	申王	惠莊 太子	李成義 (→李撝)		無嗣 養·嗣子:讓皇帝의 子
3	皇太子→玄宗		李隆基		
4	岐王	惠文 太子	李隆範 (→李範)		1子(早卒) 嗣子: 惠宣太子의 子
5	薛王	惠宣 太子	李隆業 (→李業)		11子
6	汝南郡王	隋王	李隆悌	早卒	無嗣

다고 전해진다.[143] 현종의 행보는 후대 황제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父皇 현종이 형을 讓皇帝로 추증한 전례를 좇아 肅宗은 즉위 다음 해 異母兄 정덕태자를 奉天皇帝로 추증하였으며, 현종의 손자였던 代宗은 모함으로 죽은 異母弟 李倓을 承天皇帝로, 요절한 자신의 황자 李邈을 昭靖太子로 추증하였다.[144]

흥미로운 것은 <표 Ⅰ-3>에 정리된 태조 왕자들의 입전항목명과 唐 예종 및 현종 황자들의 시호 사이에 상관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예종 황자들의 시호는 모두 '惠'라는 앞글자를 공유하였으며 현종 황자들의 경우는 '靖'이라는 앞글자를 공유하였다. 태조 왕자들의 입전항목명에서 元과 孝가 일종의 돌림자였던 것과 유사하다. 한편 唐 현종은 성년의 나이에 이르기도 전에 사망한 汝南郡王 李隆悌를 태자보다 한 등급 아래인 親王으로 추증하는 데 그쳤는데, 이로부터 일부 태조 왕자들이 ≪고려사≫ 종실전에 '토속어+君'으로 입전된 연유를 추론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唐 汝南郡王과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유

143) ≪舊唐書≫ 卷107, 列傳57 玄宗諸子.
144) ≪新唐書≫ 卷82, 列傳71 代宗諸子.

년기 요절한 왕자들을 대상으로 '○○태자'라는 시호를 내리지 않았다. '토속어+君' 형식의 칭호를 갖는 태조 왕자들에게 공통적으로 '無嗣' 기록이 확인되고 法登君과 資利君의 경우 '早卒'이라는 死因까지 명시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못하고 요절하였던 것이 확실시된다.

<표 Ⅰ-3>에서는 의성부원대군과 광주원군의 사례를 통하여 '궁원명+君' 형식의 칭호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왕자가 '○○태자'로 입전되지 않은 이유는 구별해야 한다. 의성부원대군의 경우 시호 관련 기록이 유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동양원부인의 왕자들이 동양군, 천안부원부인의 왕자들이 천안부원낭군, 진주 출신 숙목부인의 왕자가 진주낭군이란 별칭을 가졌던 것을 종합할 때, 태조 왕자들의 생전 칭호는 '母后의 궁원명'과 '君'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의성부원대군은 정덕왕후의 막내 왕녀와 혼인하여 태조 자녀세대 근친혼 관계망의 핵심부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왕실 내에서 위상이 결코 낮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어떠한 연유로 시호 관련 기록이 유실되어 생전의 칭호만 등재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광주원군은 외조 왕규가 일으킨 난으로 인하여 혜종·정종·광종 모두에게 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왕실에서 배제되었다. 역대 국왕의 역적이었던 광주원군에게 예우 차원에서 추증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145]

---

145) 광주원군과 달리 동양원부인의 왕자들은 역모에 연루되었음에도 태자로 추증되었다. 정용숙은 정종과 광종의 조력자였던 박수경 가문이 광종 치세 후반에 참소를 당하여 피해를 본 것처럼 동양원부인의 가문 또한 광종 치세 전반까지 협조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정용숙, 1988 앞의 책, 93~94쪽), 본고 또한 정용숙의 의견에 동의한다. 천안부원낭군과 진주낭군이 '오히려' 광종에게 용인되어 왕실의 번병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최승로의 평에서는 두 왕자와 정반대의 사례가 있었다는 행간이 읽힌다. 정반대의 사례란 동양군의 사례를 의미할 것이다. 광종의 비호하에 권세를 누리던 동양군은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며 광종의 심기를 거슬려 賜死된 것으로 보인다. 경종 즉위 후 광종대 희생당한 인물들을 伸冤하는 과정에서 동양군의 지위가 복권되었을 가능성 또는 현종대 왕림과 왕정을 宗籍에 복귀시키며 동양군을 복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보면 ≪고려사≫ 종실전에 복수의 태자칭호가 등재된 특징적 현상은 동아시아의 典範인 唐制를 고려가 수용 및 재해석하던 과정에서 산출된 것이었다. ≪高麗圖經≫에 따르면 고려인은 자신들의 제도가 당의 開元之治를 모방하였다는 자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146] 당 현종의 우애 또한 고려중기에 이르기까지 국왕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행적으로 회자되었다.[147] 즉, 고려초 어느 시점에 이르러 고려 국왕과 조정은 이미 사망한 왕실 일원들까지 일원적으로 편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盛唐의 典故를 참고하였던 것이다.

고려에서 태조 왕자와 왕손에 대한 대대적 추숭이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일까. 太廟의 역사가 대변하듯 왕실 編制는 살아있는 인물뿐 아니라 사망한 인물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 왕실의 編制가 언제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는가라는 문제로 직결된다. 하지만 고려시대 사료 어디에도 사망한 왕자 또는 왕손을 '○○태자'에 추증하였다는 기사가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종실전 입전항목명의 '大王' 칭호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부여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역대 국왕 또는 역대 국왕의 親父에게 祖·宗의 廟號와 함께 '○○대왕'이라는 시호를 올렸다.[148] 그런데 종실전에는 본인과

---

146) ≪宣和奉使高麗圖經≫ 권7, 冠服 令官服, "(전략) 今其官稱勳秩, 往往竊倣中朝, 或詰其由, 則曰遵用開元故事 (후략)."

147) ≪東人之文四六≫ 권5, 冊文 「冊王弟侁爲大寧侯文(崔惟淸)」, "大被長枕, 內以撫明皇之仁, 綪茷旃旌, 外以崇康叔之寵, 錫之以山川之守, 展之以寶玉之分, 因其舊章, 懋以新渥."

148)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탁본에 '▨▨大王'과 '弼榮大王'이 등장하지만, 태조 왕자 왕요군·왕소군, 왕실 여성으로 보이는 淸端宮主가 擡頭된 반면 두 인물은 대두 없이 백관들과 대등하게 나열되었으므로 왕실 일원으로 보기 어렵다. 탁본의 大王은 고려초 관계인 大匡의 誤記일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에서도 大王을 大匡의 오기로 보고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음기를 분석하였다(이인재, 2008 앞의 논문, 315쪽 주)70 참조).

그 아들 모두 즉위한 적 없음에도 대왕에 추증된 인물이 존재한다. 바로 정종과 광종의 동모제 문원대왕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자들에게 간과되어 왔으나 동일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戴宗으로 널리 알려진 宣慶大王이다.

종실전에 의하면 신정왕태후 소생 王旭은 성종 즉위 후 대종이라는 묘호와 睿聖宣慶太王이라는 시호를 받았다.[149]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종에게 睿聖과 宣慶 두 개의 시호가 상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성종 즉위년의 시호가 加諡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추존왕이었던 安宗과 대종의 사례를 대조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현종은 즉위 후 친부 王郁을 安宗 孝穆大王으로, 친모 헌정왕후를 孝肅王太后로 추증하였다. 즉, 대종은 부인과 더불어 한 차례 추증된 뒤, 성종이 즉위하자 국왕의 친부 자격으로 묘호 및 加諡를 얻었던 것이다. 文元大王妃의 시호가 文惠이고 孝穆大王妃의 시호가 孝肅인 것을 볼 때, 대종은 부인 宣義王后와 함께 宣慶大王에 먼저 추증된 뒤 성종 즉위 후 睿聖이라는 加諡를 추가로 받았던 듯하다.

선경대왕·선의왕후의 추증과 문원대왕·문혜왕후의 추증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연유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후에는 본인 또는 그 아들이 즉위하지 않았음에도 대왕에 추증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례는 고려초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特例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시기는 경종대가 유력하다. 王旭은 969년(광종 20)에 사망하였고 광종의 동모제였던 王貞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한다면 아들세대인 경종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49)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戴宗旭, "光宗二十年卒. 子孝德太子·成宗·敬章太子. **成宗卽位, 追尊睿聖宣慶太王, 廟號戴宗, 卽故葬號泰陵, 祔享太廟**. 穆宗五年, 加號和簡. 顯宗五年加恭愼, 十八年又加顯獻"; ≪고려사절요≫ 권2, 景宗獻和大王 6년(성종 즉위) 11월, "冬十一月. **追尊先考, 爲宣慶大王, 廟號戴宗, 陵曰泰陵.** 遂謁陵". ≪고려사≫와 달리 ≪고려사절요≫에는 성종 즉위년 대종에게 선경대왕이란 시호만 상정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고려사≫ 종실전에 泰陵의 지리정보('故葬')나 후대의 加諡 등 보다 상세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볼 때 ≪고려사절요≫ 기록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근친혼을 한 태조의 왕자와 왕녀들 가운데 王旭과 王貞만 특별대우를 받은 연유는 두 사람이 경종과 동일한 친속관계에 있었다는 데 있다. 王旭은 경종 모후 대목왕후의 동모제, 왕정은 광종의 동모제였으며, 동시에 경종의 妻父였다.[150] 父側과 母側에 대한 情義가 동일하고 처가와의 관계가 돈독하였던 고려인의 관점에서 王旭과 왕정은 경종에게 친부와 같은 각별한 존재였다. 三寸叔이자 처부라는 점에서 그 위상 또한 동일하였다. 따라서 왕정 부부를 문원대왕으로 추증할 때 王旭에 대한 추증도 동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51]

'○○대왕'은 '○○태자'보다 높은 위상을 갖는다. 즉, 시호로서의 '대왕'칭호는 '태자'칭호를 전제로 성립하였다. 태조 왕자와 왕손들에 대한 추증이 진행되던 시기, 국왕은 '태자'보다 상위의 '대왕'을 설정하여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盛唐의 사례에서도 '○○태자'에 추증된 일부 황자들이 다시 '황제'로 추증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원대왕과 선경대왕이 경종과의 친속관계를 기반으로 상정된 시호라면, '○○태자'로 추증하는 조처 또한 경종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태조 왕자들은 광종 말년부터 경종초 대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는 광종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경종초 복수정국에서 사망하였다. 당시는 태조 손자녀세대가 성년으로 접어들던 시기이므로 태조 자녀들이 노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종대에는 작고한 왕실 인물들

150) 王旭의 두 딸은 헌애왕후와 헌정왕후, 왕정의 딸은 獻懿王后로, 모두 경종의 后妃였다.

151) 976년(경종1) 경종은 외조모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궁원을 黃州院에서 明福宮으로 격상시켰다. 그녀는 983년(성종2) 사망 시 明福宮大夫人으로 정식 호칭되었는데(≪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원년 6월 庚申; 권3, 세가3 성종 2년 7월 壬戌),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신정왕태후 황보씨에 대한 예우가 외손 경종에 의하여 시작되어 친손 성종이 즉위한 후까지 유지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정왕태후 황보씨에 대한 예우는 그녀의 아들 대종에 대한 추증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을 예우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종은 중국의 예제를 참조하여 '태자'와 '대왕' 칭호를 통해 태조 자녀들이 갖는 혈통적 우위를 가시화하였고, 뒤이어 즉위한 성종과 목종 또한 경종의 전례를 좇아 동일한 칭호를 상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사료의 유실로 일부 인물들의 시호는 전해지지 않지만,[152] 유년기 사망하거나 정변으로 축출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고려초 왕실 남성들은 대체로 '태자' 또는 '대왕'으로 추증되었을 것이다.

2) 왕실 남성의 '正胤'·'君' 편제와 변화 모색

많은 연구자들이 종실전 입전항목명의 '태자'를 생전의 칭호 혹은 일종의 작위로 인식한 근본적 원인은 고려초 왕위계승권자의 공식칭호가 正胤이었던 데 있다. 역사적으로 태자를 지칭하는 古語로는 副君·儲君·儲貳 등이 있다. 조합된 한자의 語義에 드러나듯 군주의 바로 아래, 즉 왕조의 2인자라는 태자의 지위를 형용한 용어로서 고려시대 이전 중국 왕조의 사서나 경전에서 그 용례가 확인된다.[153] 이 가운데 부군은 신라 하대에 이미 왕위계승권자인 興德王의 공식칭호로 사용된 바 있다.[154] 반면 정윤은 적통·정통후계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왕위계승권자의 공식칭호로 사용된 前例를 고려 외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155]

---

152) 太子 泰, 太子 稷, 太子 濟와 같이 시호 가운데 태자칭호만 남은 경우가 있고, 의성부원대군·흥화궁군·경춘원군·천추전군·흥방궁대군·홍덕원군과 같이 시호 전체를 유실한 경우도 있다. 홍덕원군은 목종비 宣正王后의 친부이자 광종의 사위였기 때문에 '○○대왕'에 추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53) ≪舊唐書≫ 卷95, 列傳45 睿宗諸子 讓皇帝, "唐隆元年, 進封宋王. 其月, 睿宗踐祚. 拜左衛大將軍. 時將建儲貳, 以成器嫡長, 而玄宗有討平韋氏之功, 意久不定 (중략) 睿宗不許, 乃下制曰, '左衛大將軍**宋王成器, 朕之元子, 當踐副君**, 以隆基有社稷大功, 人神僉屬, 由是朕前懇讓, 言在必行 (하략)'"; ≪白虎通≫ 卷3, 京師, "**儲君, 嗣主也**"; ≪抱朴子≫ 內篇, 釋帶, "昔子晉舍視膳之役, **棄儲貳之重**, 而靈王不責之以不孝."

154) 김창겸, 1993 앞의 논문; 손흥호, 2016 앞의 논문; 홍승우, 2018 앞의 논문; 이재환, 2020 <고대 동아시아의 東宮과 신라 東宮> ≪한국고대사연구≫ 100.

<표 Ⅰ-5> 고려초 왕위계승권자 지칭 사례

인물	칭호	시기	기사	출전
惠宗	正胤	921년 (태조 4)	①冊子武爲正胤, 正胤卽太子.	≪고려사≫ 권1 ≪고려사절요≫ 권1
		932년 (태조 15)	②親征一牟山城, 遣正胤武, 巡北邊.	≪고려사≫ 권2 ≪고려사절요≫ 권1
		936년 (태조 19)	③先遣正胤武, 將軍述希, 領步騎一萬, 趣天安府.	≪고려사≫ 권2 ≪고려사절요≫ 권1
		기타 ④≪고려사≫ 권2, 혜종 총서, "太祖四年, 立爲正胤" ⑤≪고려사≫ 권88, 后妃 장화왕후오씨, "年七歲, 太祖知有繼統之德 (중략) 述熙揣知其意, 請立爲正胤." ⑥≪고려사≫ 권88, 后妃 의화왕후임씨, "太祖四年十二月, 冊惠宗爲正胤, 以后爲妃" ⑦≪고려사≫ 권92, 열전5 諸臣 朴述熙, "吳以示述熙, 述熙揣知太祖意, 請立惠宗爲正胤, 正胤卽太子也."		
	太子	935년 (태조 18)	⑧於是, 拜金傅爲政丞, 位太子上.	≪고려사≫ 권2 ≪고려사절요≫ 권1
		943년 (태조 26)	⑨王曰, "(중략) 卿等並與太子武, 裁決而後聞."	≪고려사≫ 권2
			⑩王曰, "(중략) 卿等並與太子武, 裁決而後聞." (중략) 太子諸王宗室近臣皆擗地哀號, 百官列位於內議省門外. 王規出, 宣遺命曰, "內外庶僚竝聽東宮處分." 於是, 太子卽位, 率群臣擧哀.	≪고려사절요≫ 권1
			⑪太祖臨薨, 托以軍國事曰, "卿扶立太子, 善輔佐." 述熙一如遺命.	≪고려사≫ 권92, 열전5 諸臣 朴述熙
		미상	⑫崔彦撝 (중략) 及太祖開國, 挈家而來, 命爲太子師傅, 委以文翰之任.	≪고려사≫ 권92, 열전5 諸臣 崔彦撝
			⑬翰林院令平章事崔彦撝卒. (중	≪고려사절요≫ 권2

155) 김기덕, 앞의 책, 37쪽.

			략) 及新羅歸附, 太祖命爲太子師.	
	東宮	932년 (태조 15)	⑭王使東宮問疾, 勸令食肉, 凝固辭不食.	≪고려사절요≫ 권1
		935년 (태조 18)	⑮羅王與王鐵等入開京, 王備儀仗, 出郊迎勞, 命東宮與諸宰, 從衛而入.	≪고려사≫ 권2 ≪고려사절요≫ 권1
		943년 (태조 26)	⑯遺命, 內外庶僚並聽東宮處分, 喪葬園陵制度, 依漢魏二文故事, 悉從儉約	≪고려사≫ 권2
			⑰王規出, 宣遺命曰, "內外庶僚竝聽東宮處分." 於是, 太子卽位, 率群臣擧哀.	≪고려사절요≫ 권1
景宗	혼합	965년 (광종 16)	⑱加子伷元服, 立爲王太子內史諸軍事內議令正胤.	≪고려사≫ 권2
	正胤	965년 (광종 16)	⑲加子伷元服, 立爲正胤內史諸軍事內議令.	≪고려사절요≫ 권2
	太子	기타 ⑳≪고려사≫ 권2, 세가2 경종총서, "光宗六年乙卯九月丁巳生, 十六年立爲太子" ㉑≪고려사절요≫ 권2, 광종대성대왕 26년 5월, "太子卽位, 大赦."		
成宗	正胤	981년 (경종 6)	㉒召堂弟開寧君治, 內禪遺詔曰, "(중략) 正胤開寧君治, 國之親賢, 予所友愛, 必能奉祖宗之大業."	≪고려사≫ 권2 ≪고려사절요≫ 권2

<표 Ⅰ-5>는 고려초 사료에서 왕위계승권자에 대한 지칭을 추출·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은 사례가 검출된 인물은 혜종으로, 정윤(①~⑦)·태자(⑧~⑬)·동궁(⑭~⑰)으로 지칭된 사례가 다채롭게 확인된다. 태자책봉 이후 국왕으로 즉위하기까지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있었던 데다가 후삼국 통일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태자로서 수행한 업무가 많았으므로 그만큼 많은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태조가 혜종을 왕위계승권자로 지목하고 정윤에 책봉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광종대 왕위계승권자의 법제적 칭호를 정윤으로 정한 후 고려초까지 소급하여 공식 기록의 태자칭호를 改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156] 그러나 <표 Ⅰ-5>의 ①~⑦이 보여주듯 혜종의 태자 책봉 관련 후일담에서 일괄적으로 태자를 '정윤'으로 기술한 점, 혜종이 왕위계승권자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 지위를 '정윤'으로 기술한 점, ⑧~⑰과 같이 혜종을 태자 또는 동궁으로 지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윤은 태조 當代부터 통용된 공식칭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책봉 절차 관련 기사에서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동일하게 정윤칭호를 고집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당시 책봉문에 明記한 공식칭호가 정윤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157]

태조 재위기부터 정윤은 태자·동궁과 통용되었다. ⑫와 ⑬에서는 태조가 태자의 존재를 전제로 太子師·太子師傅와 같은 관직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의 遺命을 수록한 ⑨~⑪, 王規의 발언을 수록한 ⑯~⑰은 각각 출전과 문체가 다름에도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칭호를 배치하고 있어 조선전기 史家들이 前代의 사료 원문을 발췌 후 全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태자'의 처결을 따르라는 태조의 유명을 왕규가 백관들에게 선포하며 '동궁'의 처결로 바꾼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158] 즉, 일상적 政務에서 태조는 정윤과 더불어 태자·동궁이란 칭호로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였고, 조정 관료

156) 김창겸, 1993 앞의 논문, 171~175쪽.

157) 기본적으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論語≫의 述而不作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찬수자가 "자기 나름의 문장을 만들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선정·발췌하여 편성하는 작업 위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일면 '사료집'의 성격을 갖고 있다(노명호, 2019 앞의 책, 23쪽, 145~146쪽).

158) 918년(태조 1) 고려 건국 직후부터 東宮食邑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泰封에서 태자의 관속을 지칭하는 용어가 동궁이었고 그 영향이 고려까지 이어졌음은 확실하다. 王儒(朴儒)가 궁예를 모시며 東宮記室이란 직책을 담당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태봉의 태자 관속이 동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6월 乙丑; 권92, 열전5 諸臣 王儒).

들 또한 세 칭호를 통하여 단 한 명의 왕위계승권자를 떠올렸다.

고려초 사람들이 '정윤'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한다. 939년(己亥; 태조 22) 崔彦撝가 찬술한 「毘盧寺 眞空大師普法塔碑」에는 "그러한즉 여섯 대에 걸쳐 開宗하며 거듭 正胤의 법통을 빛나게 하였다[然則六代開宗, 重光正胤]"는 문장이 등장한다.[159] 위 비문에서 '정윤'은 문맥상 禪宗의 宗統을 계승한 유일의 '적통'을 뜻한다. <표 Ⅰ-5>의 ⑫~⑬에서는 최언위가 고려로 귀부한 후 태자사부(태자사)에 임명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는 當代 최고의 문인이었던 최언위를 왕위계승권자인 혜종의 스승으로 삼아 제왕학을 교육함과 동시에 문인계·종교계 등에서 최언위가 미치는 영향력을 혜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조의 명에 따라 최측근에서 혜종을 보필해 왔던 최언위가 태조 생전 작성된 「毘盧寺 眞空大師普法塔碑」의 비문에서는 敎團의 적통을 정윤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세속 왕조의 적통을 대립항으로 설정하였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태조 當代부터 '정윤'에는 강력한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에 널리 통용되었던 태자·동궁·부군·저이 등과 달리 정윤은 왕위계승권자의 지위나 역할보다 그 자격과 본질적 속성을 부각시킨 칭호다. 정치학계에서는 정치체의 영속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구적 장치로서 국왕을 자연적 신체(Body Natural)와 정치적 신체(Body Politic)로 구분하는 논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정교하게 발전해왔음을 주장한다.[160] 必滅의 자연적 신체와 不滅의 정치적 신체가 국왕의 생물학적 죽음을 계기로 분리되며, 후자는 왕위계승권자의 자연적 신체와 결합되어 정치체의 영속성을 담보하게 된다는 논리다.

---

159)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https://portal.nrich.go.kr/)의 허흥식 판독문 및 이지관 해석문 참조.

160) Ernst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이러한 국왕의 두 신체(King's two bodies) 이론을 수용한다면 정윤은 정치적 신체의 적자 또는 정치적 신체를 계승할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訓要十條에 반영된 當代人의 언어에서 정치적 신체란 곧 '大統'이었다.[161]

정윤은 고려 태조만이 물려줄 수 있는 정통, 즉 大統의 계승자를 의미하였다. "정윤이 곧 태자"라는 부가 설명이 필요할 만큼 조선전기 史家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낯선 용어를 태조가 왕위계승권자의 공식 칭호로 설정하였던 연유는 건국 이후 고려 왕실이 독자의 이데올로기 권력을 확립해나가던 과정과 연결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태조는 한국 고대 왕조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神物 '龍'을 전면에 내세워 고려 왕실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신성화하였다. '정윤'의 등장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는 神聖이나 天孫의 혈통을 내세우는 '고대적 군주론'과 天命·人心 담론을 전제한 유교적 聖人君主論이 혼재하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정란에 따르면 태조는 왕권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찾으면서도 국초부터 龍孫意識을 확립하여 초월적 존재에 가탁해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162] 조모 元昌王后를 龍王의 딸로 선전한 결과 태조는 '용'으로 신격화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세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龍孫으로 인식되었다. 정윤은 다음 사료에 따르면 세속의 龍孫 가운데 태조와 같은 초월적 존재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자손을 의미하였다.

---

16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 "其三曰,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

162) 이정란, 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韓國史學報≫ 55, 9~17쪽. 이정란은 고려세계에서 확인되는 왕실 신성화 방식이 고대사회와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조의 신이한 탄생 과정과 행적을 포괄해야만 완결성을 갖추었던 고대 시조설화와 달리 고려세계의 설화는 혼인을 통하여 여성의 神聖을 수혈 받는 혼인담에 그쳤다고 한다.

[A-8] 왕후는 일찍이 **포구의 용이 복중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난 뒤 부모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조가 水軍將軍으로서 羅州에 出鎭하였다. (중략)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분이 惠宗이다.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으므로 세상에서 襁主라고 일컬었다. **항상 물을 잠자리에 부어두었고, 또한 큰 병에 물을 담아 팔뚝을 씻으면서 싫증내지 않았으니, 진정 용의 아들이었다[眞龍子也]. 7세가 되자 太祖는 (혜종에게) 大統을 계승할 만한 德이 있음을 알았으나** 母后가 한미하여 嗣位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163]

[A-8]은 혜종이 嗣位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설화에 접목시켜 전하고 있다. 표면상 태조가 혜종을 왕위계승권자로 선정한 것은 그에게서 大統을 계승할 만한 덕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설화로 粉飾된 전반부 서술에 따르면, 大統은 곧 용의 神聖이었다. [A-8]만 놓고 본다면 태몽부터 출생 이후의 행적에 이르기까지 혜종은 용의 습성을 연상시키는 비범성을 보였다. "眞龍子也"라는 문장에 드러나듯 혜종은 태조의 비범한 면모를 그대로 재현하며 신망을 얻었고, 이에 태조는 母家 세력과 같은 외부 요인을 차치하고 혜종을 왕위계승권자로 삼았다.

태조와 그의 지지자들은 초월적 존재인 '용'으로 태조를 신격화하고 그 계승자에게 '정윤'이라는 차별화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구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하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었다. 다수의 民에게 새로운 통치자를 각인시킬 때 천명·대통과 같은 고차원적인 개념보다는 '용'이라는 구체적 이미지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궁예 말년 세간에 용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도참이 떠돌자 태봉의 문인들이 용의 아들은 곧 王侍中(왕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왕건을 보호하고자 도참에 대한 거짓 해석을 궁예에게 바쳤다는 일화에서 드러나듯,[164] 용은 태조가 즉위하기 전부터 민간에서 새

163)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태조 莊和王后 吳氏.

시대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神物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태조와 그의 지지자들은 용의 이미지를 선점하여 태조만 용의 神聖을 보유하고 계승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널리 유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예언 속의 용이 궁예의 虐政으로부터 民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하자 태조와 지지자들은 民心을 기반으로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표 Ⅰ-5>에 따르면 936년(태조 19) 이전까지는 왕위계승권자를 정윤으로 일관되게 서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民을 대상으로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납득시켜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신라·후백제와 경쟁하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고려에서는 왕실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신성화 작업이 활발하였을 것이다. [A-8]의 설화도 이 시기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921년(태조 4) 혜종을 정윤에 책봉한 태조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태조는 유력 가문 출신의 태자비를 간택하여 혜종의 배후 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A-8]과 같은 설화를 활용하여 용의 神聖이 태조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윤 혜종을 통해 세속에 재림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⑱~㉒에서 확인되듯 정윤칭호는 후삼국 통일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고려가 한반도의 유일한 왕조가 되었기 때문에 건국초와 같이 왕실을 적극적으로 신성화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태조대의 유산인 정윤칭호는 여전히 통용되었다. 태조의 成憲(聖訓)에 대한 존중에서 고려 왕실이 정윤칭호를 유지하였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정윤칭호의 위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⑱에서는 경종의 태자책봉호에 '왕태자'와 '정윤'이 병기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왕태자는 고려가 중국의 '황태자' 칭호를 의식하여 조정한 칭호다.[165]

16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총서 貞明四年 三月.

165)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등의 문집에서 '왕태자' 칭호가 등장하는 표전문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려 明宗代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東文選≫

경종을 '왕태자·정윤'으로 책봉한 조처는 광종대의 중앙관제 개편 및 全方位 외교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唐宋 제도가 성종대 도입되었다고 본 전통적 입장과 달리[166] 광종 이래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한 최근 연구 경향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김대식은 광종이 後周와 집약적 외교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강 유역의 吳越·南唐 등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물을 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唐制의 기본 골격을 가장 온전하게 갖추면서 唐末의 변화상도 유연하게 수용하였던 南唐을 통하여 광종이 唐 중기 이후의 전장서를 접하고 중앙관제의 기본틀을 구상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67] 성종대의 제도 개편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종의 유산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Rahel Plassen은 고려의 과거제도가 광종대 對中 외교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보았다. 외교문서 작성 역량을 갖추고 使行 시 중국 문인층을 상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 하에 광종이 과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견해다.[168] 중국과의 전방위 외교에 맞추어 고려 내 제도 개편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광종대에는 토속적 제도를 동아시아의 典範이었던 唐制와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백관의 공복 제정, 개경을 皇都로 명명한 조

권31, 表箋 「賀冊王太子表(金克己)」에서는 '왕태자'라는 칭호와 "大赦天下"라는 문장이 동시에 확인된다. 조선전기 ≪고려사≫·≪고려사절요≫ 편찬자들이 오랜 개서·직서 논쟁 끝에 직서를 원칙으로 하되 "大赦天下"와 같은 표현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한다면(노명호, 2014 <≪고려사≫의 '참의지사僭擬之事'와 '대사천하大赦天下'의 '이실직서以實直書': 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한국사론≫ 60), 이 표문은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고려 當代 왕위계승권자의 공식칭호는 왕태자였다.

166) 그간 고려시대 제도사 분야에서는 당제를 도입하여 문물제도를 적극 정비한 시기가 성종대였다는 주장이 통설로 자리매김하였다. "其禮樂詩書之敎, 君臣父子之道, 宜法中華, 以革鄙陋"해야 한다는 최승로의 주장에 너무나도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결과였다(≪高麗史節要≫ 권2, 成宗 元年 6월).

167) 김대식, 2009 <고려초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변화> ≪고려 중앙정치제도사의 신연구≫, 혜안, 72~79쪽.

168) Rahel Plassen, 2021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처[169] 모두 황제국으로서의 자의식을 표출하려는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전방위 외교 무대에서 공통의 문화와 언어를 갖기 위하여 추진한 측면이 있다. 정윤에게 왕태자 칭호를 부가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왕조국가의 외교주체는 국왕과 태자다. 공식 외교무대에서 왕위계승권자는 차기 국왕으로서 그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려가 자체적으로 사용해 오던 정윤칭호는 왕위계승권자에 대한 범용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중국과의 교류가 정례화 된 광종대부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왕위계승권자의 공식 칭호에 '왕태자'와 '정윤'을 병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史書에 정윤으로 기록된 <표 Ⅰ-5>의 세 인물 혜종·경종·성종은 과연 어떠한 자격으로 정통후계자가 된 것일까. 아래에서는 고려초 왕위계승 원칙과 연관시켜 정윤의 자격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 [A-9] 셋째, 嫡子와 嫡孫에게 傳國傳家하는 것이 비록 常禮라고 하지만 丹朱가 不肖하자 堯가 舜에게 선위한 것은 실로 公心이었다. 무릇 元子가 불초한 경우에는 次子에게 전수하고 차자들이 모두 불초한 경우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 群下가 추대한 자에게 주어 대통을 잇게 하라.[170]

[A-9]에 인용된 訓要 제3조는 왕위계승 원칙에 관한 태조의 遺命을 담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훈요 제3조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둘러싸고 이견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이 사료에 등장하는 子와 兄弟를 각각 역대 국왕들의 '아들'과 '남자형제'로만 간주하여 태조가 적장자 위주의 부자상속 원칙을 강조하되 형제상속의 가

---

169) ≪고려사절요≫ 권2, 광종대성대왕 11년 3월.

17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26년 4월, "(전략) 其三曰, 嫡子嫡孫, 傳國傳家,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凡元子不肖者, 與其次子, 次子皆不肖者, 與其兄弟之中群下推戴者, 俾承大統."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 기사에는 "其三曰,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문구 차이가 확인된다.

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이해하였다.[171] 실제 혜종·정종·광종·경종의 즉위는 일반적인 부자상속 또는 형제상속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성종의 즉위는 기존 논리틀 안에서 설명 불가능하다. 성종은 역대 국왕의 直子도, 친형제도 아니었다. 성종이 경종의 정윤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경종의 直子 목종이 어린 나이로 인하여 '不肖'한 후계자로 인식되던 상황에 성종이 태조 손자이자 광종 사위라는 복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요 제3조에서는 전설 속 聖君이었던 堯가 불초한 直子 丹朱를 제치고 舜을 사위로 삼아 선위한 사례를 이상적인 典例로 언급하였다. 典例의 콘텍스트(context)에 집중하면서 고려초 왕위계승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 왕실에서 훈요 제3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왕위계승 원칙을 수립하였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려초 왕실은 훈요 제3조에서 '次子'와 '兄弟'로 통칭된 왕위계승후보자들의 실체를 다르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초 왕실의 구조상 국왕의 '次子'와 '兄弟'는 인척 관계의 사위·妹夫와 분리될 수 없었다. 왕녀와 종녀의 배우자를 기존 왕실 남성으로 한정하는 폐쇄적인 혼인 체계 속에서 왕실의 사위들은 역대 국왕의 아들 또는 손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성종은 경종의 부측과 모측 양측에서 堂弟에 해당하였으나 광종의 사위라는 정체성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종과 성종의 실질 친속관계는 堂兄弟로 정의되지 않았다. 981년(경종 6) 임종을 앞둔 경종은 성종에게 양위한다는 내용의 遺詔를 내려 "그대 公卿宰臣은 나의 介弟를 공경하고 보필하며 오래도록 나의 大邦을 평안히 하라"고 명하였다.[172] 遺詔에 등장하는 '介弟'는 타인의 아우에

171) 훈요 제3조에 대한 연구동향은 오경석, 2019 <고려전기 왕위계승 양상과 그 원리: 훈요 3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쪽 참조.

172)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6년 7월 甲辰, "召堂弟開寧君治, 內禪遺詔曰, '一生一死, 賢哲難逃, 或短或脩, 古今皆是. (중략) 咨爾公卿宰臣, 其敬保我介弟, 永綏我大邦."

대한 존칭으로 알려진 용어다. 그러나 조선시대 實錄 자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介弟'가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록에서 '介弟'는 世祖·明宗·英祖와 같이 前王의 친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국왕을 지칭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173] ≪고려사≫·≪고려사절요≫·≪동인지문사륙≫에서도 '介弟'는 毅宗의 동모제로서 즉위한 明宗, 睿宗의 王弟 大原公 俈, 의종·명종의 王弟 平涼侯 旼, 원간섭기 世祖 쿠빌라이의 동모제 아릭부케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다.[174]

경종의 遺詔에 등장한 '介弟'에만 특별히 다른 語義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려와 조선의 지식인에게 '介弟'는 국왕의 '친형제'로서 왕위계승권에 근접한 특별한 존재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982년(성종 1) 宋에 성종의 즉위를 알린 고려인들은 성종을 경종의 '弟'로 설명하였는데,[175] '介弟'의 語義를 고려해보면 '弟'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當代人의 관념상 광종을 매개로 경종과 성종 두 사람의 실질 관계는 '兄弟'라는 한어로 표현될 성격의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서 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할 때 사위를 매개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고려사≫나 묘지명에서는 敍用·封爵·賜與 등의 공적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子壻'가 등장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176] 父祖의 공훈에 따른 포상

173) 實錄에서 '介弟' 용례를 확인해보면 조선시대 관료들이 국왕 앞에서 왕세제를 존칭할 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음 사료에서 보이듯 조선의 景宗은 몸소 왕세제 英祖를 '介弟'라고 칭하였다. 고려 경종의 유조에서 정윤 성종을 '介弟'로 칭한 것과 동일하다. ≪景宗實錄≫ 권8, 2년 5월 28일 壬子 첫 번째 기사, "王若曰, '托元良於介弟, 慶溢宗祊. 降顯冊於小邦, 恩浹區宇, 一人有喜, 萬姓同休. 念我靑宮, 夙彰玄德."

174)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2년 5월 壬午; 권96, 열전9 諸臣 尹瓘 附 尹鱗瞻; 권110, 열전23 諸臣 李齊賢; ≪고려사절요≫ 권24, 충숙왕 10년 1월; ≪동인지문사륙≫ 권5, 冊文「冊王弟俈爲大寧侯文」.

175) ≪宋史≫ 권4, 본기4 태종1 太平興國 7년 12월 무인.

이 서용·봉작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 아들과 사위의 권리를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딸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딸과 사위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는 이러한 문화권에서 근친혼으로 맞이한 사위는 더더욱 '子'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즉, 성종은 광종의 '子'이자 경종의 '弟'였기에 정윤으로 명명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태조의 男孫에서 역대 국왕의 사위·매부로 전환된 왕실 인물들은 역대 국왕의 直子에게 王者의 자질이 부족할 시 大統을 이어갈 자격을 공인받았다. 물론 이러한 체계를 태조대부터 기획하고 훈요 제3조를 남겼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려초 왕실의 구성 및 재생산 방식을 볼 때, 최소한 후대 국왕들에게 훈요 제3조는 왕실 근친혼의 구속력 하에 역대 국왕의 '子'·'兄弟' 반열에 오를 태조 남손들을 '公心'에 따라 적통후계자로 선정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종실전에 등재된 태자칭호는 시호였음을 주장하고, 생존한 인물을 태자로 지칭할 시 이는 단수의 왕위계승권자 '정윤'이라는 의미였음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훈요 제3조를 재해석하여 정윤으로 기록된 개별 인물들의 책봉 자격과 왕위계승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고려초 왕위계승권자 외의 일반 왕실 구성원들은 어떻게 편제되었을까.

<표 Ⅰ-6>은 태조의 왕자·왕손에 대한 當代人의 지칭을 정리한 것이다. 종실전의 입전항목명은 부여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금석문 또는 ≪고려사≫·≪고려사절요≫의 편년 추정이 가능한 기사에서 인물별 지칭을 추출하였다.

---

176)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2년 8월, "庚午 御神鳳樓, 大赦, 敎曰 "(중략) 況朝鮮國公, 忠誠夾輔, 功業旣崇, 遣使策命公及夫人, 兼敘用諸子壻."; ≪고려사≫ 권96, 열전9 諸臣 崔思諏, "(전략) 王感涕. 召思諏子壻兒孫, 賜花酒, 扶出還家."

<표 Ⅰ-6> 태조 왕자·왕손에 대한 當代 지칭

<table>
<tr><th>연도</th><th colspan="2">지칭</th><th colspan="2">대상인물</th><th>출전</th></tr>
<tr><td rowspan="2">944년
(혜종 1)</td><td colspan="2">王堯君</td><td rowspan="3">태조
왕자</td><td>정종</td><td rowspan="2">興寧寺 澄曉大師塔碑</td></tr>
<tr><td colspan="2">王照君</td><td>광종</td></tr>
<tr><td>950년
(광종 1)</td><td colspan="2">黃州院王旭郎君</td><td>대종</td><td>大安寺 廣慈大師碑</td></tr>
<tr><td>976년
(경종 1)</td><td colspan="2">黃州院二郎君</td><td>태조
왕손</td><td>효덕태자
성종</td><td>≪고려사≫ 권2, 세가 2 경종 원년 6월 경신</td></tr>
<tr><td>976년
(경종 1)</td><td colspan="2">天安府院郎君</td><td>태조
왕자</td><td>효성태자
효지태자</td><td>≪고려사≫ 권2, 세가 2 경종 원년 11월</td></tr>
<tr><td>981년
(경종 6)</td><td colspan="2">開寧君</td><td>태조
왕손</td><td>성종</td><td>≪고려사≫ 권2, 세가 2 경종 6년 7월 갑진</td></tr>
<tr><td rowspan="3">982년
(성종 1)</td><td>天安
郎君</td><td rowspan="2">“天安
鎭州
二郎君”</td><td rowspan="2">태조
왕자</td><td>효성태자
효지태자</td><td rowspan="3">≪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1년 6월(최승로의 시무 28조)
※작고한 왕실 인물들을 후대에 언급한 사례, 天安郎君·鎭州郎君·興化郎君은 광종~경종초의 왕실 칭호.</td></tr>
<tr><td>鎭州
郎君</td><td>원녕태자</td></tr>
<tr><td colspan="2">興化郎君</td><td>태조
왕손</td><td>興化宮君</td></tr>
<tr><td>1009년
(목종 12)</td><td colspan="2">大良院君</td><td>태조
(증)손</td><td>현종</td><td>≪고려사절요≫ 권2, 목종선양대왕 12년 1월 임신</td></tr>
</table>

<표 Ⅰ-6>을 보면 當代人이 태조 왕자와 왕손을 지칭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한 칭호는 君 또는 郎君이었다. 태조 왕자들의 경우 ‘黃州院王旭郎君’처럼 ‘모후의 궁원명+姓名+(郎)君’의 합성어를 공식 칭호로 사용하되 일상적으로는 ‘天安府院郎君’처럼 ‘모후의 궁원명+(郎)君’으로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승로의 시무28조에 등장하는 천안낭군·진주낭군·흥화낭군과 같이 궁원명에서 (府)院을 추가 삭제한 뒤 郎君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최승로 개인의 취향에 따른 축약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앞서 1항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興寧寺 澄曉大師塔碑」음기에서 정종과 광종은 ‘姓名+君’ 형식으로만 기재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탑비의 건립 주체가 신명순성왕태후,

즉 충주원부인의 가문이고 건립지 영월이 충주유씨의 세력권이었던 데다가 음기에 다른 后妃 소생들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궁원명을 부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중앙의 '공적' 영역에서 정종과 광종 또한 충주원왕요(낭)군, 충주원왕소(낭)군으로 지칭되었을 것이다.

태조 왕손에 이르러서는 각 인물의 신분에 따라 공식 칭호가 달라졌다. 우선 태조의 왕손이면서 국왕의 直子인 경우, '본인의 궁원명'에 '(郞)君'을 합성하여 공식 칭호로 삼았다. 혜종 왕자 興化郞君은 종실전 입전항목명이 흥화궁군인 것을 볼 때 흥화궁낭군의 약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흥화궁은 모후 의화왕후의 궁이 아니라 혜종의 적자에게 사여된 왕자궁으로 추정된다. 광종 즉위 이전까지는 지역적 기반이 강한 后妃일수록 출신지나 연고지를 궁원명에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다는 기존 연구를 참조한다면,[177] 혜종 正妃 의화왕후의 궁원은 鎭州院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정종의 유일한 왕자 慶春院君 또한 모후 文成王后의 출신지 昇州와 무관한 '慶春'을 궁원명으로 하였다.

국왕의 직계 자녀에게 雅化된 궁원명을 내린 사례는 태조 재위기부터 확인된다. 태조 장녀 안정숙의공주는 神鸞宮夫人이라는 이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신란궁은 장녀를 경순왕 김부에게 下嫁하며 태조가 사여한 궁원이었다.[178] 안정숙의공주의 동모제 또한 흥방궁주로

---

177) 이정란, 1996 <高麗 后妃의 號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 2, 172~176쪽.

178) ≪三國遺事≫에 따르면, 경순왕이 귀부하자 태조는 궁궐 동쪽의 한 구역을 사여하고 장녀 낙랑공주를 처로 삼게 하였다. 이후 낙랑공주는 신란공주로 불리게 되었으며, ≪三國遺事≫가 편찬되던 시기 신란궁은 '正承院'으로 알려졌다고 한다(≪三國遺事≫ 권2, 기이2 김부대왕, "(전략) 太祖出郊迎勞**賜宮東一區[今正承院]**, 以長女樂浪公主妻之. 以王謝自國居他國故, 以鸞喩之改號**神鸞公主**, 謚孝穆"). ≪고려사≫에서도 태조가 경순왕을 政丞으로 삼은 뒤 신란궁을 지어 하사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12월 壬申). ≪고려사≫에는 신란궁을 하사한 시점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당시 정황이나 婚俗을 참조할 때 낙랑공주를 시집보내며 '장인'인 태조가 '부마' 경순왕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男歸女家 혼속에서는 사위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대체로 처가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음기에서는 淸端宮主

입전된 것을 볼 때, 아마도 태조 자녀세대까지는 세간의 男歸女家 婚俗을 의식하여 혼인 예정인 왕녀들에게만 별도의 궁원을 사여하였다가 손자녀세대에 이르러 역대 국왕의 直子들까지 사여 대상에 포함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혜종 이후의 국왕들은 혼인 이후 분가한 왕자·왕녀들에게 궁원을 사여함으로써 독자의 가문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었고, 이를 계기로 왕자·왕녀의 공식칭호는 모후의 궁원이 아닌 독자의 궁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179]

다음으로 태조의 왕손이면서 국왕의 直子는 아니었던 왕실 남성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의 궁원명'과 '(郞)君'을 합성하여 공식 칭호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Ⅰ-6>의 黃州院二郞君은 대종의 두 아들 효덕태자와 성종을 의미한다.[180] 대종의 생전 칭호였던 황주원낭군을 두 아들이 계승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흥방궁대군을 들 수 있다. 광종의 동복자매 흥방궁주가 낳은 아들을 ≪고려사≫ 편찬자들은 흥방궁대군으로 종실전에 등재하였다. 이는 母의 궁원명을 공식 칭호로 활용한 사례다. 즉, 태조 왕손의 공식 칭호를 결정함에 있어 당시 사람들이 부모 중 한쪽을 일관되게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공식 칭호는 친가와 외가 중 양육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 가문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황주원낭군으로 명명된 대종의 자녀들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조모 황주원부인(신정왕태후) 슬하에서 성장하였

라는 인물이 확인된다. 왕요군·왕소군과 같이 대두법이 적용된 것을 볼 때 청단궁주는 태조의 女孫, 즉 태조나 혜종의 왕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국왕의 직계 자녀에게 아화된 궁원명이 부여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79) 광종 왕녀 천추전부인의 남편이 천추전군으로 종실전에 입전된 이유 또한 고려 초 궁원 사여 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광종 왕녀와 문원대왕 아들의 혼인이 결정되었을 때 광종 혹은 경종은 신부 가문의 가장으로서 천추전이라는 궁원을 사여하였고, 이후 왕녀와 그 남편은 각각 천추전부인·천추전군으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180)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원년 6월 경신, "黃州院二郞君, 並加元服, 改院號, 爲明福宮". 976년(경종 1) 경종은 황주원의 두 낭군에 대한 관례를 직접 주관하고 자신의 외가인 황주원을 명복궁으로 승격시켰다. 두 낭군은 효덕태자와 성종 또는 성종과 경장태자를 지칭하는데, 960년생이던 성종이 976년 17살에 불과하였으므로 나머지 한 명은 성종의 형 효덕태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181]

결국 태조 왕손들은 국왕의 直子인가 아닌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궁원명이 달랐을 뿐 궁원명을 공식 칭호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궁원명 기반의 공식 칭호가 활용되었던 연유는 고려 왕조 성립기의 토속적인 사회구조와 연결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인류학에서는 여성의 出身地名과 결합한 宅號가 특정 가족의 지칭으로 통용되었던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예컨대 안동 출신의 여성이 타 지역 남성과 혼인할 시 이 부부와 미혼의 자녀들은 '안동댁'으로 통칭되며, 부부의 아들은 혼인으로 타 지역 출신의 여성과 결합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택호에 귀속된다.[182] 남성과 그 소생을 여성(부인과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택호 문화는 중국 유래의 姓 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려 건국 이후 姓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관념상의 가족 단위는 본관과 姓의 조합으로 구분되었으나, 관습의 영역에서 택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용되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구체적인 가족 단위를 지칭하였다. 이에 택호 문화는 總系的 사회구조 및 남귀여가혼속의 잔재로 이해된다.

택호 문화의 역사적 연원에 대하여 인류학자들은 합의된 결론을 도출된 바 없다. 다만 고려초 왕실에서 后妃의 출신지를 궁원명에 반영한 뒤 궁원명을 기준으로 태조 자손들의 공식 칭호를 결정하고 편제하였던 양상은 택호 문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고려초 왕실 문화가 하위 계층으로 흘러들어 민간의 택호 문화로 발전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의 택호 문화가 역으로 왕실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확언할 수도 없

181)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신정왕태후 황보씨.

182) 신인철, 1995 앞의 책, 132~139쪽 및 211~242쪽. 신인철에 따르면, 이광규와 Y.Kim Harvey는 테크노니미(teknonymy; 자식의 이름을 활용하여 그 부모 및 직계가족을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함. 철수아빠, 철수네로 지칭하는 방식)라는 개념어와 '지리'를 뜻하는 접두사 제오(geo)를 결합하여 택호를 제오노니미(geononymy)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으나, 적어도 토속의 총계적 사회구조나 婚俗이 초기 왕실 편제에 영향을 미쳐 택호 문화와 유사한 면모를 창출해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고려초 왕실에서는 왕실 구성원들의 혈연 또는 혼인에 따른 귀속관계를 궁원명에 반영하고 이것을 공식 칭호로 활용하였다. 이는 초기 왕실 구성원의 특권적 지위와 기반이 각각의 부모(태조 자녀) 또는 조모(태조 后妃)와의 개별적 관계에 전적으로 종속되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아직 고려는 체계적 시스템 속에 왕실 구성원을 배치하고 공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려초 왕실 구성원들은 근친혼의 구속력에 의하여 태조와 그 后妃들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다양한 경로로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상속은 私家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왕실을 체계적 시스템 속에 배치함으로써 그 공적 속성을 강화한 인물은 경종이다. <표 Ⅰ-6>에서는 981년(경종 6)에 이르러 前代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칭호가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76년(경종 1)까지 黃州院二郞君으로 통칭되던 성종은 경종의 임종 전 正胤 開寧君으로 명명되었다. 黃州院王治郞君이었던 성종이 광종의 마지막 사위가 된 이후 개령군이라는 이질적 칭호를 띠고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령군이 궁원과 무관한 '地名'을 공식 칭호에 포함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평가하였다.[183] 그러나 개령을 지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184] 본고는 개령의 실

183) 김기덕, 앞의 책, 48~49쪽.

184) 開寧을 지명으로 보는 견해는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慶尙道 尙州牧, "開寧郡本甘文小國, 新羅取之. 眞興王置軍主, 爲靑州, 眞平王廢州, 文武王爲甘文郡, 景德王改今名. 顯宗九年,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종이 새로운 왕실 칭호를 고안하면서 유력한 왕위계승후보자에게 遠地의 郡名을 활용한 책봉호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현종대부터는 왕자 책봉 시 雅化된 지명을 활용하였다(본고 二장 1절 참조). 만약 경종대 제도가 현종대 제도의 시원적 형태였다면 개령은 특정 지명의 별호일 가능성이 높다. 정윤 개령군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개령이라는 별호를 가질 만한 지역은 수도 개경이다. 개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므

체보다는 개령군이라는 造名 방식의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려초 왕실 남성의 공식 칭호는 '모후의 궁원명+姓名+(郞)君'이었으나, <표 Ⅰ-6>에 따르면 천안낭군·진주낭군·흥화낭군과 같이 궁원명에서 宮·院을 삭제한 뒤 郞君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축약되거나 흥화궁군·대량원군과 같이 宮·院을 그대로 둔 채 君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축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수록된 여러 개의 개령군 관련 기사들에서 개령군이 '開寧郞君'·'開寧宮君'·'開寧院君' 등으로 변형된 사례는 한 건도 발견할 수 없다. 고려에서는 詔(敎)書에 왕실과 관료의 공식 칭호를 쓰는 것이 관례였는데, 경종의 遺詔와 성종의 敎書에서는 일관되게 '開寧君'으로 기록하였다. 즉, 개령군은 왕실의 공식 칭호를 축약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식 칭호였다.

黃州院二郞君에서 확인되듯 경종 치세 초기까지 궁원명과 결합된 '君'은 郞君을 뜻하였다. <표 Ⅰ-6>을 보면, 실생활에서 君과 郞君은 동의어였고 전자보다 후자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조~광종대의 '君'은 귀한 자제를 특칭하는 존칭에 가까웠다.[185] 귀속관계를 보여주는 궁원명 또는 태조의 자손을 의미하는 王姓이 '君'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君'은 왕실 구성원의 공식 칭호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로 본고에서는 실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설령 지명일 경우라도 경상도 개령군이 아니라 수도 개경 인근의 다른 지역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시하고자 한다.

185)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종실제군조에서는 고려초 院君과 大君으로 종친을 칭하다가 현종대 봉작제를 도입하였고, 다시 1298년(충렬왕 24) 대군과 원군을 정1품으로 諸君을 종1품으로 정하였다고 전한다. 종래 통설에서는 이 사료에 기반하여 원군·대군을 작위로 간주하고 고려초 封君制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충렬왕 24년의 관제를 역으로 고려초에 적용하여 원군·대군의 성격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봉작제와 봉군제를 각각 황제국과 제후국의 제도로 구분한 것은 원간섭기 유학자들의 발상이다. 충선왕의 명령으로 봉작제의 대안적 체제를 고민하던 유학자들이 도리어 고려초 종친들의 원군·대군 칭호를 재해석하여 공·후에 대응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초 원군·대군 칭호의 속성은 當代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반면 개령군의 '君'은 경종대 庶姓 관료에게 봉작된 郡侯·縣伯 등에 대응하는 왕실 작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후의 고려 역사를 보면 封爵制로 편제된 왕실 구성원들은 작위 뒤에 '不姓而名(不稱姓)'하는 특권을 배타적으로 부여받아 國姓의 신성성을 높였는데,[186] 경종의 遺詔에 등장하는 "正胤開寧君治"에서 작위와 不姓而名이 결합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187] 태조의 자녀세대와 관련한 기록에서도 "太子武"와 같이 不姓而名한 사례가 나타나지만,[188] 비슷한 시기 작성된 금석문을 보면 태조 왕자들은 '王堯君'·'王照君'·'黃州院王旭郎君'·'高麗國王王昭'처럼 姓을 부기하여 왕실 소속을 드러낸 경우가 더 많았다. "太子武"는 봉작제와 연동된 체계화된 不姓而名 사례가 아니라 姓과 名을 병칭하는 문화가 사회 저변에 정착하지 못하였던 羅末麗初 상황을 대변하는 사례로 이해된다.

경종대에는 중국의 봉작제를 도입하여 운용한 정황이 확인된다. 하현강에 따르면 食邑制는 태조대부터 존재하였으나 戶數를 명시한 식읍과 개별 봉작을 결합시키는 사례는 경종대 처음 나타났다고 한다.[189] 즉, 경종대에 이르러 서성 관료에 대한 봉작제는 식읍제와 연동되어 외형적 완성을 이루었다. 二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중국 봉작제는 관료와 황실을 포괄하는 일원적 체계였다. 경종대 관료에 대한 봉작제가 정비되었다면 왕실 편제에 봉작제를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앞서 본고에서는 작고한 왕실

186) 이정란, 2019 <고려의 '不稱姓'의 특권과 王家> ≪역사와 담론≫ 85.

187) ≪고려사≫ 권2, 세가2 경종 6년 7월 甲辰, "召堂弟開寧君治, 內禪遺詔曰 (중략) 正胤開寧君治, 國之親賢, 予所友愛, 必能奉祖宗之大業, 保國家之昌基 (후략)."

18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5월 丁酉, "宰臣廉相王規朴守文等侍坐, 王曰, '漢文遺詔曰, '天下萬物之萌生, 靡有不死, 死者天地之理, 物之自然, 奚可甚哀.' 前古哲王, 秉心如此. 予遘疾已歷二旬, 視死如歸, 有何憂也. 漢文之言, 卽予意也. 內外機務, 久不決者, 卿等並與太子武, 裁決而後聞.'"

189) 하현강, 1965 앞의 논문, 111~112쪽에서는 광종 이후 중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식읍제의 형식적 완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75년(경종 즉위) 경종이 妻父 경순왕 김부를 觀光順化衛國功臣 上柱國 樂浪王 政丞 食邑八千戶에 임명한 기사와 980년(경종 5) 최지몽을 大匡 內議令 東萊郡侯 食邑一千戶 柱國에 임명한 기사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구성원들을 태자 또는 대왕으로 추증하는 조처가 경종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란 주장을 하였는데, 생존한 왕실 구성원의 편제가 죽은 자에 대한 편제에 상응하여 경종대에 함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開寧君治” 기록에서 확인되는 이질적 칭호와 不姓而名 현상을 현종 이후 완비되는 왕실 봉작제와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료적 한계 때문에 개령군과 같은 새로운 칭호가 왕실의 어느 범위까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렵다. 다만 성종 다음 세대인 현종이 즉위 전 대량원군으로 지칭되었던 사실을 볼 때, 모든 왕실 구성원에게 동일한 형식의 칭호가 부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량원은 현종의 친부 안종 또는 친모 헌정왕후(효숙왕태후)의 궁원명일 가능성이 크다. 일찍이 정용숙은 신성왕태후 김씨의 아버지가 大良州知事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종이 조모의 연고지를 名號로 삼은 것이라 이해하였고, 김창현은 안종의 공식칭호가 대량원군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90] 그러나 앞서 살펴본 [A-5] 지리지 기록에 따르면, 고려인들에게 大良州郡는 “효숙왕태후의 鄕”으로 인식되었으며 현종이 이곳을 陜州로 승격한 조치 또한 세간에는 모후와의 연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량원이 안종과 헌정왕후 가운데 누구의 궁원이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191]

성종을 제외하고 새로운 君칭호에 책봉되었던 고려초 왕실 인물은 목종이 유일하다. 경종의 아들이자 성종의 조카였던 목종은 11세가

190) 정용숙, 1988 앞의 책, 180쪽; 김창현, 2016 <고려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 계승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46, 58쪽.

191) 대량원군이 개령군과 동일한 형식의 책봉호였다고 본 연구자도 있다. 김기덕은 경종대의 封君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왕실에 공통 적용된 “하나의 제도”였다는 전제 하에, 대량원군은 지명을 관한 책봉호 ‘大良君’에 이전 관행에 따라 院이 부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기덕, 1998 앞의 책, 48~49쪽). 그의 立論은 ‘개령’이 지명이라는 가설 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개령이 실제 지명인지 증명해야 한다. 둘째, 개령이 지명이라면 왕실 구성원에게 개령·대량과 같은 遠地의 중소군현을 名號로 삼게 한 이유를 구명해야 한다. 셋째, 성종에게는 연고지와 관련 없는 개령을 名號로 삼게 하면서 현종에게는 연고지와 관련된 대량을 名號로 삼게 한 이유 또한 구명해야 한다.

되던 해 개령군이라는 작위를 계승하며 사실상 성종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192] 이처럼 경종 임종 시 개령군과 정윤 칭호가 결합되어 후계자 성종을 지칭하였고 성종 즉위 후에는 정윤과 다름없는 목종에게 작위가 계승되었던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새로운 君칭호는 국왕의 最近屬 또는 후계자에게만 부여된 특권적 지위였을 가능성이 높다. 관제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봉작제가 도입되었으나 작위와 식읍이 일부 서성 관료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처럼 왕실에서도 초기 단계의 봉작제는 한정된 범위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려초 왕실 편제에서 劃期가 되는 시기는 경종대로 확인된다. 태조 자녀세대부터 손자녀세대에 이르기까지 고려 왕실 구성원들의 공식칭호는 母后 또는 자신이 상속받은 궁원의 명칭과 '君'의 조합을 기본틀로 하였다. 이는 토속의 총계적 사회구조 및 남귀여가혼속이 초기 왕실 편제에 반영된 결과다. 이후 광종대에 이르러 고려에서는 중국의 문물을 도입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고, 경종대에는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왕실 또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새롭게 편제하였다. 그 대상은 생존한 왕실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았다. 사망한 왕실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지위와 계서를 부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경종은 태조 왕자들을 태자로 추증하면서 자신의 처부이자 삼촌숙으로서 특별한 친속관계에 있었던 선경대왕(대종)과 문원대왕에게 '대왕'이라는 차별화 된 시호를 부여하였다. 생존한 왕실 구성원에게는 경종과의 친속관계, 왕위계승권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다. 경종대의 "開寧君治" 사례는 현종대 왕실 봉작제로 연결되는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192)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12월 戊申, "以姪誦爲開寧君 (하략)."

二. 왕실 封爵制 도입과 법제적 왕실의 劃定

1. 顯宗~宣宗代 왕실 封爵制의 성립

1) 封爵制의 기원과 기본 체계

광종대부터 진행된 체제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경종은 작고한 왕실 구성원과 생존한 왕실 구성원에 대한 편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경종과 성종의 재위기를 거치며 고려 왕실은 전체 규모가 축소되었고, 편제할 대상이 희소한 상황 속에 왕실제도 정비는 사실상 무의미한 단계에 이르렀다. 고려가 체계적인 왕실 편제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게 된 시기는 왕실의 中始祖 격이었던 현종이 즉위한 후다.

≪고려사≫ 편찬자들은 초기의 왕실 편제와 그 성립 시점에 관하여 百官志 宗室諸君條에 "國初에 종친은 院君과 大君을 칭하였다가 현종 이후 公·侯에 봉하고 아래에 있는 자[下者]를 元尹·正尹으로 삼았다"는[193] 모호한 서술만을 남겨두었다. 고려 왕실의 역사에서 현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포착하였으나, 원윤·정윤을 왕실 작위의 일부로 오해한 데에서 드러나듯 현종 이래 왕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현종 왕자들의 책봉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종이 '지명+君' 형식의 封君制를 운용하다가 1031년(현종 22) 4남 王基를 開城國公으로 삼으며 封爵制的 요소를 도입하였다고 이해하였다. 다만 '國公'이 異姓에 대한 작위임에도 왕자에게 수여되었고 靖宗 장남 哀殤君 昉에 이르러서 君칭호가 부활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현종의 봉작제는 불완전하였으며, 제도화 된 '宗室封爵制'는 文宗 연간 비로소 성립된 것으로

193)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종실제군.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194]

上記 통설은 ≪고려사≫ 백관지의 爵條가 종실봉작제를 결함한 채 異姓封爵制 관련 규정만 수록하였다는 전제 위에 성립하였다. 爵條에서 "文宗定公侯國公"을 끊어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고려 봉작제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달라지는데, 통설에서는 문제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B-1] 爵은 5등급으로 公·侯·伯·子·男이 있었다. **문종이 公侯를 정하면서 國公은[文宗定公侯, 國公]** 식읍 3천호에 정2품, 郡公은 식읍 2천호에 종2품, 縣侯는 식읍 1천호, 縣伯은 700호, 開國子는 500호로 하되 모두 정5품으로 삼았으며, 縣男은 300호에 종5품으로 하였다.[195]

'公侯'를 公·侯·伯·子·男의 약칭이자 '五等爵'의 동의어로 간주하고, 국공 이하를 '이성' 관료 대상의 작위로 한정한 것이 통설의 이해다.[196] 주된 근거는 종실전 서문에 인용된 이제현의 史論이었다. "고려는 종실 중 친근하면서 존귀한 자를 公으로 그 다음을 侯로 삼고 소원한 자를 伯으로 삼았으며, 어린 자를 司徒·司空으로 삼아 諸王으로 총칭하였다"는[197] 이제현의 사론을 앞 시기로 소급하여 종실봉작제의 定型을 규정해놓은 뒤 작조를 이해한 것이다.

통설의 爵條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

194) 김기덕, 1998 앞의 책, 49~57쪽.

195)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爵, "爵五等, 有公侯伯子男. 文宗定公侯國公, 食邑三千戶正二品, 郡公食邑二千戶從二品, 縣侯食邑一千戶, 縣伯七百戶, 開國子五百戶, 並正五品, 縣男三百戶從五品."

196) 김기덕, 1998 앞의 책, 26·72쪽; 박용운, 2009 ≪『高麗史』百官志 譯註≫, 신서원, 739~740쪽. 박용운은 "文宗定公侯國公"을 "문종이 정하길, 공·후의 국공은"으로 해석하여 김기덕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공·후를 국공과 병렬된 작위가 아니라 국공·군공·현후의 통칭으로 보고 爵條를 국공 이하의 작위체계만 수록한 조항으로 이해하였던 점에서, 두 연구자 사이에 爵條의 성격이나 고려봉작제의 全貌에 관한 근본적인 의견차는 없었다고 이해된다.

197)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高麗封宗室之親且尊者曰公, 其次爲侯, 疎者爲伯, 幼者爲司徒司空, 摠稱曰諸王."

“文宗定公侯國公”을 “文宗定公侯, 國公”으로 끊어 읽는 것은 백관지의 전반적인 서술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이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公侯’를 ‘五等爵’의 동의어로 사용한 용례가 과연 있는가도 의문이다. 백관지에서는 “文宗定”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고려사≫ 편찬을 담당한 조선시대 史家들은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세부 범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흥미롭게도 백관지의 서술 방식을 분석해 보면 “文宗定” 이하에서는 세 유형의 문장 구조가 확인된다. 우선 侍中·評理와 같은 단독직이 항목명일 때 “文宗定” 뒤에 정원→品秩 순으로 정보가 나열되는 일관된 체계가 보인다.[198] 다음으로 三師三公·司議大夫 등 하위 범주가 존재하는 관직이나 ‘尙書省’ 같은 관부가 항목명으로 제시될 때 “文宗定” 뒤에 소속된 관직의 명칭과 정원, 品秩에 대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199] 마지막으로 “文宗定” 뒤에 “官制”가 목적어로 나오는 문장 구조가 있다. 관부 항목에서 초반에 置廢의 연혁부터 서술될 경우 관제를 정비한 시기는 문종대라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文宗定官制”가 선행한 뒤 관직→정원→品秩 순으로 정보가 나열된다.[200] 백관지에서는 “文宗定” 뒤에 官制 외의 명사가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 구조를 보기 어렵다. 즉, “公侯”는 “國公” 이하와 묶어 爵에 관한 규정을 직접 인용한 문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爵條는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둘째, 고려 봉작제를 복원하면서 그 典範이 되었던 唐宋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기실 唐과 宋에서는 종실봉작과 이성봉

198)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門下府 侍中, “成宗置門下侍中. 文宗定一人, 秩從一品. 忠烈王元年, 改僉議中贊, 置左右各一人.”

199)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三師三公, “大師太傅大保, 爲三師, 太尉司徒司空, 爲三公, 無其人, 則闕. 其始置歲月不可考. 文宗定三師三公各一人, 皆正一品”; 권76, 지30 백관1 尙書省, “太祖仍泰封之制, 置廣評省 (중략) 十四年, 改尙書都省. 文宗定尙書令一人, 秩從一品, 左右僕射, 各一人正二品.”

200)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諸館殿學士, “廢置沿革未詳 (중략) 文宗定官制, 諸殿大學士秩從二品, 學士正四品.”

작 규정을 별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제도 그 자체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시기별로 조금씩 수정되었다. ≪唐六典≫,[201] ≪通典≫ 職官 封爵條 및 王侯總敘條,[202] ≪宋史≫ 職官志 爵條 및 雜制條를[203] 통하여 복원할 수 있는 唐宋의 작위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Ⅱ-1> 唐宋의 작위체계

	출전	작위체계											
당	≪唐六典≫ ≪通典≫ 王侯總敘	**王**		**郡王**	**國公**	**郡公**			**縣公**	**縣侯**	**縣伯**	**縣子**	**縣男**
		정1품		종1	종1	정2			종2	종3	정4	정5	종5
		1만호		**5천**	**3천**	2천			1.5천	1천	700	500	300
	≪通典≫ 封爵	國王		郡王	國公	郡公		開國郡公	開國縣公	開國侯	開國伯	開國子	
송	≪宋史≫ 雜制 (唐末宋初)	**王**		**郡王**	**國公**	**郡公**			**郡侯**	**縣侯**	**縣伯**	**縣子**	**縣男**
		5천호		**3천**		2천			1.5천	1천	700	500	300
	≪宋史≫ 爵 "12등작"	王	嗣王	郡王	國公	郡公	開國公	開國郡公	開國縣公	開國侯	開國伯	開國子	開國男

≪通典≫ 封爵條의 작위체계는 공신력 높은 ≪唐六典≫뿐[204] 아니라 같은 책의 王侯總敘條와도 큰 내용차를 보이고 형식적 완성도 또

201)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郞中.
202) ≪通典≫ 권19, 職官1 封爵; 권31, 職官13 王侯總敘.
203) ≪宋史≫ 권169, 志122 職官9 爵; 권170, 志123 職官10 雜制.
204) ≪唐六典≫은 자신의 治世를 과시하려던 唐 玄宗이 당시 제도를 태평성세의 제도로 '文飾'하고자 ≪周禮≫의 6典 형식을 빌려 편찬한 책이라고 전해진다. ≪唐六典≫의 편찬 이전 이미 唐의 문물제도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律·令·格·式이 법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김택민 주편, 2003 ≪譯註 唐六典≫ 上, 신서원, 16~17쪽). 따라서 ≪唐六典≫을 盛唐의 律·令·格·式을 집대성한 책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한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宋史≫ 爵條는 11세기 후반의 元豐官制를 수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종 연간의 제도 개편 시 참고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려 봉작제의 典範은 ≪唐六典≫ 및 ≪通典≫ 王侯總敘條에 수록된 盛唐의 제도와 ≪宋史≫ 雜制에 언급된 唐末宋初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표 Ⅱ-1>에서 음영을 넣은 부분에 해당하는데, 王으로부터 縣男에 이르는 9등작의 '일원적' 체계가 음영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盛唐의 봉작제는 皇室을 작위체계의 상층부인 國王(親王·嗣王)·郡王·國公·郡公에 위치시키고, 관료를 공훈에 따라 군왕 이하에 차등적으로 봉작하는 체제였다. 군왕부터 국공까지는 황실과 관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작위였던 것이다. 단, 공식석상에서는 관료의 국공 이하 작위에 '開國'을 부가함으로써 종실과 차별화하였다.[205] 또한 관료에게 부여할 수 있는 봉작의 상한이 군왕이었음에도 국공과 군공 사이에 큰 차등을 두어, 실질적으로 관료가 국공 이상의 작위를 갖는데 제약을 두었다.[206] ≪宋史≫ 雜制條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일부 수정을 거쳐 宋初까지 遵用되었다. ≪宋史≫ 雜制條에서는 唐代 친왕과 사왕의 식읍을 5천호로, 군왕의 식읍을 국공과 동일한 3천호로 전하고 있으며, 唐末에 이르러 公과 결합할 수 있는 邑格이 郡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縣公이 사라지고 郡侯가 신설되었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207]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군왕 이상의 식읍 규모를

---

205)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306~314쪽.

206)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郞中, "(전략) **至郡公, 有餘爵, 聽回授子孫, 其國公皆特封焉**"; ≪宋史≫ 권170, 志123 職官10 雜制, "(전략) 邑過其爵, 則並進爵焉, **止於郡公**."

207) ≪宋史≫ 권170, 志123 職官10 雜制, "太平興國元年(976) (중략) 封爵之差, 唐制, **王食邑五千戶, 郡王國公三千戶**, 開國郡公二千戶, 縣公千五百戶, 縣侯千戶, 伯七百戶, 子五百戶, 男三百戶. 又有食實封者, 戶給縑帛, 每賜爵, 遞加一級. **唐末及五代**始有加邑特戶, 而罷去實封之給, **又去縣公之名, 封侯以郡. 宋初沿其制**". 실제로 唐代 자료에서 군왕의 식읍이 5천호가 아닌 3천호인 예는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328쪽).

축소하는 방향으로 唐의 봉작제가 개정된 뒤 일부 보완을 거쳐 宋初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國	王	公				
郡	王	公	侯(신설)			
縣		公(소멸)	侯	伯	子	男

	王	公	侯	伯	子	男
國	皇室	皇室/官僚				
郡	皇室/官僚	皇室/官僚	官僚			
縣		官僚	官僚	官僚	官僚	官僚

<그림 Ⅱ-1> 唐代 封爵制의 구조

盛唐부터 宋初에 이르기까지 봉작제 실행 시 황실과 관료를 差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원적 작위체계를 고수하였던 연유는 중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봉작은 宗法秩序와 혈연적 친소관계에 의한 爵에서 출발하여 전국시대 이후 개인의 軍功에 따른 爵으로 변환되었다. 왕과 諸侯, 제후와 卿·大夫의 宗族 내 관계를 정치·사회질서로 확장한 봉건체제가 周의 멸망과 함께 와해되고[208]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반영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 결과, 봉작제는 商鞅의 變法을 거쳐 秦의 20등작으로 귀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209] 이후 秦의 급진적 개혁이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중

208) 이성규, 2012 <中國文明의 起源과 形成> ≪講座 中國史≫ 권1, 지식산업사; 민후기, 2005 <西周 五等爵制의 기원과 성격: 西周 金文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1; 민후기, 2011 <西周왕조의 族의 재배치와 同姓不婚: 東征 이후 西周王朝의 族 통일정책에 대한 검토> ≪동방학지≫ 153. 민후기에 따르면, 西周王朝의 公은 현왕의 윗세대, 伯은 현왕의 동세대, 子는 현왕의 자식세대, 男은 현왕의 손자세대를 대상으로 수여되었고, 侯는 이 가운데 특별히 斥候·藩屛 역할을 하는 제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9) 중국에서는 戰國時代에 이르러 영역국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종래의 族的秩序가 해체되고 족적질서를 토대로 한 5등작 또한 무의미해졌다(이성규, 2012 <春秋戰國時代의 國家와 社會> ≪講座 中國史≫ 권1, 지식산업사; 민후기,

국은 三代의 '이상적' 제도와 전국시대 이후의 시대적 요구를 조응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역대 왕조들이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찾아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漢의 3등작, 魏의 9등작, 晉의 15등작에 이어 隋와 唐의 9등작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210] 唐의 봉작제는 生得的 요소인 종법질서와 혈연적 친소관계, 성취적 요소인 공훈을 포괄하는 대안적 질서였다.[211]

唐의 제도가 고려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고려가 종실과 이성에 대한 봉작 규정을 원천적으로 분리하였다는 전제 위에 ≪고려사≫ 爵條를 해석할 수 없다. "文宗定公侯國公"은 "문종이 정하길, 公·侯·國公은[文宗定, 公侯國公]"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고려사≫ 爵條는 특정 시기의 작위체계만을 수록한 불완전한 조목으로 이해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려 봉작제 또한 장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제현이 언급한 公·侯·伯 및 사도·사공을 포함한 체제로 귀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後代의 사론을 근거로 국공을 이성에 대한 작위로 단정한 뒤 현종 왕자 개성국공에 대한 공식적 봉작을 '이상한' 현상으로 치부하였다. 앞서 唐의 국공은 황실과 관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작위임을 밝혔다. <그림 Ⅱ-2>에 나타나듯[212] 唐制에서는 親王 외의 諸王, 즉

2012 <열후·관내후 성립고> ≪중국학보≫ 65 참조). 현전하는 史書나 전장서마다 秦의 작위체계에 관한 각기 다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20등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秦에 이르러 봉작의 중요한 기준이 軍功으로 바뀌었던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漢書≫ 등에 따르면, 황족 대상의 작위는 徹侯(通侯, 列侯)와 關內侯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商君書≫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민후기, 2012 앞의 논문, 275~277쪽). ≪通典≫ 封爵條에서는 "秦爵二十等, 最高徹侯, 迺得食縣, 其次關內侯, 食租稅於關內. 餘十八等, 大庶長以下, 則如吏職"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10) ≪通典≫ 권19, 職官1 封爵.

211)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308~314쪽.

212) <그림 Ⅱ-2>의 典據가 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唐令拾遺≫ 封爵令1, "諸皇兄弟皇子, 爲親王, 親王之子承嫡者, 爲嗣王, 皇太子諸子, 並爲郡王, 親王之子承恩澤者, 亦封郡王, 諸子封郡公, 其嗣王郡王及特封王, 子孫承襲者, 降授國公";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郎中, "(전략) 皇兄弟皇子皆封國, 謂之親王. 親王之子承嫡者, 爲嗣王, 皇太子諸子, 並爲郡王, 親王之子承恩澤者, 亦封郡王, 諸子封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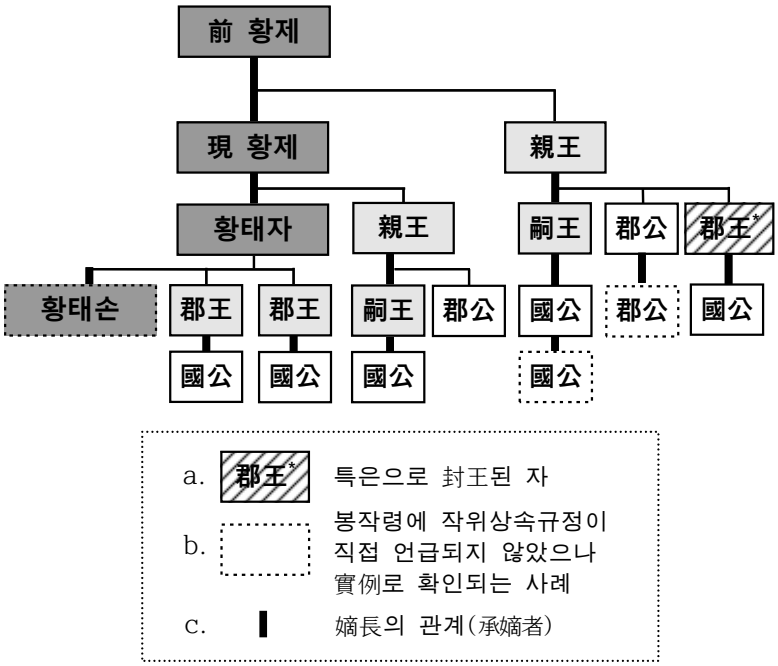

<그림 Ⅱ-2> 唐 皇室의 封爵 수여 범위

嗣王과 郡王의 承襲者를 국공에 봉작하고 그 지위를 종1품에 두었다. 皇曾孫 가운데 嫡長에 해당하는 특별한 존재만 국공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공은 八議의 '議貴'에 포함되어 형법상 특전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였다.[213] 宗姓과 庶姓을 막론하고 국공 이상은 同居周親(期親)의 課役을 면제받기도 하였다.[214] 따라서 唐代 관료의 작위는 실질적으로 군공 이하에 제한되었다. 국공은 황제의 특은이 있을 때에만 봉작할 수 있는 작위로 인식되어, 관료가 정상적인 進封 단계를 밟아 군공에 이르렀다면 작위를 추가해야 할 상황이 도

公, 其嗣王郡王及特封王, 子孫承襲者, 降授國公." 구체적인 實例는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참조.

213) ≪唐律疏議≫ 卷1, 名例7 八議, "[律文] 六曰, 議貴(謂職事官三品以上, 散官二品以上及爵一品者). [疏] 議曰, 依令, 有執掌者爲職事官, 無執掌者爲散官, **爵, 謂國公以上**" 및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308쪽 주)13 참조.

214) 위의 논문, 308쪽 주)13 참조.

래하였더라도 국공으로 높이지 않고 그 자손에게 回授하는 것을 허락하였다.[215] 宋 또한 이러한 前例의 영향을 받아 황실 외 인물들을 봉작할 시 군공을 상한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216]

上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1031년(현종 22) 현종 왕자 왕기가 수여받은 개성국공을 이성에 대한 작위로 간주하기 어렵다. 고려의 봉작제가 아직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왕기가 개성국공에 책봉된 것이 아니라, 唐과 같은 일원적 작위체계가 이미 고려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왕기가 국공에서 출발하여 점차 상위로 陞爵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왕기의 세 형이 각각 延慶君·平壤君·樂浪君에 初封되었던 사실을 볼 때,[217] 국공은 君보다 한 등급 낮은 작위로서 여러 왕자 중 출생순에 따른 서열이 낮은 왕자에게 수여되었던 듯하다. 이로부터 현종대 왕실 최상층에 '지명+君'을 수여하는 제도가 체계화되었으나, 당시의 왕실 편제를 '封君制'로 명명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항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기존 통설에서 종실봉작과 이성봉작 규정을 분리하여 보았던 것은 ≪고려사≫ 백관지의 불완전한 체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고려사≫ 백관지에서는 왕실과 관련된 內職·종실제군(附異姓諸君)·東宮官·諸妃主府(附諸王子府) 등의 조목을 전반부에 연이어 배치하고 爵은 勳·文散階·武散階와 함께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로 인하여 ≪고려사≫의 체제상 왕실제도와 爵制의 연관성이 한 눈에 포착되지 않으며 현전하는 爵條 규정도 관료층 한정으로 적용되었던 것처럼 읽힌다. 전반부에 종실제군과 이성제군 조목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백관지의 구성만 놓고 보았을 때 후대 연구자들은 爵 또한 왕실(종실)과 관

215) ≪唐六典≫ 권2, 尚書吏部 司封郎中, "(전략) **至郡公, 有餘爵, 聽回授子孫, 其國公皆特封焉**."

216) ≪宋史≫ 권170, 志123 職官10 雜制, "宋初沿其制, 文臣少監少卿以上, 武臣副率以上, 內職崇班以上有封爵, 丞郎學士刺史大將軍諸司使以上有實封, 但以增戶數爲差, 不系爵級. **邑過其爵, 則並進爵焉, 止於郡公**."

217)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1년 4월 庚子; 13년 6월 庚子; 13년 6월 癸卯.

료(이성)에 대한 규정으로 이원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기 쉽다.

조선전기 史家들이 고려 봉작제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爵條를 별도 조목으로 편성한 것은 ≪宋史≫ 체제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舊唐書≫와 ≪新唐書≫에서 각각 직관지 從1品以下條와 백관지 吏部條에 봉작 규정을 포함시켰던 반면[218] ≪송사≫에서는 勳과 爵을 별도 조목으로 분리하여 상세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백관지 후반부에 勳·爵·文散階·武散階를 연속 배치한 ≪고려사≫의 체제와 상당히 유사하다.[219]

중국 正史의 체제를 참조하여 爵條를 독립시켰으나, 원간섭기를 거치며 봉작제는 황제국 체제, 봉군제는 제후국 체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갖게 된 조선전기 史家들은 爵에 관한 구체적 서술을 남기는 데 부담을 느꼈던 듯하다. 사료 [B-1]에 縣公 또는 郡侯가 누락되고, 縣伯과 縣男 사이에 갑자기 開國子가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고려사≫ 爵條의 작위체계는 형식적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것이 제정·시행된 시기 또한 '文宗定'으로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같은 책 食貨志에서 문종30년과 인종초의 宗室祿 규정을 토대로 왕실 봉작제의 체계와 변화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220] 현전하는 爵條를 통해서는 그 변화상을 유추하기 어렵다. ≪고려사≫ 撰者들은 자신들이 발췌한 원

218) 박용운, 2009 앞의 책, 739~740쪽 주1) 참조.

219) 변태섭은 조선전기 史家들이 ≪舊唐書≫·≪新唐書≫·≪宋史≫·≪元史≫의 체제에 가장 근접하도록 紀傳體 ≪고려사≫를 편찬하였으나 그 중 제일의 견본이 된 것은 ≪元史≫라고 주장하였다(변태섭, 1982 ≪「高麗史」의 연구≫, 삼영사, 43쪽). 하지만 ≪宋史≫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 조목이 ≪고려사≫에 존재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정용숙에 따르면, ≪宋史≫에 이르러 본문에 지적된 爵條 외에 公主傳 또한 별도 조목으로 독립하였다(정용숙, 1988 앞의 책, 15쪽 <표 1> 참조). ≪고려사≫에서도 宗室·后妃傳과 公主傳이 분리되어 있다. 한편, 박용운은 ≪元史≫의 체제와 편목의 명칭 등이 ≪고려사≫와 가장 유사하지만 志는 ≪宋史≫와 ≪元史≫ 모두에서 모범을 구한 흔적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특히 百官志 편찬 시 ≪고려사≫ 撰者들이 ≪宋史≫와 ≪唐書≫의 職官志 체제를 준용하되 고려의 실정을 감안하여 조율하였다고 이해하였다(박용운, 2009 <『고려사』 백관지의 특성과 역주> ≪『高麗史』 百官志 譯註≫, 신서원, 25~31쪽).

220) ≪고려사≫ 권80, 志34 食貨3 祿俸 宗室祿.

자료를 수록만 하였을 뿐 산재된 자료들을 총망라하거나 교차 검토하여 爵條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왕실 내 근친혼(이하 '종실내혼')을[221] 기반으로 한 고려 왕실의 독특한 재생산 방식과 봉작제의 관련성을 조선전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爵에 관한 구체적 서술을 기피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忠宣王이 복위한 후 '同姓不婚'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고려 왕실의 전통은 뿌리째 부정되었다. 이제현 등 고려말 유학자들이 前代의 혼속을 고의적으로 은폐·왜곡한 흔적도 남아있다. 원간섭기 제작된 고려묘지명에서는 부부의 姓이 같을 경우 "두 가문이 성씨를 얻은 所以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같은 성씨는 아니다"와 같은 부연설명을 붙여 同姓異本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222] 이제현의 宗室傳序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同姓婚 사례에 빗대어 고려 왕실의 '종실내혼'을 비판하는 서술이 등장하였다.[223]

따라서 爵條에만 의존하여 고려 봉작제의 전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述而不作 원칙에 따라 원자료의 선정·발췌·편성 작업 위주로 편찬되었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한다면 爵條에 고려시대 爵制 관련 규정의 일부가 삽입되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224] 그럼에도 ≪고려사≫ 撰者들이 어떠한 선입견과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爵條를 작성하였던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본고에서 봉작제의 역사적 연원과 기본 원리를 추적한 뒤 그

---

221) 본고는 왕실 봉작제가 성립된 이후의 왕실 내 근친혼을 '종실내혼'으로 명명한다. 선행연구의 족내혼·근친혼과 같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종실내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한 이유, '종실내혼'의 정의, '종실내혼' 규범의 구속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봉작제와 왕실 혼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三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222) ≪益齋亂藁≫ 권7, 碑銘「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有序」, "(전략) 旣笄, 歸漢山李氏監井邑務諱自成, 原兩家所以得氏, 非一李也."; 「卞韓國大夫人崔氏墓誌銘有序」, "(전략) 女一適驪興君閔思平, 一適大護軍金輝南, 輝南海均人, 與彥陽之金, 非一派, 爲無攝"(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金倫妻崔氏墓誌銘' 참조).

223) ≪益齋亂藁≫ 권9下, 序「宗室傳序」.

224) 노명호, 2019 앞의 책, 23쪽, 145~146쪽 참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爵條를 재검토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려는 대체로 唐制를 전범으로 삼되 외교 관계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제도나 용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고 한편으로는 해당 제도가 독자의 정치적·사회문화적 토대와 습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변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모순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표면화되기 때문에 고려의 질서는 특정 시기 단절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봉작제도 마찬가지였다. 爵條의 규정은 봉작제의 기본 원리 안에 있으면서도 고려와 중국 체제의 不整合性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文宗定"이라는 모호한 시점 뒤에 인용된 사료는 시행착오의 편린을 보여주는 규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典範이 되는 중국 봉작제와 더불어 ≪고려사≫·≪고려사절요≫에 산재된 봉작 관련 기사들, 當代 자료인 금석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고려 봉작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왕실 편제라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다원적 천하관에 기반한 封爵制 변용

≪고려사≫ 爵條의 "文宗定公侯國公"을 "문종이 정하길, 公·侯·國公은[文宗定, 公侯國公]"으로 해석할 경우, 爵條의 작위체계는 <표 Ⅱ-2>와 같이 복원된다. 문제는 이러한 작위체계가 언제 도입되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료가 현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피상적이고 부정확한 爵條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문제도 남아있다. ≪고려사≫ 편찬자들은 爵條의 규정이 제정·시행된 시기에 대하여 "文宗定"이라는 모호한 서술만을 남겨두었을 뿐이고, 爵條의 규정은 식화지에 수록된 문종30년 및

인종초의 종실록 또는 이제현 사론에서 그려진 왕실 봉작제의 전체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표 Ⅱ-2> ≪高麗史≫ 爵條의 작위체계

작위	公·侯·國公	郡公		縣侯	縣伯	開國子	縣男
品秩	정2품	종2		정5			종5
식읍	**3천**	2천		1천	700	500	300

유력한 가설은 爵條를 문종대 초반의 제도로 보는 것이다. 1049년(문종 3) 이전 현종 4남 개성국공 기가 平壤公으로 改封되어 고려 왕실 최초의 公이 된 사실, 왕자에서 왕제로 왕기의 항렬이 상승함에 따라 작위 또한 국공에서 公으로 進封된 사실을[225] 통하여 <표 Ⅱ-2>의 작위체계 일부가 적용된 實例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문종 이전의 왕실 편제와 단절된 새로운 것이었는지, 前代와 연속되었다면 그 原形은 무엇이었는지 구명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고려가 왕실 편제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게 된 시기는 현종대다. ≪고려사≫ 宗室諸君條에서 특기하였듯이 현종은 고려 왕실 역사에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 德宗·靖宗·文宗·平壤公基를 비롯하여 다수의 자녀들을 생산한 현종은 중국 황실 책봉제의 형식을 모방하여 왕자·왕녀를 공적 질서 속에 배치함으로써 고려 왕실 봉작제의 典例를 만들었다. 현종 자녀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봉작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3>과 같다.

225)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3년 2월 甲申;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현종 平壤公基, "顯宗十二年, 命名賜禮物. 二十二年, 冊爲弘引崇孝光德功臣 守太尉兼尙書令 開城國公. 靖宗初, 冊加守太保 (중략) 文宗初, 基病, 下制遣醫視疾, 又其生日, 賜禮幣, 後改封平壤公."

<표 Ⅱ-3> 현종 자녀의 현황과 봉작 사례

입전 항목명	출생 연도	사망 연도	봉작 시기	봉작명 (봉작나이)	비고
德宗 (王欽, 延慶君)	1016 (현종7)	1034 (덕종3)	1020 (현종11)	延慶君 (5세)	■冊子欽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司徒兼內史令上柱國崇仁廣孝輔運功臣, 封延慶君
			1022 (현종13)	王太子 (7세)	■冊子延慶君欽爲王太子
靖宗 (王亨, 平壤君)	1018 (현종9)	1046 (정종12)	1022 (현종13)	平壤君 (5세)	■五歲封內史令平壤君 ■冊子亨爲平壤君
			1027 (현종18)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兼內史令 (10세)	■王子亨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兼內史令
文宗 (王緖, 樂浪君)	1019 (현종10)	1083 (문종37)	1022 (현종13)	樂浪君 (4세)	■冊子緖爲樂浪君
			1027 (현종18)	檢校太傅兼尙書令 (9세)	■緖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傅兼尙書令
			1037 (정종3)	太師兼內史令 (19세)	■冊弟樂浪君緖守太師兼內史令, 開城國公基守太保.
平壤公基	1021 (현종12)	1067 (문종23)	1031 (현종22)	守太尉兼尙書令開城國公 (11세)	■冊王子基守太尉兼尙書令開城國公
			1037 (정종3)	守太保 (17세)	■冊弟開城國公基守太保
			문종초	平壤公	■改封平壤公
			1049 (문종3)	守太師兼內史令 (29세)	■冊弟平壤公基守太師兼內史令
			1061 (문종15)	中書令 (41세)	■又加中書令

孝靜公主	미상	1031 (현종21)	현종대	積慶公(宮)主	■初封積慶公主 (중략) 顯宗二十一年卒, 謚孝靖 ■積慶宮主卒, 謚孝惠, 葬平陵 ※孝惠公主는 공주전에 수록되지 않아 그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임. 孝靜公主와 동일인인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음.
天壽殿主	미상	미상	미상	天壽殿主	
仁平王后(文宗妃)	미상	미상	1034 (덕종3)	延慶宮長公主	■冊王姉, 爲延慶宮長公主

※ 공주는 생전의 봉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수록함.

현종대부터 왕자들에 대한 봉작이 상당히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을 <표 Ⅱ-3>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功臣號+文散階+檢校職+正職+勳職+封爵名이 조합된 정형화된 책봉호가 이때부터 확인된다는 점이다.[226] 1020년(현종 11) 현종은 장자 王欽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 守司徒兼內史令 上柱國 崇仁廣孝輔運功臣으로 삼고 연경군에 봉작하였다. 앞서 광종이 경종을 王太子 內史諸軍事 內議令 正胤에 책봉한 이래 왕실 인물에게 최고위직을 겸직으로 제수한 최초의 사례임과 동시에 고려전기 이래 왕실과 관료집단에 통용되던 책봉호의 형식을 왕실에 완벽하게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1027년(현종 18)에는 왕자 평양군과 낙랑군 또한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兼內史令과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傅兼尙書令에 제수되었다. 왕실 봉작에 관한 매뉴얼이 성립되어 동일 신분의 왕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연도에 왕자들의 초봉과 진봉이 동시 진행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1022년(현종 13) 장남

226) 책봉호의 대표적인 형식, 봉작과 階·職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기덕, 1998 앞의 책, 98~101쪽 참조. 대표적인 책봉호 형식에 식읍 정보도 포함되지만, 현종 왕자의 봉작 사례에서는 식읍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김기덕은 모든 책봉호가 功臣號+文散階+檢校職+正職+勳職+封爵名+食邑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고, 간혹 한두 가지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연경군을 왕태자로 책봉한 현종은 같은 해 연배가 비슷한 2남과 3남을 평양군과 낙랑군에 초봉하였고, 5년 뒤 두 왕자에 대한 진봉을 진행하였다. 靖宗 또한 자신의 즉위 후 왕제로 신분이 바뀐 낙랑군과 개성국공을 1037년(정종 3)에 동시 진봉하였다.

위 사례를 토대로 현종대의 봉작제를 복원해보면, 첫 번째로 '궁원명+君'에서 '지명+君'으로의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훗날 덕종으로 즉위하는 현종 장남 연경군의 책봉호는 모후 元成太后 金氏의 궁원명에서 온 것이다. 원성태후는 납비 후 宮人으로 칭해지다가 1016년(현종 7) 덕종 생산 후 延慶院主로, 1018년(현종 9) 靖宗 생산 후 延慶宮主로 승격되었다.[227] 반면 덕종의 동모제 靖宗과 元惠太后 金氏 소생 문종은 각각 지명별호 평양과 낙랑에 君을 조합한 책봉호를 수여받았다. 비록 국공에 그쳤으나 문종의 동모제 왕기 또한 책봉호에 개성이 포함되었다. 1022년(현종 13)을 기점으로 왕자들의 책봉호가 지명을 관한 君(또는 국공)으로 고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종대에 이르러 개령군과 같은 이질적 칭호가 등장한 사실을 근거로, 궁원명과 결합되었던 君칭호가 "地名을 관하여 봉해주는" 君칭호로 변모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228] 개령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명이라면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성종과 목종의 책봉호였던 개령군은 왕실 편제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단서가 분명하며 국왕의 최측근 또는 후계자에게 한정적으로 수여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현종에 이르러 왕실 구성원의 칭호가 '궁원명+君'으로 회귀한 연유는 무엇일까.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王欽은 왜 왕태자에 바로 책봉되지 않고 연경군이라는 지위를 거쳤던 것일까.

---

227)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7년 5월 乙巳, "宮人金氏生王子, 賜名欽, 仍賜延慶院, 金銀器匹段, 田莊奴婢, 鹽盆魚梁";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顯宗 元城太后金氏, "(전략) 殷傅時爲節度使, 使后製御衣以進, 因納之, 稱延慶院主. 九年七月, 生靖宗, 改院號爲宮."

228) 김기덕, 1986 논문 및 1998 앞의 책, 31~41쪽 및 47~52쪽 참조.

먼저 연경군이 '궁원명+君'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때의 君을 '개령군' 등장 이전의 郞君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책봉호의 형식적 완결성을 볼 때, 현종 장남에게 수여된 君은 낭군과 같은 존칭이 아니라 명백한 작위였다. 君 앞에 조합되는 名號에 차이가 있을 뿐 君의 속성은 고려초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다음으로 왕태자에 책봉되기 전까지 연경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종은 金殷傅의 세 딸 원성태후·원혜태후·元平王后를 맞이하기 전 성종의 두 왕녀를 正宮 왕후로 삼았다. 當代에 玄德王后(元貞王后 金氏)와 大明王后(恒春殿王妃, 元和王后 崔氏)로 칭해지던 두 왕녀는 모두 임신한 전력이 있었고,[229] 특히 후자는 연경군이 태어난 바로 다음 달 왕자 秀를 생산하였다.[230]

王秀는 현종의 아들임과 동시에 성종의 외손이었기에 현종에게 있어 혈통상 완벽한 후계자였다. 이에 왕수가 태어난 다음 해 현종은 대명왕후의 외조부모와 母后 延昌宮夫人 崔氏를 封贈하여 왕자를 생산한 공로를 치하하였다.[231] 연경군의 출생이 왕수보다 한 달 빨랐음에도 그의 외조부모에 대한 봉증은 1022년(현종13) 연경군의 왕태자 책봉 이후에야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해보면, 두 왕자에 대한 현종의 태도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232] 현종은 연경군이 아닌 왕수를 적통으로 생각하고 향후 왕태자로 책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왕수의 생모는 왕녀 출신의 '왕후'였던 반면 연경군의 생모는 그가 탄생하기 전까지 별도의 궁원을 사여받지 못한 '宮人'에 불과하였다. 중

229) ≪고려사≫ 권94, 열전7 諸臣 智蔡文, "(전략) 王謂蔡文曰, "玄德王后有娠, 不宜遠行, 其鄕善州, 距此不遠, 可以遣之." 蔡文固執前議. 王曰, "勢不獲已." 遂遣之.";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元和王后崔氏, "亦成宗之女, 生孝靜公主天壽殿主, 初稱恒春殿王妃, 後改常春殿. 亦從王南幸."

230)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7년 6월, "庚辰 王子生於恒春殿, 賜名秀".

231)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元和王后崔氏, "八年十二月, 贈后外祖崔行言尙書左僕射, 外祖母金氏豊山郡大夫人, 母崔氏樂浪郡大夫人."

232)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元城太后金氏, "(전략) 十三年九月, 追贈殷傅爲推忠守節昌國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司空 上柱國 安山郡開國侯, 食邑一千戶, 妣安山郡大夫人. 尋冊后爲王妃."

국의 경우 황후와 후궁 소생의 처우에 본질적 차이는 없었으나 황위 계승의 우선권은 황후 소생에게 있다고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왕녀·종녀 출신 왕후들이 관료가문 출신 후비보다 上位를 차지하던 고려 왕실에서도 母后의 신분이 왕자들의 왕위계승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실전에서는 왕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太祖妃 信州院夫人 康氏의 소생과 같이 어릴 적 사망한 왕자·왕녀들이 종종 열전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참고할 때, 왕수 또한 早卒하여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종은 대명왕후로부터 추가적인 왕자 생산을 기대할 여지가 있었다. 대명왕후는 왕수 외에도 孝靜公主와 天壽殿主를 생산한 바 있다. 현종이 경험한 왕실 문화와 그의 즉위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종은 누구보다 순혈에 대한 집착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이전까지의 국왕들은 태조 왕자 출신인 혜종·정종·광종을 제외하면 모두 왕녀 또는 종녀 소생이었다. 一장의 왕림·왕정 사례에서 보이듯 고려초 왕실에서는 태조의 손자일지라도 왕녀 소생이 아니면 왕실 핵심부에서 배제되어 '庶孫'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목종을 대체할 인물로 현종이 선택된 데에는 그가 대종의 딸이자 경종 왕후였던 헌정왕후를 생모로 두었던 사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종은 이제 막 5세가 된 장남 덕종을 연경군에 책봉하여 왕실의 嫡子로 인정하되 왕태자 책봉은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종의 나이가 이미 20대 후반에 접어들었던 데다가 비슷한 나이의 대명왕후가 왕자를 낳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종은 덕종을 왕태자로 삼는 腹案 또한 세워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경군은 향후 덕종의 지위가 왕태자로 변경될 것을 감안하여 前代의 유풍대로 궁원명을 활용하여 임시 부여한 칭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종이 延慶이라는 책봉호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 왕실의 절멸 위기를 딛고 즉위한 현종에게 장

남 덕종의 탄생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애시당초 현종은 연경이라는 궁원명의 상징성 때문에 덕종 탄생 후 궁인 김씨를 연경원주로 삼았던 듯하다. 연경궁은 창업주 태조 왕건의 근원이 되는 땅이었다. 고려세계에 따르면, 世祖 王隆(龍建)이 송악에 새로 잡은 집터가 바로 연경궁 奉元殿 터였다. 道詵이 地理法을 얻어 唐으로부터 귀국하였을 때 세조의 새로운 집터를 보고 풍수에 의거한 조언을 하며 이곳에서 성스러운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였다고 한다.[233]

1022년(현종 13) 덕종이 왕태자에 책봉되었던 것은 더 이상 왕녀 출신 왕후들로부터 순혈의 왕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기 때문이었다. 현덕왕후는 1018년(현종 9)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4] 대명왕후 또한 별다른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 일찍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경군을 왕태자에 책봉한 해 10월 현종은 연경궁주를 왕비로 삼았다. 현덕왕후에 이어 대명왕후까지 사망하고 正宮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연경궁주가 새로운 正宮으로 책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235]

현종대 봉작제의 두 번째 특징은 君의 하위에 국공이 존재하고 君과 국공 모두 왕실 인물을 대상으로 수여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국공이 현종 말년 봉작제적 요소를 도입하며 재편한 작위체계의 일부였다면, 1037년(정종 3) 기사에 낙랑군과 개성국공이 동시 등장할 수 없다. 唐宋의 봉작제를 좇아 낙랑군의 君칭호 또한 변경되었어야 한다.

---

233) ≪고려사≫ 고려세계, "(전략) 世祖居松嶽舊第, 有年又欲創新第於其南, 卽延慶宮奉元殿基也. 時桐裏山祖師道詵入唐, 得一行地理法而還, 登白頭山, 至鵠嶺, 見世祖新構第曰, '種穄之地, 何種麻耶?' 言訖而去. 夫人聞而以告, 世祖倒屣追之, 及見, 如舊識. 遂與登鵠嶺, 究山水之脉, 上觀天文, 下察時數曰, '此地脉, 自壬方白頭山水母木幹來, 落馬頭明堂. 君又水命, 宜從水之大數, 作宇六六, 爲三十六區, 則符應天地之大數, 明年必生聖子, 宜名曰王建.' 因作實封, 題其外云, '謹奉書, 百拜獻書于未來統合三韓之主大原君子足下.' 時唐僖宗乾符三年四月也. 世祖從其言, 築室以居, 是月, 威肅有娠, 生太祖."

234)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顯宗 元貞王后金氏, "九年四月薨, 謚元貞, 葬和陵. 十八年, 加懿惠."

23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3년 10월, "乙卯 冊延慶宮主金氏爲王妃."

하지만 같은 해 낙랑군과 개성국공은 기존 책봉호를 유지한 채 守太師와 守太保에 增職되었다. 또한 靖宗 왕자 애상군 방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君칭호는 靖宗代까지도 유효하였다. 哀와 殤이 주로 早卒한 사람의 시호로 사용된다는 점,[236] 문종대까지 생존한 靖宗의 나머지 왕자들은 樂浪侯와 開城侯로 입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애상군은 일찍 사망한 왕자를 추모하여 靖宗 재위기에 내린 시호 성격의 작위가 확실하기 때문이다.[237]

현종의 4남 왕기만 君보다 하위의 국공으로 초봉된 이유를 현재로서는 구명하기 어렵다. 다만 宋初의 봉작 관행을 현종이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Ⅱ-2>와 같이 본래 唐의 봉작제에서는 혈연적 친소 및 嫡長 여부에 따라 종친에게 수여할 수 있는 작위가 정해져 있었고, 대체로 그 작위가 초봉으로 주어졌다.[238] 반면 宋初에 이르러 ≪唐六典≫에 규정된 작위는 종친들이 陞爵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게 된 것 같다. 황자일지라도 친왕이 아닌 군왕·국공에 초봉되었다가 승작하는 사례를 宋 太宗의 자녀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종의 차남 昭成太子는 982년(太平興國 7) 형 趙德崇이 衛王에 책봉되던 날 함께 廣平郡王에 책봉되었다가 이듬해 陳王으로 진봉되었다.[239] 태종의 6남 鎭恭懿王은 988년(端拱 1) 徐國公에 책봉되었

236) 唐代 학자 張守節의 謚法解에 따르면 哀는 '공손하고 어질지만 일찍 죽은 것', 殤은 '요절하여 이루지 못한 것'을 뜻한다(이민홍 편역, 2005 앞의 책, 153쪽 및 172쪽).

237) 현종이 1030년(현종21)에 사망한 왕녀를 추증하고자 孝靖公主에 책봉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현종 孝靖公主).

238) 김호, 2020 <唐初의 諸王 책봉제> ≪중국사연구≫ 125와 김호, 2021 <唐 太宗 貞觀年間의 諸王 관리> ≪대구사학≫ 143에서는 唐 高祖 22子와 太宗 14子의 작위 및 초봉·改封 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황자들의 출생연도와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唐初 황실 책봉제의 실상을 구명한 두 논문은 唐의 봉작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저자에 따르면 唐初 高祖와 太宗의 황자들은 10세 이하의 유년기부터 정해진 법제에 따라 親王에 책봉되었다고 한다. 친왕 책봉 후 황자들은 예에 따라 刺史·牧 등에 제수되어 封地로 出閤하였다.

239) ≪宋史≫ 권245, 列傳4 宗室2 太宗 昭成太子元僖, "初名德明. 太平興國七年出閤, 授檢校太保同平章事, 封廣平郡王, 與兄衛王德崇同日受封. 八年, 進封陳王, 改

다가 형 眞宗이 즉위한 후에야 彭城郡王과 寧王에 단계적으로 진봉되었다.[240]

唐制를 왕실 편제의 기본 골격으로 받아들인 현종은 중국 황실의 前例를 참조하여 법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993년(성종 12) 거란의 1차 침입을 겪은 이후 고려와 宋의 국교가 사실상 단절되었기 때문에[241] 현종이 참조한 前例는 성종대까지 전래된 唐末宋初의 관행일 가능성이 높다.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宋使 徐兢이 고려 왕실의 계보 및 代數 정보를 착각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부터 문종초까지의 즉위년·몰년·재위기간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못한 것을 볼 때[242] 당시 宋은 외교주체인 고려 국왕의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할 만큼 고려와 단절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현종이 동시기 宋 황실의 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해보면 현종대의 봉작제는 唐制를 도입하되 작위의 상층부에

名元佑."

240) ≪宋史≫ 권245, 列傳4 宗室2 太宗 鎭恭懿王元偓, "字希道. 端拱元年出閤, 授檢校太保左衛上將軍, 封徐國公. 至道二年, 拜洪州都督鎭南軍節度使. 眞宗卽位, 加同平章事, 封彭城郡王, 俄加檢校太傅, 改鎭靜難. 彰化, 進封寧王."

241) 거란의 1차 침입을 겪은 성종이 994년(성종 13) 6월 송에 元郁을 파견하여 함께 거란에 보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송이 거절함에 따라 고려와 송의 관계는 단절되었다(≪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6월, "遣元郁如宋乞師以報前年之役. 宋以北鄙甫寧, 不宜輕動, 但優禮遣還. 自是, 與宋絶").

242)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 世次에 수록된 고려 국왕의 정보와 실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려 王代 및 재위기간		圖經 王代 및 재위기간		고려 王代 및 재위기간		圖經 王代 및 재위기간	
1.태조	918~943	1.태조	932~945	9.덕종	1031~1034	**9.덕종**	**?~?**
2.혜종	943~945	2.혜종	945~950	10.정종	1034~1046	**10.정종**	**?~?**
3.정종	945~949			11.문종	1046~1083	**11.문종**	**?~1083**
4.광종	949~975	3.광종	950~975	12.순종	1083~1083	12.순종	1083~1083
5.경종	975~981	4.경종	975~982	13.선종	1083~1094	13.선종	1083~1087
6.성종	981~997	**5.성종**	**982~?**	14.헌종	1094~1095	14.헌종	1087~1088
7.목종	997~1009	**6.목종**	**?~?**	15.숙종	1095~1105	15.숙종	1088~1103
8.현종	1009~1031	**7.현종**	**?~?**	16.예종	1105~	16.예종	1103~
		8.미상	**?~?**				

왕·군왕이 아닌 君을 두고 왕실을 君부터 국공에 봉작하는 체제였다. 국공 이하 작위는 盛唐부터 宋初까지의 체계를 최대한 遵用하였으나, 王爵만큼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왕실 구성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종래 고려 왕실에서 사용해오던 君으로 대체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현종대 봉작 사례에서는 <표 Ⅱ-2>의 식읍 규정이 정확하게 준용되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종초 江華縣開國子에 책봉된 韋壽餘는 식읍 500호를 받았다고 전해진다.[243] 天水縣開國男이었던 姜邯贊은 식읍 300호를 받았다가 天水縣開國子로 진봉된 후 500호를 받았으며,[244] 淸河縣開國男 崔士威는 식읍 300호를 받았다.[245] 德宗代 봉작 사례부터 爵條와 위배되는 식읍 수여 기록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246] 上記 사례는 제도가 엄격하게 준용되던 성립 초기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려사≫ 爵條의 撰者들은 봉작제를 정한 인물로 문종을 지목하였으나, 오히려 爵條가 현실에서 유의미하였던 시기는 문종보다 앞선 현종대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현종대 제도는 외형상 封君制로 보이지만 국공 이하의 작위체계를 토대로 君이 존재하였던 점에서 封爵制로 명명해야 하며, 바로 이 제도가 ≪고려사≫ 爵條에 수록된 문종초 봉작제의 원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Ⅱ-4>에서 문종초 왕실 봉작 사례를 분석해 보면 君과 公·侯의 상관성이 한 눈에 파악된다. 문종은 현종 왕자들의 책봉호에 포함된 지명별호를 다음 세대 왕실 구성원에게 계승시키되[247] 君칭호만 公과 侯로 변경하였다. 개성국공 왕기는 문종 즉위 후 현종의 막내 嫡子에

---

243) ≪고려사≫ 권94, 열전7 諸臣 韋壽餘.
244) ≪고려사≫ 권94, 열전7 諸臣 姜邯贊.
245) ≪고려사≫ 권94, 열전7 諸臣 崔士威.
246) 김기덕, 앞의 책, 116~121쪽에서는 관료에 대한 봉작사례를 총정리 하였다. 김기덕의 연구에 수록된 왕대별 봉작사례를 분석해 보면, 爵條의 식읍 규정이 원칙대로 적용된 시기는 현종대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247) 현종 왕자들의 봉작을 다음 세대에서 계승한 현상은 성종의 책봉호였던 개령군을 그의 후계자로 내정된 목종이 계승하였던 것과 연관되는 것 같다.

서 現王의 동모제로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公에 진봉되었는데, 왕기의 새로운 책봉호로 활용된 평양은 前王 靖宗이 왕자 시절 수여받은 지명별호였다. 문종의 즉위 후 闕位가 된 낙랑과 왕기의 진봉 후 궐위가 된 개성 또한 靖宗이 남긴 두 왕자 王璥과 王暟에게 계승되었다. 왕경과 왕개가 문종의 조카이자 전왕의 왕자 신분으로 처음 받은 작위는 君에서 侯로 변환되었다. 君을 분화시켜 現王의 동세대에게 公, 다음 세대에게 侯를 봉작하면서 각 작위를 궐위가 된 지명별호와 결합시킨 것이다.[248]

<표 Ⅱ-4> 현종~문종초 왕실 책봉호 비교

지명별호	현종대 해당인물			문종초 해당인물			
	책봉호	성명	신분	책봉호	성명	신분	책봉시기
平壤	**平壤君**	靖宗	현종 2남 (王子)	**平壤公**	王基	현종4남 (王弟)	1049 (문종3) 이전
樂浪	**樂浪君**	文宗	현종 3남 (王子)	**樂浪侯**	王璥	靖宗2남 (前王子, 王姪)	1052년 (문종6)
開城	**開城國公**	王基	현종 4남 (王子)	**開城侯**	王暟	靖宗3남 (前王子, 王姪)	

현종~문종초 작위체계를 盛唐 및 唐末宋初와 비교하여 하나의 도표로 제시한 것이 아래의 <표 Ⅱ-5>다. 앞서 ≪고려사≫ 爵條는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고 치명적 오류가 산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표 Ⅱ-5>의 ①과 ②를 대표적인 오류로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②는 縣子가 들어가야 할 위치에 '開國子'가 들어간 오류로서,[249] 사료 편

248) <표 Ⅱ-4>에 따르면 현종~문종초의 왕실 서열과 봉작되는 지명별호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봉호 상정 시 지명별호를 선택 또는 계승시키는 원리가 고려 當代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겠다.

찬 시의 集字나 판각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로 추정된다. 품계·식읍 정보가 盛唐 및 唐末宋初의 제도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개국자는 '縣子(縣開國子, 開國縣子)'의 誤記가 분명하다.

<표 Ⅱ-5> 고려 현종~문종초와 唐宋의 작위체계 비교

출전		작위체계								
고려현종		君·國公			郡公		縣侯	縣伯	縣子	縣男
고려문종	≪高麗史≫ 爵條, ("文宗定")	公·侯·國公			郡公	①	縣侯	縣伯	②開國子	縣男
		정2품			종2		정5			종5
		3천			2천		1천	700	500	300
당	≪唐六典≫ ≪通典≫ 王侯總敘	王	郡王	國公	郡公	縣公	縣侯	縣伯	縣子	縣男
		정1품	종1	종1	정2	종2	종3	정4	정5	종5
		1만호	5천	3천	2천	1.5천	1천	700	500	300
송	≪宋史≫ 雜制 (唐末宋初)	王	郡王	國公	郡公	郡侯	縣侯	縣伯	縣子	縣男
		5천호	3천		2천	1.5천	1천	700	500	300

눈여겨보아야 할 오류는 ①이다. 현전하는 爵條에는 縣公이나 郡侯가 등장하지 않으며 그 품계와 식읍 정보 또한 누락되어 있다. 현공을 두었는지 군후를 두었는지에 따라 盛唐과 唐末宋初 제도 가운데 고려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친 제도가 결정되는데, 爵條에 관련 기록이 누락된 상태이므로 實例를 통하여 구명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1022년(현종 13) 왕태자의 외조부인 김은부를 安山郡開國侯에 추증하

249) 김기덕, 1998 앞의 책, 72쪽; 박용운, 2009 앞의 책, 740쪽.

고 1031년(현종 22) 姜邯贊을 特進 檢校太師 侍中 天水郡開國侯로 삼았다는 기사가 이목을 끈다.[250] 현종대의 重臣으로 알려진 崔士威가 漢南郡開國侯였다는 사실 또한 그 후손인 崔繼芳의 묘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묘지명에서는 한남군개국후 최사위의 식읍이 唐宋의 현공·군후와 동일한 1,500호였다는 기록까지 보인다.[251] 반면 현공(縣開國公)에 봉작한 實例는 고려시대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252] 이는 현종~문종초의 봉작제가 盛唐보다 唐末宋初의 제도에 가깝다는 방증이다.[253]

---

250)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元城太后金氏;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문대왕 22년 6월.

251) 「高麗國守司空左僕射參知政事和順崔公墓誌銘」, "曾祖諱士威, 三重大匡推忠同德盡節衛主匡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大師內史令漢南郡開國侯, 食邑一千五百戶, 贈諡貞肅"(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崔繼芳墓誌銘' 참조).

252) 김기덕, 1998 앞의 책, 113쪽에 따르면 ≪고려사≫ 爵條에 등장하는 국공 이하의 작위 외에 郡侯·郡伯·郡男에 봉작된 實例도 확인된다고 한다. 고려에서는 상위 邑格인 郡이 하위 작위인 侯·伯·男과도 결합하여 관료에 대한 봉작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본관제적 질서 위에 邑格의 升降을 지방사회 통제책의 하나로 사용하였던(채웅석, 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85~200쪽) 고려의 특징적 시스템이 봉작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이 문제는 보다 폭넓은 자료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이처럼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묘지명 등의 금석문 자료에서 郡侯·郡伯·郡男뿐 아니라 郡子로 봉작한 사례까지 확인되지만[「海東高麗國檢校太子大保中大夫知門下省事刑部尙書致仕文公墓誌」, "公風采堂 (중략) 嘗爲使入大金, 又以金紫光祿大夫尙書左僕知樞密院事**南平郡開國子**食邑三百戶"(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文公裕墓誌銘' 참조)], 縣公으로 봉작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에서 唐宋의 봉작제를 응용하되 公爵과 결합할 수 있는 邑格만큼은 國과 郡으로 제한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53) <표 Ⅱ-5>에서는 유독 爵條의 품계 정보가 盛唐 및 唐末宋初의 제도와 크게 어긋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郡公과 縣侯의 품계 차이가 중국에 비하여 크고 縣侯부터 縣子까지 동일한 품계로 설정된 것을 보면 爵條의 품계 정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爵條가 문종관제 성립 이전의 제도를 담고 있는 만큼, 문종관제를 소급 적용하여 품계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그 방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문종관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기는 內史門下省이 中書門下省으로 개편된 1061년(문종 15)과 祿科 및 관제 개편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1076년(문종 30)인데(박용운, 2009 앞의 책, 67~78쪽 참조), 爵條는 현종대부터 문종초까지 유지된 제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唐宋의 제도를 도입하여 고려봉작제의 原形을 만들 때 고려사회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품계 정보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종과 문종은 君 또는 公·侯를 唐末宋初의 군왕 혹은 그 이상의 王爵과 동격으로 간주하고 이하의 작위체계를 편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 爵條에 명기된 公·侯·국공의 식읍이 ≪宋史≫ 雜制 속 군왕·국공의 식읍과 동일한 3천호였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문종이 즉위 직후 최상층 작위인 君을 公과 侯로 분화시킨 연유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王爵을 배제한 상태로 唐宋 봉작제를 도입한 고려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코 최상층 작위의 칭호 문제였다. 현종은 태조 이래 전래되어온 君칭호를 대안으로 채택하였으나, 문종초 왕실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君칭호만으로 왕실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생겼다. 현종 當代까지는 現王의 자녀세대에 대한 봉작만 진행되었던 반면 문종 즉위 후에는 現王의 동세대인 왕제, 다음 세대인 王姪과 왕자까지 봉작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역대 왕조의 공식적인 작위체계에 君爵이 확인되지 않고 각종 典章書에서도 君은 연원을 알 수 없는 이질적 칭호로 여겨졌던 당시 상황 또한 문종이 왕실 작위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왕의 最近親으로서 對中外交에 참여하였을 왕자·왕제들이 어떠한 공식 칭호를 갖고 있었는가는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254]

문종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물제도를 참고하여 國·郡·縣 등 邑號를 탈락시킨 公·侯를 王爵의 위상에 놓는 방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 같다. ≪通典≫ 職官 封爵條 따르면, 隋와 唐의 일원적 9등작 체계가 등장하기 이전 중국 역대 왕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三代의 3등작·5등작과 秦의 20등작을 조합하였다. 특히 魏와 晉은 國을 관하여 책봉하는 왕·公·侯·伯·子·男을 작위의 상층부에 두고 郡·縣을

254)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전략) 忠獻曰, '平凉公旼上之母弟, 宏略大度, 有帝王之量, 且其子淵, 聰明好學, 宜爲儲副.' 議未決, 晉材曰, '縝與旼, 皆可爲君, **然金不知有縝, 若立縝, 彼必以爲篡, 不如立旼. 如毅宗故事, 以弟及告之, 則無患矣**' 議乃定"에 따르면 고려와 중국의 외교 관계에서 왕자·왕제의 정보는 공유되었던 것 같다.

관하여 책봉하는 公·侯·伯·子·男을 하위에 두는 방식으로 봉작제를 구성하였다. 晉에서 왕은 5천호 이상의 大國·次國·下國에 봉해질 수 있었고, 公은 5천호의 下國, 侯는 5천호가 되지 않는 國에 봉해졌다고 전해진다.[255]

기실 진시황을 기점으로 '皇帝' 관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의 최고권자는 '王'이었고 제후는 公·侯·伯·子·男으로 편제될 뿐이었다. 周代 봉건제 하의 宋公·魯侯·秦伯이 '皇帝'의 등장 후 宋王·魯王·秦王과 같은 王爵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隋唐 이전의 중국 역대 왕조는 公·侯·伯·子·男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나름의 작위체계를 정립하였다. 중국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자의 海東天下를 갖고 있었던 고려 또한 다원적 천하관에 걸맞은 봉작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려는 역대 왕조의 작위체계를 참고함과 동시에 三代의 고전적 체제를 변용하여 봉작제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종이 현종 왕자들의 책봉호에 포함된 지명별호를 그대로 계승하되 위와 같이 君爵만 公·侯로 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지명별호에 國名에 버금가는 위상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평양·낙랑·개성은 고려인들이 自國史로 인식한 역대 국가의 수도 또는 별칭에 해당한다.[256] 현종대부터 국공보다 상위의 王爵을 염두에 두고 君爵

255) ≪通典≫ 권19, 職官1 封爵, "魏, 王公侯伯子男, 次縣侯, 次鄉侯, 次亭侯, 次關內侯, 凡九等, 關內侯爲虛封, 自此始. 晉亦有王公侯伯子男, 又有開國郡公縣公郡侯縣侯伯子男, 及鄉亭, 關內等侯, 凡十五等. 王大國二萬戶, 三軍, 兵五千, 次國一萬戶, 二軍, 兵三千, 下國五千戶, 一軍, 兵千五百. 其公之制如五千戶國, 侯如不滿五千戶國, 並置一軍, 千人. 其伯子男以下各有差, 不置軍."
魏와 晉의 작위 체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魏(9등)	왕	공	후	백	자	남	현후	향후	정후	관내후 (虛封)
晉(15등)	왕	공	후	백	자	남	(開國)군공,현공,군후,현후,현백,현자,현남	향후	정후	관내후 (虛封)

256) 문종대의 봉작에 國名에 버금가는 지명별호가 포함된 현상을 발견하고 그 의의

을 제정하였으므로 실재하는 지명이 아닌 평양·낙랑 등의 별호를 사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宋·魯·秦과 같은 周代 제후의 國名이 隋唐에서도 관념적으로 이어져 왕작과 결합하였던 역사를 상기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종 말년까지 이어져, 문종 왕자들은 父王으로부터 초봉될 시 鷄林·扶餘·辰韓과 같은 별호를 사용하였다.

문종이 君爵을 公·侯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었던 작위는 국공이었다. 1076년(문종 30)의 종실록을 토대로 복원한 작위체계에서는 국공의 흔적이 사라지고 公·侯 하위에 伯·사도·사공이 존재한다.[257] ≪고려사≫ 爵條에서는 公·侯·국공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문종이 君을 公·侯로 분화시킨 뒤 君 하위의 국공을 한동안 유지하였는지 아니면 바로 폐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周代 봉작제에서 연원한 公·侯와 唐代 봉작제에서 연원한 국공은 그 계통과 위상이 달랐다 하더라도 향후 운용상의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에 국공은 유명무실의 작위로 남아 있다가 伯·사도·사공이 신설될 때 폐기되었을 수 있고 또는 君爵을 公·侯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곧바로 폐기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爵條는 현종대 제도와 문종대 제도가 착종된 채 전해진 것이다. 문종이 改封하기 전까지 왕기가 이전의 책봉호인 개성국공을 유지하였을 것이므로 ≪고려사≫ 撰者들이 문종초 公·侯·국공이 공존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고려중기에 이르러 公爵과 侯爵의 형식은 달라졌다. 12세기 이후 公·侯·伯의 책봉호는 실재하는 군현들의 별호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태련은 고려의 자주성이 약화되었다고 평한 바 있다.[258] 그러나 고려 왕실의 公·侯가 王爵에서 연원하였다는 인식은

를 논한 연구자는 우태련이다. 우태련은 문종 이후의 王代에서 왕실 책봉호가 國名이 아닌 地方名을 포함한 현상을 두고 고려의 자주성이 약화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禹太連, 1987~89 <高麗初 地名別號의 制定과 그 運用> 上·中·下 ≪경북사학≫ 10~12, 39쪽).

257) ≪고려사≫ 권80, 志34 食貨3 祿俸 宗室祿.

확대되어 公·侯·伯, 사도·사공을 諸王으로 명명하는 문화를 낳았으며, 왕실 구성원들을 唐宋의 諸王에 비견하는 관습과 제도는 고려중기까지 온존하였다. 의종~명종대 인물인 강릉후 온과 恭化侯 瑛은 當代에 侯王으로 명명되었고,[259] 명종 사위이자 희종의 妻父였던 寧仁侯 稹는 李奎報와의 사적 관계에서 寧王으로 지칭되었다.[260] 나아가 公·侯의 妻는 각각 公妃·侯妃가 되었다.[261] 唐에서 王의 母와 처는 妃로, 國公의 母와 처는 國夫人으로 봉작하는 외명부 직제가 성립되었는데,[262] 고려에서는 公·侯의 처를 妃로 지칭함으로써 公·侯가 親王·嗣王·郡王에 비견되는 존재임을 드러내었다.

3) 혈통·'종실내혼'을 고려한 階序的 편제

현종이 도입한 초기 봉작제에서는 왕실을 君과 국공으로 편제하였고, 문종초에는 君을 公·侯로 분화시켰다. 이러한 편제는 이제현이 기록하였던, "종실 중 친근하면서 존귀한 자를 公으로 그 다음을 侯로 삼고 소원한 자를 伯으로 삼았으며, 어린 자를 사도·사공으로 삼아 諸王으로 총칭"한[263]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公·侯·伯을 왕실 상층에 수여하고 왕실 하층을 사도·사공으로 삼는 체계는 ≪고려사≫ 종실록조에 따르면 문종 중후반의 대대적인 관제 개편을 거치며 비로소 확

258) 우태련, 1988 앞의 논문(中), 39쪽.

259)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文宗 朝鮮公燾 附 恭化侯瑛 및 「高麗國金紫光錄大夫同德功臣開府儀同三司▨▨大傅守司徒上柱國恭化侯食邑▨百戶墓誌」(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영묘지명') 참조.

260) ≪동국이상국집≫ 권1, 古律詩 「呈張侍郎自牧一百韻」, "(전략) 左相曾邀飮[文相國特召予飮, 故比李適之], **寧王許醉扶[寧仁侯召予飮, 予醉倒使人扶之]**, 玉顔羅密座."

261)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宣宗 思肅太后李氏, "睿宗二年四月, 王欲以貞信賢妃, 祔宣宗, 諫官奏曰, '**貞信爲國原公妃**, 年月不久 (후략)'";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밀성군, "恭讓王二年, 以曾祖**益陽侯妃**朴氏內鄕, 陞爲密陽府."

262)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郎中, "外命婦之制 (중략) 王母妻爲妃, 一品及國公母妻爲國夫人, 三品已上母妻爲郡夫人."

263)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립되었다.

[B-2] 宗室祿은 문종 30년에 정하길, 460석 10두【公】, 400석【侯】, 350석【尙書令】, 300석【守太尉侯】, 240석【守司徒·司空伯】, 220석【司空】으로 하였다. 仁宗朝에 다시 정하길, 600석【國公】, 350석【諸公尙書令】, 300석【諸侯】, 240석【諸伯】, 220석【諸守司空】으로 하였다.[264]

사료 [B-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왕실 작위로 伯이 신설되었다. 1076년(문종 30)의 종실록은 侯가 守太尉와 尙書令을, 伯이 守司徒나 守司空을 일반적으로 겸직한다는 전제 위에 책정되었다. 수태위·수사도와 같은 三公職과 상서령을 왕실 구성원이 겸직하는 현상은 현종대부터 이미 제도화된 상태였으므로 이 시기 왕실 편제의 가장 극적 변화는 伯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伯보다 하위 등급으로 사공이 설정되었다. 여기서의 사공은 문자 그대로 사공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태위·사도를 포함한 삼공직의 '대명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현종 이후 종실전에 입전된 인물들을 추적해 보면 사공에서 사도·태위로 增職된 종실 일부만 伯에 봉작되고 대다수는 삼공직을 단독직으로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65] 즉, 문종 치세를 거치며 관직체계 내의 삼공은 公·侯·伯의 겸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왕실의 등급을 나타내는 하나의 항목이 되어 '爵位化' 하였다. 셋째, 君의 하위 작위였던 국공이 문종대 폐기되었다가 인종대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인종대 국공은 前代의 국공과 동

264) ≪고려사≫ 권80, 志34 食貨3 祿俸 宗室祿.

265) 종실전 서문에서는 고려 왕실이 "어린 자를 사도·사공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문장을 통하여 고려시대에 사도 또한 종실의 단독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기덕은 고려 왕실에서 삼공직을 차용하여 태위·사도·사공을 종실에게 제수하였으나 점차 단독직으로 제수되는 건 사도·사공으로 축소되었다고 보았다(김기덕, 1998 앞의 책, 79쪽 주)38 참조). 이에 김기덕은 왕실의 하위 구성원들을 사도·사공(류)으로 통칭한다. 김기덕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고에서도 '사도·사공' 또는 '사도·사공세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일한 작위로 보이지 않는다. 국공에게 가장 많은 종실록이 책정된 것을 참작하면, 국공은 한 차례 의미 변환을 거치며 부활하여 인종대 작위체계의 최상층에 자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266]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려 왕실 봉작제의 시기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표 Ⅱ-6> 고려 왕실 봉작제의 시기별 변화

<table>
<tr><th>출처</th><th>제정 시기</th><th colspan="9">지위체계</th></tr>
<tr><td>《고려사》 爵條</td><td>문종초 (“文宗定”)</td><td></td><td>公</td><td colspan="3">侯</td><td colspan="2">國公</td><td></td></tr>
<tr><td rowspan="2">《고려사》 宗室祿</td><td>문종 중후반 (“文宗三十年定”)</td><td></td><td>公</td><td>侯</td><td>尙書令侯</td><td>守太尉侯</td><td>守司徒伯</td><td>守司空伯</td><td>司空</td></tr>
<tr><td>인종초 (“仁宗朝更定”)</td><td>國公</td><td>諸公 尙書令</td><td colspan="3">諸侯</td><td colspan="2">諸伯</td><td>諸守 司空</td></tr>
</table>

문종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公·侯·伯과 사도·사공으로 왕실을 계서화 하는 편제 방식이 고려 봉작제의 定型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겸대하는 관직에 미세한 차이가 보이고 국공이 재등장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인종대 봉작제가 문종대의 큰 틀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위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체제는 충선왕 복위기 고려 봉작제가 재편될 때까지 奏效하였다. 이제현의 기록은 고려 봉작제가 부정되기 전까지 실제 그가 경험하고 전해 들었던 事實에 가까웠다.

<표 Ⅱ-6>에서는 문종대 화두가 된 것이 왕실 하위층의 편제 문제

266) 인종대 국공 지위에 오른 인물로는 朝鮮國公 李資謙이 유일하게 확인된다. 이자겸은 1126년(인종4)의 난으로 정계에서 축출되기 때문에 종실록의 ‘仁宗朝’는 인종 즉위초의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자겸의 난 이후 고려에서 국공 지위에 오른 인물은 全無하다.

였음을 알 수 있다. 왕자·왕제 대상의 公·侯 작위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국공은 伯과 사공으로 대체되며 사라졌다. 실제 개성국공 기를 마지막으로 고려에서 唐宋의 국공과 같은 지위에 오른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爵條의 작위체계는 현종의 遺産과 문종초의 개편된 제도가 뒤섞인 채 일시적으로 존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肅宗·인종 재위기 朝鮮公 燾와 李資謙이 수여받은 朝鮮國公은 전후 맥락상 公·侯의 하위가 아니라 그 상위에 존재하는 작위였으므로 <표 Ⅱ-6>의 인종초 작위체계에 견주어 속성을 고찰해보아야 한다.

조선공 도는 숙종 즉위년에 처음 조선국공이란 작위를 띠고 사료에 등장한다.[267] 같은 기사에 숙종의 동생들이 公·侯였던 데 반해 숙종의 형으로 추정되는[268] 왕도만 국공이었던 것을 볼 때 국공은 숙종이 異母兄을 우대하여 특별히 책봉한 작위임이 분명하다. 조선공 도는 그 아들 廣平公 源의 묘지명을 통하여 朝鮮國禳憲王이라는 시호를 받았던 사실 또한 확인된다.[269] 현종 즉위 후 고려 왕실에서 사후 王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靖簡王 평양공 기와 양헌왕 조선공 도 두 사람뿐이다.[270] 그만큼 생전 국공에 책봉되었던 왕도의 위상은 여타 왕실

---

267)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즉위년 10월 경진, “制加朝鮮國公燾, 食邑五千戶食實封五百戶, 扶餘公濕守太傅, 辰韓侯愉爲尙書令, 樂浪伯瑛爲樂浪侯.”

268) 신수정, 2018 <자매간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 ≪사학연구≫ 131, 98쪽에서는 문종대 이후 봉작 순서에서 조선공 도가 숙종보다 항상 앞섰던 것을 볼 때에 출생순서 상 조선공 도가 숙종보다 손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1061년(辛丑; 문종 15) 작성된 「李子淵墓誌銘」에서는 장녀 延德宮主 소생으로 태자(순종)와 國原侯(선종), 차녀 壽寧宮主의 소생으로 朝鮮侯만 확인할 수 있다(김용선, 202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上(개정 3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18~23쪽). 1054년(문종 8) 탄생한 숙종은 아직 작위를 받지 못하여 「이자연묘지명」에 공식 칭호를 남기지 못한 반면 조선후는 묘지명이 작성되던 시점에 이미 작위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공식 칭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숙종은 1065년(문종 19) 비로소 鷄林侯에 초봉되었다(≪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9년 2월 갑인).

269) 「高麗國廣平公源誌」, “[公]諱源, 姓王, 字未詳, 祖文宗, 考朝鮮國禳憲王, 公爲第二子也”(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탁본 이미지 참조).

270) 「高麗國[宗][室]處女王氏墓誌銘」, “王氏女者定懿公梓之處子也, 顯宗第四子靖簡王之五世孫也, 肅宗第三子大原公俙之外孫也”(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탁본 이

구성원들과 구별되었다. 이자겸은 외손 인종의 즉위를 계기로 漢陽公을 거쳐 조선국공이 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이자겸이 수여받은 국공이라는 지위에는 8,000호의 식읍과 開府·僚屬과 같은 막대한 특권이 수반되었다고 전해진다.[271]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종 4남 왕기가 본래 의미의 국공 작위를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즉위 직후 君을 公·侯로 분화시킨 문종은 국공을 없애고 伯과 사공을 신설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려 왕실을 보다 정교하게 편제하였다. 사공을 비롯한 삼공직이 처음부터 역대 국왕의 손자녀세대를 염두에 두고 왕실 봉작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實例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종 當代에 公·侯·伯의 겸직이 아닌 단독직으로 삼공에 제수된 왕실 인물은 평양공 기의 장남 王璡과 차남 王琚(珥) 두 사람뿐이다. 종실전에 왕진은 태위, 왕거는 사공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272] 현재 남아있는 사료에 두 사람이 삼공에 오른 정확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왕진과 왕거 모두 1072년(문종 26) 校尉 巨身의 난에 연루되어 遠地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早卒하였던 사실을 볼 때[273] 두 사람이 삼공에 제수된 시기는 문종대가 확실하다. 즉, 문종은 동모제 왕기의 아들이자 현종의 손자였던 왕진과 왕거를 관직체계의 최상층인 삼공직에 두어 우대하되 公·侯·伯의 작위는 수여하지 않음으로써, 前王 靖宗의 直子인 왕경과 왕개 그리고 現王인 자신의 왕자들과 두 종남을 差待하였다.

미지 참조);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顯宗 平壤公基, "後改封平壤公 (중략) 二十三年卒, 後追封靖簡王". 고려 국왕의 시호가 ○○大王이었기 때문에 문종이 동모제 평양공 기를 大王 바로 아래의 王으로 추증하여 그 권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271) ≪고려사≫ 권127, 열전40 叛逆 李資謙.

272)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顯宗 平壤公基.

273) ≪고려사절요≫ 권5, 문종인효대왕 26년 7월, "兵士張善上變告, '校尉巨身與其黨千餘謀廢王, 立王弟平壤公基.' 命捕之, 巨身伏誅, 夷其族. 基已死, 流基子璡于南海縣, 珥于安東府, 竝尋死. 季子瑛以幼免. 擢張善爲將軍, 兄弟子孫, 各賜爵一級";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현종 평양공기, "子璡琚瑛. 璡太尉, 琚司空, 早卒". 평양공 기의 차남 王琚는 ≪고려사절요≫에서 王珥으로 등장한다. 琚와 珥의 字形이 유사하여 두 史書 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076년(문종 30)의 종실록에 伯爵이 처음 등장하지만, 삼공직과 달리 伯은 문종 當代에 봉작한 實例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문종이 왕실의 어떠한 친속을 의식하고 伯爵을 신설하였는지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 삼공직 가운데 사공보다 상위의 사도·태위를 伯의 겸직으로 상정한 것을 볼 때, 삼공에 제수되었으나 아직 작위는 없었던 왕실 친속에게 功勳 혹은 '여타의 사유'로 작위를 내려 지위를 높여줄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伯爵을 활용하려고 고안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伯에 책봉한 實例는 문종 다음 세대에서 처음 확인된다. 선종대부터 伯은 왕녀의 배우자이지만 국왕의 直子 출신은 아니었던 종남들의 작위로 활용되었다. 고려 왕실 역사상 伯에 책봉된 최초의 인물은 평양공 기의 3남이자 문종의 두 번째 사위였던 樂浪伯 瑛이다. 본래 王瑛은 동모형 왕진·왕거의 예에 따라 작위 없이 삼공직에만 제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에 그가 낙랑백으로 처음 등장한 시점은 1094년(헌종 즉위) 6월이다. 獻宗은 문종 왕자 조선공 도, 鷄林公 熙(숙종), 常安公 琇, 扶餘公 遂, 辰韓侯 愉와 선종 왕자 漢山侯 昀에 대한 진봉을 진행하며 낙랑백 영 또한 대상으로 삼았다.[274] 당시 낙랑백 영이 역대 국왕의 直子들과 동렬에 설 수 있었던 연유는 그의 위상이 왕실의 방계에서 직계로 변경되었던 데 있다. 왕영은 문종 차녀 보령궁주의 배우자로 간택되면서 문종 직계가족에 편입되었다. 고려초 성종이 광종 왕녀와의 혼인을 계기로 광종의 '子'이자 경종의 '弟' 위상을 갖게 된 현상과 동일하다.

정황상 伯爵의 활용법은 선종 개인의 독창적 발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伯爵을 고안할 당시부터 문종이 방계 출신의 사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종의 왕녀로 積慶宮主와 보령궁주 두 사람만 알려져 있으나 ≪고려사≫ 공주전에 따르면 문종에게는 총 7명의 왕

274) ≪고려사≫ 권10, 세가10 헌종 즉위년 6월 기해, "以朝鮮公燾·鷄林公熙守太師, 常安公琇·扶餘公遂守太保, 辰韓侯愉·漢山侯昀·樂浪伯瑛守司徒."

녀가 있었다. 특히 仁睿順德太后 李氏는 적경궁주·보령궁주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왕녀를 생산하였는데,[275] 왕녀의 배우자가 될 만한 이복형제로 仁敬賢妃 李氏 소생의 세 왕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문종은 일부 왕녀가 왕실 방계의 종남과 결혼하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명의 왕녀 가운데 2명만 혼인 적령기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문종 當代에 사위로서 伯爵에 책봉된 實例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문종 사후 그가 남긴 두 명의 왕녀를 혼인시키는 일은 동모형인 선종의 과제가 되었다. 문종 왕자들에 비하여 왕녀의 수가 현격히 적었으므로 처음부터 선종은 異母弟들을 妹壻 후보군으로 상정하였던 듯하다. 혼인 당사자 간의 나이차를 고려하여 선종은 인경현비의 차남 扶餘侯 遂를 문종의 첫 번째 사위로 간택하고 1986년(선종 3) 혼인을 성사시켰다.[276] 이보다 한 해 앞서 선종은 이복남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들의 仕路를 禁錮하라는 判을 내려 관료가문의 극단적 근친혼을 통제한 바 있었지만,[277] 왕제들의 혼인에 있어서만큼은 건국 이래의 왕실 婚俗을 준수함으로써 왕실이 비범한 존재라는 점을 가시화하였다. 이변이 없다면 문종의 두 번째 사위는 인경현비의 3남인 진한후 유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여후 수와 적경궁주의 혼인을 결정한 후 선종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선종의 동모제 金官侯 [丕+灬]와 卞韓侯 愔, 異母弟 진한후 유가 합심하여 적경궁주와 부여후수가 '同姓'이며 "同姓에게 장가들 수 없다"는 논리로 혼인을 반대한 것이다.[278] 여기서 이들이 거

275)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문종, "其餘仁睿所生二公主, 仁淑賢妃李氏所生二公主, 仁穆德妃金氏所生公主, 皆蚤卒."

276) 積慶宮主가 1074년(문종28) 공주에 책봉되고 1086년(선종3)에 혼인한 것을 볼 때(≪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28년 2월 甲午; ≪고려사절요≫ 권6, 선종사효대왕 3년 2월) 그녀의 출생연도는 106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인경현비의 장남인 조선공 도는 1054년(문종8) 출생한 숙종보다도 나이가 많았으므로 적경궁주의 혼인상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277)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銓注, "宣宗二年四月判, '同父異母姊妹犯嫁所産, 仕路禁錮.'"

론한 '同姓'은 語義 그대로 '같은 姓을 공유한 친족집단'이 아니라, '동일 직계가족' 중에서도 문종의 기본가족에 해당하는 협소한 단위만 지칭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 왕자가 유교 경전의 권위를 빌려 문종 직계자녀 간 혼인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同姓'이라는 용어를 援用한 것에 불과하다.[279] 만약 '同姓'이 '같은 姓을 공유한 친족집단'을 뜻하였다면 선종대부터 '종실내혼'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세 왕자는 '종실내혼'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훗날 진한후 유의 두 아들은 모두 숙종의 사위가 되었다.[280]

선종은 형제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적경궁주와 부여후 수의 혼인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왕실의 이복남매혼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다. 보령궁주의 배우자를 물색할 때 선종은 형제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력한 후보였던 진한후 유가 부여

---

278) ≪고려사절요≫ 권6, 선종사효대왕 3년 2월, "王妹積慶宮主適王弟扶餘侯澐. 先是, 王弟金官侯[丕+灬]卞韓侯愔辰韓侯愉等**諫以同姓**, 不從";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문종 金官侯[丕+灬], " [丕+灬]有學術, 扶餘公澐, 嘗娶積慶宮主, [丕+灬]與愔·愉等, 諫以爲**不可娶同姓**, 王不從."

279) ≪고려사≫ 종실전 撰者는 금관후 비에게 學術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적경궁주와 부여후 수의 혼인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라고 이해하였다(≪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문종 金官侯[丕+灬]). 금관후 비의 학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그가 유교 경전으로부터 문종 왕자와 왕녀의 이복남매혼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찾아내어 "不可娶同姓"이라는 언설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실제 ≪論語≫ 제7편 述而에서는 昭公이 동성혼을 숨기고자 부인을 吳孟子로 불렀던 행위에 대하여 後代에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유교에서 '同姓'이 금혼범위를 규정하는 용어로서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종서는 부계친족집단 소속의 남성만이 조상신에 감응할 수 있는 동일한 氣를 지녔다는 중국식 同氣 관념이 고려말과 조선초 사회에서는 같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직계가족'으로 의미 변환되어, 형제의 아들과 '나'의 아들은 同氣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종서, 2009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신구문화사, 199~211쪽). 금관후비가 사용한 '同姓'의 本意가 고려말과 조선초 사회에서 전유한 '同氣'와 유사하였다고 이해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0)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문종 辰韓侯愉, "子沂演. 沂, 睿宗授檢校尙書右僕射·柱國, 進檢校司空. 尙睿宗女大寧公主 (중략) 演, 睿宗授檢校戶部尙書·柱國, 尙肅宗福寧宮主";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숙종 大寧宮主, "明懿太后柳氏所生, 適淮安伯沂."

후 수와 적경궁주의 혼인을 반대한 당사자였으므로 보령궁주와의 혼인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였다. 적경궁주의 혼인이 난황을 겪는 과정에서 '종실내혼' 자체는 부정당하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려 왕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왕실이 보편적 문화에 역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내부에서 이복남매혼만큼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종의 대안은 사촌 왕영을 간택하는 것이었다. 평양공기의 장남과 차남 모두 교위 거신의 난이 발각된 이후 사망하였고, 靖宗의 두 왕자 또한 문종대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 왕영은 왕실에서 문종 왕자들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남성이었다.[281] 1043년(정종 9) 출생인 왕영과 보령궁주의 나이차가 20살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 놓고 보아도[282] 두 사람의 혼인은 선종의 선택권이 극히 제약된 상황에서 추진된 이례적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영과 보령궁주의 혼인 과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同姓' 문제가 운운되지 않았다. 두

281) ≪고려사절요≫ 권5, 문종인효대왕 26년 7월 기사에 따르면, 과거 교위 거신이 평양공 기 옹립을 도모하였던 사실이 1072년(문종 26) 문종에게 고발되었을 때, 평양공 기의 가족 가운데 3남 왕영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되었다고 한다. 교위 거신이 정말 평양공 기 옹립을 도모하였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사료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043년생인 왕영이 1072년 3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되었던 것을 본다면, 교위 거신의 난이 실제 일어난 시점은 왕영이 유년기였던 1050년대 또는 1060년대초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종은 1072년 당시 왕영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면죄하였던 것이 아니라, 교위 거신의 난이 일어난 시점에 그가 유년기를 보내고 있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면죄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왕영을 남겨둔 덕분에 고려 왕실은 왕자·왕녀 간 이복남매혼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282) 왕영은 종실전 卒記를 통하여 1043년(정종 9) 출생임이 확인된다(≪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현종, "睿宗七年卒, 年七十."). 그는 1047년(문종1) 출생한 순종보다 연상이었다. 문종의 장남이 오히려 평양공 기의 3남보다 연하였던 연유는 문종의 초혼 상대인 仁平王后 金氏가 문종과 이복남매 관계였던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초 왕실에서 확인되듯 이복남매혼과 같은 극단적 근친혼은 자녀 생산에 불리하였는데, 문종은 즉위 전까지 일반 왕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초혼 관계에서 후사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추가로 부인을 맞이할 수 없었다. 즉위 후에야 문종은 이자연의 세 딸을 맞이하여 여러 자녀를 얻었다. 반면 문종의 동모제였던 평양공 기는 왕실 외부 여성과 혼인하여 일찍 후사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부계사촌지간이었으나 앞서 문종 왕자들이 '同姓'으로 규정하였던 금혼범위와는 무관한 관계로 인식되었다.

보령궁주와의 혼인 이후 無爵 상태의 왕영은 侯보다 하위인 伯에 책봉되었다. 왕실 주변부에 있던 왕영이 명실상부 문종의 직계가족이자 선종의 近屬이 되었기 때문에 작위체계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왕영이 부여후 수보다 연상이었음에도 그의 작위가 伯爵에 불과하였던 것은 보령궁주를 매개로 부여받은 문종 직계가족 내 서열상의 차이, 나아가 양자의 혈통상 차이에 기인한다. 왕녀의 서열이 각 배우자의 서열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문종의 첫 번째 사위인 부여후 수가 두 번째 사위인 낙랑백 영보다 上位인 것은 당연해보인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의 서열은 작위의 등급 자체를 달리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侯와 伯으로 두 사람의 위계가 나뉜 근본적 원인은 국왕의 直子와 종남이라는 출신 차이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문종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사위였던 부여후 수와 평양공 기의 아들인 왕영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는 것이 고려 국왕의 입장이었다. 작위의 계서가 곧 혈통의 차이를 표상하게 된 것이다. 이후 종남 출신 王壻들의[283] 첫 번째 작위는 모두 伯爵으로 고정된다. 왕녀를 매개로 국왕의 직계가족에 편입된 종남들은 侯爵에서 시작하였던 왕자와 달리 伯爵에서 시작하여 나이·공훈에 따라 侯와 公에 진봉되었다.

이상으로 1절에서는 중국 봉작제가 고려에 도입된 이후 公·侯·伯, 사도·사공으로 구성된 독특한 왕실 봉작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고려는 중국과 전혀 다른 정치적·사회문화적 토대 위에 성립한 국가였기 때문에 대개 중국의 문물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치밀한 재해석을 거쳐 왔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283) 원간섭기 이전 고려에서 왕녀의 배우자를 駙馬로 칭한 사례는 경순왕이 유일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왕녀의 배우자를 '문종의 사위', '숙종의 사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불가피하게 범칭을 써야 할 경우 王壻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려사≫ 권67, 지21 예9 嘉禮 公主下嫁儀에서 왕녀의 배우자를 '壻'로만 지칭하였던 사실을 참조한 것이다.

친족문화는 화풍이 도입될 때마다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영역이었고, 왕실은 그 속성상 친족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화풍과 토풍이 갈등하는 장이 되곤 하였다. 따라서 公·侯·伯과 사도·사공으로 구성된 고려의 왕실 봉작제 또한 특정 시기 단절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화풍과 토풍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고려가 최초 도입한 봉작제의 原形을 찾기 위하여 ≪고려사≫ 爵條의 작위체계를 검토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 봉작제가 일원적 작위체계였음에도 爵條에 대한 기존 해석은 이원적 작위체계를 상정하고 이루어져 왔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 결과 爵條를 일원적 작위체계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야만 그간 '이상한' 사례로 치부되었던 현종대의 봉작 기록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爵條는 중국 봉작제가 고려에서 변용되었던 과정을 보여준다. 현종대부터 문종대까지의 작위체계를 추적해 보면, 중국 봉작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가장 먼저 고려한 변수는 당시 동아시아의 다원적 질서였다. 현종대에는 唐制의 王爵을 君爵으로 대체하면서 국공 이하 작위체계까지 도입한 뒤, 唐末宋初의 관행에 따라 작위를 수여하였다. 문종 즉위 후 왕실의 세대구성이 복잡해지자 君은 公·侯로 분화되었으나 그 실체가 王爵이라는 인식은 諸王 의식으로 이어져 고려 중기까지 온존하였다. 다음으로 고려한 변수는 고려초 이래의 왕실 전통이다. 고려에서는 역대 국왕의 손자녀세대에게 작위화된 관직인 사도·사공을 제수하여 그들을 관료집단보다 上位에 두되 국왕 자녀와의 혈통상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런데 왕실의 '종실내혼' 전통에 의하여 사도·사공은 왕녀를 매개로 역대 국왕의 직계 가족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사도·사공과 비슷한 시기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伯爵은 '종실내혼'에 따른 가변적 친속관계망을 고려하여 운용된 작위였다.

2. 왕실 封爵制의 운영원리

1) 종법질서를 탈각한 封爵制 운영원리

왕실 봉작은 국왕이 용인한 가족 범위를 공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국왕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친속관계망에 어떠한 경계를 그어 왕실 핵심부의 정치적·사회적 특권층을 劃定하는 것이 왕실 봉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봉작을 통하여 국왕과 그 가족의 사적 관계는 공적 관계로 전환된다.

고려의 왕실 봉작제 또한 국왕의 친속들을 공적 체제 내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왕실 봉작에 수반되는 겸직과 식읍을 통하여 왕실 구성원과 관료의 계서적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특권 또한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국왕의 친속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봉작 대상으로 삼았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봉작을 수여하였는지 명문화한 규정을 고려시대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唐制에서 황실 구성원의 친족집단 내 지위에 따라 봉작할 수 있는 작위 등급, 작위 계승의 원칙 등을 명문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왕실 봉작의 대상이 되는 친속 범위, 봉작의 승계 등에 관한 법규가 고려 當代에 과연 존재하였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고려사≫ 종실전 서문 및 이제현의 ≪익재난고≫ 종실전서에서는 고려가 친근하면서 존귀한[親且尊] 자를 公, 그 다음을 侯, 소원한[疎] 자를 伯, 어린[幼] 자를 사도와 사공으로 삼았다고 전한다.[284] 이제현에 따르면 고려 왕실에서의 봉작은 '親'·'尊'·'疎'·'幼'와 같은 모호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고려 當代에 왕실 봉작의 '원칙'은 분명히 존재하였겠으나 唐과 같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원간섭기가 시작되며 많은 제도가 사라지거나

284)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益齋亂藁≫ 권9下, 序「宗室傳序」.

변질되었음에도 봉작제 그 자체는 忠宣王이 복위하기 전까지 尙存하였고, 이제현은 忠烈王代 이미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다.[285] 만약 왕실 봉작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이제현의 기록에 그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왕실 봉작의 원칙과 수여범위라는 문제에 귀납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김기덕은 종실전에 입전된 개별 인물들의 방대한 봉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고려 왕실의 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가 밝힌 고려시대 왕실 봉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자는 侯, 王壻는 伯을 초봉으로 받았다. 둘째, 公은 초봉으로 주어지지 않고 侯 또는 伯에서 단계적으로 진봉된 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셋째, 국왕과 태자의 妃父 또한 侯에 봉작되었다. 넷째,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에게는 사도·사공을 제수하였다.[286] 통설에서 밝힌 원칙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Ⅱ-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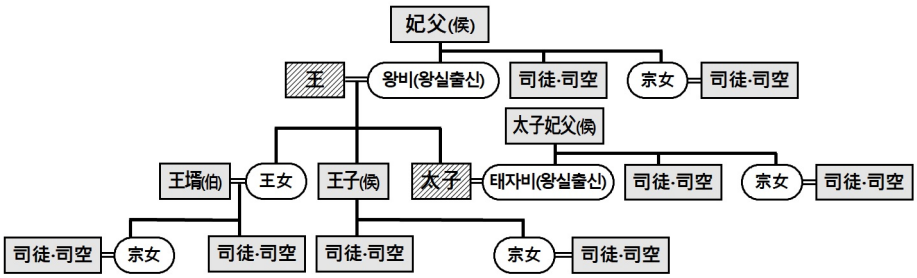

<그림 Ⅱ-3> 고려시대 왕실 봉작(초봉) 수여 원칙에 관한 통설

二장 1절에서는 삼공과 伯에 최초 제수·봉작된 왕진·왕거(珥), 낙랑백 영의 實例를 통하여 문종과 선종 재위기 왕실의 어떠한 친속을 염

285) ≪고려사≫ 권110, 열전23 諸臣 李齊賢.
286) 김기덕, 1998 앞의 책, 76~97쪽.

두에 두고 삼공직과 伯爵을 고안하였는지 살펴본 바 있다. 문종은 평양공 기의 두 아들을 작위체계로부터 배제한 채 삼공직에 두어 靖宗 및 자신의 왕자들과 차별하였다. 선종은 문종이 고안한 伯爵을 종남 출신 王壻의 초봉으로 활용하여 왕자 출신 王壻와 종남 출신 王壻의 혈통상 차이를 작위의 계서로 드러내었다. <그림 Ⅱ-3>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초봉 實例는 통설에서 밝힌 왕실 봉작의 대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즉, 11세기 문종~선종의 치세를 거치는 동안 公·侯·伯의 작위는 역대 국왕의 자녀세대에 한정하고 손자녀세대에게 삼공직을 제수하는 왕실 봉작제의 기본 골격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前述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왕실에서 가장 결정적인 봉작 수여 기준은 혈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역대 국왕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인물만이 公·侯·伯의 작위체계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혈연적 친소관계 및 나이·항렬에 맞추어 公·侯·伯이 구분되었다. 왕자는 侯에서 시작하고, 왕녀를 매개로 자녀의 반열에 오른 王壻는 伯에서 시작하여, 나이와 항렬에 따라 公까지 진봉되었다. 이때 王壻에게 伯을 초봉하여 왕자들과 구분한 것은 남녀차별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봉작 당사자인 王壻의 혈통이 왕자들과 달랐던 데 기인한다. 문종 차녀 보령궁주 이후 이복남매혼이 부정되며 대부분의 王壻는 역대 국왕의 손자녀 이하 세대에서 간택되었다. 고려초 이래로 국왕의 直子와 손자는 혈통의 권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었다.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는 사도·사공에 제수되었다.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는 대부분 역대 국왕의 손자녀세대에 해당하였는데, 이들은 작위체계 바깥에 존재하며 삼공직을 단독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제현에 따르면 고려에서는 公·侯·伯과 사도·사공을 총칭할 때 '諸王'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사도·사공까지 '법제적 왕실'임을 명확히 하였다. 왕실의 법제적 지위에 수반되었던 각종 특혜, 대표적으로 종실록

또한 사도·사공을 염두에 두고 책정되었다. 사도·사공 자체가 작위는 아니었으나 고려에서는 이를 왕실 봉작제 말단에 위치시켜[287] '작위화'하였던 것이다.

제왕으로 통칭되었으나 사도·사공이라는 지위는 분명 그 성격이 모호하다. 왕실 구성원의 삼공직은 '작위화 된 관직'일 뿐 작위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통설에 따르면, 고려 當代人은 公·侯·伯을 '封'이라는 행위 동사와 결합시킨 반면 사도·사공 임명 시에는 '授' 또는 '爲'로 동사를 구분하여[288] 두 지위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달랐음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고려초부터 종친은 사환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제왕 범주에 포함된 삼공을 일반적인 관직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본래 삼공은 三師와 더불어 천자의 스승이자 참모에 해당하던 周의 太師에서 연원하였으며, 漢代에 이르기까지 軍政·民政 등을 총괄하는 實職이었다. 隋와 唐에 이르러 3성6부제를 토대로 한 중앙 관제가 확립되자 古代의 유산인 삼사·삼공은 명예직으로 전환되어 唐代에 주로 친왕을 대상으로 제수되었다고 한다.[289] 唐制를 참고하였던 고려 또한 中書令·門下侍中·尙書令을 3성의 장관으로서 종1품으로 삼고 삼사·삼공을 그보다 상위의 정1품으로 삼되, 중서령과 삼사·삼공은 실무를 보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하였다.[290] 단적인 예로 고려후기 무신집권자 崔怡는 외손 金敉를 사공으로 삼아 庶子 崔沆과 김미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전해지는데, ≪고려사≫에는 사공이 諸王에게만 부여되는 고위직이면서 실권은 없었기 때문에 최이가 김미를 사공에 제수한 것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291] 즉, 王壻로 간택되어

287) 위의 책, 67~75쪽.
288) 위의 책, 66~67쪽.
289) 권영국, 2016 <고려시대의 三師와 三公> ≪숭실사학≫ 36, 87~88쪽.
290) ≪고려사≫ 권76, 志30 백관1 三師三公 및 門下府; 변태섭, 1967 <高麗宰相考: 三省의 權力關係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35·36, 112~118쪽; 권영국, 위의 논문, 90~92쪽.
291) ≪고려사≫ 권101, 열전14 諸臣 金台瑞 附 金敉. 고려후기 무신집권자들이 擅權을 행사하여 왕실과의 통혼을 성사시킴에 따라 종래 왕실 전통은 조금씩 훼손되었다. 熙宗 왕녀 德昌宮主와 崔忠獻 아들 崔瑳의 혼인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국왕의 자녀 반열에 오른 일부 인물을 제외하면, 역대 국왕의 손자녀 세대는 작위와 관직의 경계에 머물며 이 모호한 지위를 통하여 국왕과의 혈통상 거리를 露呈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직체계의 최고위 명예직을 왕실 봉작제 주변부에 배치하여 公·侯·伯으로부터 파생된 왕실 자손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려 왕실 봉작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된 근본 원인은 고려 봉작제가 작위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 세습 불가의 원칙은 고려 봉작제 전반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고려시대 관료가 혈연을 근거로 父祖의 작위를 세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292] 왕실 구성원 또한 세습 형태로 公·侯·伯의 작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公·侯·伯의 자녀는 왕실 친속으로서 혈통의 권위를 인정받아 어린 나이부터 檢校尙書, 檢校尙書左右僕射, 檢校三師·三公 등 3품 이상의 고위 勳職을 받는 특권을 누렸다.[293]

보령궁주와 낙랑백 영의 소생 王禎·王禔는 각각 檢校尙書右僕射와 檢校戶部尙書에 제수되었다가 수사공에 올랐다.[294] 문종차녀 보령궁주가 낙랑백 영과 혼인한 시기는 문종장녀 적경궁주의 혼인이 성사된 1086년(선종 3)부터 '낙랑백'이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1094년(헌종 즉위) 사이이므로 왕정은 1080년대 후반~1090년대 초반 출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1110년(예종 5) 20세를 전후한 나이에 숙종차녀 흥수공주와 혼인하여 수사공 承化伯이 되었다고 전해진다.[295] 즉, 문종의 외손이었던 왕정은 10대에 이미 검교상서우복야를 거쳐 수사공이 되

수 있다. 고려 건국 이래 왕녀는 '종실내혼' 규범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었으나, 희종이 최충헌에 의하여 폐위된 뒤 자구책의 일환으로 崔璕과 왕녀의 혼인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전통에 큰 균열이 발생하였다. 김미가 사공에 제수된 사건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김미가 사공에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그가 神宗의 손녀와 혼인한 이후 公·侯·伯의 사위 지위를 획득하였던 데 있다. 고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변형되어가는 양상은 본고 三장 2절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292) 김기덕, 1998 앞의 책, 124쪽.

293) 권영국, 2016 앞의 논문, 98~100쪽.

294)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顯宗 平壤公基.

295)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5년 2월 庚寅.

었다가 혼인 후 승화백에 책봉되어 숙종의 직계가족으로 편입되었다. 이로부터 역대 국왕의 손자녀세대는 20세를 전후한 시점에 사도·사공에 제수되어 공식적으로 관료집단 上位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公·侯·伯의 자녀들은 관료제의 형식을 빌려 3품 이상의 훈직으로부터 일정한 단계를 밟아 사도·사공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의 昇職이 나이·혈통이라는 생득적 요건에 좌우되었던 점, 일정한 연령대에 이르면 이들에게 사도·사공을 제수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점, 사도·사공을 역임하는 것이 사환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公·侯·伯의 자녀들은 관료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公·侯·伯의 자녀들에 한하여 사도·사공이 작위로 전환될 수 있었던 연유는 여기에 있다.

上記 내용을 토대로 왕실 봉작의 구조와 위계를 표현하면 <그림 Ⅱ-4>와 같다. 국왕의 친속으로서 公·侯·伯의 작위와 작위화된 관직인 사도·사공이 '확보된' 인물들은 諸王으로 지칭되었다. 이들은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에 살펴볼 바와 같이 혼인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를 代受한 존재들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성을 포괄하였다. 사실상 諸王을 구성하는 公·侯·伯과 사도·사공은 왕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표상'이기도 하였다. 諸王에게는 종친불사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들은 역대 국왕과의 친속관계에 의거하여 계서화된 법제적 위상을 부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료집단의 상위에 존재하였다.

사도·사공의 자녀들은 사환권을 회복하였다. 이는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부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위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관습적인 차원에서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諸王인 부모 또는 조부모를 매개로 국왕의 가족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다. 법제적 왕실은 諸王에 한정되었으나 諸王은 국왕의 친속관계망에서

특정 범주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집단이었기에 국왕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는 범주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도·사공의 자녀는 본격적으로 사환되어 관료적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관료가문으로 분화하기 전까지 諸王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우선되었기에, 왕실과 관료 중간의 모호한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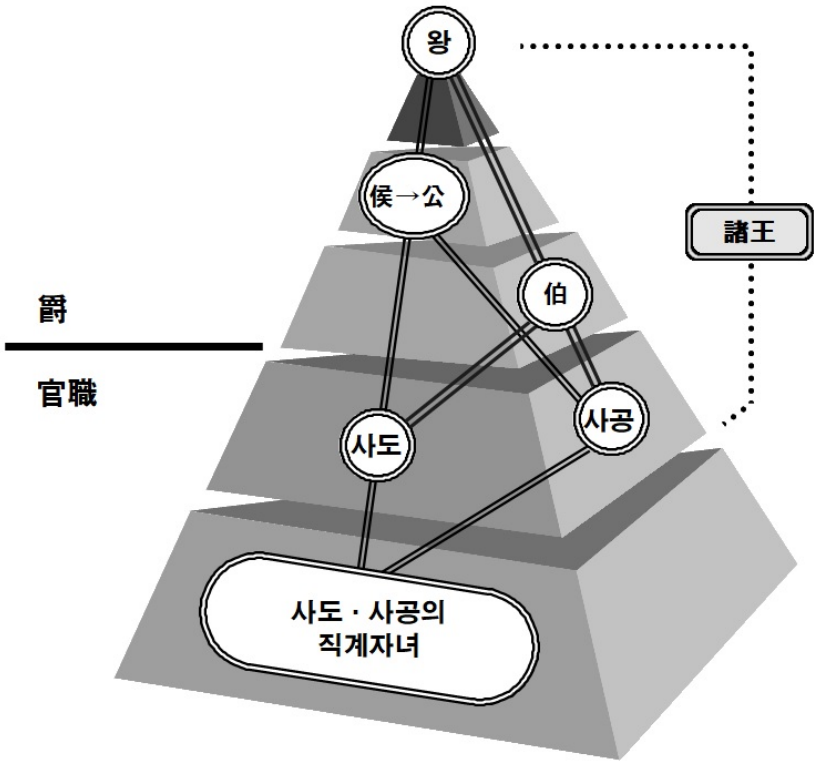

<그림 Ⅱ-4> 고려 왕실 봉작의 구조와 위계

二장 1절에서 보았듯 중국의 봉작제는 세습제와 연동되어 있었다.[296] 唐 황실의 경우 봉작을 수여하거나 계승시킬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종법질서와 혈연적 친소관계였다. <그림 Ⅱ-2>에 따르면, 唐에서는 皇子→皇孫→皇曾孫 순으로 황제와의 혈연관계가 소원해지면 작위 또한 친왕→사왕·군공→국공·군공으로 하강시켰으며, 그 이후 세대에서는 嫡長으로서 承嫡한 인물에 한하여 국공·군공을 대대로 단독 계승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종법질서에 따라 규정된 귀속 지위가 봉작제로의 편입 가능성, 작위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고려 왕실에서 종법질서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唐은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던 사회로 알려져 있다.[297] 그러나 唐代 봉작제만큼은 종법질서를 토대로 한 세습제와 결합되어 철저히 남성 위주로 운영되었다. 唐 황실에서는 承嫡한 부계 男孫에게 작위를 단독 상속하도록 하였다.[298] 시대의 특성상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원천적으로 분리되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체제에 들어올 수 없었던 데다가 부계혈통원칙의 확립으로 사위나 외손이 공적 지위를 계승할 수도 없었기에[299] 여성은 봉작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반면 고려는 왕실 봉작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자녀균분상속의 원칙을 고려하였다. 고려에서는 국왕의 사위와 公·侯·伯의 사위 모두 왕실 봉작제의 영향권 내에 존재하였다. 고려는 왕녀·종녀의 배우자에게 왕자·종남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왕실 여성에게도 공적 지위와 특권을 상속하는 효과를 누렸다. 봉작 당사자들의 혈통을 고려한 차등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왕녀의 배우자는 伯이

---

296) ≪唐令拾遺≫ 封爵令1, "諸皇兄弟皇子, 爲親王, 親王之子承嫡者, 爲嗣王, 皇太子諸子, 並爲郡王, 親王之子承恩澤者, 亦封郡王, 諸子封郡公, 其嗣王郡王及特封王, 子孫承襲者, 降授國公";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郎中, "(전략) 皇兄弟皇子皆封國, 謂之親王. 親王之子承嫡者, 爲嗣王, 皇太子諸子, 並爲郡王, 親王之子承恩澤者, 亦封郡王, 諸子封郡公, 其嗣王郡王及特封王, 子孫承襲者, 降授國公."

297)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2017 ≪하버드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너머북스, 355~374쪽.

298) 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304~305쪽.

299) 노명호, 1983 <高麗時의 承蔭血族과 貴族層의 蔭叙機會>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9 <고려시대의 토지상속> ≪중앙사론≫ 6 참조.

되어 왕자와 더불어 작위체계 내에 존재하였고 종녀의 배우자는 종남과 더불어 사도·사공으로 범주화되었다. 그 결과 왕녀·종녀 소생의 법제적 위상 또한 왕자·종남 소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려초부터 여성이 王統을 계승하는 한 축으로 인식되었기에 왕녀·종녀와 왕자·종남의 소생을 차별하는 조처는 當代人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왕실 봉작제의 영향권이 왕자·종남의 기본가족과 왕녀·종녀의 기본가족에 대칭적으로 설정된 배경에는 이러한 고려의 혈통의식이 있었다.

봉작에 자녀균분상속 원칙이 고려되었기에 결국 고려시대 왕실 봉작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혼인이었다. 역대 국왕의 손자·증손자세대에 해당하는 종남이 왕녀를 매개로 伯 이상의 작위체계에 진입한 사실에서 혼인의 영향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외에 국왕과 태자의 妃父 또한 왕실 봉작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혀져 있다.[300] 국왕이 '妻父'로서 '사위'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기에 역으로 '사위'인 국왕 또는 태자에 의하여 '처부'인 妃父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

300) 김기덕, 1998 앞의 책, 76~97쪽. 김기덕은 국왕과 태자의 妃父만 언급하였으나, 왕자의 妃父와 王壻의 父 또한 왕실 봉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왕자는 왕녀만큼 '종실내혼' 규범에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료를 처부로 둔 경우가 많았다. 관료는 왕실 봉작의 대상이 아니므로 왕자가 종녀와 결혼한 경우만 그 처부가 봉작 대상이 되었던 셈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왕자의 '종실내혼' 사례에서는 모든 처부가 이미 公·侯·伯이었으므로 사도·사공 이하의 종남이 왕자의 妃父 자격으로 작위체계에 추가 편입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王壻 또한 고려 왕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시기 前代 王壻의 아들 또는 왕제·왕자의 아들 중에서 간택되었기 때문에 王壻의 父가 새롭게 작위체계로 편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귀납적 연구방법론의 특성 상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김기덕의 연구에서는 왕자의 妃父와 王壻의 父를 봉작 수여범위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왕자의 妃父나 王壻의 父가 되기 이전부터 작위를 갖고 있었던 왕실 인물이라면 국왕 직계가족과의 혼인을 계기로 그 지위에 현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다. 무신정변 이후, 毅宗·明宗·神宗 형제가 나란히 즉위하며 왕녀의 수가 늘어 기존 公·侯·伯의 아들(사도·사공) 세대에서 적합한 나이대의 王壻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파가 다음 세대인 희종대까지 미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도·사공의 아들세대까지 王壻 후보에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집권기에 확인되는 예외봉작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실내혼'과 봉작제의 상호 연관성 문제는 三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301] 단, 혼인을 매개로 왕실에 편입될 수 있는 존재는 王姓을 갖는 종남에 제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 王壻는 거의 100프로 왕실 출신이었다.[302] 국왕이나 태자의 妃父는 왕실 출신인 경우가 오히려 소수였는데, 소수의 왕실 출신 妃父에 한하여 國婚 과정에 侯로 봉작하는 조처가 수반되었다.[303] 일반적으로 왕실 출신 后妃가 국왕과 태자의 正宮이 되었으므로 妃父를 왕제·왕자와 같은 등급의 侯로 진봉하는 것은 왕후 가문에 대한 우대이자 왕후 배출의 '功勳'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고려는 왕실 봉작제의 외피를 唐宋의 제도에서 가져왔으나, 종법질서와 단계혈통원칙의 유무, 근친혼속과 같은 사회 저변의 풍속 차이로 인하여 실행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였다. 唐의 경우 역대 황제의 直子들로부터 파생되는 단선적 계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면 황실의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선적 계보의 총합이 곧 황실 봉작의 수여범위와 일치한다. 반면 고려 왕실 봉작의 수여범위는 도식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왕자와 왕녀로부터 파생되는 가족이 대칭적으로 봉작 수여범위에 들어올 뿐 아니라 수여범위 내 구성원이 '종실내혼'으로 또 다른 친속 지위를 갖게 되며 기존의 범위가 중첩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이다.

2) 가변적 친속관계망을 반영한 왕실 封爵制

왕실 봉작제의 성립으로 고려에서는 법제적 왕실이 비로소 劃定되었다. 諸王으로 통칭되는 봉작자들의 범주가 곧 왕위계승권이 미칠

---

301) 대표적 친족 관련 법제인 相避制와 五服制가 친족관계의 대칭성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을 생각해보면(노명호, 1981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한국사연구≫ 33 참조), 왕실 봉작제의 운영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2) 정용숙, 1988 앞의 책, 135~142쪽.

303) 김기덕, 1998 앞의 책, 122~123쪽.

수 있는 범주와 일치하게 된 것이다. <그림 Ⅱ-5>는 現王('ego')을 중심으로 확산된 친속관계망 내에서 왕실 봉작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이는 법제적 왕실의 친족구조를 밝히기 위한 시도다. <그림 Ⅱ-5> 작성 시 선행연구에서 밝힌 봉작 수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상을 추출하되, 작위가 종신적 성격을 가지므로 現王 이전부터 왕실에 소속된 인물은 생존하는 동안 왕실에 누적된다는 사실을 감안, 現王의 조부대까지 시야를 넓히며 전체 규모를 가늠해보았다. 일반적으로 前前王·前王의 자녀 및 손자녀는 現王代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관작을 추탈당하지 않는 이상 諸王이라는 법제적 위상을 보유한다.[304] 다만 前前王의 왕자가 前王의 왕제가 되었다가 現王의 숙부가 되는 것처럼 세대교체에 따라 왕실 내 尊屬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림 Ⅱ-5>에서는 친족조직 내 諸王들의 지위를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하여 친족인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略語를 활용하였다. F는 아버지(Father), M은 어머니(Mother), B는 형제(Brother), Z는 자매(sister), S는 아들(Son), D는 딸(Daughter), H는 남편(Husband), W는 부인(Wife)을 의미한다.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가족은 약어의 결합으로 나타내었다.[305] 예컨대 조부는 FF, 외조부는 MF, 아버지의 형제가 낳은 자녀(사촌형제)는 FBS·FBD와 같이 표기된다. 다만 사위나 손녀사위와 같이 왕실 여성과의 혼인으로 봉작제 범위에 들어온 남성들은 왕실 여성에게 상속되었어야 할 공적 지위를 代受한 존재들이므로 배우자인 왕실 여성이 들어갈 자리에 바로 배치

304) 前前前王의 손자세대가 現王代까지 생존할 수도 있다. 문종의 손자 王溫은 문종 증손자세대인 인종대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다만 前前前王의 손자세대를 사도·사공에 제수하는 조처는 前王 혹은 前前王代에 완료된 상태이고 이들이 王壻나 태자비부가 되지 않는 이상 사도·사공보다 상위의 지위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누적된 왕실 일원으로서 존재할 뿐 現王의 왕실에서 큰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305) 박정석, 2010 앞의 책, 12쪽 및 죠지 피터 머독 지음, 조승연 옮김, 2004 앞의 책, 6쪽 참조.

하였다. 現王의 사위와 손녀사위는 DH, SDH·DDH이지만, D(H), SD(H)·DD(H)로 표시하여 고려의 왕실 봉작제가 실행되는 특수한 공적 영역 내에서 現王의 딸·손녀에 비견되었음을 드러내었다. 역대 국왕·왕후의 자매를 매개로 왕실에 편입된 남성들(ZH, FZH, MZH, WZH)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였다. 왕실 봉작에서도 남녀균분상속을 고려하였던 고려 왕실의 특징적 현상을 <그림 Ⅱ-5>를 통하여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에 이러한 변칙을 적용하여 사위의 친속 지위를 도식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

<그림 Ⅱ-5>를 통하여 諸王이 된 왕실 구성원들과 現王의 친속 관계, 寸數로 표상되는 혈연 거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go’인 現王과 諸王의 친속 관계를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한 개념은 일차친척, 이차친척, 삼차친척이다. 친족인류학에서는 기본가족을 ‘ego’가 태어나고 양육된 방위가족(정위가족)과 ‘ego’의 혼인으로 만들어지는 생식가족으로 구분하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ego’의 일차친척으로 명명한다. 다시 말하여 ‘ego’와 부모·형제자매로 구성된 기본가족이 방위가족, ‘ego’ 부부 및 자녀들로 구성된 기본가족이 생식가족이며, 두 가족을 합친 범주가 일차가족이 된다. 이차친척은 일차친척들의 일차친척, 즉 일차친척에 해당하는 개별 인물들의 방위가족·생식가족을 총망라한 친속 범위를 지칭하며, 삼차친척은 이차친척의 일차친척들까지 총망라한 확장된 범위를 지칭한다.[306] 쉽게 설명하여 앞서 언급한 약어를 단독으로 쓸 경우 일차친척, 두 개의 결합어로 쓸 경우 이차친척, 세 개의 결합어로 쓸 경우 삼차친척이라고 보면 된다. FB는 아버지의 형제로서 이차친척, FBS는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로서 삼차친척에 해당한다.

306) 죠지 피터 머독, 위의 책, 132~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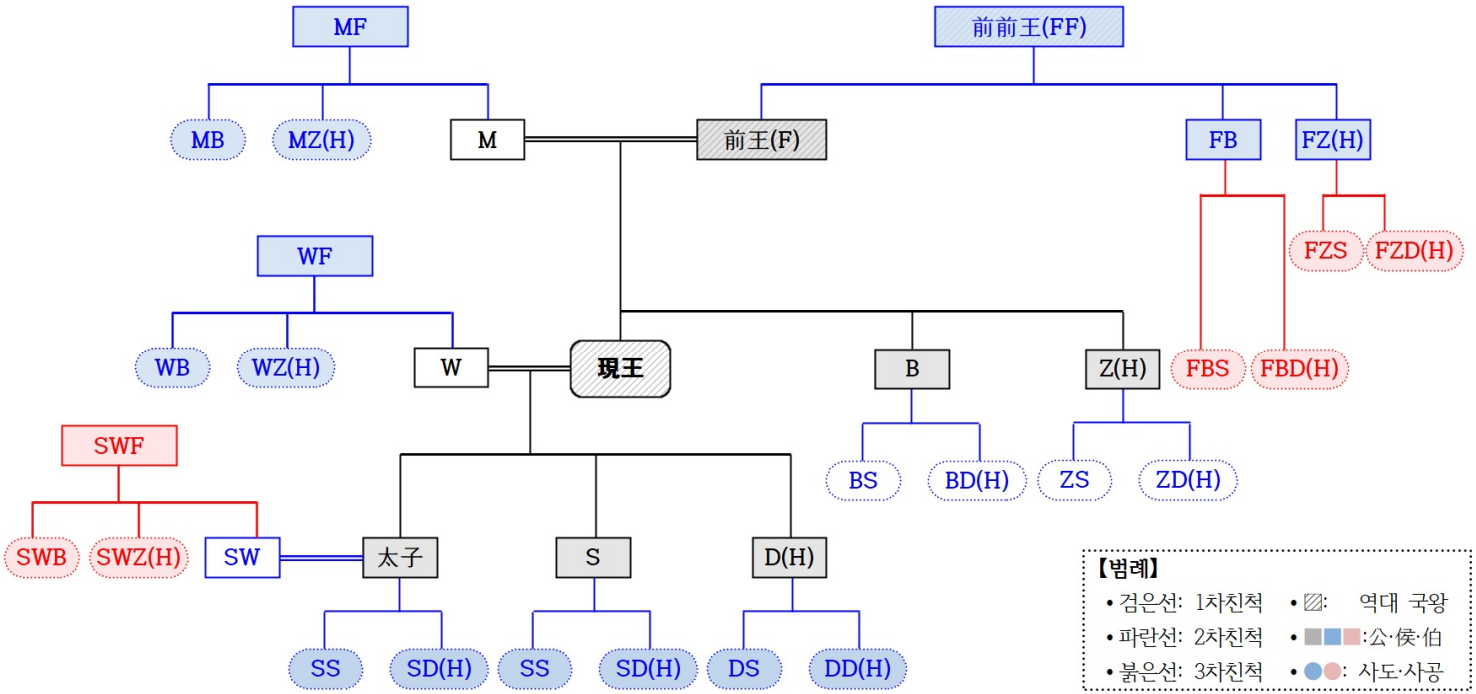

<그림 Ⅱ-5> 諸王의 친속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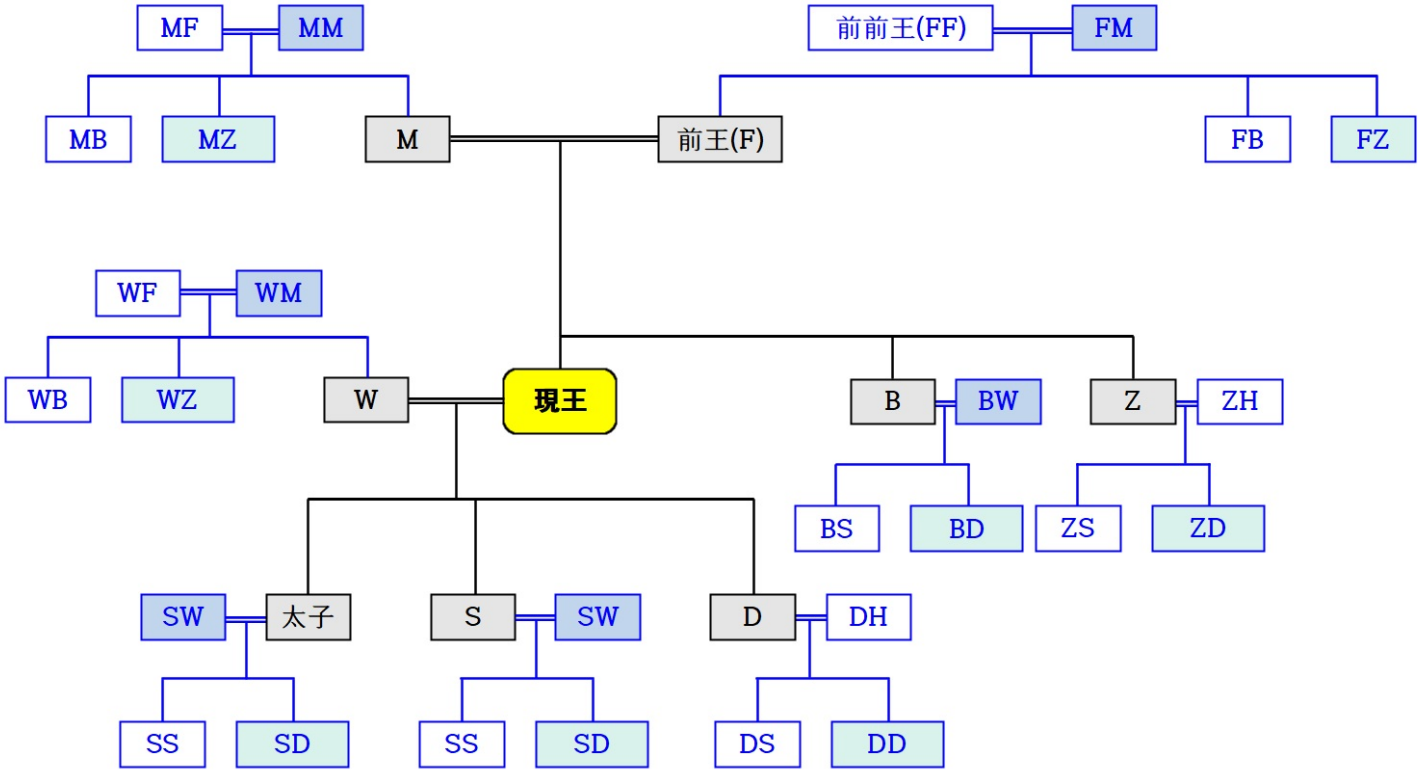
MF
MM
前前王(FF)
FM
MB
MZ
M
前王(F)
FB
FZ
WF
WM
WB
WZ
W
現王
B
BW
Z
ZH
BS
BD
ZS
ZD
SW
太子
S
SW
D
DH
SS
SD
SS
SD
DS
DD

<그림 Ⅱ-6> 이차친척 도식

일차친척·이차친척·삼차친척이라는 인류학 개념을 도입하여 諸王의 친족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그림 Ⅱ-3>과 같이 고려 왕실의 초봉 단위가 국왕의 기본가족과 그 결연자를 기본 골격으로 하였던 데 있다. 고려의 왕실 봉작제는 역대 국왕의 기본가족 및 妃父·王壻와 같은 결연자들을 公·侯·伯에 봉작하고 公·侯·伯에서 파생된 친속들에게 그보다 하위의 사도·사공을 제수하는 체계였다. 조상을 기준으로 嫡長의 가계인지 방계인지 여부를 판별하여 왕실의 계서를 결정하는 종법질서 또는 그와 유사한 관념적 가족질서가 고려 왕실 내에서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諸王의 친족구조는 일차친척·이차친척·삼차친척과 같은 직관적인 관계망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 일차친척·이차친척·삼차친척이라는 개념은 現王의 왕실에서 각 諸王이 차지하는 친속 지위를 보여줄 뿐, 次數가 곧 諸王의 계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려의 諸王制를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왕실 봉작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개념어들을 고안한 바 있다. 김기덕은 역대 국왕의 자녀를 위주로 하는 公·侯·伯을 왕실의 1차적 구성, 公·侯·伯을 매개로 왕실에 귀속된 사도·사공을 왕실의 2차적 구성, 사도·사공 이후 세대부터는 왕실의 3차적 구성으로 명명하였다.[307] 국왕의 자녀·손자녀 세대의 생산에 맞추어 公·侯·伯에서 사도·사공이 파생되었다가 그 다음 세대는 왕실에서 배제되고 사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에 의존할 경우 누적된 왕실 구성원과 現王의 친속관계망을 일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上記 개념을 왕실 봉작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명호는 고려시대 친족 관련 법제의 기본 구조를 '총계적 3세대'로 정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諸王制를 검토하였다. 父邊·母邊·妻邊의 각 친속관계망 내에서 '나(ego)'를 중심으로 上下에 분포하는 3세대 일원

307) 김기덕, 1993 앞의 논문, 6~7쪽; 김기덕, 1998 앞의 책, 233~236쪽.

들이 고려시대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공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범주였음을 부각시키고, 諸王制의 기본 골격 또한 '총계적 3세대'와 상관됨을 주장하였다.[308] '총계적 3세대' 이론은 봉작의 종신적 속성을 고려하면서 왕실의 실재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던 점, 국왕의 공인된 가족 범위가 곧 왕실이라는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고려의 보편적 친족구조와 諸王制의 상관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겨 주었다. 다만 父邊·母邊·妻邊의 위상을 동등하게 파악한 이 이론을 그대로 왕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종 이후 왕위 부계계승 원칙이 실현됨에 따라 왕실에서는 父邊과 母邊·妻邊의 위상이 동등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왕실 내 公·侯·伯과 사도·사공이 파생적 관계라는 점, 역대 국왕을 기준으로 확산된 친속관계망 내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인물들은 왕실로서 공인된 지위를 종신토록 가지며 누적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류학에서 범용하는 개념어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寸數制度 또한 친속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4촌·6촌 같은 용어가 현대사회에서 수평적 형제관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일차친척·이차친척·삼차친척 개념을 활용하여 역대 국왕을 기점으로 파생된 친속관계망을 총괄하였다.

고려시대의 諸王, 즉 법제적으로 劃定된 왕실은 대체로 現王의 이차친척들로 구성되었다. <그림 Ⅱ-5>와 <그림 Ⅱ-6>을 비교해 보면 왕실 봉작의 경우 이차친척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삼차친척이 추가되어 그 수여 범위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차친척이 추가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現王의 외숙부(MB)나 이모부(MZ(H))가 사도·사공에 제수된 반면 숙부(FB)와 고모부

308) 노명호, 2017 "The Makeup of Koryŏ Aristocratic Families: Bilateral Kindred", *Korean Studies*, Vol.41, pp.173~199.

(FZ(H))는 前王의 王子·사위 자격으로 公·侯·伯에 책봉되기 때문에 자연히 現王의 父側 사촌들(FBS·FBD·FZS·FZD)이 삼차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사공에 임명되어 諸王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現王 자녀세대의 혼인으로 파생된 인척들이 추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종남 출신의 (太子)妃父 또한 侯에 봉작하는 것이 고려 왕실 봉작의 원칙 중 하나라고 力說하였다. 그런데 <그림 Ⅱ-5>를 보면, 혼인에 부수된 봉작은 (太子)妃父 단독인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太子)妃父가 侯에 봉작됨에 따라 (태자)비의 형제나 妹壻들 또한 사도·사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결국 납비를 계기로 (태자)비의 기본가족(방위가족)은 제왕 범주에 집단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림 Ⅱ-5>에서 諸王이 될 수 있는 친속 범위를 망라해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설에서 밝힌 봉작 원칙에 기반을 둔 도식일 뿐 국왕과 諸王의 실질적인 친속 관계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왕실에는 혼인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역대 국왕과의 혈연 거리가 멀어져 왕실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던 인물이 혼인을 계기로 국왕과의 관계가 재조정되어 다시 諸王에 포함될 수 있었다. 특히 납비를 계기로 추가적 왕실 봉작이 이루어질 경우, 국왕과 결연한 (太子)妃父뿐 아니라 그의 기본가족 구성원들이 諸王에 집단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림 Ⅱ-5>의 도식 중 일부가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변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강릉후 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강릉후 온은 문종 왕자 조선공 도의 3남이다. 그의 행적은 숙종대 처음 확인된다. 숙종 재위기 10대에 접어든 조선공 도의 장남 王滋와 차남 왕원이 각각 檢校太保 上柱國, 檢校司空 柱國에 올랐을 때 왕온은 3남이라는 서열과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때문에 檢校工部尙書 柱國을 처음 제수받았다.[309] 이후 친형 왕원이 28세의 나이로 숙종의

309)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문종 朝鮮公燾.「高麗國廣平公廟誌」의 卒年을 통하여 왕원이 1084년(선종 1) 출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용선, 2021 앞의 책,

사위가 되어 廣平伯에 책봉되었다가[310] 1143년(인종 21) 윤4월 이전 廣平侯로 진봉되었던 반면 귀족 가문과 통혼한 왕온은 그저 사도로서 왕실의 하위에 존재하였다.[311] 왕온은 장녀를 인종의 태자비로 납비한 뒤에야 비로소 작위체계에 진입하였다. 태자비 책봉으로부터 두 달이 흐른 시점에 인종은 왕온과 그의 형 왕원을 동시 진봉하여 각각 강릉후와 광평공으로 삼았다.[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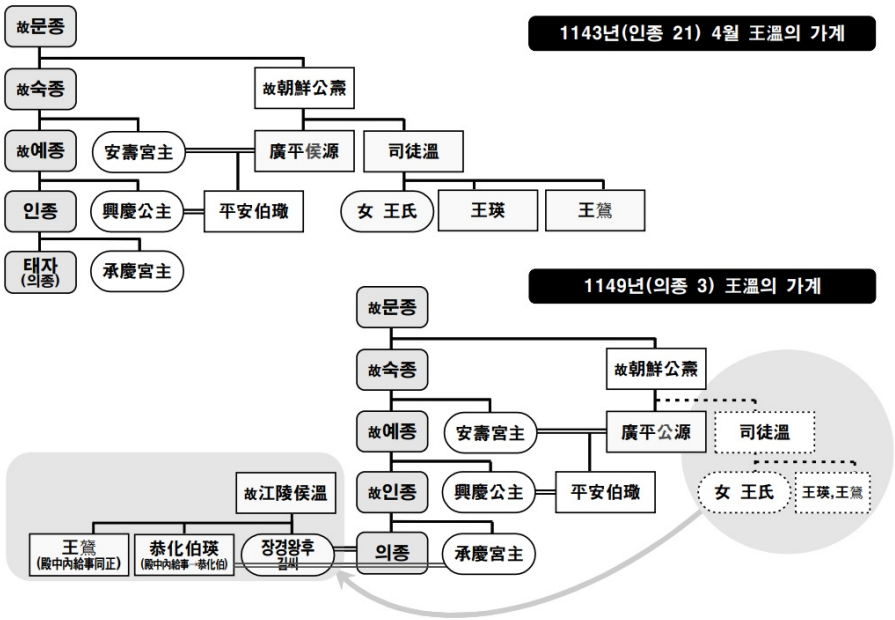

<그림 Ⅱ-7> 江陵侯 溫 가족의 위상 변화

333~334쪽 참조). 이로부터 왕자·왕온의 대략적인 나이 추정이 가능하다.

310)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6년 3월 丙寅.

311)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1년 윤4월 丁未, "太子妃詔書禮物, 遂召廣平侯源, 司徒溫, 平章事任元敱, 曲宴于密殿." 왕온은 金沽의 딸을 배우자로 맞이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김고는 대대로 고관을 역임한 유력 귀족가문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종의 淑妃인 長信宮主의 외숙이자 예종의 姨母父로서 왕실 외척이었다. 그러나 이 혼인으로 왕온의 왕실 내 위상이 달라지지는 않았다(신수정, 2018 앞의 논문, 104~105쪽).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왕온의 지위는 사도에 그쳤고, 그의 자녀세대부터는 왕실에서 배제될 처지였다.

312)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1년 6월 壬子. 왕실 봉작제가 확립된 이후 사도·사공의 딸로서 태자비(왕후)에 간택된 최초의 인물이 바로 毅宗妃 莊敬王后 金氏다. 인종이 비교적 혈연거리가 멀었던 사도 온의 딸을 태자비로 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수정, 2018 앞의 논문, 111~114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종의 태자비 책봉 이후 왕실 내에서 급격한 위상 변화를 경험한 것은 왕온 개인에 그치지 않았다. 왕온의 아들로는 王瑛과 王鶩이 있다. 사도·사공의 다음 세대였던 두 사람은 혼인이라는 변수가 아니었다면 왕실에서 배제되어 온전한 사환권을 회복할 예정이었다. 다음 사료는 사환을 준비하던 사도·사공의 아들이 왕실로 편입되며 어떠한 혼란을 겪었는지 잘 보여준다.

> [B-3] 王瑛의 字는 玄虛다. 성품이 차분하고 욕심이 적었으며 학문을 향한 뜻이 독실하였다. 毅宗 초 殿中內給事가 되어 과거에 응시할 것을 청하자 왕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겼으나 侯王의 아들로서 貢士로 下從하는 것은 例가 아니라며 윤허하지 않았다. 仁宗의 딸 承慶宮主에게 장가들어 恭化伯으로 봉해지니 은총이 더욱 깊어졌다.[313]

왕온이 강릉후에 봉작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왕영에게는 사도·사공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B-3]에 따르면, 학문에 정진하며 관료의 삶을 예비하던 왕영에게 이는 달갑지 않은 혹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던 듯하다. 왕영은 의종에게 과거 응시를 윤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사도·사공에 제수되어 諸王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관료집단에 남길 희망한 것이다.

역대 公·侯·伯의 자녀 가운데 과거 응시 및 사환을 희망한 인물은 왕영이 유일하다. 왕영은 고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확립된 이후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임에도 왕실로 편입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17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사도 온의 아들에 불과하였다.[314] 인종 이전 역대 고려 국왕들의 왕실 출신 后妃는 왕녀 또는 公·侯·伯의 딸 가운데 간

313)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문종 朝鮮公燾.

314) 종실전에서 왕영의 사망연도와 사망 시 나이를 토대로 그가 1126년(인종 4) 출생임을 알 수 있다(≪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문종 朝鮮公燾, "瑛, 字玄虛 (중략) 明宗卽位, 進爲侯, 晩年酷好浮圖法, 十六年卒, 年六十一, 諡定懿."). 왕영은 누이 장경왕후가 태자비로 납비되던 1143년(인종 21)에 17세, 의종 즉위년인 1146년(인종 24)에 21세가 되었다.

택되었기 때문에 납비를 계기로 새로운 諸王이 추가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現王인 의종의 매제 신분이 되었더라도 왕영 스스로 諸王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서 사도·사공세대로 격상된 최초 사례라는 점을 이용하여 왕영이 과거 응시를 시도하였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의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왕영은 전중내급사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전중내급사는 왕영이 사도·사공의 자녀 자격으로 받은 음직이라고 생각된다. 왕영의 동생 왕작이 전중내급사동정이었다는 사실은[315]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316] 비록 왕실 구성원에 한하여 작위로 전환되었으나 사도·사공은 職制上 정1품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게 음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관련하여 1095년(숙종 즉위) 이후 조종묘예로서 無職인 자들에게 국왕이 여러 차례 入仕를 허용하였던 사례 또한 참조할 수 있다.[317] 이 사례들은 고려시대 왕실 후손은 대체로 有職 상태였으며 그들이 관료집단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고려에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왕실 譜牒을 관리하고 국왕의 衣食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전중감은[318] 諸王 가문의 구성원이었던 사도·사공의 자녀세대가 소속되기에 가장 적합한 관부였다.

일반적으로 公·侯·伯의 자녀세대는 3품 이상의 검교직에서 시작하

---

315)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文宗 朝鮮公燾 附 江陵侯溫, "溫 (중략) 子瑛鶯. 瑛字玄虛 (중략) 鶯殿中內給事同正."

316) 박용운에 따르면, 고려시대 初蔭職은 대체로 品官과 吏屬의 同正職이었으나 품관 實職도 종종 확인된다고 한다. 한편 고려에서는 조종묘예에 대한 음서 또한 시행되었는데, 1명의 托蔭子가 여러 자손에게 蔭職을 줄 수 있었던 점에서 일반음서와 구별되었다. 일반음서의 경우 1人 1子에게 음서 기회가 허용되었던 반면 조종묘예에게는 왕실 후손이라는 이유로 1人 多子의 特例가 적용되었다(박용운,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20~22쪽). 조종묘예 가운데 역대 국왕과의 혈연관계가 가장 가까웠던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게는 당연히 그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317) ≪고려사≫ 권75, 지29 選擧3 銓注 凡敍祖宗苗裔.

318) 박용운, 2009 앞의 책, 277~279쪽에서는 고려의 전중감이 唐의 宗正寺와 殿中省이 담당한 업무를 아울러 맡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 20세를 전후한 나이에 사도·사공에 올랐다. 公·侯·伯의 자녀세대보다 하위에 위치하며 향후 관료로 분화될 사도·사공의 자녀세대가 그와 다른 성격의 관직을 초직으로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侯의 아들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까지 왕영은 전중내급사, 왕작은 전중내급사동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1143년(인종 21) 태자비 납비 직후 사도 온에게는 太子妃父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봉작이 이루어졌으나, 본래 諸王이 아니었던 왕영·왕작에 대한 예우는 미처 조정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던 듯하다. 그때까지 왕영·왕작과 같은 前例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종 즉위 후 20대 초반에 접어든 왕영은 사도·사공이 제수되지 않자, 아직 자신이 전중내급사로 사환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응시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것은 의종이 왕영의 청을 일축하고 도리어 그를 인종의 사위로 간택하여 公·侯·伯의 작위체계로 편입시켰다는 사실이다. 당시 의종은 侯王의 아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例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왕온이 강릉후에 책봉되었으므로 그 아들 왕영이 추후 사도·사공의 지위에 올라 諸王으로 편입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 의종의 논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혼인을 계기로 現王과의 친속 관계가 조정된 이상 새롭게 부여된 친속 지위는 왕실 인물 개개인에게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려 왕실은 봉작의 대상이 되는 친속 범위와 봉작의 승계 문제 등을 규정한 唐宋 封爵令이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본적 원인은 '종실내혼'이라는 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從弟였던 諸王이 처부가 될 수도 또는 妹夫나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唐宋의 봉작령처럼 왕자·왕제·왕손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각 친속 지위에 걸맞은 작위를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에 왕실 봉작제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면 그 형식과 내용

은 唐宋 봉작령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이제현의 종실전서에서 언급된 '親'·'尊'·'疎'·'幼'가 그 흔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시대 侯에 초봉될 수 있는 사람은 왕자 출신만이 아니었다. 종남이 국왕 가족의 사돈어른 위상을 갖게 되면 侯에 봉작될 수 있었다.[319] 종실전서에서는 '親且尊'을 公으로 그 다음을 侯로 책봉하였다고 전하는데, 곧 公·侯 모두 現王을 기준으로 親且尊한 존재들이며 계서는 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侯에 초봉될 수 있는 사람들의 친속 지위를 생각해보면 '親且尊'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疎'·'幼'는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봉작 實例와도 整合되지 않는다. 이제현의 시대에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지켜지지 않았고[320] 몽골의 외압으로 '종실내혼' 전통 또한 부정되었기 때문에 종실전서 기록에 부정확한 서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고려 왕실의 친족구조는 인류학의 일차친척·이차친척 범위와 상당히 연관되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종법질서를 황실의 계서적 질서와 연동시킨 중국 봉작령은 무의미하였다. 왕실의 외연뿐 아니라 그 내부 관계망까지 누차 변동시켰던 內婚 문화는 왕실 봉작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三장에서는 '종실내혼'의 기본 구조와 더불어 '종실내혼'이 왕실 편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

319) 앞서 주)300에서 언급하였듯 국왕의 결연자로서 侯가 되는 종남은 통설과 같이 王后(妃)父, 太子妃父에 국한되지 않았다. 王子妃父와 王壻父 또한 侯가 될 수 있었다. 단, 왕자들의 경우 內婚 규범에 얽매이지 않아 기존 公·侯·伯의 딸 가운데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관료가문과 혼인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王子妃父로서 侯에 초봉된 實例를 확인할 수 없다. 二장에서는 왕실 봉작제의 큰 틀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두고 '종실내혼'과 연동된 봉작제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三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二장 본문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320) 대몽항쟁기를 거치며 '비정상봉작'이 나타나고, 일정한 代數를 기준으로 봉작이 상속되는 양상까지 확인된다. 자세한 설명은 三장 2절 참조.

三. 왕실 封爵制와 '종실내혼'의 연동 구조

1. '종실내혼'의 차별적 구속력과 왕실 외연 통제

1) 사례 분석을 통한 왕실 內婚 단위의 복원

고려는 건국 초부터 왕실 내에서의 근친혼을 기반으로 혈통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왕실의 규모를 조절해왔다. 고려전기로 접어들며 국왕의 기본가족이 禁婚 범위로 인식됨에 따라 극단적 형태의 근친혼인 이복남매혼은 지양되었으나, 2촌의 남매를 제외한 친속관계망 내에서는 여전히 근친의 정도와 혼인의 선호도가 비례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중국의 봉작제를 도입하여 왕실을 편제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는 근친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봉작제의 실질적 운용 방식을 결정하였다. 伯, 司徒·司空은 각각의 實例를 검토해보면 혼인을 매개로 역대 국왕의 직계가족에 편입될 존재와 그 후보자들을 상정한 지위였다. 고려의 왕실 봉작제가 제도적으로 완비된 이후 건국 이래의 근친혼속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 當代의 기록에서 왕실 편제 및 재생산 매커니즘을 가장 압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한 언설은 사료 [C-1]의 "世附近屬, 克襲公侯伯"이다.

> [C-1] 김씨는 (중략) 나이 14세에 명망가[右姓] 출신이면서 현숙하여 王氏인 昷의 배필이 되었으니, 故 藥城府院大君은 진실로 顯王의 제4자이자 文王의 母弟인 平壤公 基의 10세손으로서, **대대로 近屬에 附屬됨으로써 公·侯·伯을 능히 세습하였다[世附近屬, 克襲公侯伯].** 부친 帶方公 澂은

世祖皇帝 치세에 본국의 子弟들을 이끌고 내전에서 숙위하였는데, 천자가 그 노고를 가상히 여겨 은총을 베푼 것이 해마다 累百에 이르렀다.[321]

[C-1]은 1335년(元統 3년; 충숙왕 후4) 사망한 壽寧翁主 金氏의 묘지명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수령옹주는 藥城府院大君 昷의 처로 忠烈王·忠宣王·忠肅王의 재위기를 경험한 인물이다. 이 시기 고려 왕실에서는 몽골이라는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인적 구성과 제도적 편제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몽골에서 '同姓婚' 풍습을 비난하였기 때문에[322] 고려 왕실에서는 배우자를 간택하고 그 배우자와 소생을 대우하는 방식에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였다. 충선왕의 복위를 전후한 시점에는 황제국 몽골과의 差等을 의식하여 고려에서 고안한 封君制가 종래의 봉작제를 대체하기도 하였다.[323] 왕온은 高宗 왕녀 壽興宮主의 손자로 사도·사공 다음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래 제도에 따르면 봉작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충렬왕 재위기 그는 中原侯라는 작위를 지닌 채 왕실을 대표하여 몽골에 사행을 다녀왔고,[324] 부인의 묘지명에서 확인되듯 봉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예성

---

321) 「大元高麗國故壽寧翁主金氏墓誌銘」, "(전략) 年十四以右姓而賢, 配于王氏諱昷, 故藥城府院大君, 寔顯王第四子, 文王之母弟, 平壤公諱基十世孫也, **世附近屬, 克襲公侯伯**. 父帶方公諱澂, 在世祖皇帝時, 率本國子弟, 宿衛于內, 天子嘉其勞寵賚, 歲至累百"(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王昷妻金氏墓誌銘' 참조).

322)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원년 10월 庚戌, "元遣岳脫衍·康守衡來, 王出迎于宣義門外, 詔曰, "**爾國諸王氏, 娶同姓, 此何理也. 既與我爲一家, 自宜與之通婚**, 不然, 豈爲一家之義哉 (후략)";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즉위년 11월 辛未, "**先於至元十二年**, 欽蒙世祖皇帝, 遣阿禿因, 來傳聖旨, **又於至元二十八年**, 予與鄭可臣·柳淸臣等, 詣紫檀殿裏, 親奉世祖皇帝聖旨云, '**同姓不得通婚, 天下之通理**. 況爾國識會文字, 行夫子之道, 不應要同姓.'"

323) 김기덕, 1998 앞의 책, 144~145 및 200~201쪽. 김기덕은 1298년(충렬왕24) 충선왕이 즉위한 이후 封爵制를 封君制로 수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가 충선왕의 갑작스러운 폐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봉군제가 비로소 고려에 자리 잡고 널리 시행된 시기는 1305년(충렬왕 31) 충선왕이 복위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김기덕은 근친혼에 입각한 봉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간섭기 고려 왕실에서는 기존 종실의 후손들에게 일률적인 代數를 적용하여 封君을 상속시켰으며, 그 결과 왕실 운영이 무원칙적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하였다.

부원대군으로 改封되었다. 국왕 또는 公·侯·伯의 사위가 되어야 諸王 범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체계가 무너지면서 왕실 봉작이 기형적으로 확대 수여되었던 상황을 왕온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료 [C-1]이 작성될 당시 고려 왕실이 종래와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명 撰者는 평양공 기로부터 10세손 왕온에 이르기까지 특정 계보의 남성들이 대대로 왕실로 편입될 수 있었던 연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世附近屬, 克襲公侯伯"은 단순히 국왕의 근친에게 公·侯·伯의 작위를 주어 사적 가족관계를 공적 관계로 전환한 것이 왕실 봉작제의 본질임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묘지명 撰者는 고려 왕실이 배타적으로 권위와 특권을 영속시킬 수 있었던 매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世附近屬"이라는 네 글자 속에 담아내었다.

고려가 唐宋과 같은 부계사회였다면 대대로 近屬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계가 실질 가족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시조로부터 이어지는 嫡長의 가계와 방계의 가계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遠親化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世附近屬"이라는 표현에 앞서 등장한 "평양공 기의 10세손"이라는 서술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왕온의 신분을 규정하고 그를 왕실에 귀속시킨 근거는 그가 現王 또는 前王의 近屬이었던 데 있었고, 이들 국왕과 이어지는 친속관계망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왕온의 계보였다.

왕온의 부계 조상들이 꾸준히 국왕의 近屬에 부합하였던 계기는 혼인이었다. <표 Ⅲ-1>에서는 평양공 기로부터 왕온까지 이어지는 부계 계보 속 인물들이 역대 국왕과 어떠한 방식으로 근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정리해보았다. 원간섭기를 살았던 帶方公 澂 세대에 이르기 전까지 왕온의 부계 조상들은 역대 고려 국왕의 사위이자 손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평양공 기의 아들 낙랑후 영이 문종 사위가

324)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 15년 12월 庚寅;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4년 9월.

되어 承化伯 禎을 낳고 문종 외손인 승화백 정이 다시 숙종의 사위가 되어 漢南伯 杞를 낳는 방식으로, 왕온의 부계 조상들은 외손에서 사위로 그 신분을 변동시켜 자신의 소생을 다시 국왕의 외손으로 만듦으로써 작위를 克襲하였다.

<표 Ⅲ-1> 中原公 昷의 부계조상과 고려 국왕의 친속관계

代數	인물명	배우자		역대 국왕과의 관계	부부 간 촌수
1세	平壤公 基	미상		현종왕자, 문종왕제	
2세	樂浪侯 瑛	保寧宮主	문종왕녀	현종손자, 문종사위	4촌(공통조부: 현종)
3세	承化伯 禎	興壽宮主	숙종왕녀	문종손자, 숙종사위	4촌(공통조부: 문종)
4세	漢南伯 杞	承德公主	예종왕녀	숙종손자, 예종사위	4촌(공통조부: 숙종)
5세	信安侯 珹	昌樂宮主	인종왕녀	예종손자, 인종사위	4촌(공통조부: 예종)
6세	寧仁侯 稹	延禧宮主	명종왕녀	인종손자, 명종사위	4촌(공통조부: 인종)
7세	始興伯(淮安公) 侹	敬寧宮主	신종왕녀	명종손자, 신종사위	5촌(공통조부: 인종)
8세	新陽伯 珣	壽興宮主	고종왕녀	신종손자, 고종사위	5촌(공통조부: 신종)
9세	帶方公 澂	미상		고종손자	
10세	中原公 昷	壽寧翁主	金信女	고종증손	

遠親化·傍系化될 왕실 후예들을 다시 국왕의 近屬으로 묶어두는 고려 왕실의 독특한 혼인방식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개념어를 활용하였다. 정용숙은 '族內婚'이라는 개념어를 도입하여, 고려 왕실이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內婚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族'의 실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他姓의 관료가문과 왕실의 혼인을 족외혼으로 규정한 것을 볼 때에 '族'은 '父姓'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며,[325] 연구서의 전체적인 맥락상 그 실체는 부계친족집단과 유사해 보인다. 중시조 현종으로부터 비롯된 족보식 가계도를 그리면서 역대 국왕과 왕실 인물의 부계촌수를 기준점에 두고 부계 외의 관계는 母系로 '통칭'해버린 것, '족내혼'의 대상이 꾸준히 近親에서 遠親으로 변화하였다고 분석한 것[326] 모두 부계에 중점을 둔 채 고려 왕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출된 견해였다.

하지만 <표 Ⅲ-1>에서 확인되듯, 왕온의 부계 조상들은 공통적으로 역대 국왕의 '孫'이자 혼인 대상이 되는 왕녀와 4~5촌 관계의 근친이었다. <표 Ⅲ-1>의 인물 외에도 왕녀와 그 배우자의 친속 관계는 대체로 총계적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4~5촌 가량의 일정한 거리를 꾸준히 유지하였다.[327] '王'이라는 父姓이 아니라, 각각의 총계적 계보

325) 정용숙, 1988 앞의 책, 5쪽에서는 고려 왕실의 혼인형태를 왕족 간 혼인하는 族內婚, 귀족가문과 혼인하는 族外婚, 원간섭기라는 특수한 국제관계 속에 맺어진 元公主와의 혼인으로 三分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용숙은 왕실·왕족의 실체에 대한 구명 없이 왕족을 '族'으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결국 '族'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남겨놓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 발표된 친족제도사 연구들이 한국은 '항구적인' 부계친족사회라는 전제 하에 고려시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의 연구 곳곳에서도 부계 위주의 시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326) 위의 책, 11쪽, 136~138쪽 및 149~150쪽 참조. 정용숙은 서론에서 고려 왕실의 족내혼 대상이 遠親化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교에 대한 이해 심화에서 비롯되었다는 李熙永의 연구(李熙永, 1966 <高麗朝歷代妃嬪の姓の繼承に関する一試論: 同姓不婚制の形成過程における一現象の究明> ≪民族學研究≫ 31-1)를 거론하고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150쪽의 <표 21>에서 국왕의 사위들을 父系 單線으로 구성된 족보식 계보도에 위치시키고 왕녀와의 부계촌수를 기재하여, 현종 이후 왕녀의 혼인 대상이 꾸준히 遠親化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母系' 촌수를 보완적 요소로 사용하여 '족내혼'으로 형성된 복수의 친속관계가 王室婚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던 점에서 부계에만 집중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은 측면 또한 있었다.

327) 위의 책, 136~138쪽에 수록된 <표16>에서 '母系'라는 부정확한 용어로 통칭된 고종 4촌, 이종 6촌 등은 정확한 학술 용어를 적용할 때 總系的 관계로 표현된다(노명호, 2017 앞의 논문, 118~121쪽 참조). 각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八高祖圖 계보관을 전제해야 <표>에 기재된 '母系' 촌수가 도출된다. 정용숙이 '母系'라는 항목명 하에 적기한 고종·이종 촌수들을 일람해보면 4촌과 5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숫자들이 왕녀와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친속 거리를 표상하며, 혼인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

에 포함된 국왕과의 밀접한 친속관계가 이들에게 사위라는 지위를 보장하였던 것이다.

김기덕은 '근친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혼인이 고려 왕실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그는 족내혼과 근친혼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자신의 연구에서 두 개념을 혼용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계·姑從·姨從 등의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代數 개념을 도입하여 왕실을 분석하였던 것을 볼 때 김기덕에게는 부계친족집단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28]

근친혼은 <표 Ⅲ-1>의 인물과 그 배우자에 한하여 적용하기에 손색없는 개념어이다. 그러나 고려 왕실 전체로 확장해보면 후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포착된다. 근친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論者마다 어느 범위까지 근친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특정 혼인은 근친혼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예컨대 <그림 Ⅲ-1>과 같이 의종과 장경왕후 김씨는 각자의 총계적 계보를 그렸을 때 상호 연결되는 최단의 거리가 7촌이다. 장경왕후의 아버지 사도 온은 예종의 부계사촌형제이고 어머니 김씨는 예종의 이종사촌자매였으므로, 통혼이 이루어질 당시 사도 온과 그 부인 金氏 모두 인종의 五寸叔에 해당하였다.[329] 일반적으로 혼인대상자들끼리 4~5촌 관계였던 다른 사례에 비하여 의종과 장경왕후의 친속거리가 멀었으므로 이 혼인을 과연 이전까지 추진된 혼인과 동일하게 '근친혼'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근친혼은 고려 왕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어로 활용하기 어렵다

경을 보여준다.

328) 김기덕, 1993 앞의 논문, 2~3쪽.

329) 김용선, 202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上, 한림대학교출판부, 248~250쪽 '(승) 김의광묘지명' 참조.

는 단점 또한 안고 있다. 고려에서는 기존 왕실 구성원 내에서 배우자를 찾을 때뿐만 아니라 관료가문의 여성을 后妃로 맞아들일 때에도 근친혼을 추구하였다. 문종 왕자인 순종과 선종, 조선공 도는 모두 외조부 李子淵의 손녀들과 사촌혼을 하였고,[330] 인종은 母后 文敬太后 李氏의 여동생들과 혼인하였다. 채웅석은 고려중기 국왕들이 기구축된 통혼망 내에서 왕실의 배우자를 찾아 외척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면서 望族인 외척의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보위력을 높였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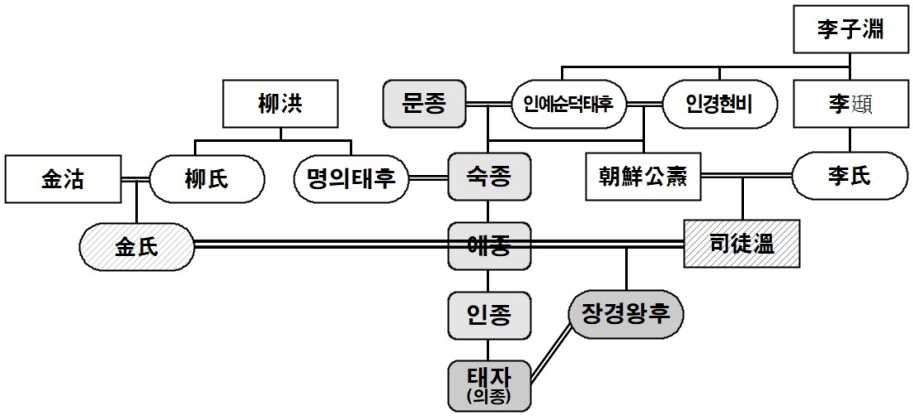

<그림 Ⅲ-1> 의종과 莊敬王后 金氏의 친속관계

"世附近屬"의 매커니즘과 연관된 특징적 혼인방식을 명명하기 위해서는 內婚과 근친혼이라는 개념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역대 고려 국왕의 후손 가운데 왕실의 근친혼 상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주가 관념적으로나마 當代에 상정되어 있었고, 고려는 그 범주 내에서 나이·친속거리 등 부수적 요인을 고려해 대상자를 추출함으로써 왕실의 내부 관계망을 재편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一장에서 태조~목종대 왕손들이 2~4촌 관계의 근친과 혼인하는 현상을 서술할 때 본고

330) 신수정, 2018 앞의 논문, 96~99쪽.
331) 채웅석, 2014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8, 344~346쪽.

는 근친혼 앞에 '왕실 내'라는 한정적 표현을 결합시켰다. 왕손들 간의 근친혼을 일부 관료가문과의 근친혼과 구별함과 동시에 기존 왕실 구성원이 혼인으로 복수의 친속 지위를 가지며 다시 왕실에 긴속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서술이었다. 고려초부터 '왕실'로 인정되는 범주가 곧 內婚 단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왕실 내 근친혼'은 몽골과의 충돌로 기존 체제가 단절되기 전까지 고려 왕실에서 보여준 특징적 婚俗을 통칭한다. 다만 고려초부터 중기까지의 현상을 모두 왕실 내 근친혼이라는 단일 용어로 정의할 경우, 봉작제 도입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변화상을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왕실 봉작제가 성립한 이후에는 왕실을 정의하는 제도적 형식과 사회적 관념이 변화하며 內婚 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當代 사료를 토대로 왕실 봉작제가 성립한 이후의 왕실을 특칭할 수 있는 대안적 용어를 찾아 그 적용범주를 구체화한 뒤 왕실의 內婚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봉작제 도입 이전의 왕실은 當代人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家의 규모 및 순혈도에 크게 좌우되었다. 고려초 근친혼과 왕위계승이 이루어진 범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역대 국왕의 손자녀가 후보군의 하한선이었으며, 후보군의 각 인물들이 역대 국왕과 얼마나 중첩된 총계적 계보로 연결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예컨대 태조의 손자녀세대라 할지라도 고려초에는 각각의 위상이 동일하지 않았다. 一장에서 보았듯 효은태자의 아들 왕림과 왕정은 대종·문원대왕이 이복남매혼 관계에서 생산한 아들들보다 위상이 낮았고 끝내 왕실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왕림과 왕정은 왕실 통혼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사환되었다. 그 소생 또한 왕실에 비하여 현격하게 家格이 떨어지는 지방 호장층과 통혼하였다. 현종 즉위 이전까지의 왕실 구성원들이 창업주 태조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세대에 불과하였던 데다가 절대적인 규모 또한 빈약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관적 방식만으로도 고

려초 왕실의 인적 구성은 명확히 파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성립된 이후 법제적 왕실의 외연과 내부의 계서적 질서는 체계화되었다. 통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역대 국왕의 아들과 사위를 公·侯·伯의 봉작 대상으로 삼되 妃父와 같은 일부 왕실 출신 인척에게 公·侯를 추가 봉작하고,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를 사도·사공으로 삼아 諸王으로 통칭하였다. 고려초와 달리 왕실 구성원이 公·侯·伯에 봉작되면 그 자녀세대는 사도·사공이자 諸王의 말단으로서 균일한 위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각 인물들이 체계적으로 공적 영역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지위만으로도 왕실의 규모와 등급별 인적 구성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고려전기 이후 왕실의 內婚 단위는 바로 법제적 왕실인 諸王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림 Ⅲ-2>는 현종 이후 역대 국왕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內婚 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가계도를 작성할 시 一장의 '<그림 Ⅰ-1> 고려초 왕실의 內婚 관계망'에 적용한 원칙을 그대로 좇아 혼인 관계의 남녀는 동일한 색으로 나타내었고,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역대 국왕과의 친속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속성을 반영하여 자녀들을 기록할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국왕과 친속관계가 보다 가까운 쪽에 配屬하였다.

다만 문종의 아들 중 숙종에 앞서 국왕이 된 인물로 순종·선종이 있으나, 순종은 후사를 전혀 남기지 못하였고, 선종의 자녀는 예종의 첫 번째 왕후였던 敬和王后와 장애로 혼인하지 못한 遂安宅主를 제외하면[332] 모두 早卒하거나 정치적 변란에 휘말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도에서 삭제하였다.[333] 나아가 <그림 Ⅲ-2>에는 ≪고려사≫ 열전 외에 세가, 묘지명 등에서 추적 가능한 종남·종녀의 부부·부모

332) ≪고려사≫ 권91, 열전3 공주 선종. 敬和王后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遂安宅主는 선천적인 시각 장애 때문에 혼인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333)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선종, "宣宗四子. 思肅太后李氏, 生憲宗, 元信宮主李氏, **生漢山侯昀, 二子夭, 史逸其名**";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선종 漢山侯昀, "憲宗卽位, 拜守司徒. 李資義欲奉昀爲王, 伏誅, 肅宗流元信宮主及**昀兄弟于慶源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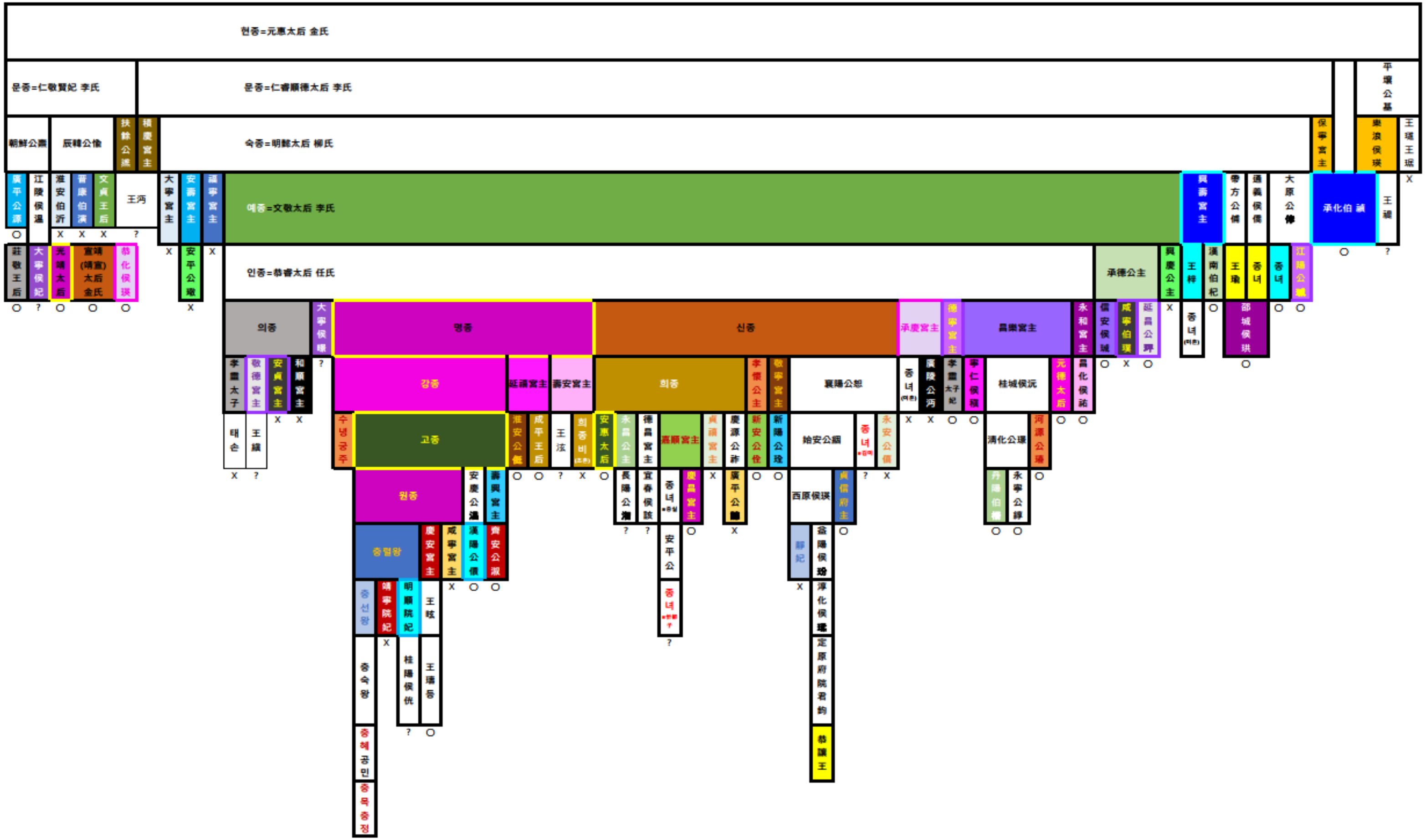

<그림 Ⅲ-2> 현종 이후 고려 왕실의 內婚 관계망

·자녀관계 기록까지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흥수궁주(숙종 왕녀)의 아들 王梓와 大原公 俈(숙종 왕자)의 딸이 사촌혼을 하였다는 사실은 '王梓女王氏墓誌銘'에서만 확인된다.[334]

<그림 Ⅲ-2>에서 특기할 점은 문종 왕녀 보령궁주와 사도·사공이었던 낙랑백 영의 혼인이 성사된 이래 충렬왕대까지 王壻들은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왕자·왕녀의 直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예외적인 다섯 인물은 인종의 첫 번째 사위 공화후 영과 인종의 네 번째 사위 邵城伯 珙, 신종의 첫 번째 사위 河源公 瑃, 희종의 두 번째 사위 丹陽伯 楈와 세 번째 사위 永嘉伯 崔瑼이다. 이 가운데 공화후 영은 장경왕후의 납비를 계기로 아버지 사도 온이 강릉후에 봉작된 이후 侯의 아들로서 王壻에 간택된 인물이었다. 사도·사공 지위가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왕자·왕녀의 直子였던 여타 王壻들과 법제적 위상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소성백 공과 하원공 춘, 단양백 서는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임에도 王壻가 되어 伯爵을 받았다.[335] 이들은 사도·사공

---

334) 「高麗國[宗][室]處女王氏墓誌銘」, "王氏女者定懿公梓之處子也, 顯宗第四子靖簡王之五世孫也, 肅宗第三子大原公俈之外孫也. 曾祖瑛封爲樂浪公, 祖禎封爲良僖公, 其母王氏早卒"(김용선, 2021 앞의 책(上), 384쪽 및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王梓女王氏墓誌銘' 참조).

335) ≪고려사≫ 종실전에서 하원공 춘의 아버지는 桂城侯 沅으로 확인되지만 王沅의 행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계성후가 된 시점을 알 수 없다. 본래 왕원은 창락궁주의 장남으로 사도·사공세대에 해당하며, 동생 王稹과 달리 王壻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위체계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에 김기덕은 왕원과 같은 사례를 모두 예외봉작으로 취급하였으나(김기덕, 1998 앞의 책, 83~87쪽), 귀납적으로 도출된 봉작 수여원칙을 잠시 배제한 채 왕원과 국왕 간 친속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 봉작의 계기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작 수여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왕원이 계성후에 책봉된 계기는 아들 王瑃의 王壻 간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는 왕족·공신·관료에 대한 은애를 그 先代에까지 미침으로써 家格을 높이는 추증제도를 도입하였는데(박종기, 2009 <高麗時代 追贈制度> ≪한국학논총≫ 31), 추증의 기본 원리가 왕실 봉작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妃父를 侯에 봉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실제 <그림 Ⅲ-2>를 보면, 사도·사공 자녀세대에서 王壻가 탄생할 경우 그 아버지(사도·사공세대)는 王壻가 아니었음에도 작위를 가졌다. 유일한 예외는 소성백 공의 아버지 王瑜인데, 그는 1141년(인종 19) 사공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작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19년 5월 壬子). 사후 추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기록은 소실된 듯하다. 소성백 공이 인종의 4녀 永和宮主와 혼인하여 王壻가 된 시점은 1150년 이후다. 진봉 및 추증 원리와 왕실 편제의 상관성에 대한 자세한

세대였던 여타 王壻들에 비하여 법제적 위상이 낮았다. 영가백 崔瑽는 최충헌의 아들로 무신집권기라는 특수한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三장 2절에서 별도 분석할 예정이다.

王壻에 비하여 사례가 적지만, 왕실 출신 后妃들의 면면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에서 확인되듯 현종 이후 태자 시절을 거쳐 즉위한 국왕들은 인종을 제외하면 모두 왕실 여성과 초혼을 하였다. 인종만 왕실 여성을 첫 번째 后妃로 맞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자겸이 전횡을 일삼던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것이었다. 이자겸은 왕실과 연계된 새로운 외척이 집권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왕실 여성을 고의적으로 후보군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두 딸을 인종의 왕후로 삼았다.[336]

인종 이전까지 왕실 출신 后妃는 역대 국왕의 왕녀거나 왕자·왕녀의 딸이었다.[337] 정확히 諸王과 왕후 후보군의 범주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인종이 사도·사공의 딸을 태자비로 간택한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장경왕후의 납비는 諸王 범주에서 적합한 나이대의 태자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정된 차선책이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338] 이후 무신집권기 李義方·崔忠粹가 太子妃父의 지위를 노렸다가 실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태자의 초혼 상대를 왕실 여성 가운데 간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원간섭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태자비는 前王(廢主)의 왕녀 또는 왕자·왕녀의 딸로 결정되었다.

<그림 Ⅲ-2>와 <표 Ⅲ-2>를 종합해보면 고려 왕실의 內婚 단위에 대한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확립된 이후 王壻

분석은 본고 三장 2절 참조.

336)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인종 폐비이씨.

337) 선종대부터 왕자·왕녀의 이복남매혼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역대 국왕의 왕녀가 왕후 또는 태자비로 간택된 경우는 형제간 왕위계승 결과 비슷한 연령대면서 사촌관계인 왕자·왕녀가 존재할 때였다.

338) 신수정, 2018 앞의 논문, 107~115쪽.

<표 Ⅲ-2> 太子 출신 국왕들의 初婚 상대

	왕후	왕후 부(上)·모(下)	관계 (總系 寸數)	비고
德宗	孝思王后 金氏	**顯宗**(국왕) 元惠太后 金氏	2촌 (이복 남매)	□공통조상: 현종 덕종의 즉위 전 태자비 효사왕후가 사망하여 1034년(덕종3) 또 다른 이복남매 敬成王后(현종왕녀)와의 재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順宗	貞懿王后 王氏	**平壤公基** (현종왕자) 미상	4촌	□공통조상: 현종 1064년(문종18) 태자비로 납비. 順宗妃 宣禧王后金氏가 순종의 동궁 시절 간택된 것을 볼 때, 태자비 정의왕후가 사망한 후 선희왕후가 繼妃로 입궁한 것으로 추정됨.
睿宗	敬和王后 李氏	**宣宗**(국왕) 貞信賢妃 李氏	4촌	□공통조상: 문종 예종은 1121년(예종16) 辰韓侯愉의 딸 文貞王后를 맞이하여 貴妃로 책봉함. 文敬太后 사후 예종에게 공식적인 后妃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혼인으로, 이 또한 4촌혼임.
仁宗	廢妃李氏	李資謙 崔思諏의女	3촌	**□공통조상: 이자겸**
毅宗	莊敬王后 金氏	**司徒溫** **→江陵侯** 金沽의女	7촌	□공통조상: 문종, 유홍
熙宗	폐태자비	**昌化侯祐** **壽安宮主** (명종왕녀)	5촌	□공통조상: 인종 희종의 초혼은 신종 즉위 이전 희종이 사도·사공이었을 때 이루어짐. 신종 즉위 후 崔忠粹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납비하고자 태자비를 출궁시킴. 최충수가 제거되면서 연희궁주(명종왕녀)의 딸 成平王后와 희종이 재혼하였고, 이 또한 5촌혼임.

康宗	元德太后 柳氏	信安侯珹 昌樂宮主 (인종왕녀)	4촌	□공통조상: 인종 **<u>엄밀히 말하여 강종과 원덕태후의 혼인은 재혼이었음</u>**. 강종의 첫 번째 부인은 李義方의 딸 思平王后였는데, 이의방 실각 후 사평왕후와의 혼인이 부정되어 왕후가 출궁되며 왕실 여성이 다시 태자비로 納妃됨.
高宗	安惠太后 柳氏	熙宗(국왕) 成平王后任氏	5촌	□공통조상: 명종
원종	慶昌宮主 柳氏	新安公佺 嘉順宮主(희종왕녀)	4촌	□공통조상: 희종
충렬왕	貞和宮主 (貞信府主)	司徒絪 →始安公 미상	7촌	□공통조상: 신종
충선왕	靜妃	西原侯瑛 미상	9촌	□공통조상: 신종 몽골에서 고려의 '同姓婚' 전통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이후라 왕실 봉작의 원칙이 많이 무너져 국왕의 遠親 중에서도 公·侯·伯이 나오는 상황이었음.

및 왕후 출신의 하한선은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였다. 즉, 법제적 왕실은 사도·사공에서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만 왕실의 內婚 단위는 사도·사공이 각각 중심이 되어 파생시킨 기본가족까지 포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 법제적 왕실인 諸王은 공고한 內婚 단위였던 반면 사도·사공의 직계자녀들은 이례적 상황을 대비한 內婚 '후보군'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종 자녀세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사도·사공 다음 세대에서 태자비와 사위가 배출되었던 사실만 놓고 보아도 사도·사공의 직계자녀를 간택하는 것은 '대안'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C-2]는 고려 當代人들의 관념 속에 왕실의 內婚 단위가 실제 상정되어 있었으며, 內婚 단위는 '종실'로 명명되는 집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C-2]「高麗國①[宗][室]處女王氏墓誌銘」
王氏 여인은 定懿公梓의 처녀이니, 顯宗 제4자 靖簡王의 5세손이자 肅宗 제▨자 大原公俙의 외손이다. 증조부 瑛은 樂浪公에, 조부 禎은 良僖公에 책봉되었다. 그 모친 왕씨가 일찍 사망하자 부친을 효성과 근실함으로 섬겨 안으로는 엄숙함과 화목함을 ▨하고 아녀자로서 현명함을 ▨하였은 즉, **대원공이 더욱 그를 아껴서 자식의 秩과 같이 하여[如子秩] 그 후에 '傳家'하였다. 세상에 배우자로 삼을 사람이 없자 태연자약하게 처녀로 살았는데** (중략) 이에 그 **②國戚 가운데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있었음을 알게 하고자 ▨▨ 銘을 짓는다**. 그 詞에서 이르기를, '(중략) 아름다운 자질과 미모는 하늘이 내려준 자태였으니, **③제수[蘩藻]를 잘 ▨하여 태묘[禴祠]에 ▨ 이바지하기에 마땅하였고 금슬처럼 우애로워서 王者의 妃가 되기에 마땅하였으나** 40여 세에 기꺼이 처녀로 지냈다 (중략) 오호 슬프도다.'라고 하였다.[339]

[C-2]는 '王梓女王氏墓誌銘'으로 널리 알려진 사료다. 왕재는 숙종의 외손이자 수사공에 오른 諸王이었으며,[340] 묘지명 주인공 왕씨는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로 법제적 왕실에서는 제외되는 인물이었다. 이 묘지명의 원 표제는 '高麗國▨▨處女王氏墓誌銘'이다. 國과 處 사이

339)「高麗國[宗][室]處女王氏墓誌銘」, "王氏女者, 定懿公梓之處子也, 顯宗第四子靖簡王之五世孫也, 肅宗第三子大原公俙之外孫也. 曾祖瑛封爲樂浪公, 祖禎封爲良僖公. 其母王氏早卒, 事父孝謹, 而內▨肅穆, 婦▨賢明, 故大原公尤愛之, 如子秩, 厥後傳家. **世無與偶, 處室自若** (중략) **迺知其國戚之有斯賢女▨▨爲之銘**. 其詞曰, '(중략) 麗質美艶, 天賦之姿, **宜▨蘩藻, ▨供禴祠. 宜友琴瑟, 爲王者妃**. 年四十餘, 處室怡怡. (중략) 嗚呼哀哉'". 處室과 蘩藻를 판독해주신 분은 가톨릭대 채웅석 교수님이다. 處室은 ≪諺解本 五倫行實圖≫ 권5,「侯可求醫」에서 "처녀로 있다"로 언해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蘩藻는 蘋蘩蘊藻之菜의 약어로 고전에 많이 사용되며, 고대 제사에 사용된 식물을 가리킨다고 한다.
340)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18년 9월, "守司空梓卒."

의 두 글자가 마모되어 기존 판독문에서 결락으로 처리해왔으나,[341]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탁본 이미지에 각 글자 하단의 示와 至가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본고에서는 ①의 결락을 '宗室'로 판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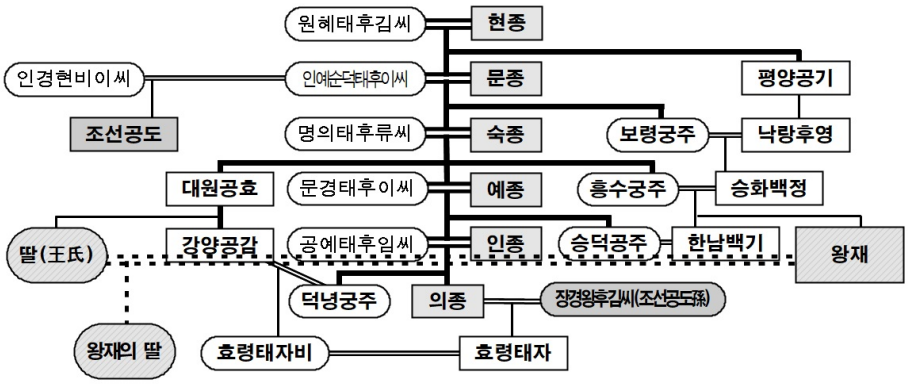

<그림 Ⅲ-3> 王梓와 부인 王氏의 가계도

첫 번째로 [C-2]에서는 왕재의 딸이 "宗室處女"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재의 딸은 그 계보가 <그림 Ⅲ-3>과 같이 父側으로 왕재→흥수공주→숙종, 母側으로 王氏(王俬의 딸)→대원공 효→숙종에 연결된다. 즉, '종실'은 숙종의 외손인 왕재와 친손인 왕효의 딸을 통칭한 표현이다. 二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諸王이 왕실 여성의 지위를 '표상'하였더라도 집단으로서의 諸王은 작위를 갖는 남성만 지칭하였기 때문에, 왕실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집합명사로서 유의미한 當代 용어는 '종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고려시대에는 '제왕을 포함한 종실집단'이라는 뜻의 "諸王宗室"이 사용되었다. 1252년(고종 39) 국왕의 王輪寺 행차 장면을 묘사한 ≪고려사절요≫ 기록에서는 "舊例에 따르면 諸王宗室의 宮宅 소속 蒼頭

341) 김용선, 2021 앞의 책(上), 384쪽 및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王梓女王氏墓誌銘'.

에게만 著頭를 허용하였다"는 문장이 확인된다.[342] 제왕종실이 곧 궁택의 경영 주체임을 보여주는데,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에 宮主·宅主에 책봉되어 궁택에 대한 경영권을 직접 공인받은 것이 왕실 여성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료의 제왕종실이 왕실 여성까지 포괄하는 집합명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법제적 왕실에서 배제될 사도·사공의 딸을 묘지명 撰者가 "宗室處女"로 정의하여 왕실의 주변부에 위치시켰다는 사실이다. 왕재의 딸은 사도·사공 지위를 배우자에게 代受시킬 수 없는 존재였으나 부모와 조부모를 매개로 諸王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未婚[處女] 상태에서 그녀에 대한 '歸屬權'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있었다. [C-2]에서는 대원공 효가 왕재의 딸에게 '傳家'하였던 사실을 통하여, 그녀에 대한 귀속권을 가장 강하게 행사하던 인물이 외조부 대원공 효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왕재의 딸이 혼인 후 사환권을 갖는 배우자를 두었다면 대원공 효는 그녀에게 '傳家'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종친불사 원칙에 따라 왕재의 딸과 왕실의 공식적인 관계는 단절되고 관료가문 소속이라는 정체성이 그녀를 대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왕재의 딸은 未婚이기 때문에 왕실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왕자 가문으로부터 '傳家'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대원공 효가 행한 '傳家'의 실체는 무엇일까. '傳家'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家産의 상속으로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대원공 효는 동모형 예종에 의하여 숙종과 명의태후의 유산을 대거 상속하였다. 그의 상속분에는 宮司의 전토·노비와 같은 경제적 특권 또한 포함되었다. 묘지명의 "如子秩"이라는 표현을 참작하면 1남 1녀를 두었던 대원공 효는 딸이 일찍 사망하자 딸이 남긴 유일한 손녀에게 딸의 상속분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사공세대

342) ≪고려사절요≫ 권17, 고종4 고종안효대왕 39년 9월, "王乘崔沆所獻新輦, 幸王輪寺 (중략) **舊例, 唯諸王宗室宮宅蒼頭許著頭**, 謂之紫門假著. 權臣蒼頭著幞頭, 始此. 是後, 凡權勢家奴皆著之."

가 받아야 할 상속분이 고스란히 그 자녀세대에게 상속된 것이다. 다음으로 가문 또는 가업의 계승으로 '傳家'의 의미를 확장할 여지가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시대 문집과 금석문에서 '傳家'의 용례를 검토하면 가산 상속과 같은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훈요 제3조의 "傳國傳家", 신종 즉위 표문의 "須弟及而傳家"에서 '傳家'는 가문의 전수 나아가 왕실 가업(王位)의 전수라는 의미를 함축하였다.[343] 물론 가문·가업의 전수에 가산 상속이 수반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②문장의 '國戚'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國戚은 역대 국왕의 외척을 의미하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 문화권에서 왕후나 王壻를 배출할 수 있는 자격이 일부 가문에 독점되었기 때문에 國戚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묘지명 撰者는 승화백 정과 대원공 효의 손녀였던 왕재의 딸을 종실처녀이자 國戚의 일원으로 설명하였다. 그녀의 가계를 살펴보면 부계로 증조부 낙랑백 영과 조부 승화백 정이 대를 이어 왕녀와 혼인하였고 삼촌인 王杞 또한 예종의 첫 번째 사위 한남백이었다. 모측으로는 외삼촌인 王珹이 인종의 두 번째 사위인 江陽伯이었다. 따라서 當代人에게 왕재의 딸은 종실이면서 國戚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였다.[344] 이 또한 內婚으로 국왕과 종실 간 복수의 친속관계가 설정되었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세 번째로 주목할 대목은 ③문장이다. 묘지명 撰者는 그녀에게 王

---

343)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26년 4월; 권13, 명종광효대왕2 명종 27년 10월.

344)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현종 平壤公基 附 王禎, "禎授檢校尙書右僕射(중략) 子梓杞, 梓檢校右僕射守司空, 毅宗十八年卒, 杞尙睿宗女承德公主, 子珹璞玶"; 권91, 열전4 공주 예종, "承德公主, 文敬太后李氏所生, 適漢南伯杞";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숙종 大原公俙, "(전략) 子珹授檢校司空上柱國, 封江陽伯, 毅宗二十二年, 進封侯"; 권91, 열전4 공주 인종, "德寧宮主, 亦恭睿太后所生, 適江陽公珹."

者의 妃가 될 정도의 자질이 있었는데도 마땅한 상대가 없어 평생 홀로 살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표면상 왕재의 딸이 未婚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세상에 그녀의 혈통적 권위와 家格에 합당한 상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 蘩藻·禴祠 등의 용어와 연결되는 전체적인 맥락상 그녀의 배우자가 될 만한 신분은 국왕 이하 최소 諸王으로 통칭될 만한 왕실 남성들로 상정되어 있다. 王者의 妃는 왕후뿐 아니라 諸王의 妃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도·사공의 딸이었던 왕재의 딸은 법제적 왕실 구성원들과 대등한 혼인이 가능하고 심지어 왕후 간택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묘지명의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실제 왕재의 딸이 태어난 지 3년째 되던 해 고려에서는 최초로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서 태자비가 배출되었다. 인종 왕자·왕녀들의 內婚 후보군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실 주변부에 위치하던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남녀를 막론하고 왕자·왕녀들과의 혼인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345]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왕실 봉작제 성립 이후 '世附近屬, 克襲公侯伯'을 가능케 한 고려 왕실의 특징적 혼인을 '宗室內婚'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종실내혼'은 '종실'이라는 當代 용어와 內婚이라는 학술 용어를 결합하여 當代人이 왕실로 인정하였던 관념적 범주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 범주가 유의미한 內婚 단위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어이다. 본고에서 파악한 '종실'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종실'은 諸王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였으나, 두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법제적

345) 왕재의 딸은 1141년(인종 19) 출생이고, 사도 온의 딸이 인종의 태자비로 간택된 시점은 1143년(인종 21)이다. 인종 3남 명종이 1131년(인종 9), 4남 元敬國師 冲曦가 1130년대 중반, 5남 신종이 1144년(인종 22)에 각각 출생하였으나 역대 국왕의 손자녀세대가 빈약하여 태자비·왕자비와 王壻를 諸王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물색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왕재의 딸은 유력한 王子妃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용어인 諸王은 그 경계가 명확한 반면 '종실'은 경우에 따라 諸王을 매개로 파생될 수 있는 친속관계를 포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諸王에게 허용된 지위나 특권을 가질 수 없는 대신 종친불사 원칙에서 해방되었다. 남성은 음서로 官路에 진출한 뒤 官歷을 쌓아가며 사환권을 회복하였고, 여성은 관료의 배우자가 되어 간접적으로 사환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환권은 혼인이라는 변수에 의하여 언제든 박탈될 수 있었다. 인종대부터 국왕은 諸王의 인적 구성이 빈약할 시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를 대안적인 근친혼 상대로 인식하였다. 즉,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未婚 상태라면 사환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었다. 二장에서 공화후 영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참조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諸王과 관료 중간에 위치하며 왕실의 주변부를 형성하다가 혼인에 따라 최종 정체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인 諸王들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 얼마나 강한 귀속권을 행사하는가도 '종실'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王梓女王氏墓誌銘'에서 대원공 효는 미혼 상태의 외손녀를 자식의 '秩'로 삼아 '傳家'하였다. '傳家' 이후 묘지명 주인공인 왕재의 딸은 사도·사공과 같은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고려 왕실에서는 그 배우자의 혈통과 家格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였음에도 왕재의 딸에게 諸王들과의 혼인은 의무가 되었다.

종합해보면 고려 왕실의 內婚 단위로서 유의미한 '종실'은 諸王과 더불어 諸王이 파생시킨 기본가족 일부를 포괄하였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법제적 왕실 범주에서 벗어나 왕실 주변부에 존재하였고, 그들의 최종 소속을 결정하는 데 외부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국왕과 '親'이 남아있는 존재로서 혈통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가 后妃 또는 王壻 출

신성분의 하한선이었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들의 최종 소속은 혼인에 따라 달라졌다. 관료가문과의 혼인을 계기로 諸王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다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사환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왕실에서 배제되었다. 가문계승·상속을 매개로 諸王들이 이들에게 강한 귀속권을 행사할 시에는 '종실'로서의 정체성이 확정되지만 그 여파로 배우자의 혈통과 家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346]

2) 왕실 여성에 대한 혼인규범으로서의 '종실내혼'

고려초 왕실의 內婚 규범은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태조 왕자들은 호족·관료가문 출신 여성과 혼인할 수 있었던 반면 태조 왕녀들은 경순왕 金傅와 통혼한 두 왕녀를 제외하면 모두 이복남매혼을 하였고, 태조 손자녀세대에 이르러서도 종녀만큼은 엄격히 왕실 내 근친혼에 구속되었다. 혼인적령기의 종남이 종녀보다 부족할 때조차도 고려 왕실에서는 외부 남성을 종녀의 배우자로 고려하지 않고 국왕의 重婚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태조와 그 측근들이 경험한 신라 하대의 문화, 곧 딸을 매개로 사위 또는 외손에게 王統이 계승되었던 前代의 문화가 고려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법제적 왕실로부터 內婚 단위가 파생되었던 고려전기 이후 '종실내혼'의 구속력은 어떻게 작동하였을까. 주지하다시피 고려 왕실의 남성

346) 왕실 봉작제 성립 이후 고려 왕실에서 사도·사공이라는 下限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김기덕은 諸王과 일치하는 왕실의 1·2차적 구성을 협의의 왕실로 정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고려의 법제적 왕실을 논할 때 김기덕의 제안은 매우 유효하다(김기덕, 1993 <高麗時期 王室의 構成과 近親婚> ≪국사관논총≫ 49, 6~7쪽; 김기덕, 1998 앞의 책, 233~236쪽.). 그러나 사도·사공의 자녀세대가 법제적 왕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을 조종묘예와 동일선상에 놓아 3차적 구성으로 범주화하고 광의의 왕실로 분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3차적 구성 내부의 편차를 고려하면서 當代人의 시선을 투영하여 협의의 왕실 개념을 추출해야 한다.

은 일반 관료가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었다. 남성 자신이 봉작을 받는 주체이고, 그 소생 또한 父姓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王姓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종실' 출신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왕실 여성의 혼인이다. 왕녀의 경우에는 신라 경순왕과 혼인한 태조 왕녀들, 무신집정 崔忠獻의 아들과 결혼한 희종 왕녀를 제외하면 모두 왕실 남성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밝혀졌다.[347] 그러나 왕녀가 아닌 다수의 '종실' 여성[종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태조비 東陽院夫人의 손녀가 '庾方夫人'이었던 사실, 최충헌의 아들 崔珦, 崔瑀(崔怡)의 외손 김미가 公·侯의 딸들과 혼인한 사실을 토대로 사도·사공세대의 여성이 관료가문 남성과 혼인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348] 그러나 上記 사례를 보편적 사례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동양원부인의 손자인 왕림·왕정이 '종실'로 인정되지 않고 사환되었던 것처럼[349] 이들의 남매 혹은 사촌이었던 유방부인 또한 종녀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최향·김미와 종녀의 혼인은 최충헌 아들 崔琇이 희종 왕녀를 親迎할 수 있었던 특수한 시대적 맥락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왕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혼인 對象群까지도 內婚 단위를 넘어 외부에 개방되어 있었다고 이해한다면, 고려 왕실의 역사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종실내혼'이 특정 대상을 구속한 규범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였을 경우 內婚은 왕실의 독특한 취향 정도로 의미가 축소된다. '종실내혼'과 봉작제를 연동시켜 고려 왕실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종실내혼'이 강력한 혼인규범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혼인규

347) 정용숙, 1988 앞의 책, 135~140쪽.
348) 김기덕, 2002 앞의 논문, 151~153쪽.
349) 본고 一장 1절에서는 효은태자의 반역 이후 광종의 감시망을 피해 민가에 숨어 살던 왕림·왕정이 현종 즉위 후 宗籍에 復籍되었으나 왕실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범이 고려 왕실의 利害와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종실내혼'의 구속력이 미친 영향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세 사료를 주목해 보자.

[C-3] 앞서 至元 12년(1275) 世祖皇帝의 은혜를 입어 阿禿因를 보내어 와서 聖旨를 전달하고 또 至元 28년(1291) 내가 鄭可臣·柳淸臣 등과 紫檀殿 안에 이르러 친히 세조황제의 성지를 받들었으니 이르기를, '同姓이 통혼할 수 없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다. 하물며 그대의 나라는 문자를 알고 夫子의 도를 행하고 있으니 응당 同姓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중략) 지금부터 종친으로서 同姓에게 장가드는 자는 성지를 위배한 것으로 논할 것이니, 마땅히 대대로 宰相 가문의 여성을 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재상 가문의 남자는 宗世의 여성에게 장가드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可聽]'**. 만약 家世가 卑微하다면 이러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략) **宰相之宗은 대대로 청혼하여 남자는 宗女에게 尙하고 여자는 宗妃가 되는 것이 가하다**.[350]

[C-4] <충렬왕> 2년(1276), **공주가 안평공의 딸을 忻都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려고 하지 않자,** 공주는 慶昌宮主와 安平公妃를 불러 忻都의 처와 면전에서 혼약하게 하였다. **궁주는 안평공의 이모다**.[351]

[C-5] 金寬毅의 ≪王代宗錄≫과 任景肅의 ≪瓊源錄≫에 宗女와 宗子가 병렬되었으니, 그 世譜를 검토해보면 산만하여 판별할 수가 없다. 小白

350)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즉위년 11월 辛未, "先於至元十二年, 欽蒙世祖皇帝, 遣阿禿因, 來傳聖旨, 又於至元二十八年, 予與鄭可臣·柳淸臣等, 詣紫檀殿裏, 親奉世祖皇帝聖旨云, '同姓不得通婚, 天下之通理. 況爾國識會文字, 行夫子之道, 不應要同姓.' (중략) 自今, 若宗親娶同姓者, 以違背聖旨論, 宜娶累世宰相之女爲室, **宰相之男, 可聽娶宗世之女**. 若家世卑微, 不在此限. (중략) **宰相之宗, 可世爲婚媾, 男尙宗女, 女爲宗妃**. 文武兩班之家, 不得娶同姓, 外家四寸, 亦聽求婚."

351) ≪고려사≫ 권89, 열전2 后妃 충렬왕 제국대장공주.

(齊桓公)이 齊에서 임금 노릇 하면서 고모와 자매를 시집보내지 않고 稠父(魯昭公)가 吳에 장가들어 부인을 吳孟子라고 부른 것은 족히 기롱할 만하지 않구나. 드러내어 그것을 보이는 것이 또 어찌 春秋에서 魯를 隱諱한 법이겠는가. **宗女가 비록 親하고 또한 貴하다고 하나 <종자의> 부인·외부모의 家는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다.**[352]

[C-3]은 忠宣王 복위교서 가운데 '왕실 同姓婚 금지' 및 '宰相之宗 설정'과 관련된 조항만 발췌한 것이다. 이 교서의 발표 이후 '종실내혼'을 토대로 한 고려 왕실의 운영체제가 공식 부정되었고, 고려 왕실은 봉작 원칙 및 수여범위를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며 '무원칙'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알려져 있다.[353] 본고가 [C-3]에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宰相之宗'을 나열하며 충선왕이 구사한 용어다. 충선왕은 재상가 남성과 종녀의 혼인에만 '허락할 수 있다[可聽]'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려 국왕들이 종남보다 종녀의 혼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개입해왔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또한 재상가 남성이 종녀에게 장가드는 행위를 '尙', 즉 왕녀와 같은 상위 신분의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로 서술하여 종녀가 명백히 재상가의 上位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C-4]를 살펴보면, 복위교서에 등장하는 聽·尙 등의 용어가 충선왕의 치밀한 고려 하에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76년(충렬왕 2) 齊國大長公主가 몽골인 忻都에게 安平公의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였을 때 충렬왕은 '허락[許]'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의 繼母인 慶昌宮主와 그 姪婦 安平公妃를 忻都 妻와 대면

352) ≪益齋亂稿≫ 권9下, 史傳序 「宗室傳序」, "金寬毅王代宗錄, 任景肅瓊源錄, 宗女與宗子並列, 討其世譜, 棼然莫之辨也. 小白君齊而姑姊妹不嫁, 稠父娶吳而謂之吳孟子, 爲不足譏歟. 表而出之, 又豈春秋諱魯之法乎. 宗女雖親且貴, 婦人外父母家, 可略也已."

353) 김기덕, 1998 앞의 책, 144~145 및 200~201쪽.

시켜 강제로 혼약을 맺게 하였고, 1277년(충렬왕 3) 결국 혼사가 성사되어 충렬왕은 忻都의 아들을 수사공에 임명하였다.[354] [C-4]의 서술이 간략하여 정확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나, 전후 맥락상 충렬왕은 왕실 웃어른인 경창궁주가 직접 맺은 '정식' 혼약을 깨기 어려웠기에 혼인을 허락한 뒤 公·侯·伯의 사위에게 보장된 공적 지위를 忻都의 아들에게도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公·侯·伯의 딸은 사도·사공이라는 諸王 지위를 남편에게 代受시키는 존재였기 때문에, 혼인 대상의 선정 및 혼인 후 사도·사공 임명 과정에 국왕이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경우에 국왕은 종녀의 혼인을 허락하였을까. 그 해답은 [C-5]에서 확인된다. [C-5]는 이제현이 남긴 종실전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이제현은 종실전을 다시 쓰게 된 계기를 서술하며 김관의와 임경숙이 남긴 왕실 계보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종녀의 정보가 종남(宗子)만큼 상세하여 왕실의 시대별 구성과 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어지는 문장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제현에게 진정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은 근친혼으로 얽힌 '종실'의 관계가 김관의와 임경숙의 계보에서 한 눈에 드러나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현은 儒者들이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던 '동성혼' 사례들을[355] 고려 왕실의 婚俗에 견준 뒤 종녀 또한 왕의 친속으로서 귀한 존재지만

354)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6월 乙酉, "以忻都子琪守司空, 琪娶安平公女, 比宗室例, 授是職, 且不姓而名."

355) ≪春秋左氏傳≫ 권7, 魯哀公上 12년조에 따르면, 魯 昭公은 同姓의 姬姓國 吳와 통혼한 뒤 이 사실을 숨기고자 부인을 孟姬가 아닌 孟子라고 칭하며 子姓國 宋 출신인 양 위장하였다. ≪論語≫ 述而에서 陳司敗는 소공이 知禮하였다는 孔子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때 昭公의 동성혼을 근거로 들었는데, 孔子가 陳司敗의 반론을 묵묵히 수용함으로써 이후 昭公은 동성혼이라는 非禮를 범한 대표적 인물로 유학자들에게 각인된다. ≪春秋左氏傳≫에서는 동성혼을 하지 말아야 할 주된 이유로 '其生不殖'을 들었고, 男女의 姓을 변별하는 것이 禮의 근본임을 강조하였다(≪春秋左氏傳≫ 魯昭公一, "晉侯有疾 (중략) 內官不及同姓, 其生不殖, 美先盡矣, 則相生疾, 君子是以惡之 (중략) 男女辨姓, 禮之大司也").

새로운 계보에서 “부인·외부모의 家는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술하였다. 이제현에게 있어 “부인·외부모의 家”를 생략하는 것은 고려 왕실의 흠결을 감추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는 孔子가 魯의 흠결을 隱諱하였던 春秋筆法의 권위를 빌어 이러한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356] 여기서 부인의 家는 妻家, 외부모의 家는 母家를 의미한다. 즉, 종남의 모든 妻家와 母家를 삭제하면 자연스럽게 ‘동성혼’을 행한 ‘야만의’ 역사가 감춰지고 종남 위주의 간결한 왕실 계보가 드러날 것이라는 논리 구조가 [C-5]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제현이 작성한 종실전은 현전하는 ≪고려사≫ 종실전의 底本이 되었다. 실제로 현전하는 ≪고려사≫ 종실전에서는 通義侯 僑의 딸을 제외하면 혼인한 종녀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숙종 왕자 帶方公 俌 열전에 대방공 보의 아들 司空 瑜가 통의후 교의 딸과 사촌혼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357] 이것은 종남의 부인 정보가 어떠한 연유에 의하여 삭제되지 않은 사례로 추정된다.[358] 이제현이 종남의 妻와 母 정보를 삭제하는 순간 종실전에서 종녀들의 흔적은 사라졌다. 이는 혼인한 종녀들이 종남의 妻 또는 母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왕녀들에게 ‘종실내혼’이 강요되었던 것처럼 종녀 또한 ‘종실내혼’이라는 혼인규범에 구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사≫ 종실전에서는 종녀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으나,[359] 세

356) 신승하, 2017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4쇄), 37~38쪽.

357)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숙종 帶方公俌 附 王瑜, “子瑜, 娶通義侯女, 仁宗十九年卒.”

358) 이제현이 司空 瑜의 부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사공 유의 아들이 바로 인종 사위 소성백 공이다. 그는 고려 역사 최초로 사도·사공 자녀 세대에서 王壻에 간택된 인물이다. 이제현은 소성백 공이 인종 사위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조부와 외조부 모두 숙종 왕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소성백 공의 혈통적 권위를 보여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359) 王璿의 두 딸과 같이 오히려 혼인하지 못한 宗室處女의 흔적은 종실전에 남아 있다. 왕선은 인종 왕녀 永和宮主의 차남으로 형과 달리 王壻로 간택되지 못하여 수사도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두 딸은 가난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였다고 한다(≪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숙종 帶方公俌 附 王珙, “珙子祐璿. 祐尙明宗女壽安宮主, 封昌化侯, 神宗卽位, 拜守司徒上柱國, 祐子泫, 守司空. 璿, 守司徒柱國,

가나 묘지명 등에 산재된 기록을 통하여 일부 종녀들의 혼인 사례를 복원할 수 있다. [C-2]의 '王梓女王氏墓誌銘'에서는 숙종 왕자 대원공효와 숙종 왕녀 흥수공주가 각자의 딸과 아들을 사촌혼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C-4]에서는 "경창궁주가 안평공의 이모"였다는 정보를 토대로 희종 왕녀 嘉順宮主에게 최소 두 딸이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元宗妃 경창궁주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종남의 부인이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남편이 작위를 갖고 있는 '종실'이어야 그 아들 또한 안평공에 책봉되어 왕실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종은 妻父 강릉후 온의 나머지 딸들을 왕제들과 혼인시켰다. 사도·사공세대의 여성을 왕자비로 삼은 사례이다. 희종의 초혼 상대는 명종 왕녀 壽安宮主의 딸로 알려져 있다.[360] 신종이 평량공이던 시절, 인종의 손자로서 사도·사공이었던 희종은 마찬가지로 인종의 손녀이며 그와 동일한 법적 위상을 갖고 있었던 종녀와 혼인하였다.

결국 '종실내혼'의 핵심은 왕실 여성의 혼인에 대한 통제였다. 이는 고려초 왕녀와 종녀에게만 內婚 규범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一장에서는 고려초 왕녀와 종녀의 배우자를 왕자·종남 가운데에서 찾았고, 혼인적령기 왕실 여성의 수가 남성을 상회할 시 고려 왕실은 국왕의 重婚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실제 앞서 복원한 종녀의 혼인 사례를 보면 '종실내혼'에서도 사도·사공세대의 여성이 상위 신분인 왕자 또는 동일한 신분인 사도·사공세대 남

爲人寡慾佞佛, 不營産業, 高宗三年卒, 有二女, 家貧未嫁, 不克襄事. 崔忠獻聞于王, 官庀葬事").

360)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忠獻忠粹遣人入闕逼王, 以單騎出向成門, 幽于昌樂宮, 使中禁指諭鄭允候守之. 時太子璹在內園北宮, 使人督之, 與妃步出宮門, 冒雨乘驛騎, 放于江華島, 迎平凉公旼, 卽位于大觀殿, 是爲神宗, 以子淵爲太子 (중략) 初太子娶昌化伯祐女爲妃, 至是, 忠粹欲以女配太子, 固請于王, 王不悅." 최충헌·최충수가 神宗을 옹립한 시점은 1197년 9월 20일이고(≪고려사절요≫ 권13, 명종2 명종26년 9월 庚申), 최충수는 희종이 태자에 책봉된 직후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올리기 위하여 태자비를 출궁시켰다가 1197년 10월에 숙청되었다(≪고려사절요≫ 권13, 명종2 명종26년 10월). 따라서 희종의 초혼은 신종 즉위 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성과 혼인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상회할 시 고려 전·중기 왕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 [C-6] 君의 宗派는, 父가 開府儀同三司 守司徒 上柱國 恭化侯 瑛이고 母가 承慶宮公主 王氏이니 인종[仁廟朝]께서 누이의 외조부다. 君의 평생은, 이를 가는 나이가 되기도 전 慈母께서 돌아가시니 아버지를 좇아 근엄하고 정숙하였다. **비녀를 꽂을 나이에 이르러 玉과 蘭 같은 威儀는 그 섬세함과 농후함이 중도에 맞아 부녀자[家人]가 갖추어야 할 德에 부합하였으나 혼기[摽梅]를 ▨ 지나쳤다**.[361]

[C-6]은 '王瑛女王氏墓誌銘'으로 알려진 사료다. 묘지명 주인공 王氏는 인종 장녀 承慶宮主와 공화후 영의 딸로서 1150년(의종 4) 출생하여 1185년(大定 25; 명종 15)에 사망하였다. 묘지명 표제에서 王氏가 '兄姊'로 명명된 것을 볼 때 묘지명의 撰者는 동모제인 廣陵侯 沔으로 확인된다. 광릉후 면은 의종 왕녀 和順宮主와 혼인하여 廣陵伯에 책봉되었던 인물이다.[362]

[C-6]에서 눈여겨볼 것은 의종의 조카이자 사돈으로서 복수의 친속관계로 얽혀있던 공화후 영의 딸이 혼기를 놓쳐 未婚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다. 공화후 영의 딸은 인종 손녀로 사도·사공세대에 해당하여 남편에게 諸王 지위를 代受시킬 수 있는 존재였다. 또한 그녀는 증조부 조선공 도부터 동모제 광릉백(후)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公·侯·伯을 배출한 왕실 최고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혼기를 놓쳤다면 그 원인은 배우자의 조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C-2]

---

361) 「兄姊一娘王氏墓誌」, "君之宗派, 父曰開府儀同三司守司徒上柱國恭化侯瑛, 母曰承慶宮公主王氏, 仁廟朝乃姊之外祖也. 君平生, 年未齠齔, 慈母猷世, 隨父僅肅. 及其始笄, 玉度蘭儀, 纖穠中度, 德合家人. ▨愆摽梅."(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영녀왕씨묘지명' 참조)

362) 공화후 영과 승경궁주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었다. 공화후는 딸 왕씨가 사망한 다음 해인 1186년(명종16)에 사망하였다[「高麗國金紫光錄大夫同德功臣開府儀同三司▨▨大傅守司徒上柱國恭化侯食邑▨百戶墓誌」(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영묘지명') 참조].

에서 수사공 왕재의 딸이 자신과 견줄 만한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평생 홀로 살았던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공화후 영의 딸은 '侯王'의 딸로서[363] 왕재의 딸보다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을 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았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에게 사도·사공 지위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諸王에 걸맞은 혈통적 권위와 家格을 가진 상대를 찾았을 것이며, 처음부터 사도·사공세대 이상으로 통혼 대상을 한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복원한 종녀들의 혼인 사례를 보면 사도·사공세대 여성은 왕자 또는 같은 사도·사공세대 남성과 혼인하였다.

<표 Ⅲ-3>은 공화후 영의 딸과 혼인적령기가 일치하는 왕실 남성을 <그림 Ⅲ-2>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를 작성할 때에는 고려중기 왕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녀의 윗세대와 아래세대를 아울러 출생연도가 비슷한 인물들을 선별하였다.[364] 당시 고려에서는 숙종 이후 의종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적장자가 연속 즉위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숙종·예종·인종·의종 모두 한 명의 后妃에게서 다수의 왕자·왕녀들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적장자로 이어지는 국왕의 직계자손과 동세대 '종실'들의 나이차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왕의 첫째 왕자·왕녀와 막내 왕자·왕녀의 나이차가 10세 이상 벌어지게 되면 다음 세대 통혼

363) '왕영묘지명'에서는 왕영이 侯王의 아들이면서 자신 또한 봉작되어 侯王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高麗國金紫光錄大夫同德功臣開府儀同三司▨▨大傅守司徒上柱國恭化侯食邑▨百戶墓誌」, "(전략) 公自少沉靜寡欲, 篤志于學, 思以文章▨於朝廷, 始爲殿中內給事, 同欲赴春闈, 毅廟雖嘉其志, 以侯王之子, 下從貢士之列, 非其例也. (중략) ▨銘曰, ▨歟我公, 系出銀潢, 早受茅土, 位極侯王").

364) 김용선, 1998 <고려 귀족의 결혼, 출산과 수명> ≪한국사연구≫ 103, 45~52쪽에서는 묘지명 기록을 토대로 고려시대 귀족 부부의 나이차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려시대 귀족 부부는 대체로 남성이 연상이고 나이차는 1~5세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10살가량 연상인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남자가 재혼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간혹 여성이 연상인 경우도 확인되지만 그 나이차는 크지 않았다. 본고는 김용선의 분석 결과를 수용하여 1150년생인 공화후 영의 딸이 혼인 가능한 대상군을 1140년대 초반부터 1150년대 초반 출생한 諸王들로 보았다.

망의 교란은 불가피해진다.[365] 예컨대 인종의 1녀와 2녀는 예종 왕녀가 낳은 아들과 사촌혼을 할 수 없었다. 인종3녀 昌樂宮主에 이르러서야 承德公主(예종1녀)의 장남인 信安伯 珹과 연령대가 일치하여 사촌혼이 성사되었다. 자연히 인종 1녀와 2녀의 배우자는 사촌이 아닌 한 세대 위의 종남 가운데에서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Ⅲ-2>에서 인종·의종의 1녀와 2녀 모두 윗세대 남성을 배우자로 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표 Ⅲ-3> 承慶宮主·恭化侯瑛 딸의 혼인 對象群 추정

항목명	부	모	출생연도 및 추정근거		배우자
邵城伯 珙	司空 瑜 (숙종손자)	通義侯의 딸 (숙종손녀)	1130년대 중후반 ~1141년 이전추정	1141년 5월 司空 瑜 사망	永和宮主 (인종4녀, 1141~1208)
咸寧伯 璞	漢南伯杞 (숙종손자)	承德公主 (예종왕녀)	1130년대 중후반 ~1140년 대후반 추정	承德公主가 인종의 동모제이므로 1110년대 출생으로 추정되며, 咸寧伯 璞은 2남임	安貞宮主 (의종2녀)
延昌公 玶					敬德宮主 (의종1녀)
神宗 (←平涼公)	仁宗	恭睿太后 任氏	1144년	-	宣靖太后 金氏 (江陵侯 女, 의종 처제)
孝靈 太子 祈	毅宗	莊敬王后 金氏	1149년	-	태자비 (德寧宮主 女, 인종 孫)
康宗 (사도·사공 → 明宗太子)	明宗 (←翼陽侯)	光靖太后 金氏	1152년	-	元德太后 柳氏 (昌樂宮主 女, 인종 孫)

365) 인종의 季子 신종은 1144년생, 季女 영화궁주는 1141년생으로 각각 인종 장남인 의종과 17세, 14세의 나이차가 났다. 이는 한 세대 차이로 여겨도 무방할 수치이다. 실제 신종은 조카인 효령태자보다 5세 연상에 불과하였다.

<표 Ⅲ-3>에 따르면, 인접 세대를 통틀어 공화후 영의 딸과 혼인할 만한 종남들은 모두 국왕의 사위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諸王 범주에서 王壻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자 사도·사공 다음 세대인 소성백 공까지 인종의 마지막 사위로 간택된 것을 볼 수 있다. 공화후 영의 딸이 생장하던 시기 인종과 의종이 각각 4명과 3명의 왕녀를 남겨 고려 왕실에 유례없이 많은 왕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諸王과 그 자제들에게는 王壻로서 국왕의 직계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려 있었다. 종녀보다 왕녀의 혼인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국 공화후 영의 딸이 혼인을 기대할 수 있는 상대는 국왕의 直子들 뿐이었다. 인종의 막내 왕자 평량공 민(신종), 의종 왕자 孝靈太子 祈, 인종 손자 康宗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상대였다고 볼 수 있다.

공화후 영의 딸이 끝내 혼인하지 못한 것은 세 왕자·왕손의 妃를 간택하는 경쟁에서 그녀가 밀려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평량공 민은 손위의 세 형인 의종, 大寧侯 暻, 翼陽侯 晧(명종)와 함께 강릉후 온의 사위가 되었다. 공화후 영의 딸과 사촌 관계인 효령태자 기, 강종은 또 다른 사촌자매들을 배우자로 맞았다. 효령태자 기는 인종 2녀 德寧宮主의 딸과, 강종은 인종 3녀 창락궁주의 딸과 혼인하였다. 특히 여러 정황을 보건대 공화후 영의 딸은 출생과 동시에 유력한 효령태자비 후보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의종은 비슷한 시기 출생한 인종의 두 외손녀, 즉 승경궁주의 딸과 덕녕궁주의 딸을 물망에 올려 태자비를 선정하였을 것이고, 그의 최종 선택은 덕녕궁주와의 각별한 우애에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전에 따르면 자태가 곱고 화술이 뛰어났던 덕녕궁주는 유달리 의종의 총애를 받아 자주 왕궁을 드나들었다고 전해진다.[366] 반면 [C-6]에 기록되었듯 승경궁주는 어린 자녀들을 남긴 채 일찍 사망하여 자녀들의 혼인에 영향을 미치지

366)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인종 德寧宮主, "天姿艶麗, 擧止閒雅, 又善談笑. 毅宗, 每於花朝月夕, 召入內, 日夜酣歌, 醜聲聞外. 明宗二十二年卒."

못하였다.[367]

공화후 영의 딸을 통하여, '종실' 가운데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종녀가 타의에 의하여 未婚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고려시대 묘지명을 활용하여 지배층의 혼인·출산 등에 관한 인구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서 김용선은 현전하는 묘지명들을 통틀어 未婚이었던 귀족 남성은 한 명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여성은 단 2건의 未婚 사례가 확인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종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368] 두 여성이 바로 [C-2] 왕재의 딸과 [C-6] 공화후 영의 딸이다. 김용선의 연구가 보여주듯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된 최상층 여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未婚으로 사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현재로서 이러한 사례가 왕실 여성에게만 나타난다면, 이는 역사적 검토를 요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덕종 이후 국왕들은 한 명의 后妃만 왕실에서 맞이하였다. 왕실 출신 后妃가 사망해야만 또 다른 왕실 여성이 납비될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왕실 출신 后妃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는 고려초 경종에게 5명의 종녀 출신 后妃가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즉, 국왕과 종녀의 重婚이 부정됨에 따라 혼인적령기 왕실 여성의 수가 남성을 상회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던 것이다.[369]

'종실내혼'이 왕실 여성에 한하여 강력한 혼인규범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종실'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종녀는 공화후 영의 딸, 왕

---

367) 1185년(명종 15) 공화후 영의 딸이 사망하자 국왕과 태자(강종) 모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녀의 美麗함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영녀왕씨묘지명' 참조). 훌륭한 자질을 타고 났음에도, 태자비에 책봉된 사촌자매들과 달리 諸王의 妃가 되지 못한 비극적 삶에 대한 애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68) 김용선, 1998 앞의 논문, 52쪽.

369) 현종 자녀세대부터 국왕과 왕녀·종녀의 重婚이 부정된 이유는 后妃 및 왕위계승 후보자들의 계서 문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는 后妃·태자보다는 왕실의 경계에 분포한 인물들에 집중하여 왕실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국왕의 중혼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后妃 관련 후속연구에서 시도할 예정이다.

재의 딸과 같이 혼인을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370] 특히 公·侯·伯의 딸들은 그 배우자를 諸王인 사도·사공으로 만드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外婚 금지 규범의 엄격한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들의 혼인이 통제되지 않았다면 꾸준히 他姓의 남성들이 왕실로 편입되었을 것이며, 여성을 통해 계승되는 王統이 전면 부정되지 않는 한 他姓의 사위와 그 소생을 대우하는 문제가 왕실의 존재기반을 흔들었을 것이다. 異姓諸王의 존재 그 자체가 고려 왕실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는가를 三장 2절에서 후술할 것이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였던 왕재의 딸까지 '종실내혼'을 강요당한 이유는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종실'의 본질과 연관시켜 고찰해보아야 한다. '종실내혼'이라는 혼인규범은 왕실 핵심부인 諸王과 주변부를 구속하는 힘에 편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사도·사공 다음 세대의 여성은 배우자에게 諸王 지위를 승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外婚 금지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未婚 상태에서 그들은 諸王 가문의 구성원인 '宗室處女'지만, 관료가문과 통혼하는 순간 간접적으로 사환권을 회복하여 종실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왕실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들이 국왕의 利害에 영향을 미칠 때 불거졌다. 왕재의 딸은 외조부 대원공 효에게 자녀와 같은 존재였기에 사도·사공세대와 동등한 상속분을 물려받았다.

왕영의 딸, 왕재의 딸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고려가 왕실 여성의 혼인을 통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왕실 규모의 통제라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적정 규모의 왕실은 왕조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370) 왕재의 딸(1141~1183)과 공화후 영의 딸(1150~1185)은 혼인 對象群이 일부 겹친다. <표 Ⅲ-3>의 소성백 공, 함녕백 박은 1130년대 중후반 출생일 시 왕재의 딸과도 혼인적령기가 일치한다. 실제 소성백 공은 왕재의 딸과 동년이었던 인종 4녀 영화궁주의 배우자가 되었다. 즉, 인종~의종대를 거치며 혼인적령기의 諸王層이 빈약하였던 반면 국왕의 직계자녀는 유례없이 많이 생산되었던 상황이 반복되며 왕재의 딸, 공화후 영의 딸과 같은 사례가 연속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되지만, 그 규모가 비대해질 경우 치열한 왕위계승 경쟁, 왕실 자원의 고갈 등으로 체제의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고려와 같이 왕자·왕녀의 가문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만약 왕실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왕을 정점에 둔 왕실은 빠른 속도로 외연을 확장하며 구심력을 잃고 금세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에 고려는 왕실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남성에 대해서는 왕실의 '잉여자제'를 출가시켜 과도하게 많은 자손이 생산되는 것을 예방하는[371] 한편 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종실' 인물로 제한하여 諸王에 신규 편입되는 인물을 최소화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왕위계승권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는 조처였다.

두 번째로 父姓을 우선하는 중국식 姓 문화와 사회 저변에 자리한 친속 문화의 괴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72] 이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화풍과 토풍의 상충 문제로 연결된다. 고려시대의 姓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父姓을 좇는 것이 원칙이었고, 姓은 개인의 혈통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식으로 인식되었다.[373] 더욱이 국가 정체성에 관한 유

---

371) 이정훈, 2009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신과 활동> ≪역사와 현실≫ 71, 102~104쪽; 남동신, 2011 <고려중기 왕실과 화엄종: 왕실 출신 화엄종 5국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9, 42~43 및 46~56쪽. 남동신은 차기 국왕위를 둘러싼 경쟁을 축소하는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탄탄한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활용하여 '잉여자제'를 봉양하려는 경제적 목적에서 고려중기 왕자들의 출가가 강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는 고려중기 왕실이 귀족 출신 승려들로 구성된 교단을 출가한 왕자들로 하여금 통할케 함으로써 교단을 세속권력의 영향권에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372) 노명호, 1988 앞의 논문, 177~197쪽. 노명호는 羅末麗初의 중국식 성씨제도 수용이 친족제도 수용과 별개의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성씨제도는 "개연적인 출신계보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으로서만 수용된 것"이며, 고려의 양측적 친속 조직에서 부계적 계보가 非父系的 계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姓貫을 통하여 출신혈통 나아가 출신계급을 가장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노명호는 중국식 성씨제도의 수용이 확대·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73) 姓의 계승이 職役 계승과 연동되었고 직역의 주체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도입된 父姓 우선의 원칙이 고려에서도 큰 무리 없이 수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전정연립 규정에서 확인되듯 고려는 女孫(外孫)에게도 직역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父姓 우선의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었다(노명호, 1989 <고려시대의 토지상속> ≪중앙사론≫ 6). 대표적으로 林衍의 아버지가 鎭州

교 담론에서 '易姓'이 왕조 전복을 의미하였던 만큼 왕실에서 姓이 갖는 의미는 컸다. 그런데 고려는 前朝의 토풍을 이어받아 남성과 여성의 혈통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였다. 여성을 매개로 파생되는 가족들 또한 王統을 공유하는 존재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봉작 수여 범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고려 왕실은 종남의 가족과 종녀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았다.

중국 부계혈통사회의 산물인 姓은 고려에서도 부계 우선으로 계승되었으나 王統은 총계적으로 계승되었던 모순적 상황,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려는 왕실 여성들에게 엄격한 內婚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고려 當代에 사도·사공 이상의 諸王은 '관념적으로' 왕위계승후보자들이었고, 諸王 범주에 포함된 이상 왕자의 아들인지 왕녀의 아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무신집권기 최충수는 명종을 폐위하고 의종의 외손인 수사공 縝을 즉위시키려 하였는데,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문제로 최충헌과 최충수가 대립할 때 이들의 조카인 朴晉材는 "왕진와 왕민(신종) 모두 왕이 될 수 있지만[皆可爲君]" 金에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왕제 민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봉합하였다.[374]

세 번째로 왕녀·종녀를 '종실내혼'에 구속시킴으로써 고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남녀균분상속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왕실의 자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아래 사료를 통하여 왕실의 경제적 특권을 공식적으로 상속하는 과정에 왕실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었는지 구명해 보고자 한다.

호장의 사위가 되면서 비로소 鎭州를 본관으로 삼고 토성 林氏를 갖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채웅석, 2000 앞의 책, 132~133쪽 및 노명호, 1988 앞의 논문, 182~183쪽).

374)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忠粹與晉材往謀於忠獻曰, '今上在位二十八載, 老而倦勤. 諸小君常在上側, 竊弄恩威, 以亂國政 (중략) 司空縝博通經史, 聰明有度量, 若立爲王, 國可中興矣.' 縝婢爲忠粹所嬖故, 欲立之. 忠獻曰, '平凉公旼上之母弟, 宏略大度, 有帝王之量, 且其子淵, 聰明好學, 宜爲儲副.' 議未決, 晉材曰, '縝與旼, 皆可爲君, 然金不知有縝, 若立縝, 彼必以爲簒, 不如立旼. 如毅宗故事, 以弟及告之, 則無患矣.' 議乃定."

[C-7] 임진년(1112)에 이르러 母后께서 승하하시니 이듬해 계사년(1113) 上께서 母后께서 평소 갖고 계셨던 明福宮司의 전토와 노비를 아울러 모두 하나로 잠가 봉하여 公(대원공 효)에게 사여하셨다.[375]

[C-7]은 숙종 왕자 대원공 효의 묘지명을 발췌한 것이다. 묘지명에 따르면 평소 숙종과 명의태후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대원공 효에게 동모형 예종은 明福宮司의 전토와 노비 등 모후가 관리하던 왕실 자산을 상속하였다. 명복궁은 숙종이 계림공 시절 기거하던 潛邸의 궁원명이었고,[376] 계림공비 명의태후는 숙종 즉위 전까지 明福宮主라는 공식 지위를 갖고 있었다. 즉, 명복궁과 관련된 경제적 특권은 본래 숙종이 문종 왕자로서 상속받은 왕실의 자산이었으며 명의태후는 숙종을 매개로 이러한 공적 특권에 관여할 수 있었다. 숙종 즉위 후 명의태후는 延德宮主 王妃에 책봉되었다가 훗날 王太后로서 坤成殿과 崇明府를 거느렸다고 전해진다.[377] 그러나 새로운 궁원이 配屬된 이후에도 명의태후는 명복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다. 모후의 왕태후 책봉을 기념하여 예종은 곤성전·숭명부·연덕궁·명복궁의 관원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378] 이는 해당 宮司와 명의태후의 각별한 관계를 의식한 후속 조처였다.

[C-7]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숙종의 상속분인 명복궁사의 전토·노비 등이 명의태후를 거쳐 대원공 효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원공 효가 공식적으로 상속받은 경제적 특권들은 앞서 살펴본 '王梓女王氏墓誌銘'에 의하면 왕재의 딸에게 최소 절반 이상 상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공 효는 외손녀를 자식과 같은 '秩'로 간

375) 「贈諡莊平公廟誌銘」, "越壬辰歲, 母后升遐, 翌年癸巳歲, 上以母后平昔所持明福宮司田土奴婢幷鑰, 一封賜之"(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효묘지명' 참조).

376) ≪고려사≫ 권127, 열전40 叛逆 李資儀, "時肅宗爲雞林公, 在明福宮, 密知之."

377)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숙종 明懿太后柳氏.

378)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 2월 辛卯, "坤成殿及崇明府延德明福宮員, 加職事."

주하여 그녀에게 '傳家'하였다.[379] 앞서 언급하였듯 '傳家'는 家産의 상속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문·가업의 상속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다. '傳家'의 실체가 후자에 가깝다 할지라도 가문의 계승에는 막대한 유산 상속이 수반되기 때문에 왕재의 딸과 왕실 상속의 문제를 연관시켜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관련하여 이정란은 고려 여성의 특징적 지위였던 宮主에 경제적 혜택이 수반되었으며, 경제적 혜택의 일종인 宮院田은 궁원에서, 식읍은 王室府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왕실 재정기구가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380] [C-2]와 [C-7]은 宮司를 매개로 한 경제적 혜택이 실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일종의 '자산'으로서 남녀 구별 없이 상속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왕실에서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은 물론 宮司의 전토·노비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왕실 일원들에게 상속되었고, 상속 과정에서 왕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즉, 왕실 여성은 왕위계승권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상속에서도 중요한 변수였다. 만약 왕녀·종녀를 관료가문과 통혼시켰다면 고려 왕실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왕실 외부로 유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唐은 남녀균분상속을 하는 사회였으나 고려와 같은 內婚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를 통한 황실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식읍을 예로 들면, 당에서 命婦의 여성 가운데 오직 공주만이 황제의 혈육이라는 이유로 食邑(課戶)을 받을 수 있었는데,[381] 일반적으로 皇親으로서 王公에 봉작된 자는 식읍을 자

379) 「高麗國[宗][室]處女王氏墓誌銘」, "王氏女者, 定懿公梓之處子也, 顯宗第四子靖簡王之五世孫也, 肅宗第三子大原公俙之外孫也. (중략) 故大原公尤愛之, 如子秩, 厥後傳家. 世無與偶, 處空自若."

380) 이정란, 1996 <고려 후비의 칭호에 관한 고찰> ≪전농사론≫ 2, 164~165쪽; 2010 <고려·조선전기 王室府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방식의 변화> ≪한국사학보≫ 40, 325~327쪽.

381) 최진열, 2008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邑號와 본적지·郡望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3, 197~198쪽. 唐代에는 황후·제왕·공주의 식읍에 모두 課戶가 있었다고 한다.

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나 공주의 식읍은 '終身的' 이었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았다고 한다.[382]

고려의 왕녀·종녀가 왕실에서 상속받은 자산들은 終身保有라는 제약을 걸지 않더라도 '종실내혼'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왕실 내에서만 보유되었다. 대표적으로 예종이 선종 왕녀 경화왕후와 혼인함으로써 선종의 자산이었던 延和宮을 흡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숙종이 문종으로부터 명복궁을 상속받았듯 선종은 연화궁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종이 國原公 시절 貞信賢妃와 사별하고 思肅太后와 재혼한 뒤 사숙태후는 延和宮妃로 불렸으며[383] 선종 즉위 후에도 연화궁은 사숙태후의 궁원명으로 사용되었다.[384] 정확한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연화궁은 정신현비 소생 경화왕후의 궁원명이 된다.[385] 헌종 즉위 후 사숙태후가 왕태후로서 中和殿·永寧府를 배속받자, 선종의 상속분이었던 연화궁은 그의 장녀 경화왕후에게 상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2]에서 왕재의 딸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였음에도 혼인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대원공 효를 통하여 왕실 자산을 상속받은 왕재의 딸은 '종실' 가운데에서 배우자를 찾아야만 국왕으로부터 혼인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명복궁사의 전토·노비와 같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경제적 특권이 '종실' 외부 인물에게 상속되는 것을 고려 왕실에서 용납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왕재의 딸이 '종실내혼'을 하지 못한다면 未婚으로 남겨두는 것이 고려 왕실의 이해에 부합하였다. 고려에서는 자식을 두지 못하고 사망한 '종실'의

---

382) 仁井田陞은 <唐代의 封爵과 食封制>에서 식읍의 상속이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그가 인용한 加藤繁의 연구에 따르면 식읍은 황친이 왕공이 경우에만 세습되었고 신하로서 봉작된 자들에게는 一代에 한정되었다(仁井田陞 著, 서용석·채지혜 역, 2010 앞의 논문, 305쪽 주)4 참조).

383)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선종 思肅太后李氏, "仁州人, 工部尙書碩之女, 號延和宮妃. 初宣宗爲國原公, 納之."

384)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원년 6월 乙未, "王子生於延和宮."

385)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예종 敬和王后李氏, "宣宗之女, 長於外家, 封延和公主, 睿宗納爲妃."

유산을 국왕이 환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 재정에 관한 안병우의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宮主와 院主가 해당 궁원을 차지하거나 궁원에 소속된 경제기반에 대하여 권리를 가졌으며, 궁원이 폐쇄될 경우 그 재정은 王府로 회수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高麗圖經≫의 別宮條를 근거로 한 것이다.[386] [C-7]에서 명의태후의 궁원에 소속된 경제 기반이 대원공 효에게 상속된 것을 생각한다면, 궁원의 존폐는 後嗣 확보 여부에 달려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련하여 1185년(충렬왕 11) 희종 손자 廣平公 諿가 사망한 뒤 충렬왕이 "그의 재물을 內庫로 몰입"하였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387] 종실전에는 그 연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광평공 혜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왕실 운영체제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충렬왕의 행위가 해석된다. 광평공 혜는 희종의 친손이었고, 원종 왕녀 咸寧宮主와 혼인하여 충렬왕의 異母妹夫가 된 인물이었다. 수차례 몽골에 파견되었던 전력을 볼 때 그는 近親으로서 충렬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 당시까지 광평공 혜는 함녕궁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에 충렬왕은 광평공 혜와 함녕궁주가 희종·원종 등 역대 국왕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內庫로 회수하여 왕실 자산의 유출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려 왕실의 '종실내혼'은 왕실과 관료집단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왕실의 배타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유효한 방식이었다. 인도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Iwarati Karve에 따르면, 북인도의 지배 카스트는 피지배세력 또는 여타 카스트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결혼을 추진할 때 후자로부터 신부를 맞이하면서도 자기 카스트의 여성은 절대 피지배세력이나

386) 안병우, 2003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출판부(초판 3쇄), 201~210쪽.

387) ≪고려사≫ 권91, 열전4 종실 희종 慶原公祚 附 王諿, "初名恂, 封廣平公, 尙元宗女咸寧宮主. 忠烈五年, 偕元使塔納·哈伯那, 監督東征戰艦于慶尙道. 十一年卒, 王沒入財物于內."

여타 카스트에 신부로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388] 고려 왕실 또한 인도의 지배 카스트와 동일하게 아내를 취하는 자(wife-taker)의 입장을 취할 뿐 아내를 주는 자(wife-giver)의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종실내혼'은 왕실 남성에게 선호의 문제였던 반면 여성에게는 삶을 통제하는 강력한 규범이었다. 즉, 고려 왕실은 국왕과 諸王들의 后妃를 관료가문에서 맞이함으로써 관료집단과의 연대를 강화하였으나, 왕실 여성의 外婚은 엄격히 금지하여 계층 간 명백한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고려 왕실의 內婚 단위는 신라의 骨이나 북인도의 카스트와 비교할 때 지극히 협소하다. 북인도가 남인도와 달리 여성의 혈통을 고려하는 총계 사회였기에 이곳의 지배 카스트는 아내를 주는 자(wife-giver)의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Sapinda로 알려진 북인도의 혈통규정은 부계 7대조와 모계 5대조 이하의 후손들을 동일 혈족으로 상정하여 고려 왕실보다 유연하다고 알려져 있다.[389]

고려에서 왕녀·종녀의 통혼권을 前代의 신라보다도 축소하여 관료가문의 최상층인 문벌조차 배제한 연유는 무엇일까. 그 연유는 문벌과 진골의 존재양상이 본질적으로 달랐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귀족제사회에서 朴·石·金으로 표상되는 진골은 폐쇄적인 족내혼을 통하여 6두품 이하 계층과 가문·혈통을 완벽하게 '구별짓기'하였다. 일탈적 交婚이 이루어질 경우 6두품 이하 출신의 배우자와 그 소생을 법제적으로 진골에서 배제하여 하위 지배계층이 절대 진골에 신규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가 신라에서는 성립되어 있었다.[390] 비록 先代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여 국왕의 계보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

388) 박정석, 1999 앞의 논문, 114쪽.
389) 박정석, 1999 앞의 논문, 114쪽; 박정석, 2010 앞의 책, 17~18쪽; 신인철, 1995 앞의 책, 46쪽
390) 남동신, 2002 <聖住寺 無染碑의 '得難'條에 대한 考察> ≪한국고대사연구≫ 28.

도 진골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혈통을 보존하며 배타적 신분층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신라 下代에는 神德王과 같이 現王과 인척관계만 맺고 있었던 진골 남성들도 王壻가 되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91]

반면 고려에서는 왕실을 제외한 상위 지배계층이 배타적으로 혈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가 성립되지 않았다. 과거 문벌귀족으로 명명되었던 가문들은 신라의 진골과 같이 그 신분이 법제적으로 규정되거나 보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392] 하위 계층과 완벽하게 혈통을 분리시킬 수 있는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고려중기 최고 문벌이었던 崔思諏 가문을 보면 사위들의 家格에서 큰 편차가 확인된다.[393] 최사추의 사위 가운데 이자겸은 대대로 后妃를 배출한 國戚 출신이었던 반면 文公美는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394] 출신에 따라 사위들의 黨與나 정치적 지향점 또한 달라져, 문공미는 韓安仁과 같이 문벌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들과 주로 어울렸다.[395] 고려에 계급내혼의 경향성은 있었으나 그것은 사회적 체계로서의 혼인규범은 아니었으며 계급내혼의 단위 또한 비교적 광범위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문벌 출신의 남성일지라도 그들의 혈통적 권위가 균질하다고 볼 수 없었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왕녀·종녀를 매

---

391)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신덕왕 원년 4월. 一장의 <그림 Ⅰ-3>에서 확인되듯 신덕왕은 孝恭王의 妻男이면서 異母妹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효공왕의 近親 자격으로 국왕에 추대될 수 있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덕왕의 계보를 朴氏 阿達羅王의 遠孫으로 표현하였다. 朴氏王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고대사학계에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본고는 '姓'으로 표상되는 父系가 개인의 계보 서술에서 수사(rhetoric)로 등장하였던 고려시대의 문화를 볼 때, 신덕왕은 여성을 매개로 대대로 奈勿王系의 왕실과 결연해 온 진골 가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392) 채웅석, 2021 앞의 논문, 46~55쪽.

393) ≪고려사≫ 권96, 열전9 諸臣 崔思諏.

394) ≪고려사≫ 권125, 열전38 姦臣 文公仁, "初名公美, 南平縣人, 父翼官至散騎常侍. 公仁雅麗柔曼, 侍中崔思諏以女妻之. 中第, 直史館. **家世單寒, 以連姻貴族, 恣爲豪奢**."

395) 노명호, 1987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 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한국사론≫ 17.

개로 문벌 남성들이 諸王에 편입된다면 諸王의 혈통적 권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종실내혼'은 왕실 여성의 배우자를 종실 출신으로 제한하여 왕실의 혈통과 특권을 보존하는 혼인규범이었다. 왕녀·종녀가 사촌 이내의 왕실 남성들과만 혼인하도록 제약한 고려초 內婚 규범이 왕실 봉작제 성립 이후에는 '종실내혼'으로 연결되었다. 고려가 왕실 여성의 혼인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의 규모를 통제하여 왕위계승권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였다. 둘째, 화풍과 토풍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었다. 중국 부계혈통사회의 산물인 姓 문화를 도입하여 문물제도 정비에 활용하고 대내외적으로 고려를 王氏의 왕조로 각인시켰음에도 고려는 토풍을 부정하지 않고 여성을 통한 王統의 계승을 인정할 수 있었다. 셋째, 왕녀·종녀를 종실내혼에 구속시킨 결과 사회적으로 합의된 남녀균분 상속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왕실의 자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넷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려 왕실은 아내를 취하는 자(wife-taker)의 입장만 취함으로써 왕실과 관료집단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그 배타적 우위를 공고히 하였다.

2. '종실내혼'과 왕실 편제의 推移

1) 가변적 近屬 관계에 따른 初封·進封 체계

왕실 봉작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사적 가족관계를 공적 관계로 전환하는 제도다. 초봉은 국왕으로부터 일정한 친속 거리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공적 영역에 최초 配屬하는 행위이며, 진봉·추증은 국왕과 '종실' 간 親·尊의 상대적 관계성을 공적 지위에 반영하는 행위이다.

국왕의 세대교체 이후 왕실의 웃어른이 된 세대(尊屬)를 진봉 대상으로 삼고, '종실내혼'으로 친속지위가 변화된 인물들에게도 '近屬'의 위상에 맞추어 새로운 작위를 부여하는 것이 봉작 수여권자였던 국왕의 역할이었다. 이에 三장 2절에서는 '종실'들의 초봉·진봉 시점과 계기 등을 분석하여 왕실 봉작제의 구체적 운영 양상을 파악하고 사적 가족이 공적 왕실로 편제되는 방식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반적으로 왕실 관련 연구에서 기본 사료가 되는 것은 ≪고려사≫ 종실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종실전을 기준으로 왕실 계보를 파악하고 봉작제의 기본 원칙을 귀납적으로 추론하였다. 하지만 종실전에 취사선택된 기록들은 단편적이며 일관성을 상실하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왕자와 王壻는 생몰연대와 초봉·진봉 시기, 배우자 등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지만 많은 종남은 작위와 이름이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전부다. 심지어 王壻의 작위 정보가 누락되거나 왕자·종남을 대표하는 입전항목명이 생전의 최종 작위가 아닌 경우도 확인된다. 예종 사위 한남백 기의 열전에서는 부인과 아들에 대한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 그가 한남백에 봉작된 사실은 예종 왕녀 승덕공주의 열전에 수록되었다. 왕자 왕수는 최종 작위가 부여공이었으나 종실전에 부여후로 입전되었고,[396] 종남 王璟은 1259년(원종 즉위) 淸化公으로 사망한 사실을 세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종실전에는 淸化侯에 봉작되었던 사실만 수록되었다.[397] 왕실 봉작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종실전에만 의거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세가·묘지명·문집 등 다양한 자료에 산재된 '종실' 관련 기록들을 수합하여 인물별 타임라인을 만들어보고 왕실 봉작이 각 삶의 궤적과 연동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

396)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4년 11월 辛未, "王弟扶餘公潗以罪, 流于京山府若木郡"; 권90, 열전3 종실 문종 扶餘侯潗.

397)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즉위년 윤11월 庚辰, "淸化公璟卒"; 권90, 열전3 종실 현종 平壤公基 附 王璟, "璟封淸化侯, 高宗四十六年卒, 子溫·楈·綧·珽."

<표 Ⅲ-4>는 초봉·진봉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종실'들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왕자는 국왕의 直子라는 이유로 20세를 전후하여 侯에 초봉되었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공으로 진봉되는 일관된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종남들의 봉작 시점을 정리하였다.

<표 Ⅲ-4> 고려 왕실의 初封·進封 시점

입전 항목명	부	모	친속 지위	작위	봉작 시점	비고(책봉계기 등)
樂浪侯瑛	平壤公基	미상	현종손자 문종사위	樂浪伯	1086~1093 (선종조)	■王壻간택:保寧宮主(문종2녀)와 혼인
				樂浪侯	1095 (숙종즉위)	■신왕즉위:문종 자녀들에 대한 대대적인 進封
承化伯禎	樂浪侯瑛	保寧宮主	문종손자 숙종사위	檢校尙書右僕射 → 檢校司空	睿宗朝	■문종손자
				承化伯	1110.2. (예종5)	■王壻간택:興壽公主(숙종2녀)와 혼인
廣平公源	朝鮮公燾	李頲 딸	문종손자 숙종사위	檢校司空 → 守司空	肅宗朝	■문종손자
				守司徒	1105.11. (예종즉위)	
				廣平伯	1111.3. (예종6)	■王壻간택:安壽公主(숙종3녀)와 혼인
				廣平侯	인종조	■신왕즉위, 통혼: 妹夫→姑母夫&王壻父, "賜太子妃詔書·禮物, 遂召廣平侯源, 司徒溫, 平章事任元敱, 曲宴于密殿."

				廣平公	1143.6. (인종21)	■納妃:동모제 司徒溫의 딸을 태자비(莊敬王后)로 납비, "以廣平侯源守太保廣平公, 司徒溫守太尉江陵侯."
江陵侯 溫			문종손자 의종妻父	檢校工部尙書	헌종~ 예종조	■문종손자
				江陵侯	1143.6. (인종21)	■納妃: 태자비 (莊敬王后) 납비
淮安伯 沂	辰韓 公愉	미상	문종손자 숙종사위	檢校尙書右僕射 → 檢校司空	예종조	■문종손자
				淮安伯	1109.12. (예종4)	■王壻간택:大寧宮主(숙종1녀)와 혼인
晉康伯 演			문종손자 숙종사위	檢校戶部尙書	예종조	■문종손자
				晉康伯	1120.12. (예종15)	■王壻간택:福寧宮主(숙종2녀)와 혼인
安平伯 璥* (平安伯)	廣平 公源	安壽 公主	숙종손자 예종사위	安平伯	인종조	■王壻간택:興慶公主(예종2녀)와 혼인
				安平公	1171년이전(의종조)	■신왕즉위: 妹夫→姑母夫
漢南伯 杞	承化 伯禎	興壽 公主	숙종손자 예종사위	漢南伯	인종조	■王壻간택:承德公主(예종1녀)와 혼인
恭化伯 瑛	江陵 侯溫	金沽 딸	문종증손 인종사위	殿中內給事	인종조	■司徒의 子
				恭化伯	의종조	■王壻간택:承慶宮主(인종1녀)와 혼인
				恭化侯	명종조	■신왕즉위, **통혼:** 妹弟→妹兄&王壻父, "瑛 (중략) 明宗卽位, 進爲侯"

江陽公 珹	大原 公俈	李氏	숙종손자 인종사위 효령태자妃父	檢校 司空	1141.8. (인종19)	■숙종손자
				江陽伯	의종조	■王壻간택:德寧宮主 (인종2녀)와 혼인
				江陽侯	1168.2. (의종22)	■納妃:효령태자비 납비
				江陽公	미상	신왕즉위에 따른 진봉 또는 추증 추정
信安侯 珹	漢南 伯杞	承德 公主	예종손자 인종사위 강종妻父	信安伯	1150년대 (의종조)	■王壻간택:昌樂宮主 (인종3녀)와 혼인
				信安侯	1175~1178 년(명종조)	■納妃:태자비(元德太 后) 납비
咸寧伯 璞			예종손자 의종사위	咸寧伯	1163.5. (의종17)	■王壻간택:安貞宮主 (의종2녀)와 혼인
延昌公 玶 (評)				司空	인종~ 의종조	■예종손자
				延昌伯 (추정)	1162 (의종16)	■王壻간택:敬德宮主 (의종1녀)와 혼인
				延昌公	1197.11. (신종즉위)	■의종사위, 從兄
邵城侯 珙	王瑜	通義 侯딸	숙종증손 인종사위	邵城伯	의종조	■王壻간택:永和宮主 (인종4녀)와 혼인
				邵城侯	1182.12. (명종12)	■통혼: <u>王壻父</u> “壽安宮主 (중략) 明宗三年, 冊爲公主, 九年, 適昌化伯祐.”; “以弟旼守太師·平涼公, 王珙守司徒邵城侯”
廣陵侯 沔	恭化 伯瑛	承慶 宮主	인종손자 의종사위	廣陵伯	의종~ 명종조	■王壻간택:和順宮主 (의종3녀)와 혼인
				廣陵侯	1197.11. (신종즉위)	■의종사위, 從弟
				廣陵公	1214~1218 (고종조)	■의종사위 「天安開天寺石塔記」(1214), “宗室<u>廣陵侯沔</u>, 軒裳中, 有出塵之想談如也.”; “廣陵公沔卒“

寧仁侯 稹	信安 侯珹	昌樂 宮主	인종손자 명종사위 희종妻父	寧仁伯	1179 (명종9)	■王壻간택:延禧宮主(명종1녀)와 혼인
				寧仁侯	신종조	■納妃:태자비(成平王后) 납비
昌化伯 祐	邵城 侯珙	永和 宮主	인종손자 명종사위	昌化伯	1179 (명종9)	■王壻간택:壽安宮主(명종2녀)와 혼인
				昌化侯	신종조	■納妃:폐태자비(熙宗妃) 납비 “祐, 尙明宗女壽安宮主, 封昌化侯”
壽春侯 沆	미상	미상	미상	守司徒	1197.11. (신종즉위)	※미상(인종 또는 의종의 손자 추정)
				壽春侯	**희종조 (추정)**	**※미상(비정상봉작)**
河源公 瑃	桂城 侯沅	미상	인종증손 고종외사촌 신종사위 강종사위	河源伯	1198~99 (신종조)	■王壻간택:孝懷公主(신종1녀)와 혼인, 壽寧宮主(강종1녀)와 재혼
				河源公	미상	신왕즉위에 따른 진봉 또는 추증 추정
始興伯 侹	寧仁 侯稹	延禧 宮主	명종손자 신종사위	始興伯	1201년 (신종4)	■王壻간택:敬寧宮主(신종2녀)와 혼인
				始興侯	고종조 (추정)	■신왕즉위, **통혼 <u>從弟→從兄, 처고모부&王壻父</u>**
				淮安公	고종조	■희종폐위, 몽골외교
丹陽伯 楈	淸化 公璟	미상	인종玄孫 희종사위	丹陽伯	1218~1219 (고종조)	■王壻간택
新安公 佺	河源 公瑃	孝懷 公主	신종손자 희종사위 원종妻父	新安伯	1220년대 (고종조)	■王壻간택:嘉順宮主(희종3녀)와 혼인
				新安公	1239년 이전 (고종조)	■몽골외교 ■納妃:태자비(慶昌宮主) 납비
永安公 僖	襄陽 公恕	미상	신종손자 희종사위	永安伯	1220년대 (고종조)	■王壻간택:貞禧宮主(희종4녀)와 혼인
				永安公	1257이전 (고종조)	■몽골외교

始安公 絪	襄陽 公恕	미상	신종손자 충렬왕妻父	司徒	1260.11.이전(원종조)	■신종손자, "以司徒絪女, 爲太子妃"
				始安侯	1260.11.이후(원종조)	■納妃:태자비(貞和宮主) 납비
				始安公	1275.2.이전(충렬왕조)	■신왕즉위 太子妃父→后妃父, "始安公絪卒"
新陽伯 珣(瑳)	始興 伯侹	敬寧 宮主	신종손자 고종사위	新陽伯	고종조	■王壻간택:壽興宮主(고종녀)와 혼인
				新陽公	1256년 이후(고종조)	■추증 "高宗四十三年卒,追封公"
廣平公 諿	慶原 公祚	미상	희종손자 원종사위	廣平伯 (추정)	원종조	■王壻간택:咸寧宮主(원종2녀)와 혼인
				廣平公	1265이전(원종6)	■몽골외교
齊安公 淑	新陽 伯珣 (瑳)	壽興 宮主	고종손자 원종사위 충렬왕사위	齊安伯	1260 (원종1)	■王壻간택:慶安宮主(원종1녀)와 혼인
				齊安侯	1272.1.이전(원종조)	■王壻간택 및 몽골외교 추정:靖寧院妃(충렬왕1녀)와 혼인
				齊安公	1274.9.이전(원종~충렬왕조)	
漢陽侯 儇	安慶 公淐	미상	고종손자 충렬왕사위	漢陽侯	1274.10.이전(원종~충렬왕조)	■王壻간택 및 몽골외교 추정: 明順院妃(충렬왕2녀)와 혼인
				漢陽公	1278.9.이전(충렬왕조)	
帶方公 澂	新陽 伯珣 (瑳)	壽興 宮主	고종손자	帶方侯	1273.이전(원종조)	■몽골외교
				帶方公	1274.10.이전(원종~충렬왕조)	※미상

* 安平伯은 종실전에 平安伯으로 입전되어 있으나, ≪同人之文四六≫ 권6, 「賜安平伯璥」에 '安平伯'으로, ≪고려사≫ 공주전과 當代 자료인 「高麗國廣平公廟誌」에 모두 '安平公'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安平伯으로 수정함.

<표 Ⅲ-4>에서는 '종실내혼' 기반의 왕실 편제 및 재생산이 이루어진 방식과 더불어 이러한 체제가 단절된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왕실 편제 및 재생산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王壻 간택을 계기로 국왕의 近屬에 편입된 종남들은 초봉뿐 아니라 진봉 과정에서도 차등대우를 받았다. 왕실 봉작제 정립 이후 최초로 종남 출신 王壻가 된 낙랑후 영을 보면, 문종 왕자이자 동시에 사위였던 부여후 수가 1094년(헌종 즉위) 이미 公으로 진봉된 상태였던 데[398] 반하여 그는 1095년(숙종 즉위) 비로소 侯로 진봉되었으며[399] 서열은 문종의 末子였던 진한후 유보다 뒤쳐졌다. 1043년(靖宗 9) 출생한 낙랑후 영은 문종의 장남 순종보다도 연상이었다. 그럼에도 낙랑후 영은 53세의 늦은 나이에 비로소 왕자들의 초봉이었던 侯에 올랐고 끝내 公이 되지 못한 채 1112년(예종 7)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한 후에야 公에 추증되었다.[400]

인종 사위 소성백 공의 봉작 과정에서도 차등대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성백 공은 인종 4녀 영화궁주의 배우자다. 영화궁주는 1141년(인종 19) 출생한 왕녀로, 1144년(인종 22) 태어난 신종보다도 손위였다. 하지만 1182년(명종 12) 왕제들에 대한 봉작이 진행될 때 30대의 신종은 평량공으로 진봉된 반면 40대에 들어선 왕공의 작위는 소성후에 불과하였고 이후 그가 公으로 진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401]

낙랑후 영과 소성백 공의 사례가 보여주듯, 王壻로서 公·侯·伯의 작위체계에 최초 진입한 종남들은 일반적으로 중년에 접어든 이후에야

398) ≪고려사≫ 권10, 세가10 헌종 즉위년 6월 己亥.
399)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즉위년 10월 庚辰.
400) '王梓女王氏墓誌銘'에서 "曾祖瑛封爲樂浪公"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401)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2년 12월 乙卯. 사공 유가 1141년(인종 19) 5월 사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소성백 공은 1141년 이전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19년 5월 壬子, "司空瑜卒").

侯에 진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공 도의 아들이자 숙종 사위였던 광평공 원(1084년 출생)은 1143년(인종21) 광평후의 지위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402] 인종 사위 강양공 감은 1168년(의종22)에,[403] 공화백 영(1125년 출생)과 신안후 성은 모두 명종 즉위 후인 1170년대에 侯로 진봉되었다.[404]

둘째, 王壻들이 일정한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侯로 진봉되었던 현상은 새로운 국왕과 親·尊의 상대적 관계성이 재설정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상기 표에서 王壻들이 伯에 초봉되고 20년가량 흐른 후 侯로 진봉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 간격은 국왕의 세대교체와 맞물린다. 광평공 원이 예종 재위기 국왕의 妹弟였다가 인종 즉위 후 국왕의 윗세대인 고모부가 되며 侯에 진봉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王壻의 자녀세대에서 국왕 직계자녀와의 통혼이 이루어지면 나이나 항렬, 王壻간 서열을 무시한 진봉이 가능하였다. 인종의 두 번째 사위 강양공 감의 경우 첫 번째 사위 공화백 영보다 서열이 뒤쳐졌으나 딸을 의종의 태자비로 납비하면서 그보다 먼저 侯가 되었다.

통설과 달리 王壻들의 진봉에 영향을 미치는 통혼은 왕후나 태자비의 납비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三장 1절에서는 고려의 공고한 '종실내혼' 체계를 입증하면서 '종실' 출신의 역대 王壻와 왕후·태자비들이 대체로 왕자·왕녀의 자녀들 가운데 간택되었으며 사도·사공세대에서 혼인적령기의 배우자를 물색하지 못할 시 그 자식세대까지 물망에 올랐음을 밝혔다. 고려에서는 王壻가 無子이거나 자식이 早卒하지 않은 이상 그 아들 가운데 1명 이상은 다시 王壻가 되어 "世附近屬"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王壻들이 왕녀와 혼인한 후 侯로 진봉되기까지 소

402)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1년 윤4월 丁未.
403)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2년 1월 己丑, "以江陽伯瑊之女爲太子妃"; 2월, "進江陽伯瑊爲侯."
404)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문종 朝鮮公燾 附 王瑛; 현종 平壤公基 附 王珹.

요된 시간은 그 아들, 곧 역대 국왕의 외손이 성년이 되는 시간과 일치한다. 일례로 공화백 영은 명종 재위기 아들 광릉후 면을 의종 왕녀 화순궁주와 통혼시켰으며[405] 명종에 의하여 侯에 진봉되었다. 인종의 네 번째 사위 소성백 공은 1179년(명종 9) 아들 왕우를 명종 왕녀 수안궁주와 혼인시키고 3년 뒤 소성후가 되었다.[406]

伯을 아들로 둔 '종실'에게 伯보다 상위의 작위를 수여하는 것은 관제와 禮制 본연의 차등적 질서를 생각할 때 당연한 처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모든 王壻들은 왕자 또는 왕녀·王壻의 아들이었고, 기존 王壻들은 성년이 된 아들을 왕녀와 통혼시키기 전 대체로 세대교체에 의하여 새로운 국왕의 尊屬으로서 侯에 진봉된 상태였으므로 종래에는 王壻 간택이 진봉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숙종 사위 광평공 원은 1111년(예종 6) 現王의 동모제 安壽宮主와 혼인하여 광평백이 되었다가 인종대 광평후의 지위까지 올라있었다. 당시 광평공 원은 인종의 三寸叔(고모부)이면서 인종의 동모제 興慶公主에게 아들 안평백 경을 장가보낸 王壻父이기도 하였다.[407] 선행연구에서 왕실 봉작제를 검토하며 국왕의 '종실' 출신 인척 가운데 王后父·太子妃父를 侯에 봉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귀납적 결론만 도출하고 王壻의 父에 대한 진봉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은 여기에 있다.

---

405) 공화백 영의 딸은 1150년(의종 4) 출생하였고, 묘지명 撰者인 광릉후 면은 왕영의 딸을 '兄姊'로 표현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1남 1녀 중 막내로 확인된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영녀왕씨묘지명' 참조). 즉, 광릉후 면의 生年은 1151년 이후다. 고려시대 태자를 제외한 일반 왕자들의 초혼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이었으므로 종남들의 초혼 연령대 또한 비슷하였을 것이다. 실제 生年 비정이 가능한 광평공 원, 공화백 영은 각각 28세와 20대 중반에 王壻에 간택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광릉후 면과 화순궁주의 통혼은 명종 재위기인 1170년대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6)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숙종 帶方公俌 附 王珙, "瑜子珙, 尙仁宗女永和宮主, 封邵城伯, 明宗十二年, 進守司徒邵城侯."; 권91, 열전4 공주 명종 壽安宮主, "明宗三年, 冊爲公主, 九年, 適昌化伯祐."

407) 고려시대 왕녀의 혼인은 대체로 父王代보다는 그 형제가 즉위한 이후 추진되었다. 문종 왕녀의 혼인은 선종이, 숙종 왕녀의 혼인은 예종이, 예종 왕녀의 혼인은 인종이 주선하는 식이었다.

통혼을 통한 近屬 편입이 태자뿐 아니라 일반 왕자나 왕녀를 매개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정한다면 무신집권기의 예외봉작 사례 중 상당수를 해명할 수 있다. <그림 Ⅲ-2>에서 봉작 계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인물로 인종 왕녀 창락궁주의 아들인 계성후 원과 손자 청화공 경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王壻에 간택되어 국왕의 직계가족에 편입된 적이 없음에도 公·侯에 봉작된 인물들이다. 종실전에 계성후·청화후에 봉작되었다는 서술만 남고 봉작 계기가 밝혀지지 않아 그 동안 예외봉작 사례로 취급되었다. 후술하겠지만, 무신정변 이후 몇 가지 변칙적 상황이 나타났으나 고려전기 확립된 왕실 봉작제의 定型 자체는 대체로 존중되었다. 계성후 원과 청화공 경이 생존하던 고종 즉위초까지 고려의 왕실 봉작 수여원칙은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 인물의 봉작 계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世附近屬"에 부합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계성후 원과 청화공 경은 王壻가 된 아들을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계성후 원의 아들은 하원공 춘이다. 그는 신종 장녀 孝懷公主와 통혼하였다가 일찍 사별하고 훗날 강종 왕녀 壽寧宮主와 재혼한 인물이다.[408] 하원공춘이 신종 사위로 간택되기 이전 그의 아버지 왕

408) 수령궁주는 1174년(명종 4) 강종이 태자 시절 무신집정 이의방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하여 낳은 왕녀다. 1197년(명종 27) 수령궁주가 혼인적령기에 이르렀을 시기 최충헌·최충수 형제가 명종과 태자(강종)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실권자 최충헌·최충수를 의식한 '종실'들이 폐태자의 딸이자 실각한 무신집정의 외손이던 수령궁주와의 혼인을 기피하여 그녀는 강종의 즉위 전까지 배우자를 찾지 못하였던 듯하다. ≪東國李相國集≫ 권30, 表·牋·狀 「公主下嫁嘉禮修製」 중 '公主謝下嫁表'에서는 "妾言, 伏蒙聖慈, 以今月日, 許令妾嬪于河源伯"이라는 구절이 확인된다. 같은 책 권30의 첫 번째 글에 "在翰林受勅述"로 작성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公主下嫁嘉禮修製」는 李奎報가 한림원에 재직하던 1207~1211년 혹은 1212년 6월 이후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원공 춘의 첫 번째 부인 효회공주는 1199년(신종2)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表文은 수령궁주와 관련된 문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혼인적령기를 놓치고 未婚 상태였던 수령궁주를 강종이 즉위한 후 故효회공주의 남편이자 前신종사위였던 하원공 춘의 재혼 상대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혼인에 康宗妃 元德太后 柳氏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원공 춘은 원덕태후 유씨의 조카이고, 원덕태후는 수령궁주의 繼母(義母)였다.

원은 고려 왕실 봉작제의 원칙하에 사도·사공 지위에 있었을 것이다. 즉, 왕춘은 사도·사공 자녀세대에서 王壻 간택이 이루어진 경우다.

신종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로 王壻 후보군을 넓힐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고려중기 왕실의 특수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종과 의종이 유례없이 많은 왕녀를 남겼던 데다가 예종 이후 왕과 왕제들의 연령차마저 벌어지면서 의종대부터 諸王 범주 내에서 혼인적령기의 종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소성백 공과 같이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서까지 인종 사위가 배출되었고, 그 여파로 일부 종녀는 '종실' 가운데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未婚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설상가상 무신정변 이후 인종의 세 왕자가 연달아 즉위함으로써 왕녀의 수는 더욱 증가한다. 의종·명종·신종의 왕녀를 합산하면 인종의 손자녀세대에서만 7명의 왕녀가 존재하였다.

신종은 인종비 恭睿太后 任氏가 마지막으로 생산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동모형 의종·명종과 17세·13세의 큰 나이차를 보였다. 더욱이 인종 2남 대령후 경의 사망 이후 의종의 정치적 견제가 생존 중인 두 왕제 명종(익양후)과 신종(평량후)에게 집중된 데다가 이어진 무신정변으로 왕실이 위축되어,[409] 신종은 혼인조차 정상적인 시기에 하지 못하였다. 1200년(신종 3) 宣靖太后를 宮主로 삼으며 작성한 冊文에서 신종은 "20년 동안 잠저[潛光]에서 함께하였다"고 언급하였다.[410] 이로부터 신종의 혼인이 1170년대 후반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종의 혼인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자녀생산 또한 늦어져 장남 희종과 장녀 효회공주는 각각 1181년(명종 11)과 1183년(명종 13) 출생하였다. 희종을 얻었을 당시 신종은 이미 30대 후반의 중년으로 접어든 상태였다.

---

409) ≪고려사절요≫ 권11, 毅宗莊孝大王 22년 3월, "幸西京. 時, 王弟翼陽平涼二侯頗得衆心, 王疑有變, 移御以避之."

410) ≪고려사≫ 권88, 열전1 后妃 신종 宣靖太后金氏, "(전략) 共潛光於二十年, 聿修婦道, 今踐祚於九五位, 盡贊皇猷."

신종 왕자·왕녀들은 사촌 관계의 인종 손자녀세대에서 혼인연령대가 일치하는 상대를 찾을 수 없었다. 신종은 인종의 증손자녀세대로 관심을 옮겨 후보를 물색하였고, 창락궁주의 손자인 왕춘이 첫 번째 사위로 간택되었다. 창락궁주는 자녀들을 명종의 태자 및 왕녀와 연달아 통혼시키며 왕실 정점의 국왕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411] 창락궁주의 가문이 높은 家格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신종은 그 가문과 중첩된 통혼망을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창락궁주의 자녀로는 왕춘의 아버지 왕원 외에도 명종 사위 영인후 진과 태자비 元德太后 柳氏가 있었다. <그림 Ⅲ-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영인후 진의 딸은 신종의 태자비로 간택된 成平王后 任氏이고, 아들은 신종 왕녀 敬寧宮主와 혼인한 始興伯 侹이다.[412] 즉, 신종은 창락궁주의 장남에게서 첫 번째 사위를, 차남에게서 태자비와 두 번째 사위를 얻었다. 인종 3남 명종과 3녀 창락궁주의 밀착된 관계가 동모제인 신종에게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11) 최충헌에 의하여 폐위된 명종은 5년간 昌樂宮에 유폐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27년 9월 癸亥, "忠獻兄弟逼王, 單騎出向成門, 幽于昌樂宮, 放太子璹于江華島, 迎平凉公旼, 立之, 以子淵爲太子"; 권64, 지18 예6 凶禮 國恤, "神宗五年十一月戊午 明宗薨于昌樂宮"). 창락궁주는 명종의 사돈이자 여동생이었고 명종의 太孫(高宗) 또한 창락궁주의 외손이었기 때문에 강화도로 유배된 太子(康宗)를 대신하여 창락궁주가 명종, 원덕태후·고종 모자를 부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12) 인종 3녀 창락궁주의 아들 영인후 진은 명종 1녀 연희궁주와, 인종 4녀 영화궁주의 아들 창화백 우는 명종 2녀 수안궁주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생산하였다. 본래 신종은 잠저 시절 사도·사공이었던 장남 희종을 창화백·수안궁주의 딸(영화궁주의 孫)과 혼인시켰다. 崔忠粹의 개입으로 창화백·수안궁주의 딸이 출궁되지 않았다면 신종의 자녀들은 이후 영화궁주 및 수안궁주의 후손들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창화백·수안궁주의 딸이 출궁되고 최충수 제거 후 영인후·연희궁주의 딸이 태자비(熙宗妃 成平王后 任氏)에 간택되면서 관계의 중심이 창락궁주·연희궁주 쪽으로 옮겨간 듯하다. 창화백·수안궁주에게 王泫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가 성년이 되어 수사공 지위에 올랐던 사실까지 확인되지만, 신종 2녀 敬寧宮主의 배우자로는 영인후·연희궁주 소생 始興伯(淮安公) 侹이 간택되었다. 영화궁주·수안궁주의 소생은 국왕 직계자녀들의 통혼권으로부터 멀어져 이후 작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祖宗苗裔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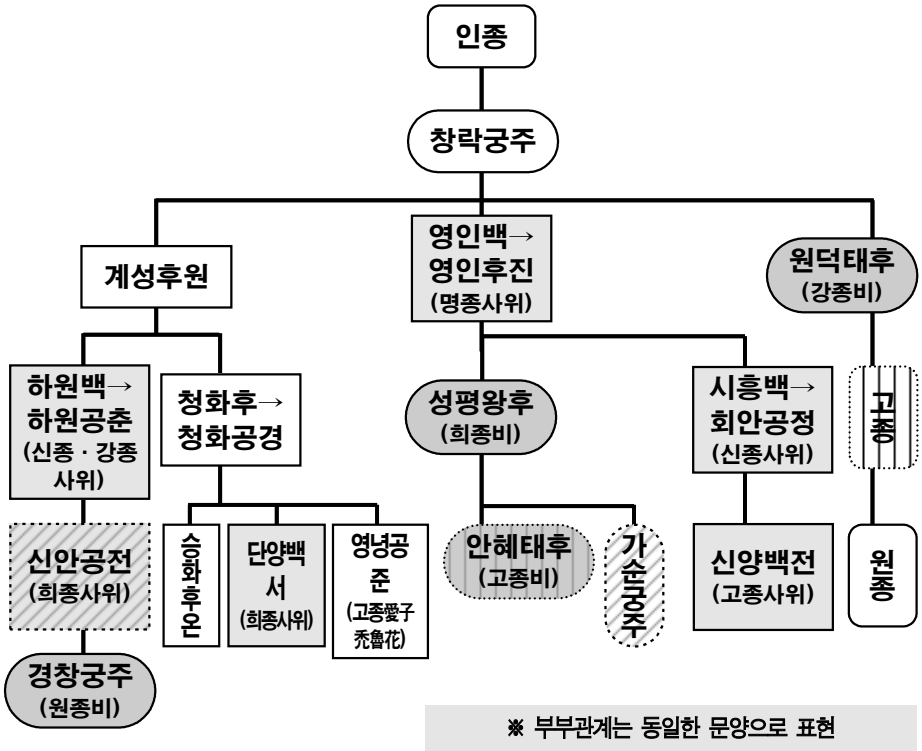

<그림 Ⅲ-4> 인종 왕녀 昌樂宮主의 가계도

왕춘을 사위로 간택하여 河源伯에 책봉한 신종은 그 아버지 왕원을 대우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원백에 앞서 사도·사공 자녀세대 출신의 王壻로 소성백 공이 있었으나, 왕공이 인종 사위로 간택되던 시점 그의 아버지 사공 유는 이미 사망한 후였기 때문에 봉작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413] 본인의 작위는 사도·사공에 그쳤으나 생전 자녀세대에서 伯爵을 배출한 인물은 왕원이 최초였

413)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19년 5월 壬子. 의종이 왕공을 인종 사위로 간택한 이후 사공 유의 사후 추증을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낙랑백 영이 사후 낙랑공으로 추증되었으나 ≪고려사≫ 종실전에 낙랑후에 책봉된 것까지만 기록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종실전은 추증보다는 생전의 봉작에 방점을 두었다.

다. 결국 신종은 아들을 국왕의 사위로 들인 前代의 王壻들이 생전 侯爵에 올랐던 前例를 참고하여 왕원을 伯보다 상위의 侯에 봉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母以子貴'의 원칙을 왕후·태자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王壻의 아버지에게까지 적용한 것이다.

청화공 경 또한 그 아버지 계성후 원과 같은 과정을 거쳐 侯에 봉작되었다가 公까지 진봉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락궁주의 손자였던 왕경은 총계 계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국왕이 증조부 인종이었기 때문에 법제적 왕실에서 제외되어야 하였으나 아버지 왕원이 계성후로, 형제 왕춘이 하원백으로 봉작됨에 따라 사도·사공으로서 諸王에 신규 편입되었다. 강릉후 온, 공화백 영 부자와 동일하게, 국왕의 직계가족이 된 왕후·태자비 또는 王壻를 매개로 그 기본가족이 대거 諸王에 신규 편입된 사례다. 이후 희종이 5명의 왕녀를 남기면서 왕경의 아들 王楷는 희종의 두 번째 사위로 간택되어 단양백에 봉작되었다. 희종의 장녀가 고종비 安惠太后이고[414] 4녀 가순궁주에 이르러서야 신종 사위 하원백 춘의 아들 新安公 佺(恮)과 사촌혼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때, 2녀 永昌公主 또한 역대 왕자·왕녀의 자녀세대에서 연령대가 맞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그 다음 세대까지 후보군을 넓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원백 춘의 조카였던 王楷가 간택되었고, 王楷가 단양백이 되자 사도·사공이었던 아버지 왕경은 청화후에 봉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왕자·왕녀의 자녀세대에서 국왕이 필요로 하는 태자비·왕자비 또는

414) 명종 태자 강종(1152년 출생)이 사촌 희종(1181년 출생)보다 29세 연상이었음에도 각자의 장남과 장녀를 통혼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강종비 원덕태후의 난임 때문이었다. 이의방의 딸을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다가 정치적 이유로 출궁시킨 강종은 사촌 원덕태후와 재혼하여 17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였다. 1185년(명종 15) 명종이 白馬山에 禖祭를 올려 태자(강종)의 후사를 기도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5년 5월 丙戌, "遣右散騎常侍宋端禖祭于白馬山, 爲太子祈嗣") 왕실은 太孫의 생산을 간절하게 염원하였지만 1192년(명종22)에 이르러서야 고종이 탄생하였다. 희종 장남 昌原公 祉가 1197년(명종27) 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녀 안혜태후 또한 비슷한 시기 출생하였을 것이므로 고종과 혼인할 수 있는 연령대였을 것이다.

사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역대 王壻의 조카들을 유력 후보로 간주하는 것이 고려 왕실의 경향이었다. '종실내혼'에 따라 王壻의 조카들은 前代 왕자·왕녀의 손자녀세대였고, 3세대를 하나의 가문으로 간주하였던 고려 當代人의 家 관념에서[415] 이들은 왕자·왕녀 가문의 일원이자 국왕과 親이 남아있는 존재들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의종비 장경왕후 김씨를 들 수 있다. 태자 의종의 배우자를 물색하던 인종은 동모제인 예종 왕녀들 또는 3촌인 숙종 왕자나 왕녀들의 가문에서 의종과 같은 연령대의 종녀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인종은 同母妹夫 안평백 경의 가문으로 후보군을 넓힌다. 안평백 경의 아버지는 숙종의 두 번째 사위 광평후 원이고 조부는 문종 왕자 조선공 도다. 인종은 조선공 도의 아들이자 광평후 원의 동모제였던 사도 온으로부터 태자비를 확보하였다. 이후 인종이 보인 행보를 살펴보면, 장경왕후는 광평후 원의 조카딸이자 일종의 義女로 간주되었던 듯하다. 태자비에게 책봉 조서를 내린 직후 인종은 광평후 원, 사도 온, 任元敱를 불러 '密殿'에서 曲宴을 베풀었다.[416] 연회 장소가 密殿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공적 연회가 아니라 소가족 단위의 사적 연회로 이해되는데, 참가자 명단에 태자의 妻父(사도 온)·외조부(임원애) 외에 妻三寸인 광평후 원이 포함되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종은 太子妃父 왕온을 강릉후에 봉작하면서 광평후 원을 公으로 진봉하기도 하였다.[417] 광평공 원의 아들이었던 안평백 경 또한 장경왕후 납비 후 侯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1171년(重光單閼; 명종 1) 작성된 '王源墓誌銘'에 따르면 광평공 원과 안평공

415) 박용운,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김용선, 2004 ≪고려금석문 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노명호, 2017 앞의 논문 등을 통하여 혈연·혼인관계를 토대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족 범주가 3세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416)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1년 윤4월 丁未, "賜太子妃詔書禮物, 遂召廣平侯源司徒溫平章事任元敱, 曲宴于密殿."

417)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1년 6월 壬子, "以廣平候源守太保廣平公, 司徒溫守太尉江陵侯."

경은 부자가 동세대에 公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한다.[418] 안평공 경은 예종 왕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생산하지는 못하였으나, 같은 가문의 종녀들을 의종비와 명종비로 연달아 납비하며 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계성후 원과 청화공 경은 예외봉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려전기 확립된 봉작제 및 '종실내혼'의 定型 내에서 봉작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청화후 경이 1259년(원종 즉위) 청화공으로 사망한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419] 청화후 경의 나이에 따른 진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의 가족관계를 검토하면 '청화공'의 등장은 다른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림 Ⅲ-4>에서는 청화공 경의 아들로 희종 사위 단양백 서외에 承化侯 溫, 永寧公 綧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후기 정치사에 굵직한 궤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승화후 온은 1270년(원종 11) 三別抄의 난 당시 叛軍의 왕으로 옹립되었다가 몽골군에 살해당하였고,[420] 영녕공 준은 1241년(고종 28) 몽골과의 강화를 위하여 왕자로 신분을 속인 채 몽골에 파견되었다.[421] 즉, '族子'이자 사도·사공에 불과하였던 왕준을 고종의 直子로 속이기 위하여 영녕공에 봉작한 뒤 그 연장선상에서 왕준의 가족에 대한 특별 예우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표 Ⅲ-4>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바로 고려 왕실 봉작제가 본격적으로 변형된 시점과 연관된 문제로 읽힌다.

대몽항쟁기를 거치며 고려 왕실 봉작제의 운영원리는 상당히 조정

---

418)「高麗國廣平公廟誌」, "公諱源, 姓王, 字未詳. 祖文宗, 考朝鮮國禳憲王, 公爲第二子也. 年甫弱冠, 肅宗封廣平伯. 仁廟封爲侯, 又封爲公 (중략) 尙肅宗第三女也, 是爲順貞公主, 先公而終. **子一人, 今安平公璥也, 公亦宗室賢者也. 父子一時並爵爲公, 擧世多之**"(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왕원묘지명' 참조).

419)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즉위년 윤11월 庚辰, "**淸化公**璟卒."

420)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현종 平壤公基 附 王溫.

421)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8년 4월, "以**族子永寧公綧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入蒙古, 爲禿魯花. 遣樞密院使崔璘, 將軍金寶鼎, 左司諫金謙伴行, 禿魯花華言質子也."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壻들은 왕녀와 혼인하고 20여년 흐른 뒤 侯에 올랐으며, 최고 작위인 公은 50대 중반 이후의 고령에 진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광평공 원은 1143년(인종 21) 60세의 나이에 公이 되었고, 안평백 경(1117년 출생)은 1171년(重光單閼; 명종 1) 작성된 '王源墓誌銘'을 통하여 55세에 안평공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인종에게 형제가 없는 관계로 안평백 경이 의종·명종의 입장에서 볼 때 생존 중인 유일한 三寸叔(고모부)이었기 때문에[422] 비교적 이른 시기 公에 진봉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공화후 영은 1186년(명종)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음에도 侯에 불과하였고,[423] 1220년(고종 7) 사망한 영인후 진은 고령에다가 고종의 三寸叔(고모부)이면서 처외조부였음에도 公이 되지 못하였다.[424] 따라서 고려중기까지의 왕실 계보에서는 생전 公에 진봉된 王壻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왕을 비롯한 고려 왕실 인물들의 평균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대다수 王壻는 伯 또는 侯로 사망하였다.

대몽항쟁이 본격화한 고종 치세 중반부터는 종남들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公爵까지 오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영녕공 준을 비롯하여 희종의 네 번째 사위 신안공 전, 다섯 번째 사위 永安公 僖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C-8] 新安公 佺과 少卿 宋彦琦 등을 몽골에 파견하였다(고종 26년 12월).[425]

---

422) 의종과 명종의 三寸叔(고모부)으로 承德公主의 배우자인 한남백 기도 있었으나, ≪고려사≫에 그의 행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작위 정보 또한 공주전에 언급된 한남백이 전부라 早卒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남백 기의 세 아들 모두 인종과 의종의 사위로 간택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장수하였다면 상당한 영예를 누렸을 것이며 흔적 또한 사료에 남았을 것이다.

423)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6년 10월 癸未, "恭化侯瑛卒."

424)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7년 10월 癸未, "寧仁侯稹卒."

425)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6년 12월.

[C-9] 몽골 사신 多可와 阿土 등 37인이 왔다 (중략) 多可 등이 이르자 왕은 新安公 佺을 보내어 출륙하여 이들을 맞이하도록 하고 몽골 사신들에게 梯浦館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였다(고종 39년 7월).[426]

[C-10] **宰樞 등이 王子를 파견하여 몽골과 강화할 것을 요청하자 <왕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崔滋·金寶鼎 등이 극력 요청하니 허락하였다.** 재추에서 다시 상주하여 **먼저 종친을 보내어 변화[變]를 살핀 연후 보내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永安公 僖를 보내어** 車羅大에게 은병 100과 酒果 등의 물품을 선물하였다(고종 44년 7월).[427]

일반적으로 王壻들은 최소한 現王의 同行列 이상이면서 고령이어야 公으로 진봉될 수 있었다. 1197년 신종 즉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종실' 진봉을 살펴보면 累代의 王壻들에 대한 국왕의 차등적 예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의 末子였던 신종은 즉위 직후 형제간 왕위교체의 결과로 누적된 王壻들을 동시 봉작하였는데, 당시 의종의 첫 번째 사위 王玶만 延昌公이 되고 세 번째 사위 왕면은 광릉후, 명종 사위 왕진과 왕우는 伯에 봉작되었다.[428] 왕평은 1162년(의종16) 의종 왕녀 敬德宮主의 배우자로 간택되어 신종 즉위년 이미 35년차 王壻로서 상당한 연배에 도달하였고, 출신 자체가 예종의 孫이자 신종의 從兄이었기 때문에 홀로 公에 진봉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왕면·왕진·왕우는 신종의 조카면서 조카사위였기 때문에 侯이하 작위에 머물렀다.

인용된 세 사료에 등장하는 신안공 전과 영안공 희는 희종의 첫 번째 사위였던 고종보다 서열과 연배 모두 한참 뒤쳐졌음에도 고종대 公爵에 진봉되었던 점에서 이색적이다. 두 사람은 몽골을 대상으로 하는 '종실' 외교에 동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몽항쟁기 몽골 측

426)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39년 7월 戊戌.
427)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4년 7월 癸酉.
428) ≪고려사≫ 권21, 세가21 신종 즉위년 11월 癸巳.

에서 유목사회의 풍습대로 상대국 수장과의 대면을 통한 복속을 요구하였지만[429] 고려 측에서는 고종과 태자뿐 아니라 고종의 直子마저 파견하기를 꺼렸다.[430] 몽골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고종은 同壻였던 희종 사위들을 여러 차례 몽골로 파견하였다. 강종의 獨子였던 고종이 희종 사위들을 왕제와 비등하게 생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 희종 사위들이 국왕의 近屬이면서 역대 국왕의 直子는 아니었기 때문에 왕실을 대표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차출되었을 가능성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몽골이라는 未知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王壻를 활용한 사례는 제1차 몽골침략기부터 나타났다. 희종 사위들이 외교 일선에 투입될 만큼 노련한 나이에 접어들기 전[431] 몽골 진영에 파견된 '종실'은 淮安公 侹이었다. 회안공 정은 신종의 두 번째 사위 시흥백과 동일 인물로서 <그림 Ⅲ-5>와 같이 現王 고종의 從兄(고종사촌)·처고모부·妻外叔 등 매우 중첩된 친속 지위를 갖고 있었다. 1231년(고종 18) 撒禮塔 군단의 침략이 수개월 간 이어지자 고종은 회안공 정을 보내 撒禮塔의 비위를 맞추고 이듬해 초 철군하는 몽골군의 전송까지 위임하였다.[432] ≪元史≫에서는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회안공 정을 '고려왕'의 '兄'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려측에서 몽골 진영에 회안공 정의 출

---

429)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7년 9월, "新安公佺, 與蒙古多可·坡下道·阿叱等十七人, 賫詔來, 復諭入朝";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51~52쪽.

430) ≪고려사≫ 권99, 열전12 諸臣 崔惟淸 附 崔璘, "蒙古大擧入侵, **宰樞請遣安慶公淐, 如蒙古, 乞班師. 王不允**, 璘獨前奏曰, '愛子之情, 無貴賤一也. 然不幸有死別者, **殿下何惜一子**. 今民之存者十二三. 蒙古不還, 則民失三農, 皆投於彼, 雖守一江華, 何以爲國.' **王不得已頷之**."

431) 희종의 장녀였던 안혜태후가 고종의 왕후로 간택된 시점이 1218년(고종5)이었으므로 나머지 희종 왕녀들의 혼인은 1220년대 중반부터 1230년대 초반 사이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몽골의 첫 번째 침입이 있었던 1231년(고종 18) 희종 사위들은 20~30대에 불과하여 重任을 맡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432)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8년 12월 丙辰; 고종 19년 1월 壬辰; 권90, 열전3 종실 현종 平壤公基 附 王侹, "尙神宗女敬寧宮主, 初封始興伯, 後進爲侯, 又進封淮安公. 高宗十八年, 遣侹如蒙古軍, 以土物遺其帥撒禮塔. 侹至見撒禮塔, 遙拜階下, 不答. **侹以酒饌餉之, 撒禮塔饋以湩酪, 侹隨所勸能飮啖, 撒禮塔大悅**."

신을 밝히며 사용한 용어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433] 고려 왕실의 '종실내혼'과 그로 인한 복수의 친속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撒禮塔은 王兄을 前王의 왕자로 이해하고 회안공 정의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국왕과 비견할 만큼 높은 위상을 갖는 왕실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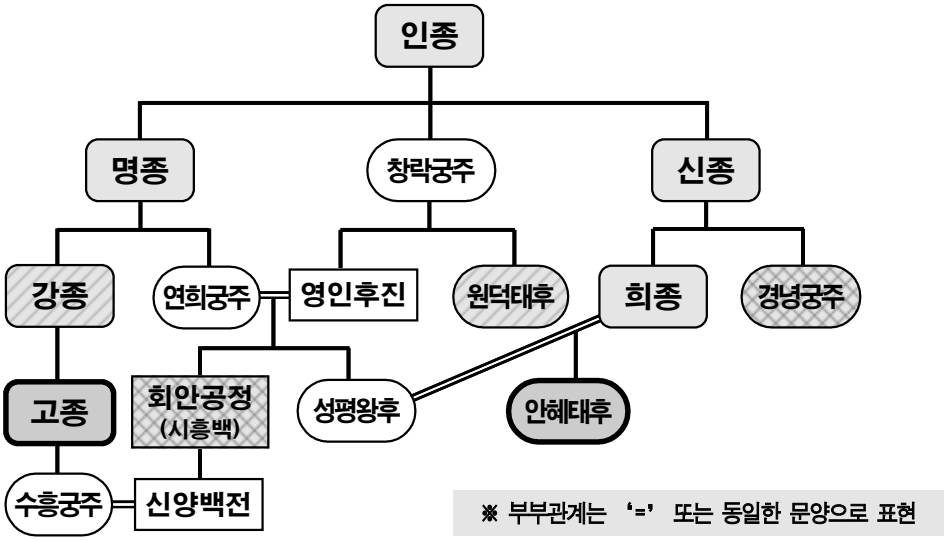

<그림 Ⅲ-5> 고종과 淮安公(始興伯) 侹의 친속관계망

몽골 외교와 관련된 공훈은 王壻들의 봉작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王壻로서 최초 몽골 진영에 파견된 회안공 정은 1180년대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前代의 王壻들과 달리 50세 이전의 비교적 이른 나

433) ≪元史≫ 卷149, 列傳36 王珣 子 榮祖, "己丑, 授北京等路征行萬戶, 換金虎符. 伐高麗, 圍其王京, 高麗王力屈, 遣其兄淮安公奉表納貢." 같은 기사에 영녕공 준 또한 고려왕의 '子'로 표현되어 있다. 1254년(고종41) 영녕공의 정체가 폭로된 뒤 ≪元史≫ 王綧 열전에서는 그의 출신을 고종의 조카[猶子]로 수정하였는데(≪元史≫ 卷166, 列傳53 王綧), 이 기사에 여전히 '子'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王榮祖 열전의 '兄'·'子'는 고려에서 몽골측에 전달한 친속용어로 보인다.

이에 신종 왕자 襄陽公과 동등한 公이 되었다.[434] 1231년(고종 18)의 撒禮塔 관련 기사에서 회안공이라는 작위가 최초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회안공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使命을 받든 공로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왕정에게 수여된 작위가 확실하다. 물론 그를 王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위상에 걸맞은 公爵을 주어야 했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희종 사위 영안백 희의 삶 또한 살펴보면, 1253년(고종 40)까지도 伯에 불과하였던 영안백 희는 1257년(고종 44) 영안공으로 두 단계 陞爵되어 있었다.[435] 1253년 7월과 11월 몽골군 진영으로 사행을 다녀온 공로를 인정하여 고종이 伯에서 公으로 전격 진봉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때의 사행은 고종 왕자 安慶公 淐을 몽골에 보내기 전 고려 왕실에 대한 몽골측 태도를 염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영안공 희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큰 편이었다.[436]

대몽항쟁기 동안 왕실 봉작제가 변형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영녕공 준을 추가할 수 있다. 1241년(고종 28) 고려에서는 '族子'에 불과한 왕준을 고종의 直子로 속여 몽골에 禿魯花로 보냈다.[437] 1223년(고종 10) 출생한 왕준은 1219년(고종 6) 출생한 태자(元宗)와 비슷한 연배였으며[438] 당시 왕실에 속한 諸王 가운데 고종

---

434) 회안공 정의 母 연희궁주는 1180년(명종 9) 영인후 진과 혼인하였다(≪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명종 延禧宮主, "光靖太后金氏所生, 明宗三年, 冊爲公主, 九年, 適寧仁伯稹").

435)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0년 11월 戊寅, "**遣永安伯僖**, 僕射金寶鼎, 致書于也窟·阿母侃·亐悅·王萬戶·洪福源等, 遺土物"; 고종 44년 7월, "宰樞等請遣王子, 講和於蒙古, 不聽 (중략) **乃遣永安公僖**, 贈車羅大銀甁一百·酒果等物."

436)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4년 7월, "宰樞等請遣王子 (중략) **宰樞更奏, 先遣宗親觀變, 然後可遣也**, 乃遣永安公僖, 贈車羅大銀甁一百·酒果等物."

437)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8년 4월, "以**族子永寧公綧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入蒙古, 爲禿魯花 (중략) 禿魯花華言質子也". 고려에서는 왕준을 몽골로 보내며 그를 고종의 '愛子'로 소개하였다. 이후 왕준의 신분이 밝혀지자 고려에서는 '愛子'가 '친자식처럼 키운 양자'를 뜻하는 고려 용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모면하였다(≪고려사≫ 권99, 열전12 諸臣 崔惟淸 附 崔璘).

438) ≪元史≫ 卷166, 列傳53 王綧에 따르면, 1283년(충렬왕9, 至元20) 사망 당시 王綧은 61세였다고 한다. ≪元史≫의 나이 계산법이 고려와 동일하였다면 그의 生年은 1223년(고종10)이 되고, 만 나이였다면 1222년(고종9)이 된다.

과의 친속거리가 가장 먼 인물이었다. 왕준의 동모형은 희종의 두 번째 사위 단양백 서다. 여타 희종 사위들이 수차례 몽골 사행을 다녀오며 다양한 흔적을 남긴 반면 단양백 서는 작호와 이름 외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아 早卒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종은 단양백 서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을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찾았다. '王子'를 사칭하고 몽골 황제를 기만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기에 왕실 상층부의 '종실'들은 禿魯花가 되길 꺼렸고, 결국 고종과 접점이 가장 적은 왕준이 최종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왕준은 禿魯花가 되는 대가로 19세의 어린 나이에 영녕공에 봉작되었다. 이때 왕준의 아버지 청화후 경을 公으로 진봉하는 조치 또한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 외교에 활용된 '종실'들을 중심으로 파격적 진봉이 이루어지면서 신안공 전, 영안공 희, 영녕공 준 다음 세대부터는 봉작 계기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청화공 경의 장남 승화후 온, 경녕궁주(신종 왕녀)의 장남 桂陽侯 挻, 영창공주(희종 왕녀)의 獨子 長陽公 溜, 덕창궁주(희종 왕녀)의 獨子 宜春侯 該, 수흥궁주(고종 왕녀)의 차남 대방공 징 등이 대표적이다. 몽골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국왕의 근친들이 禿魯花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왕자·왕녀의 자녀세대에서 公·侯·伯의 작위를 받는 인물들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사도·사공의 아들이 법제적 왕실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시 사도·사공이 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데, 公·侯·伯의 작위 남발로 사도·사공을 代受시킬 수 있는 종녀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439] 왕실의 외연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비대해지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처럼 대몽항쟁기 고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이 빠르게 무너질 수

439) 김기덕, 1998 앞의 책, 85쪽에서도 사도·사공의 아들이 公·侯·伯의 사위가 되어 사도·사공으로서 다시 諸王에 편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다만 김기덕은 이러한 현상이 고종대 집중된 현상에 대하여 별도 고찰하지 않았다.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인 무신집권기부터 왕실 외연의 침식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최충헌 가문 출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연을 개방하며 본래의 정체성을 지켜오던 고려 왕실은 몽골이라는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조우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무신집권기 왕실의 상황을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종실내혼'의 동요와 왕실 편제의 변형

1170년(의종 24)의 武臣政變은 현종 즉위 후 안정적 체제를 유지하던 고려 왕실에 심각한 균열을 가한 최초의 外因이었다는 측면에서 고려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 헌종과 숙종의 교체 또한 정변의 성격을 갖지만, 이는 '정당한' 왕위계승후보자였던[440] 계림공(숙종)이 선종·헌종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王國髦·邵台輔 등의 실력자들을 거느리고 주도적으로 전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신정변과 본질적으로 달랐다.[441] 헌종 즉위 후 識者들이 왕실은 미약해지는 반면 권력은 무장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탄식하였다는 기록을 참작할 때,[442] 숙종의 정변은 왕실을 보위하려는 '종실' 및 관료층의 광범한 지지가 있었

---

440) ≪고려사절요≫ 권6, 獻宗恭殤大王 원년 10월 己巳에 수록된 이제현의 사론에 따르면, 헌종 즉위 시 國人들은 선종에게 5명의 왕제가 있었음에도 '孺子'인 헌종을 嗣王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當代人에게 숙종을 비롯한 여러 문종 왕자들과 헌종이 갖는 왕위계승권의 위상은 동등하였으며, 동일한 왕위계승권 보유자들 가운데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衆論에 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1) ≪고려사≫ 권95, 열전8 諸臣 邵台輔; 권127, 열전40 叛逆 李資儀; 채웅석, 2021 앞의 책, 99~106쪽.

442) ≪고려사절요≫ 권6, 獻宗恭殤大王 원년 1월, "以王國髦權尙書兵部事. 王室微弱而權歸武將, 識者嘆之". 선종에게는 敬和王后와 遂安宅主 두 명의 왕녀가 있었다. 수안택주가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 혼인 상대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종~헌종대에 王壻로서 公·侯·伯의 작위체계로 신규 편입될 수 있는 종남은 한 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문종 왕자·왕녀의 손자녀세대부터 諸王 범주에서 대거 탈락됨을 의미한다. 헌종대 識者들이 왕실의 미약함을 걱정한 데에는 이러한 '규모의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이 즉위한 후 그의 네 왕녀를 매개로 종남들이 王壻가 되어 작위체계에 신규 편입된 결과 고려중기 왕실은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반대로 무신정변은 의종을 비롯한 왕실과 그 지지기반이 되는 문벌들에 대한 분노에서 촉발되었다. 정변 초 폭주 상태의 무신들은 왕실 정점에 있는 국왕과 그 직계가족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 의종과 효령태자 기를 각각 巨濟縣·珍島縣으로 방출한 무신들은 孺子에 불과한 太孫을 살해하였고,[443] 1173년(명종 3) 이의민은 의종 또한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하였다.[444] 이처럼 무신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종실'들은 개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권력의 정점에서 왕실을 통할하던 국왕의 모습을 무신정변 직후의 정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무신정권 초기 국왕은 '종실내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종실내혼'으로 납비된 종녀를 외압에 의하여 출궁시켰다. 명종은 강제적으로 이의방의 딸을 태자비로 삼았고, 신종은 즉위 직후 아들 희종의 오랜 배우자였던 창화백우의 딸을 최충수의 협박에 못 이겨 궁 밖으로 내보냈다.[445]

이의방·최충수와 같은 무신집정들이 명종과 신종의 태자비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은 先例들이 쌓이면서 무신정권과 왕실 사이에는 조금씩 타협점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의방은 太子妃父가 되어 무신집정들 간 권력균형을 깨뜨린 결과 鄭仲夫에게 제거되었으며,[446] 최충수는 태자비를 출궁시키고 자신의 딸을 납비하는 문제로 친형 최충헌과 갈등하다가 처단되었다. 당시 최충헌은 이의방이 실패한 원인을 무리한 태자비 납비에서 찾으며 출신이 미천한 자신의 가문 또한 태자비를 납비할 경우 세상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의방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47] 이

443) ≪고려사절요≫ 권11, 毅宗莊孝大王 24년 9월 乙卯.
444)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 李義旼.
445)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4년 3월 己丑; ≪고려사절요≫ 권13, 明宗光孝大王2 27년 10월. 최충수가 국왕을 압박하여 태자비를 출궁시키자 최충헌은 태자비가 혼인한 지 여러 해인데 이혼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최충수를 비난하였다.
446)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 李義方.

로부터 '失政'을 핑계로 국왕을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용납되었으나 종래의 왕실 전통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무신정권에 큰 부담이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최충헌은 최충수의 시도를 '역모[不軌]'로 정의하며 사직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들을 모았다. 여기서 사직을 보존한다는 명분에 최충수의 군사들마저 최충헌을 지지하며 최충수를 처단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신집정에게 '국가를 기울일[傾一國]' 만한 능력이 존재할지라도 왕조 사회에서 왕실의 이데올로기 권력은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최충헌·최충수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최충헌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제어하였기에 향후 보다 안정적인 집권 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충헌이 집권하는 동안 왕후·태자비는 모두 종녀 가운데에서 간택되었다. 최충수가 실각한 뒤 신종은 명종·창락궁주의 손녀였던 성평왕후를 태자비로 삼았고, 고종 또한 즉위 후 희종 왕녀 안혜태후를 왕후로 맞이하였다. 최충헌의 증손 세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의 가문에서 태자비가 배출된다. 원종이 태자 시절 맞이한 첫 번째 부인은 金若先의 딸 順敬太后다. 그녀는 무신집정 최우(최이)의 외손이었다. 순경태후가 産苦로 일찍 사망하자 원종과 경창궁주의 '종실내혼'이 성사되었던 것을 볼 때 당시 '종실'에는 태자비가 될 만한 종녀들이 충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우의 등장 이후 최씨무신정권의 위세가 절정에 이르면서 자연스럽게 고종의 선택권은 제약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식적인 妃父는 김약선이었기 때문에 최우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

447) ≪고려사절요≫ 권13, 明宗光孝大王2 27년 10월, "初, 太子娶昌化伯祐之女爲妃. 至是, 崔忠粹欲以其女配太子, 固請于王, 王不悅. 忠粹佯謂內人曰, '上已出太子妃否.' 內人以告, 王不得已出之, 妃嗚咽不自勝, 王后亦流涕, 宮中皆抆淚不已 (중략) 忠獻曉譬之曰, '**今我兄弟雖勢傾一國, 然系本寒微, 若以女配東宮, 得無譏乎**. 況夫婦之閒, 恩義有素, 太子配耦有年, 一朝離之, 於人情何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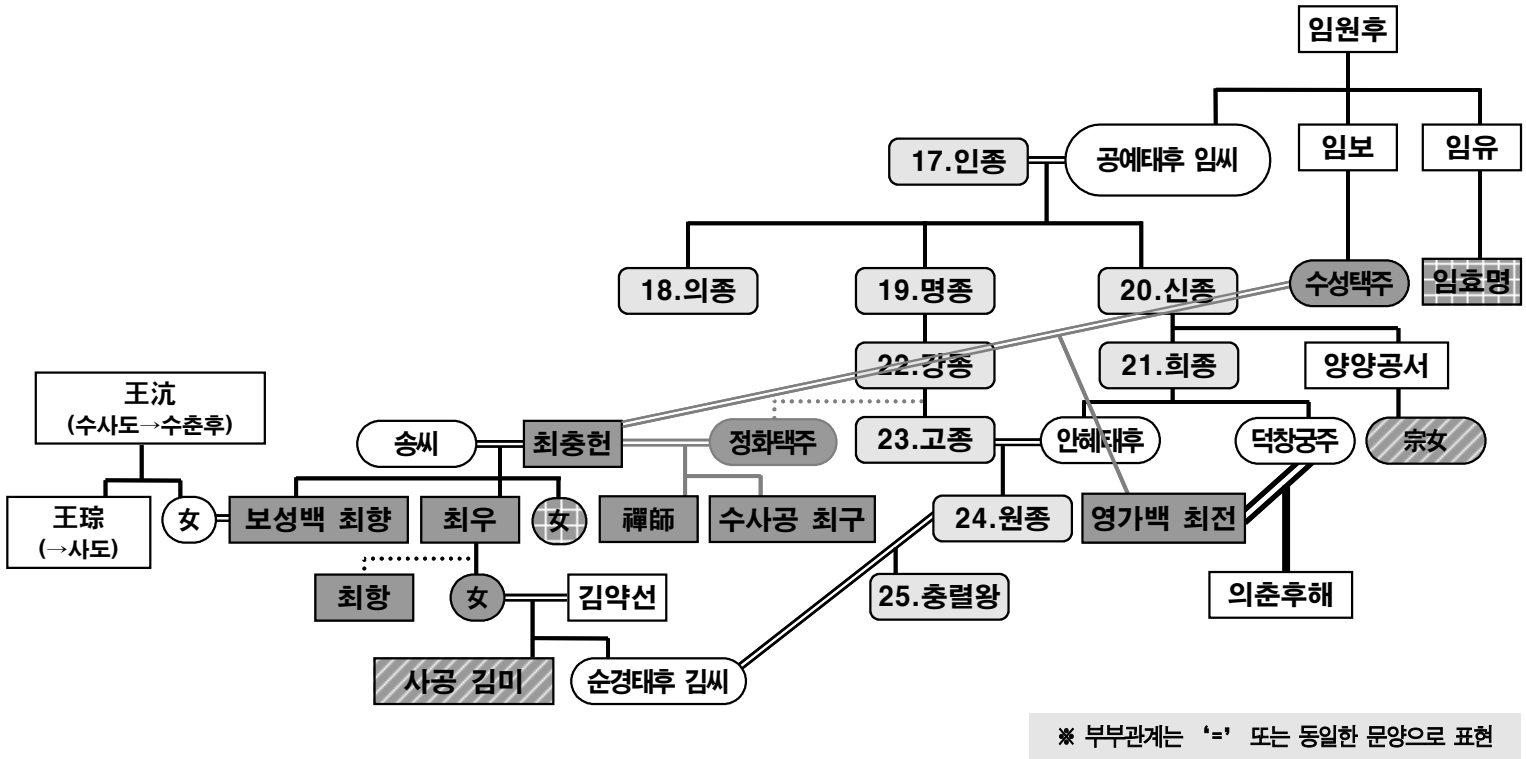

<그림 Ⅲ-6> 최충헌 가문과 고려 왕실의 통혼망

김약선은 부계로 경순왕에 닿아 있었고,[448] 累代에 걸쳐 현달한 문벌이었으므로 妃父로서의 家格을 갖추었다고 인식되었던 듯하다. 순경태후 사후 작성된 「東宮妃主諡冊文」와 「東宮妃主哀冊文」에서 고종은 그녀가 신라 왕손으로서 훌륭한 혈통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왕실을 비호하는 三葉功臣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449]

최충헌은 본인이 妃父가 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림 Ⅲ-6>과 같이 국왕의 외척 및 '종실'들과 통혼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왕실 외연을 침식하였다. 최충헌에게는 공식적으로 세 명의 부인이 있었다. 원간섭기 이전까지 국왕과 태자를 제외하면 왕자조차도 공식적으로 多妻할 수 없었는데,[450] 최충헌에게는 일찍 사망한 宋氏 외에 두 명의 부인이 동시에 존재하였고 심지어 이들 모두 綏成宅主·靜和宅主와 같은 공식 호칭을 가졌다.[451] 이미 최충헌은 국왕과 비견할 만한 특권을 향유하였고 있었다.

수성택주 任氏는 공예태후 임씨의 異母弟인 任溥의 딸이다.[452] 최

---

448) 金若先의 부계 조상은 金繼蔘부터 확인되는데, 김계삼은 경순왕 김부의 5세손이다. 김약선의 부계는 김계삼-金漢公-金景輔-金世麟-金鳳毛-金台瑞-김약선·金慶孫으로 이어지며, 이들과 관련된 묘지명·열전 기록마다 신라 왕실의 후예임이 강조된 것을 볼 때에 當代人들에게 경순왕의 후예 가운데 고려 중앙에서 累代에 걸쳐 명맥을 유지한 대표 가문으로 인정받았던 듯하다(김용선, 2021 앞의 책, 178쪽 '金景輔墓誌銘' 및 459~463쪽 '金鳳毛墓誌銘'; ≪고려사≫ 권101, 열전14 諸臣 金台瑞 附 金若先 참조).

449) ≪東文選≫ 권28, 冊 「東宮妃主諡冊文」·「東宮妃主哀冊文」 참조. 한편 ≪東人之文四六≫ 권6에 수록된 「王太子嘉禮日降使」(李奎報) 교서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종이 태자비를 맞이하며 내린 교서로 추정되는데, 마찬가지로 태자비를 "內則千年享國之王孫, 外焉兩代定策之勳閥"이라고 하여 그녀의 혈통을 수식하는 방식이 시책문·애책문과 일맥상통한다.

450) 豊島悠果, 2007 <高麗時代の婚姻形態について> ≪東洋學報≫ 88-4.

451)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김용선, 2021 앞의 책, 516~525쪽 '崔忠獻墓誌銘'. 이하 최충헌 가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대체로 이 두 자료에 근거하였다.

452) 任元厚(任元敱)는 李瑋의 딸과 혼인하여 공예태후·任克忠·任克正을 낳은 뒤 부인과 사별하고 두 차례 재혼하였다. '任忠贇墓誌銘'에 따르면, 임원후의 두 번째 부인은 尹瓘의 딸이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1121년(예종 16) 임충빈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任忠贇墓誌銘' 참

충헌이 李義旼의 黨與였던 孫洪胤을 살해하고 빼앗은 부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종으로부터 오랜 기간 정치적 박해를 받아 20세가 되도록 官路에 진출하지 못하였던 임부가 최충헌과 결탁하여 출세하고자 딸을 바쳤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453] 임부의 동모제 任濡 또한 최충헌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의종 재위기 정치적으로 열세에 몰려 있었던 공예태후 가문 사람들은 최씨무신정권과 중첩된 통혼망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최충헌의 黨與로 활동하는 데에도 거리낌 없었다. 1211년(희종 7) 최충헌이 희종을 폐위하자 그의 명으로 폐태자를 모셔와 新王 옹립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 바로 임유다.[454] 즉, 최충헌은 명종·신종의 외가와 통혼하며 국왕의 인척에 가까워지고 기존의 기득권과 공고하게 결연하였던 것이다.

정화택주는 강종의 庶女다. 최충헌이 정권을 잡자마자 명종과 태자(강종)를 폐위시켰으므로 정화택주의 혼인은 명종 폐위 후 폐태자 강종의 자구책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하여 1210년(희종 6) 강화도 유배 중이던 폐태자 강종이 개경으로 소환되고 이듬해 漢南公에 봉작된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455] 최충헌이 정화택주를 처로 삼아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자 妻父 강종을 왕실로 복귀시켜 개경에 소환하였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456]

조). ≪고려사≫ 임원후 열전에서는 任溥·任濡·任沆이라는 아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任濡의 沒年을 통하여 그가 1148년(의종 2) 출생임이 확인되는데, 任溥 또한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려사≫ 권95, 열전8 諸臣 任懿 附 任元厚·任溥·任濡·任沆). 임원후의 세 번째 부인은 李瑋의 외손녀, 즉 공예태후의 이종사촌이었던 李氏이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데이터베이스 '李軾墓誌銘' 참조). 1140년대 출생한 任溥·任濡·任沆은 세 번째 부인의 아들로 추정된다.

453) ≪고려사≫ 권95, 열전8 諸臣 任懿 附 任溥;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454) ≪고려사절요≫ 권14, 熙宗成孝大王 7년 12월, "放太子祉于仁州 (중략) **遣平章事任濡, 奉漢南公貞** 于私邸, 卽位於康安殿. 改名禛."

455) ≪고려사≫ 권21, 세가21 희종 6년 12월; 희종 7년 1월 癸巳.

456) '崔忠獻墓誌銘'에 따르면, 정화택주와의 사이에서 최충헌은 두 명의 아들을 얻었다. 장남 崔球는 守司空 柱國까지 올랐고, 차남은 曹溪宗 소속의 禪師였다.

최충헌의 자녀세대에 이르러 그의 가문은 본격적으로 왕실 내부로 침투하였다. 우선 최충헌이 宋氏와의 사이에서 얻은 차남 최향은 '종실' 壽春侯 沆의 사위가 되어 寶城伯에 봉작되었다. 수춘후항은 그 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아 현재로서 特定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1197년(신종 즉위) 의종·명종 사위들에 대한 진봉이 이루어질 때 수사도가 되었던 사실을 통하여 公·侯·伯의 아들 또는 사위임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인종의 외손이자 명종의 사위들이었던 영인백 진과 창화백 우 뒤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종실전에서 누락된 인종의 외손 또는 의종·명종의 외손으로 추정되는데,[457] 종실전에 이미 입전된 인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에는 改名이 흔하여 국왕을 비롯한 '종실'들이 원인 모를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458] 왕항이 개명이라면 창화백 우의 아들 王泫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왕현은 수사공이었다는 종실전 기록 외에 어떠한 행적도 남기지 않았다.[459] 개명 때문에 ≪고려사≫ 撰者들이 그의 흔적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의 부족으로 왕항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으나, 그가 고려 왕실의 균열에 일조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사도에 불과하였던 왕항은 국왕의 妃父 또는 사위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춘후라는 작위를 받았고 그의 아들 王琮은 사도가 되었다.[460] 종래

457) ≪고려사≫ 권21, 세가21 신종 즉위년 11월 癸巳, "縝守司徒上柱國寧仁伯, 祐守司徒上柱國昌化伯, 沆守司徒上柱國."

458) 박진훈, 2008 <고려시대 사람들의 改名> ≪동방학지≫ 141.

459)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숙종 帶方公俌 附 昌化侯祐, "祐尙明宗女壽安宮主, 封昌化侯, 神宗卽位, 拜守司徒上柱國. **祐子泫, 守司空**". 王泫과 王沆을 동일 인물로 볼 경우 1197년(신종 즉위) 왕현은 아버지 창화백 우와 동시 봉작된 셈이 된다. 그러나 후대의 봉작 관행을 볼 때 부자를 동시 봉작하는 것이 고려에서 금기시되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1298년(충선왕 즉위) 충선왕 복위 직후 단행된 왕실 봉작에서 영녕공 준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거 봉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즉위년 5월 甲午). 더욱이 신종이 평량공이던 시절 그의 아들 희종은 창화백 우의 딸과 초혼한 바 있다. 즉, 신종이 즉위하던 해 창화백 우에게 성년에 이른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의 왕실 봉작제에 따른다면 왕항의 지위는 수사도에 그치고 왕종은 諸王에서 배제되어 사환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최충헌과의 적극적인 결합 덕분에 왕항은 작위 체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최향은 최충헌 가문 출신으로는 최초로 諸王의 사위가 된 인물이다. 이후 최향은 최충헌의 권세에 힘입어 보성백에 올랐고, 왕실 말단에 존재하던 왕항은 侯王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다. 家格을 높이고 싶었던 최충헌의 뜻과 왕실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었던 왕항의 뜻이 맞물리며 최향의 혼인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우와 최향의 권력쟁탈전에 왕항·왕종 부자가 깊이 개입하였던 사실을 본다면, 이 혼인이 일방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461]

최충헌의 또 다른 아들 崔璕(崔珹)은 1219년(고종 6) 7월 희종의 3녀 덕창궁주와 혼인하여 王壻가 되었다. 원간섭기 이전까지의 고려 역사를 통틀어 왕녀의 배우자 가운데 '종실' 출신이 아닌 인물은 경순왕과 崔璕 두 사람에 불과하다. 그만큼 崔璕과 덕창궁주의 혼인은 고려 왕실에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최충헌이 강화도 喬桐縣에 있던 前王 희종을 개경으로 데려온 시기와 일치한다. 1218년(고종 5) 장녀가 고종의 왕후로 간택되었음에도 개경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던 희종은 개경으로 소환된 지 4개월 만에 최충헌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였다.[462] 사료의 행간을 통하여 덕창궁주의 혼인 또한 정화택주의 혼인과 같이 희종의 자구책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덕창궁주와 崔璕의 정략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上記 맥락과 별개로, 前王 희종과 現王 고종이 공고한 고려왕실의 전통을 깨고 非宗室

460) ≪고려사절요≫ 권15, 高宗안효대왕2 7년 1월, "樞密院副使崔瑀 (중략) 又流其弟寶城伯珦, **珦婦翁壽春侯沆, 沆子司徒琮**, 承宣申宣胄, 及其父家臣崔思謙, 婢桐花成春獅子等, 于諸島."

461) ≪고려사절요≫ 권15, 高宗안효대왕2 7년 1월; 3월, "召還壽春侯沆司徒琮." 최향이 패배하고 그의 族黨·黨與에 대한 처벌이 있은 지 2개월 만에 壽春侯 沆과 司徒 琮은 개경으로 소환되었다. 유배지에서 금세 풀려난 것을 보면 王沆 부자는 고종과 비교적 가까운 친속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62)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6년 3월 丁卯朔, "遣郎中李世芬, 奉迎前王于喬桐縣."

출신의 崔瑼을 사위로 간택할 수 있었던 내적 논리를 崔瑼의 혈통적 권위에서 찾을 수 있다. 崔瑼의 모측 혈통은 의종·명종·신종의 모후였던 공예태후로 연결된다. 그의 母 수성택주는 공예태후의 조카이자 의종·명종·신종의 사촌자매였으며, 공예태후는 인종 이후 고려왕실을 중흥시킨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지녔다. 즉, 최충헌이 공예태후 가문과의 중첩된 통혼망을 형성하며 왕실의 혈통에 근접한 결과 자녀세대에 이르러 국왕 직계자녀와의 혼인까지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향을 시작으로 최충헌 가족들이 국왕의 친속관계망에 꾸준히 편입되었기 때문에 국왕과 관료집단은 자연히 최충헌 가문에 대한 대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덕창궁주와 崔瑼의 혼인이 가져온 파장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최향과 崔瑼의 혼인은 그 배경과 성격이 구별된다. 최향의 妻父 왕항은 본래 사도·사공세대에 불과하였고, 그 아들과 사위는 제왕에서 배제될 존재들이었다. 최향이 왕실 말단의 사도 항과 통혼한 것을 빌미로 보성백이라는 상위 작위 체계로 진입하였으나, 이는 왕항의 돌출 행동에 의한 결과였으며, 왕항과 최향의 봉작은 최충헌의 비호로 인한 일시적 特例에 불과하였다. 伯爵을 받은 최향과 달리 왕항의 아들 왕종은 왕실 봉작제의 원칙대로 사공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최충헌 열전에서는 최향이 "종실 수춘후 항의 딸에게 '장가들어[娶]' 보성백이 되었다"고 서술한 반면 崔瑼은 희종의 딸을 "'尙'하여 종실의 반열에 올랐다[齒宗室]"고 하였다.[463] 이러한 서술상의 차이 또한 當代에 최향은 '종실'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崔瑼은 최향과 달리 왕실 정점에 존재한 국왕의 뜻에 따라 희종 사위가 되었다. 공적 영역에서 王壻들이 왕녀의 작위를 代受하였던 원칙을 좇아 崔瑼은 영가백이 되었으며 當代에 '종실'의 반열에 오른

463)「崔忠獻墓誌銘」, "珣娶宗室壽春侯沆女, 封寶城伯. 珹後改瑼, 尙熙宗女, 齒宗室. 親迎日, 諸王·宰樞·百官, 具公服以從. 初封永嘉伯, 後進封爲侯, 子該, 封宜春侯."

것으로 인식되었다. 앞서 諸王은 왕위계승권을 보유한 인물들의 집합이고 고려의 총계적 혈통 관념에 따라 왕자의 자손인지 왕녀의 자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종 외손 사공 진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즉, 고려 왕실의 입장에서 非宗室 출신 王壻는 그 자체로도 문제의 소지가 되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왕녀가 자녀를 생산할 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였다. 崔璕의 자녀들이 덕창궁주를 통하여 희종의 王統을 물려받을 것이므로 고려 왕실은 이들에 대한 대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219년(고종 6) 고종이 최충헌에게 王氏를 賜姓하였던 사실을 崔璕의 혼인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연도를 제외하면 고종이 사성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같은 해 9월 병으로 죽음을 앞둔 최충헌이 사성을 사양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464] 고종이 사성하려고 한 계기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충헌의 辭讓 표문이 올라간 때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사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崔璕과 덕창궁주의 혼인이 성사되었던 7월과 가깝다. 최충헌의 명예를 높여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非宗室 출신의 異姓 王壻·諸王의 존재를 가리려는 목적에서 고종이 최충헌 가문을 王氏로 흡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게 된다.

최충헌이 사성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崔璕은 줄곧 崔氏를 유지하며 고려 왕실의 유일한 異姓諸王으로 존재하였다.[465]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崔璕의 공식칭호는 '永嘉伯 崔璕' 또는 '永嘉侯 崔璕'과 같이 봉작과 姓이 결합된 형식이었다. 반면 崔璕과 덕창궁주

464) ≪고려사절요≫ 권15, 高宗安孝大王2 6년 9월, "崔忠獻有疾, 上表辭職及賜姓";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六年, 王賜忠獻姓王. (중략) 忠獻有疾, 上表辭職, 還几杖, 又請還賜姓."

465) 최충헌의 자손이었던 崔璕과 金敉는 '종실' 반열에 올랐음에도 不姓而名하지 않았는데, 이는 최충헌이 사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崔璕과 金敉가 王姓을 쓰지 않고도 '종실'의 반열에 올랐던 것은 최충헌 가문의 家格이 왕실과 비등하다는 자의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의 소생이었던 宜春侯는 '宜春侯 該'로 기재되어 있다.[466] 형식의 차이를 통하여, 崔璕이 최충헌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 諸王으로 존재하였던 반면 의춘후는 최충헌의 손자보다는 덕창궁주의 아들 또는 희종의 외손으로서 諸王에 소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宜春侯 該'와 같이 공식 석상에서 봉작명 뒤에 이름만 쓸 수 있는 것은 '종실'에 한정된 특권이었다. '王梓女王氏墓誌銘', 「康津 月南寺址 眞覺國師碑」 등의 금석문 자료를 살펴보면 '종실'들은 大原公 倖, 襄陽公 恕, 守司空 禧 등으로 기재될 뿐 王氏를 드러내지 않았다.[467] 원간섭기 忻都의 아들이 安平公의 딸과 혼인하자 충렬왕은 '종실'에 대한 典例를 적용하여 수사공으로 삼으면서 "성을 쓰지 않고 이름하는[不姓而名]" 특권을 주었다고 한다.[468] 즉, '不姓而名'은 왕실 운영체제의 일부였다. 관련하여 이정란은 金 황실에서 국왕의 근친은 國姓 完顔을 드러내지 않고 '종실'이라고만 썼으며 원친과 이성의 完顔氏는 모두 完顔을 드러냈다는 ≪金史≫의 기록을 근거로 고려에서도 왕실의 원친들에게는 '不稱姓(不姓而名)'의 예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최하위 '작위'로 기능하였던 사도·사공이 不稱姓할 수 있는 하한선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다.[469]

---

466)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희종 德昌宮主, "亦成平王后所生, 適永嘉侯崔璕"; 권24, 세가24 고종 45년 2월 壬午, "永嘉侯崔璕死"; 권28, 세가28 충렬왕 원년 10월 辛丑, "宜春侯該卒". 희종의 손자녀세대는 고종 말년에 봉작되었는데, 三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 이 시기는 대몽항쟁기를 거치며 왕실 봉작제가 변형되어 왕자·왕녀의 자녀들에게 봉작이 남발되었다. 王該가 의춘후에 봉작된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찾아야 한다.

467) 「高麗國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幷序」(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허흥식 판독문 참조).

468)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6월 乙酉, "以忻都子琪守司空, 琪娶安平公女, 比宗室例, 授是職, 且不姓而名". 忻都子와 安平公女의 혼인,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守司空 임명과 不姓而名이 특별한 사건으로 부각된 것을 볼 때, 충렬왕이 즉위할 때까지도 최충헌의 자손을 제외하면 왕녀·宗女와 혼인할 수 있었던 異姓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忻都子와 같은 사례는 원간섭기 몽골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등장하였다. 몽골은 관계 성립 초기부터 고려의 '同姓婚' 문화를 '비정상'으로 간주하였다. 제국대장공주가 忻都의 아들과 安平公 딸의 혼인을 추진하였던 것은 그녀의 성장배경 때문이다.

469) 이정란, 2019 앞의 논문, 88~110쪽.

최충헌의 손자녀세대에서는 그 후계자 최우가 正室에게서 한 명의 딸만 얻었으므로 왕실과의 통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충헌의 증손자녀세대, 즉 최우의 손자녀세대에 이르러 왕실과의 통혼이 재개되면서 순경태후와 김미 모두 왕실의 배우자가 된다. 김미(金晸, 金侍)는 신종 왕자 양양공 恕의 사위가 되어 사공 지위에 올랐다고 전해진다.[470] 최향·왕항의 이례적인 봉작을 제외하면 최충헌 가문 출신으로서 '종실' 반열에 오른 인물들의 봉작은 기존 왕실 봉작제의 定型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崔璕과 김미는 異姓諸王이었기 때문에 왕실 내에서 그 위상이 모호하였다. 早卒한 단양백을 제외하고 희종의 마지막 사위까지 公으로 진봉되었으나 희종의 세 번째 사위였던 崔璕은 1258년(고종 45) 영가후로 사망하였다. 사망 후 中書省에서는 그가 "父勢 덕분에 공주에게 강제로 尙하였으므로 諸王의 예식으로 장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종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471] 김미 또한 公·侯·伯의 사위로서 사공이 되었으나 최우의 후계자라는 지위가 사회적으로 우선하였다. 김미는 자신의 혈통을 앞세워 孽子 출신의 三寸叔 崔沆과 무신집정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472] 崔璕이 諸王 지위를 박탈당한 이후에도 그 아들 의춘후 해가 '종실'의 지위를 유지하며 최충헌 가문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최충헌 가문이 장기간에 걸쳐 왕실 외연을 침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봉작이 실질적으로 최씨무신집정의 의중에 좌우되었던 현실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최충헌과 최우는 왕실과의 '파격적' 혼인에서

470) ≪고려사≫ 권101, 열전14 諸臣 金台瑞 附 金敉.

471)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5년 2월 壬午, "永嘉侯崔璕死"; 권129, 열전42 叛逆 崔忠獻, "高宗四十五年, 璕死, 中書省奏, '璕以父勢, 强尙公主, 不可葬以諸王.' 制可."

472) 조선시대에는 왕녀와 혼인하여 국왕의 친속이 된 존재를 儀賓으로 별도 분류하였으나 왕녀·종녀를 '종실내혼'에 구속시켰던 고려에서는 의빈제도 같은 것이 애초에 필요 없었다. 따라서 崔璕과 김미는 반은 '종실'이고 반은 非宗室인 모호한 존재였고, 고려 當代에는 이러한 존재들을 명명할 별도의 용어가 없었다.

파생된 친속관계를 봉작을 통하여 공식화함으로써 법제적으로 규정된 명확한 왕실 범주에 균열을 가져왔다. 최씨무신집권기 권력행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吏部와 兵部의 銓注 결과에 대한 결재권이 국왕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었던 점에서 최씨무신집권기 인사권이 행사되는 방식은 형식상 이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신집정이 判吏部事·判兵部事를 겸하며 政房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국왕의 결재란 무신집정의 결정에 대한 사후 승인 수준으로 제한되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랐다.[473] 봉작 또한 넓게 보아 인사권의 일환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세 사료에서는 봉작 여탈이 실질적으로 최씨무신정권의 의중에 달려 있었던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C-11] **崔球는 관직이 守司空 柱國**이었는데, **최충헌이 죽자 <최우가> 崔球를 工部侍郎으로 좌천**시켰다(≪고려사≫ 최충헌 열전).

[C-12] 長子(崔瑀)는 지금 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兵部尙書 上將軍에 임명되었다 (중략) <공은> 또한 **康宗의 庶女에게 장가들었으니 그가 靜和宅主**다.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 ▨는 守司空 柱國**이다(「崔忠獻墓誌銘」).

[C-13] <金敉>는 (전략) 崔怡로 인하여 內給事를 거쳐 **守司空 柱國에 이르렀으나 최이가 나이가 어려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여 將軍으로 고쳐 제수**하였다 (중략) 후에 **최이가 김미를 환속시켜 司空에 제배**하였는데, 사공은 오직 諸王만이 맡는 것으로 김미가 襄陽公의 딸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수한 것이다(≪고려사≫ 김미 열전).

[C-11]과 [C-12]는 최충헌의 아들 崔球에 관한 기록이다. [C-12]에

473) 박재우, 2014 <고려 최씨정권의 정방 운영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2016 <고려 최씨정권의 권력행사와 왕권의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46, 160쪽.

적시되었듯 최충헌은 강종 '庶女'와 혼인하여 최구를 낳았고, 그는 1219년(고종 6) 수사공 주국의 지위까지 올라가 있었다. 최충헌의 장남이자 그의 후계자였던 최우가 樞密院副使 兵部尙書 上將軍에 불과하였던 반면 최구가 정1품 수사공으로서 명목상 최상의 관직에 있었던 이 상황은 언뜻 보아 이해되지 않는다. 최구의 지위는 그의 母 정화택주 왕씨와 연관 지어 분석해보아야만 한다.

본래 정화택주는 강종의 딸이었으나 왕녀가 아니었다. 고려시대 국왕의 婢妾 소생은 정식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小君으로 칭해졌던 비첩 소생의 아들은 강제로 승려가 되었고, 딸은 '종실내혼'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관료가문과 통혼하였다. 단, 그 후손들은 婢妾의 혈통이 섞였다는 낙인으로 인하여 國庶로 명명되며 淸要職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대대로 차별대우를 받았다.[474] 최고 권력자 최충헌의 공식적인 처였음에도 정화택주 왕씨가 「崔忠獻墓誌銘」에서까지 강종의 '庶女'로 설명된 것을 볼 때 그녀의 신분상 하자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當代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庶女 정화택주는 공예태후의 사촌자매인 수성택주 임씨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선종의 차녀가 수안택주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475] 택주는 宮主보다 下位이면서 宮主와 마찬가지로 종남의 배우자 혹은 종녀에게 수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국왕의 비첩 소생은 정식 자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실'로서의 공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 또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정화택주는 최씨무신집권기라는 특수한 배경 하에 晉康公 최충헌의 嫡妻 자격으로 임씨와 나란히 택주에 봉해졌고, 최충헌의 위세에 힘입어 왕녀로서의 권위를 불완전하게나마 인정받았다.

최구가 역임한 수사공은 왕자·왕녀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爵位化 된 관직이다. 최구는 최충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강종의 외손이라는 측

474) 이정란, 2003 앞의 논문, 63~95쪽.
475)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선종 遂安宅主.

면이 부각되어 母의 신분상 하자를 안고도 수사공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무신집권기 최충헌 가문 출신에 한하여 왕실 봉작제가 변칙적으로 적용되었던 양상을 최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충헌이 직접 개입하여 수사공이라는 지위를 최구에게 준 것인지, 고종이 최충헌의 심기를 살펴 선제적으로 최구를 諸王의 반열에 올린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본고가 [C-11]과 [C-12]에서 주목한 것은 최충헌이 죽자마자 최구가 공부시랑으로 좌천되었다는 대목이다. 최우의 동모제 최향이 '종실'과 통혼한 후 보성백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최우의 강력한 政敵이 되었던 것을 참작해 보면, 최구의 지위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공부시랑으로 좌천시킨 것은 최우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충헌 생시 국왕의 결재까지 받아 수사공에 오른 최구를 削爵할 만한 권력자는 당시 정황상 최우밖에 없다. 최우는 최구의 生母가 '庶女'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왕녀의 소생만 제수될 수 있었던 수사공을 최구가 역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削爵을 종용하였을 것이다. 오랜 세월 소군과 國庶를 차별해 온 고려인들 또한 賤人의 피가 섞인 최구를 諸王으로 인정할 리 없었으므로 이러한 최우의 처분은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었다.

[C-13]에서 ≪고려사≫ 撰者는 김미를 수사공에서 강등시키는 것과 그에게 사공을 還授하는 것 모두 최우의 뜻에 좌우되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C-13]에 따르면, 김미를 신종 왕자 양양공 서와 통혼시킨 것도 그의 외조부였던 최우이고, 公·侯·伯의 사위라는 친속관계를 공식화하여 김미에게 사도·사공을 제수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 또한 최우였다. 고종이 왕실 관행대로 김미를 사도·사공에 제수하려고 할 때 최우가 김미의 나이를 이유로 고종의 뜻을 꺾었다는 데에서 그의 직접적 개입이 확인된다. 왕실 봉작의 대상자 선정, 봉작 시기 결정 등 봉작의 전 과정에서 최씨무신집정이

통할할 수 있는 영역이 거대해졌음을 [C-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관료에 대한 人事와 마찬가지로 '종실' 봉작 또한 무신집정의 결정에 대한 국왕의 최종 결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최씨무신정권의 권력 행사 방식과 밀접히 상관되었다.

이상으로 왕실 봉작제와 '종실내혼'의 연동 구조를 검토하여 고려중기까지의 왕실이 어떠한 규범과 제도를 토대로 존속하였는지 구명하였다. 본고는 왕자 출신 '종실'보다는 혼인을 매개로 국왕과의 친속관계가 재조정되었던 결연자들, 곧 종남 출신의 王壻·妃父·王壻父의 사례에 주목하여 봉작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밝혔다. '종실내혼'을 계기로 국왕의 近屬에 편입된 종남들은 초봉과 진봉 과정에서 왕자들과 차등대우를 받았다. 왕자들이 20세를 전후하여 侯에 초봉되었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公으로 진봉되었던 반면 王壻는 伯에 초봉되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야 侯로 진봉되었다. 이때의 진봉은 연령에 따른 예우일 수도, 새로운 국왕과 항렬에 따른 친속관계가 재설정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王壻의 자녀세대에서 국왕 자녀들과의 '종실내혼'이 이루어지면 항렬이나 王壻 간 서열을 무시한 진봉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확대 적용되어 국왕 또는 그 자녀에게 배우자를 제공하여 '결연자' 위상에 오른 '종실'들은 모두 진봉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 왕실 봉작제의 定型은 대몽항쟁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변형되었는데, 그 단초를 최씨무신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충헌은 전통적인 '종실내혼' 체계를 부정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왕실의 외연을 침식하며 家格을 높이고 輔政의 정당성을 찾았다.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최씨무신정권의 의중에 좌우되고 국왕은 고유의 결재권만을 유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씨무신정권은 왕실과의 '파격적' 혼인에서 파생된 친속관계를 봉작을 통하여 공식화하고 이로써 기존 왕실 범주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다. 최씨무신정권의 붕괴 이후 미세한 균열

은 점차 확대되었다. 對蒙 외교에 동원된 '종실'에게 보상 또는 포상 차원의 봉작이 남발된 결과 국왕은 점차 왕실의 외연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였다. 최종적으로 충선왕대에 이르러 종래의 '종실내혼'이 공식 부정됨에 따라 '종실내혼'을 기반으로 성립한 고려 왕실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고려 왕실의 인적 구성과 법제적 위상을 구명하고, 왕실의 권위 및 특권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체제를 고찰해보았다. 왕실은 왕권의 원천이 되는 정치집단이자 국왕의 공인된 가족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속성을 갖는다. 이에 본고는 정치사와 사회문화사를 통섭하여 왕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왕실의 외연을 결정하는 요소와 더불어 내부의 계서적 편제 방식을 검토하였고, 왕실의 친족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을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토대가 고려 왕실의 편제 및 재생산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고민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한국사에서 '종친불사' 원칙이 최초로 확립된 시기가 고려이며, 고려는 唐의 제도가 동아시아 典範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게 된 이후 등장하였다는 두 가지 특수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 왕실이 국왕의 통치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최상의 정치집단으로서 차별화된 권위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었던 當代의 정치공학을 고민하고 唐의 황실 제도가 고려에서 변용되는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중요한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

一장은 고려 건국 직후부터 왕실 봉작제가 성립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절에서는 고·중세 전환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고려 왕실이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면서 왕실의 배타적 우위를 확보해나갔던 방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본고는 태조 왕실의 인적 구성을 복원하고 고려의 '종친불사'가 갖는 의미를 고민하였다. 건국 직후 태조 왕실은 先代에서 파생된 방계의 친속들을 배제하며 점차 태조의 '기본가족'으로 한정되어갔다. 태조의 자녀들은 성년에 이르렀을 무렵 사환되지 않았던 반면 태조의 방계 형제들은 건국 직후부터 꾸준히 사환되었는데, 왕위계승권은 두 집단 가운데 전자에 의하여 독

점되었다. 이로부터 본고는 태조 왕실에서 이미 왕위계승후보자들의 '不仕' 현상이 나타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종친불사' 원칙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고·중세의 체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士'층의 정치적 역량을 골품제와 같은 폐쇄적 체제로 제약하지 않았던 고려에서는, '종친불사'를 원칙화함으로써 관료제라는 틀 속에서 왕실이 관료집단과 경쟁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國政 전반이 왕위계승 분쟁에 휩쓸렸던 신라 下代의 혼란상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치적 현안마다 왕실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다음으로 태조 사후의 왕실 재편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왕실의 극단적 근친혼 현상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호족연합정권설을 전제로 태조~목종대 왕실혼이 몇몇 태조 后妃 가문의 정치적 의도에 좌우되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 본고는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지양한 채 왕실 인물들의 나이와 혼인 추정시기를 통하여 왕실혼의 성립요인,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조 자녀세대의 혼인은 태조가 기구축한 인척관계망 내에서 추진되어 왕실과 외척의 외연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태조 생전부터 고려 왕실에서는 后妃 가문의 위세보다 혼인당사자의 나이를 우선하여 정상적 생애주기의 '가족'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혼인적령기가 맞는 남녀가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원친에서 근친으로 갈수록 혼인을 선호하였다. 이복남매혼을 가장 선호하였던 고려초의 왕실 婚俗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이례적이다. 극단적 근친혼은 초기 왕실이 보편의 문화에 역행할 수 있는 특권을 독점하면서 권위를 확립하는 방편이었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치적 효과를 가졌다. 첫째, 순혈이면서 통치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국왕의 사위를 간택하는 행위가 곧 왕위계승후보자들의 범주를 조정하는 행위였던 만큼 왕

실이 국왕에게 緊束되었다. 셋째, 근친혼으로 결속된 왕실 구성원 사이에 前代의 유산이 안정적으로 상속되었다.

一장 2절에서 주목한 것은 초기 왕실 편제다. 중국의 봉작제를 도입하기 전 고려 왕실에서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공적 지위를 부여하여 왕실의 외연을 획정하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고려초 왕실 구성원이 생전 君과 太子로 이원적 편제되었다는 종래의 설을 반박하였다. ≪고려사≫·≪고려사절요≫에서 편년을 추정할 수 있거나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기록, 금석문 등 當代 자료, 중국 唐 황실의 前例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실전 입전항목명의 '○○太子'가 '○○大王'과 더불어 시호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고려초 생존한 왕실 구성원을 태자로 지칭할 시 그 뜻은 동궁·정윤과 동일하였다. 국왕과 관료 모두 '태자'라는 지칭을 통하여 단수의 왕위계승권자를 떠올렸다.

왕위계승권자를 제외한 왕실 구성원들, 즉 왕위계승후보자들의 공식 칭호는 모후 또는 자신의 궁원명에 君을 결합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명명 방식은 남성을 여성(부인과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택호 문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택호 문화는 총계적 사회구조 및 남귀여가혼속의 잔재로 알려져 있다. 즉, 토속의 총계적 사회구조나 婚俗이 초기 왕실 편제에 영향을 미쳐 택호 문화와 유사한 면모를 창출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본고는 사망한 왕실 구성원에게 '○○太子' 또는 '○○大王'이라는 시호를 부여하고 생존 중인 最近親을 개령군에 책봉하는 등 새로운 왕실 편제를 시도한 인물로 경종을 지목하였다.

二장에서는 왕실 봉작제의 성립 과정과 운영 원리를 검토하였다. 1절은 고려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독자의 왕실 봉작제가 성립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제현의 사론을 소급하여 왕실 봉작제의 定型을 상정한 채 ≪고려사≫ 爵條를 해석하였던 데 문제

제기하고, 중국 봉작제의 역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爵條를 재해석하였다. 중국의 爵制는 일원적 체계였으며 국공은 황실과 관료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사실상 관료의 진입이 차단된 작위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爵條가 이성봉작제 규정만 수록한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비판하였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宋史≫ 직관지 雜制條에 최초로 주목하였다. 雜制條를 통하여 唐의 봉작령이 唐末에 일부 변형되어 宋初의 제도로 흡수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宋初 황실 봉작 사례를 분석하여, 唐·宋의 봉작령이 외견상 유사해보일지라도 실제 운용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현종 말년 제4왕자 왕기가 개성국공에 책봉된 사건이 고려 봉작제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재평가하였으며, 봉작제 도입 및 변용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와 다른 立論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의 봉작제를 도입하면서 當代의 다원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반영하여 변용을 시도한 시점은 문종대가 아닌 현종대다. 현종대의 왕실은 '封君制'가 아니라 君爵을 王爵 위상에 두는 '봉작제'로 편제되었다. 문종대에는 현종의 제도를 계승하되 君을 公·侯로 분화시켜 王爵의 위상에 둔 뒤 왕실 하위의 편제 방안을 고민하였다. 둘째, 고려 왕실의 편제는 특정 시기에 단절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종~선종에 걸친 오랜 기간 화풍적 요소(봉작제)와 토풍적 요소(태조 聖訓 및 토속의 가족관념)를 조화시키려는 치열한 고민과 시도 속에 이루어졌다. 종법질서에 기반한 중국의 봉작제는 고려와 습합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고려에서는 公·侯·伯의 아들과 사위에게 사도·사공과 같은 爵位化된 관직만 허용하되, 이들이 근친혼으로 국왕 가족에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한 채 伯爵을 운영하였다.

2절은 고려 봉작제의 운영원리와 법제적 왕실인 諸王의 친족구조를

분석하였다. 왕실 봉작제가 성립되면서 고려의 법제적 왕실은 그 외연과 계서가 획정되었다. 그러나 봉작제 운영 원리를 담은 법규를 현전하는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왕실 봉작의 수여 원칙을 추론하였다. 본고는 伯, 사도·사공의 최초 봉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伯, 사도·사공의 고안 단계부터 선행연구에서 밝힌 수여 원칙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왕실 봉작 수여 원칙에 대한 통설을 바탕으로 하여 現王을 기준으로 최대 어느 범주의 친속까지 동시기 법제적 왕실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도식화하였다. 이는 법제적 왕실의 친족구조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 본고는 고려 왕실의 친족구조가 인류학의 일차친척·이차친척과 가장 유사하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종법질서를 황실의 계서적 질서와 연동시킨 중국·일본의 封爵令이 무의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국 이래의 근친혼속이 고려의 왕실 봉작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三장은 고려 건국 이래의 근친혼속과 왕실 봉작제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봉작제의 구체적 운영방식을 복원하고 그 定型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1절에서는 왕실 봉작제가 성립한 이후 추진되었던 왕실 내에서의 근친혼을 '종실내혼'으로 개념화하고 봉작제와 '종실내혼'의 상관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大元高麗國故壽寧翁主金氏墓誌銘」의 "世附近屬, 克襲公侯伯"이라는 언설이 고려 왕실의 편제 및 재생산 매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이해하였다. 고려 왕실은 근친혼을 통하여 기존 왕실 구성원들을 다시 近屬으로 재편함으로써 영속성과 배타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실 내 근친혼은 독특한 취향에서 비롯된 일부 '현상'이 아니라 고려 왕실의 구조를 이루는 '체계'였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왕실 내 근친혼을 '체계'로 이해할 시 해당 체계가 작동하는 범위와

적용 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제현의 종실전서와 충선왕 복위교서의 행간을 통하여 원간섭기 이전까지 왕실 여성들은 外婚 금지 규범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려의 內婚 단위는 當代人이 인식하고 있던 '종실' 범위와 일치하였고, '종실' 내부의 계서에 따라 內婚 규범은 차등 적용되었다. '종실'은 법제적 왕실인 諸王뿐 아니라 諸王이 파생시킨 생식가족 일부를 포괄하였다. 사도·사공의 자녀세대는 諸王 가문의 일원이었기에 국왕과 '親'이 남아있는 존재로 간주되었으나, 혼인에 따라 최종 소속이 달라졌다. 관료가문과 통혼한다면 사환권을 회복하며 왕실에서 배제되었으나, 諸王의 인적 구성이 빈약할 때에는 諸王의 배우자가 되어 법제적 왕실로서의 공적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았다. 가문계승·상속을 이유로 부모나 조부모가 이들에게 강한 귀속권을 행사할 시 '종실'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해졌는데, 이 경우 사도·사공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여성일지라도 배우자의 혈통과 家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종실내혼' 규범에 구속되었다.

'종실내혼'이 왕실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왕실 규모의 통제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남성에 대해서는 왕실의 '잉여자제'를 출가시켜 과도하게 많은 자손이 생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여성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종실 인물로 제한하여 諸王에 신규 편입되는 인물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중국 부계혈통사회의 산물인 姓은 고려에서도 부계 우선으로 계승되었으나 王統은 총계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양자 간 모순이 발생하였다. 셋째, 왕녀·宗女를 종실내혼에 구속시킴으로써 고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남녀균분상속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왕실의 자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고려에서는 왕녀·宗女에게 상속된 왕실 자산이 종실내혼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왕실 내에서만 보유되었다. 넷째,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내를 취하는 자(wife-taker)

의 입장만 취한 고려 왕실의 혼인 전략은 왕실과 관료집단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왕실의 배타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유효한 방식이었다. 북인도의 최상위 카스트에게서 동일한 혼인전략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는 '종실내혼'과 연동된 초봉·진봉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왕실 편제의 定型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고려전기부터 형성된 시스템이 동요·변형된 시점을 확인하였다. 왕실 구성원들의 초봉·진봉 시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王壻 간택을 계기로 국왕의 近屬에 편입된 종남들은 초봉뿐 아니라 진봉 과정에서도 차등대우를 받았다. 둘째, 王壻들이 일정한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侯로 진봉되었던 현상은 새로운 국왕과 親·尊의 상대적 관계성이 재설정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셋째, 王壻의 자녀세대에서 국왕의 자녀와 통혼이 이루어지면 나이나 항렬, 서열을 무시한 진봉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확대 적용되어 국왕 또는 그 자녀에게 배우자를 제공하여 '결연자' 위상에 오른 '종실'들은 모두 진봉의 대상이 되었다.

'종실'의 초봉·진봉 패턴은 고종 치세 중반 몽골과의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변형되었다. 對蒙 외교에서 왕실 구성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나 공로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진봉이 남발되었고 국왕은 왕실의 외연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급격하게 왕실 편제의 定型이 변형되기 시작한 계기를 본고는 최씨무신정권에서 찾았다. 최충헌은 '종실내혼' 체계를 부정하는 과격한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왕실의 외연을 침식하는 방식을 택하며 家格을 높이고 輔政의 정당성을 찾았다. 여타 인사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봉작 또한 최씨무신정권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에, 최씨무신정권은 왕실과의 '파격적' 혼인에서 파생된 친속관계를 봉작을 통하여 공식화함으로써 법제적으로 규정된 명확한 왕실 범주에 균열

을 가져왔다.

세 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13세기 고려 왕실의 역사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논할 수 있다. 고려 왕실은 골품제를 극복한 중세사회에서 왕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권위를 확립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의 산물이었다. 우선 고려시대에는 왕실을 제외한 지배계층이 배타적으로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는 신라보다 개방된 사회였다. 관료집단의 최상층인 문벌조차 하위 계층과 혈통을 완벽하게 분리시키지 못하였다. 고려에 계급내혼의 경향성은 있었으나 그것은 '체계'로서의 혼인규범은 아니었으며 계급내혼의 단위 또한 비교적 광범위하였다. 고려말까지 지방 호장층이 꾸준히 문벌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 덕분이었다.

고려 왕실은 관료집단과 달리 '체계적인' 근친혼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혈통의 권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근친혼을 본고에서는 '왕실 내 근친혼'으로 개념화하고, 특별히 봉작제 성립 이후의 현상을 '종실내혼'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고려 왕실이 前代의 진골처럼 완벽하게 폐쇄적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왕실은 다양한 관료 가문과 통혼하였다. 단, 왕실은 아내를 취하는 자(wife-taker)의 입장에만 서서 여성에게만큼은 엄격한 內婚 규범을 적용하였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혼인방식은 왕실과 관료집단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왕실의 배타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유효하였다.

고려가 아내를 주는 자(wife-giver)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배경으로 신라에서 이어진 사회문화적 토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려에서는 여성의 혈통 또한 중시되어 여성이 왕실 자산뿐 아니라 王統의 상속 과정에서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고려는 부계적 종법질서의 토대 위에 성립된 중국 봉작제를 도입하여 왕실을 편제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기존의 토풍을 인위적으로 改變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고려가 토풍에 입각하여 화풍적 요소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결과 고려 전·중기의 특징적인 왕실 편제가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고려는 왕실의 사환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던 신라 下代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종친불사 원칙을 확립하였다. 왕실 봉작제는 사환되지 않는 왕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우하기 위한 제도였다. 고려에서는 왕실 구성원들을 봉작하여 관료집단과 분리시키고 諸王으로 통칭하였다. 그 결과 고려에서는 왕실의 정치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진골만이 최고위 관등을 매개로 중요 관직을 독점하였던 신라에서는 국왕의 至親을 고위직에 제수하여 국왕의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 그 반대급부로 신라의 왕실은 중요한 정치적 현안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였고, 국정 전반은 왕위계승 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능력 있는 '士'들이 국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과 갈등 또한 누적되었다.

반면 고려는 혈통에 따라 정치적 지위를 제약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국왕은 관료집단의 신망을 얻은 인물을 중용함으로써 국정을 장악하였다. 더 이상 관료제의 틀 안에서 왕실의 위상을 확립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고려는 종친불사라는 논리로 왕실과 관료집단이 관료제의 논리 속에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대신 왕실만이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성립시켜 왕실의 이데올로기 권력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고려 왕실의 혈통 관념과 폐쇄적 가족생산 방식, 국왕의 가족들을 공적 영역에 配屬하여 왕실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고려 왕실의 역사성을 고찰하였다. 왕실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정치제도사와 사회문화사를 통섭해보려 하였고, 인류학·정치학 이론을 도입하여 고려 왕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 현상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에 기반한 체제 또는 동시기 동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토

풍적 요소들이 고려 왕실의 독특한 면모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복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실'을 역사적 구성물로 인식하고 그 실체를 구명하려는 연구가 한국사학계에서 낯선 시도였던 만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본고는 왕을 정점에 둔 친속관계망과 혈통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왕실의 막강한 이데올로기 권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상적·문화적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왕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정당화하는 사상체계뿐 아니라 儀禮와 같이 왕실의 권위를 각인시키기 위한 '이벤트'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왕실의 이데올로기 권력을 구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본고는 왕실 편제 및 운영에서 여성이 중요한 변수였음을 보여주었으나 왕실 여성과 직접 연관된 內命婦·外命婦 등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고의 관심은 왕실을 공적 영역에 配屬시키기 위한 큰 틀에 맞춰져 있었다. 公·侯·伯과 사도·사공은 왕실 여성의 배우자나 자식까지 수여 범위에 두어 사실상 왕실 여성의 지위를 표상하였기 때문에 본고는 왕실 봉작제를 통하여 왕실 전체의 편제와 운영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왕실 여성이 누린 특권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內·外命婦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또한 후속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왕실 운영에서 중요한 재정·교육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한 한계도 있다. 왕실 구성원들이 왕위계승후보자로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최상층의 삶을 영위하였는지 고찰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一. 史料

1. 史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世祖實錄≫ ≪明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史記≫ ≪舊唐書≫ ≪新唐書≫ ≪宋史≫ ≪元史≫

2. 文集·文選

≪訥齋集≫ ≪東國李相國集≫ ≪益齋亂稿≫ ≪東人之文四六≫ ≪東文選≫

3. 經書

≪論語≫ ≪孟子≫ ≪春秋左氏傳≫ ≪春秋繁露≫ ≪白虎通≫

4. 典章書 등

≪通典≫ ≪唐六典≫ ≪唐律疏議≫
<天聖令>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中華書局)≫ 所收)
≪宣和奉使高麗圖經≫

5. 金石文

葛城末治, 1978 ≪朝鮮金石攷≫, 亞細亞文化社
김용선, 2012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출판부
劉燕庭, ≪海東金石苑≫ 上·下(1976, 亞細亞文化社 刊行)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高麗篇, 伽山文庫
朝鮮總督府, 1919 ≪朝鮮金石總覽≫ 上
한국역사연구회,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下, 혜안
허흥식, 1984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下, 亞細亞文化社

二. 연구논저

1. 단행본

1) 한국어

김갑동, 1990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김갑동 외, 2015 ≪고려의 왕비: 내조자와 국모로서의 삶≫, 경인문화사
김기덕,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 청년사
김두헌, 1949 ≪朝鮮家族制度硏究≫, 을유문화사
김성준, 1995 ≪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重版)
김아네스, 2019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김용선, 2004 ≪고려 금석문 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_____, 202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上·下, 한림대학교 출판부(개정 3판)
김의규 편, 1988 ≪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說≫, 지식산업사(2쇄)
김창현, 2007 ≪고려의 여성과 문화≫, 신서원
_____, 2011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刊行準備委員會, 1983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김택민 주편, 2003 ≪譯註 唐六典≫ 上, 신서원
노명호, 1988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해석 방향의 정

립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사
노명호 편, 2017 ≪고려 역사상의 탐색: 국가체계에서 가족과 삶의 문제까지≫, 집문당
노태돈, 2004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4쇄)
데이비드 O.모건 저, 권용철 역, 2012 ≪몽골족의 역사≫, 모노그래프
류선영, 2013 ≪高麗 太祖의 6王后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리햐르트 반 뒬멘 저, 최용찬 역, 2001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조성우 역, 2016 ≪하버드중국사: 남북조, 분열기의 중국≫, 너머북스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2017 ≪하버드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너머북스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우영 역, 2020 ≪하버드중국사: 진·한, 최초의 중화제국≫, 너머북스
박용운, 1997 ≪高麗時代 官階·官職 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_____,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_____, 2009 ≪『高麗史』百官志 譯註≫, 신서원
박재우, 2005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신구문화사
박정석, 2010 ≪외사촌 누이와 혼인하는 사람들≫, 민속원(초판 2쇄)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배영수 외, 2019 ≪서양사강의≫, 한울아카데미
변태섭,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_____, 1982 ≪「高麗史」의 硏究≫, 삼영사
邊太燮 편, 1986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브라이언 타이어니, 시드니 페인터 공저, 이연규 역, 2019 ≪서양중세사: 유럽의 형성과 발전≫, 집문당(2판 1쇄)
서울大學校東洋史學硏究室 편, 2009 ≪강좌 중국사Ⅲ: 士大夫社會와 蒙古帝國≫, 지식산업사(초판 19쇄)
_____, 2012 ≪강좌 중국사Ⅰ: 古代文明과 帝國의 成立≫, 지식산업사(초판 24쇄)
_____, 2012 ≪강좌 중국사Ⅱ: 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지식산업사(초판 22쇄)
손병규 외, 2016 ≪한국 역사인구학연구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孫寶基博士停年紀念論叢刊行準備委員會, 1988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스기야마 마사아키 저, 임대희 등 역, 2004 ≪몽골세계제국≫, 신서원(재판3쇄)
신승하, 2017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4쇄)
신인철, 1995 ≪한국의 사회구조: 미분화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문덕사(개정판)
심재석, 2002 ≪高麗國王 冊封 硏究≫, 혜안
안대회 편역, 2010 ≪한서열전≫, 까치
안병우, 2003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출판부(초판 3쇄)
王天有 저, 이상천 역, 2011 ≪중국고대관제≫, 학고방(1판 2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0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재판)
李光奎, 1990 ≪韓國家族의 史的硏究≫, 일지사(6판)
이경식, 2011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ㅡ高麗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이민홍 편역, 2005 ≪諡法: 諡號, 한 글자에 담긴 인물評≫, 문자향
이수건,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 일조각
이재환, 2015 ≪新羅 眞骨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서, 2009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사
정용숙, 1988 ≪高麗王室族內婚硏究≫, 새문사
정용숙, 1992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趙翼 저, 박한규 역, 2009 ≪二十二史箚記≫ 4, 소명출판
죠지 피터 머독 지음, 조승연 옮김, 2004 ≪사회구조≫, 서경
채웅석, 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

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2021 ≪고려중기 정치사의 재조명≫, 일조각
하일식 편, 2007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혜안
黃雲龍, 1989 ≪高麗閥族硏究≫, 동아대학교출판부(개정판)

2) 외국어

仁井田陞, 1964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覆刊)
礪波 護, 1986 ≪唐代政治社會史硏究≫, 同朋舍
Claude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vol.Ⅱ*,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Ernst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Martine Segalen, *Historical anthropology of the fami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17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Jonathan Dewald, *The European Nobility 1400-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 논문

1) 한국어

강희웅, 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3-2, 일지사
고병익, 1953 <元代의 法制> ≪歷史學報≫ 3
구산우, 2015 <고려시기 제도와 정책의 수용과 배제: 성종대 화풍과

토풍의 공존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2
권영국, 2016 <고려시대의 三師와 三公> ≪숭실사학≫ 36
김갑동, 2001 <고려왕실에는 왜 근친혼이 있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5
_____, 2002 <나말려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한국사연구≫ 117
김기덕, 1993 <高麗時期 王室의 構成과 近親婚> ≪국사관논총≫ 49
_____, 2002 <고려시대 왕실 선원록의 복원 시도: 『고려성원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3
_____, 2009 <고려초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변화> ≪고려 중앙정치제도사의 신연구≫, 혜안
김명희, 2003 <唐 玄宗의 治世에 관한 一考: 開元年間을 중심으로> ≪전남사학≫ 21, 155~156쪽 참조
김선미, 2011 <高麗前期 王位繼承과 太子 冊封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주, 2020 <신라 진성왕의 양위 과정과 배경> ≪여성과 역사≫ 32
_____, 2021 <신라 하대 효공왕의 왕위계승과 최치원> ≪신라사학보≫ 51
김성준, 1964 <宗親府考> ≪史學硏究≫ 18
김용선, 1998 <고려 귀족의 결혼, 출산과 수명> ≪한국사연구≫ 103
김창겸, 1993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한국상고사학보≫ 13
_____, 2002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上大等> ≪白山學報≫ 63
김창현, 2006 <고려시대 천추태후와 인예태후의 생애와 신앙> ≪한국인물사연구≫ 5
_____, 2016 <고려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 계승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46
김 호, 2019 <唐代 宗正寺의 운영과 그 특징> ≪史林≫ 70
_____, 2020 <唐初의 諸王 책봉제> ≪중국사연구≫ 125
_____, 2021 <唐 太宗 貞觀年間의 諸王 관리> ≪대구사학≫ 143
남동신, 2002 <聖住寺 無染碑의 '得難'條에 대한 考察> ≪한국고대사연구≫ 28
_____, 2011 <고려중기 왕실과 화엄종: 왕실 출신 화엄종 5국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9
노명호, 1981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한국사연구≫ 33
_____, 1983 <高麗時의 承蔭血族과 貴族層의 蔭叙機會>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_____, 1986 <高麗初期 王室出身의 '鄕里'勢力>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_____, 1987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 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한국사론≫ 17
_____, 1988 <高麗時代 鄕村社會의 親族關係網과 家族> ≪韓國史論≫ 19
_____, 1989 <고려시대의 토지상속> ≪중앙사론≫ 6
_____, 2014 <≪고려사≫의 '참의지사僭擬之事'와 '대사천하大赦天下'의 '이실직서以實直書': 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한국사론≫ 60
_____, 2017 <고려시대 새로운 영역의 연구에서 사료와 개념체계의 관계: 실제 사례를 통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100
_____, 2019 <문명의 보편성과 개성: 高麗 初 儒敎政治文化 도입과 文化接變> ≪진단학보≫ 133
노태돈, 1983 <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Rahel Plassen, 2021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후기, 2005 <西周 五等爵制의 기원과 성격: 西周 金文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1
_____, 2011 <西周왕조의 族의 재배치와 同姓不婚: 東征 이후 西周王朝의 族 통일정책에 대한 검토> ≪東方學志≫ 153
_____, 2012 <열후·관내후 성립고> ≪중국학보≫ 65
박재우, 2014 <고려 최씨정권의 정방 운영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_____, 2016 <고려 최씨정권의 권력행사와 왕권의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46

박정석, 1999 <모방교차사촌혼(matrilateral cross-cousin marriage)에 관하여: 남인도 텔란가나(Telangana) 지역에서의 사례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2-1
박진훈, 2008 <고려시대 사람들의 改名> ≪동방학지≫ 141
白剛寧, 1996 <高麗初 惠宗과 定宗의 王位繼承: 朴述希와 王規의 出身背景과 役割의 再解釋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2
변태섭, 1967 <高麗宰相考: 三省의 權力關係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35·36
손흥호, 2016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硏究≫ 83
신수정, 2015 <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왕실 근친혼과 관련하여> ≪여성과 역사≫ 23
_____, 2018 <자매간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 ≪사학연구≫ 131
신종원, 1977 <신라의 불교전래와 그 수용과정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22
오경석, 2019 <고려전기 왕위계승 양상과 그 원리: 훈요 3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禹太連, 1987 <高麗初 地名別號의 制定과 그 運用(上)> ≪경북사학≫ 10
_____, 1988 <高麗初 地名別號의 制定과 그 運用(中)> ≪경북사학≫ 11
_____, 1989 <高麗初 地名別號의 制定과 그 運用(下)> ≪경북사학≫ 12
이성규, 2012 <中國文明의 起源과 形成> ≪講座 中國史≫ 권1, 지식산업사
_____, 2012 <春秋戰國時代의 國家와 社會> ≪講座 中國史≫ 권1, 지식산업사
이은정, 2010 <오스만제국 근대개혁기 군주의 역할: 셀림 3세에서 압둘하미드 2세에 이르기까지> ≪역사학보≫ 208
이인재, 2008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 고려 혜종대 정변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9
이재환, 2017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3

_____, 2020 <고대 동아시아의 東宮과 신라 東宮> ≪한국고대사연구≫ 100
이정란, 1996 <高麗 后妃의 號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 2
_____, 2003 <高麗時代의 小君과 國庶> ≪한국사연구≫ 122
_____, 2006 <고려시대 后妃府에 대한 기초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20
_____, 2010 <고려·조선전기 王室府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방식의 변화> ≪한국사학보≫ 40
_____, 2011 <太祖妃 天安府院夫人과 天安府>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_____, 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韓國史學報≫ 55
_____, 2019 <고려의 '不稱姓'의 특권과 王家> ≪역사와 담론≫ 85
이정훈, 2009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신과 활동> ≪역사와 현실≫ 71
이태진, 1977 <金致陽 亂의 性格: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7
仁井田陞 저, 서용석·채지혜 역, 2010 <唐代의 封爵과 食封制> ≪역사와 교육≫ 10
정요근, 2009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정용숙, 1997 <高麗와 日本의 王室婚姻에 대한 검토: 10~12세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9
채웅석, 2014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8, 344~346쪽
최진열, 2008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邑號와 본적지·郡望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3
河炫綱, 1965 <高麗食邑考> ≪歷史學報≫ 26
_____, 1968 <高麗 惠宗代의 政變> ≪史學硏究≫ 20
_____, 1968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이대사원≫ 7
_____, 1974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高麗貴

族社會의 成立≫,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70 <高麗國初 權力構造의 性格> ≪史學會誌≫ 16
현종민, 2021 <고려 초기 正胤과 太子 검토> ≪서강인문논총≫ 62
홍승우, 2018 <신라 副君과 月池宮> ≪東洋學≫ 70
黃雲龍, 1974 <高麗諸王考>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1989 ≪高麗閥族研究≫, 동아대학교출판부(개정판)에 재수록)
황향주, 2011 <고려 起復制와 14세기말 起復論爭> ≪한국사론≫ 57

2) 외국어

江原正昭, 1966 <高麗王族の成立ー特に太祖の婚姻を中心として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 朝鮮史研究會
_____, 1980 <高麗初期の王位継承ー二代惠宗から八代顯宗までー> ≪中嶋敏先生古稀記念論集≫ 上, 汲古書院
宇野伸浩, 1999 <チンギス・カン家の通婚関係にみられる対称的婚姻縁組>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別冊20號
豊島悠果, 2007 <高麗時代の婚姻形態について> ≪東洋學報≫ 88-4
노명호, “The Makeup of Koryŏ Aristocratic Families: Bilateral Kindred”, *Korean Studies* Vol.41, 2017

三. 데이터베이스

-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개경지리정보
  https://db.history.go.kr/hgis/kor_g1/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KOREA/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index.jsp)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Goryeo Royal Family in the 10th-13th century

HWANG Hyang Ju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at investigating the constellation and legislative status of the Goryeo royal family (*wangshil*) in the 10th−13th century and researching the social system fundamental to the authority and privileges of the royal famil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Goryeo royal family's concept of descent and methods of exclusive reproduction, as well as the way to invest the King's family members with the titles of nobility and assign them in the official sphere,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Goryeo dynasty will be investigated.

The Goryeo royal family began with the marriage and production of offspring of Taejo Wang Geon. The Goryeo royal family that appeared at the turning point from the ancient to the medieval period, emerged as a result of considerations about in what shape the royal family could continue its existence and consolidate its authority in a society that had abolished the bone-rank system (*golpumje* 骨品制). As a result, we can detect two characteristic phenomena in the early Goryeo royal family:

First, the so-called principle of '*jongchinbulsa*'(宗親不仕) , i.e. the barring of the royal family and their relatives from holding offices, was

established, which at the same time distinguished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with the right of succession from officialdom. In the final years of Taejo, holding an office or not became an important marker for differentiating the royal Family from the Non-royal families. As Goryeo did not limit the political agency of the scholar-officials ('*sa*' 士) through a restrictive system such as the bone-rank system, the establishment of '*jongchinbulsa*' as a rule served to avoid competition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the officialdom inside the bureaucratic system. Furthermore, the chaotic situation in the Late Shilla period, when the state was stricken by succession feuds, was not replicated as the royal family would no longer bear responsibility for each and every political incident.

Secondly, while marriages between males from the royal family and females from families of officials or the local gentry (*hojok* 豪族) were allowed, consanguineous marriages between members of the royal family were encouraged to set apart a royal line of descent. Thus, in the time of Taejo's children, marriage with officialdom or the local gentry within the network of relatives constructed by Taejo did occur. Still, in the case that a woman or man of marriageable age could be secured, consanguineous marriages among members of the royal family were prioritized, and thus the extension of maternal relatives was limited. During his lifetime, Taejo arranged a marriage between prince and princess who had same father and different mothers, restricting the prohibition of intermarriage inside the royal family only to same maternal siblings. In the early Goryeo period, the royal family more and more preferred consanguineous marriages with closer relatives over marriages with distant relatives and established consanguineous norms

forcing women of the royal family to marry mal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From the time of Taejo's children onwards, the royal family segregated its members according to the bloodline of both parents. Dependent on whether or not the parents were in a consanguineous relationship, the right to be involved in the succession issue was differentially accorded to Taejo's grandchildren. In this process, the new relatives of the royal family related by marriage united around their daughters' royal offspring, while those that did not see a royal grandson could still marry their daughters (that had not been offered as concubines) to each other's sons and thus establish a stable cartel.

Consanguineous marriag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royal family had the following political effects: First, the royal family could securely obtain pure-blooded successors to the throne that were also capable of ruling. Secondly, as the King's act of electing his son-in-law effectively curtailed the range of aspirants to the throne, the royal family in fact was under the King's control. Thirdly, the inheritance of the former generation was securely transmitted within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 tied to each other through consanguineous marriage.

Before re-arrang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royal family by introducing the Chinese nobility system (*bongjakje*, 封爵制), the Goryeo court gave the official titles Jeongyun (正胤), Donggung (東宮), and Taeja (太子) to the destined heir to the throne and granted further potential aspirants an official title in the form of 'royal Palace Name (宮院名) + Gun (君, Lord).' This 'Gun' title, based upon the name of the Queen Mother or one's own Palace Name, can be related to a traditional Korean culture of 'geononymy (宅號)' that listed men in

relation to women (wife and mother). This custom of geononymy can be seen as the remains of a cognatic social structure and a marital custom of matrilocality. In the biographies of the royal family in the *History of Goryeo*, most of the male members of the early royal family are listed as '○○Taeja (太子)' or '○○Daewang (大王)', which are not official titles but posthumous epithets. Such posthumous designations seem to have been established at least in Gyeongjong's times. In Gyeongjong's reign period, also titles not based on the Palace Name, such as 'Gaenyeonggun (開寧君)', appeared. In extension of the institutional adjustments initiated under Gwangjong's reign, Gyeongjong tried to establish rules for the deceased and aliv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The period when the Chinese nobility system was adjusted according to the actual state of Goryeo —based on which the organization of the royal family was systematized— is the time of Hyeonjong. In Hyeonjong's reign period, mirroring the pluralist East Asian world order of the time, a nobility system that put the 'Gun' title at the level of the 'Wang' title, was established. The Tang nobility system was based upon a unitary system of noble ranks where the imperial family was located at the upper level of King (chin. *guowang* 國王), Commandery Prince (chin. *junwang* 郡王), Duke (chin. *guogong* 國公), and Commandery Duke (chin. *jungong* 郡公) in the system of noble ranks, and the officials where successively invested with titles underneath the king according to their merits. But Hyeonjong first took over the Tang system and replaced the 'Wang' title with the 'Gun' title, then introduced the system of noble ranks underneath the 'Duke', and finally, following the custom in the Late Tang and Early Song period,

located the princes at the ‘Lord’ and ‘Duke’ level. As the generational constellation of the royal family became more complicated with the ascension of Munjong, the ‘Gun’-title was separated into Gong (公, Duke) and Hu (侯, Marquis), but the understanding that this title originally was a ‘Wang’ title continued into the awareness of the *jewang* (諸王, royal family members invested with the titles of nobility) and thus remained until the Mid-Goryeo period. During the long time span from Hyeonjong’s reign period to Seonjong’s time, Goryeo underwent a process of adjusting the Chinese nobility system that reflecte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ociety 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Goryeo.

The Chinese nobility system that had its origins in the ‘patriarchal order’ (*jongbeop jilseo* 宗法秩序) posed a fundamental barrier that made it impossible to fit the Goryeo system. The problem was that the Goryeo royal family had never functioned by following a patriarchal order or the principle of unilineal descent (*dangye hyeoltong wonchig* 單系血統原則) and that through the consanguineous marriages, the kinship network had become variable. Accordingly, Goryeo did not base the conferment of titles for the royal family on the innate factor of ‘being the legitimate first-born’ (嫡長), but only allowed the sons and sons-in-law of a Gong, Hu, or Baek (伯, Count), to carry nobilized titles such as Sado (司徒) and Sagong (司空),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se were incorporated in the King’s immediate family via endogamy— the Baek (伯) title remained in use. The Goryeo-specific nobility system of the royal family with the Gong, Hu and Baek at its upper level and the Sado and Sagong underneath was not completed in a specific reign period but emerged

out of intense contemplation and attempts to conciliate Chinese style elements (such as the nobility system) with native elements (Taejo's Ten Injunctions and the native concept of family).

The Chinese nobility system that by decree linked the patriarchal order with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imperial family could only be of irrelevance in Goryeo. Thus, previous scholarship applied an inductive methodology in order to trace the Goryeo royal family's principle of conferring the initial noble title. According to common view, in Goryeo, the king's elementary family and the affiliated members were the fundamental units of the investiture of royal titles. If we, applying this common understanding, produce a schema of the royal family according to kinship relations with the current king, we arrive at a kinship order similar to the anthropological notion of first- and second-degree relatives. Such an order of kinship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atriarchal order. In Goryeo, following the royal family's norm of endogamy, multiple kinship relations were set up between the successive kings and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Therefore, one member of the royal family could be found at different positions inside the diagram of kinship structures. The very reason for a necessary convergence between political-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research lies right here.

The Goryeo royal family practiced a marriage norm that preserved the bloodline and privilege of the royal family by restricting the marriage partners of the females in the royal family to *jongshil* (members of the royal family, including relatives by marriage). In this dissertation, this phenomenon is named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jongshil naehon* 宗室內婚).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noble royal titles, the endogamous marriage norm of the early Goryeo period that restricted royal females and female royal relatives to marrying male royals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i.e. cousins), developed into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Jongshil'* (宗室) encompassed the royal family by legal definition, namely the '*jewang*', and part of the elementary family that derived from the *jewang*. The children of Sado and Sagong were situated outside the perimeter of the royal family proper and situated in its surroundings, their final affiliation being determined by external factors. Generally, it was acknowledged that the children of Sado and Sagong had authority in terms of blood lineage as they had a remaining relation, *chin* (親), to the king. These children of Sado or Sagong could be selected as the king's queen or son-in-law. Their final affiliation was decided according to their marriage. If, through inter-marriage with a family of officialdom, the children of a Sado or Sagong could no longer become a '*jewang*', they were excluded from the royal family and recovered the right to hold an office. When the '*jewang*' used the family lineage and inheritance as a means to exert authority on them, their identity as *jongshil* would become manifest, but at the same time would remain subject to their spouse's bloodline and rank of family.

The Goryeo royal family gained the following effects from restricting the marriage of femal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Firstly, the size of the royal family could be controlled and an excessive increase of possible aspirants to the throne could be prevented. Secondly,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Chinese style customs and native customs was achieved. While the Chinese *xing* (姓) culture, a product of the Chinese

patrilineal society, was introduced and applied in the maintenance of the civilization and institutions and while Goryeo internally and externally carved the impression that Goryeo was a dynasty of the Wang-family, at the same time it did not deny the native customs and remained capable of acknowledging the succession of the royal line through women. Thirdly, by confining the royal women (princesses and femal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to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it was possible to realize the rule of equal inheritance among men and women that was social consensus while preventing the dispersion of the royal family's assets. Fourth,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 anthropology, the Goryeo royal family only took the position of a 'wife-taker' and thus could strengthen the bond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the officialdom, at the same time solidifying the position of exclusive superiority.

The Goryeo royal family continued to exist in a system that combined the nobility system with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If we look at the cases of mal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such as the son-in-law of the king (*wangseo* 王壻), the father of the queen (*bibu* 妃父), and the father of the son-in-law of the king(*wangseobu* 王壻父), we find that the following model of nobility system can be observed up until the mid-Goryeo period. The men of the royal family that became incorporated into the king's surroundings through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received discriminative treatment in comparison to the princes in the process of first investiture and further investiture. The princes received the 'Hu' title as the first title around the age of 20 and were further invested as 'Gong' in their late 20s and early 30s. The royal sons-in-law, on the contrary, were first invested as 'Baek'

and only further invested as 'Hu' after around 20 years had passed. This further investiture could be according to age or be the result of the reshuffling of kinship relations due to a new king and thus a new generational order. Yet, if an endogamous marriage inside the royal family took place among the children of a son-in-law of the king and the king's children, then further investiture was possible that did not follow generational order or the hierarchy among the royal sons-in-law. This principle was then extendedly applied so that the *jongshil* that had provided a spouse to the king or his children and thus earned the position of an 'affiliate', actually became objects of further investiture.

The standard model of the Goryeo royal family's nobility system underwent significant transformation during the anti-Mongolian resistance period, but the beginnings of these changes can be traced to the period of Military Rule of the Choe regime. Choe Chung-heon denied the traditional system of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but instead eroded the scope of the royal family and elevated the status of the family in order to add legitimacy to being involved in state affairs. Since the authority over the personnel affairs de facto laid in the hands of the military rulers of the Choe regime and the king only retained his nominal right of decision, the military regime could use the investiture with noble titles to formalize the kinship relations that resulted from their 'shocking' marriage with the royal family and thereby was able to bring about initial cracks within the fabric of the royal family. After the collapse of the military rule of the Choe regime, these fine cracks gradually magnified. As a result of the over-issuance of noble titles as a reward for *jongshil* that had been involved in diplomacy with the Mongols, the king gradually lost control

over the scope of the royal family. In the end, in the period of Chungseon of Goryeo, the conventional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was officially discontinued, the Goryeo royal family that had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rule of endogamy inside the royal family entered a totally new phase.

Keywords : royal family (*wangshil*), *jongshil*, consanguineous marriage, endogamy, *jongshil naehon*, nobility system, unitary system of noble ranks, *jewang*, Chinese customs, Nativism

Student Number : 2011-30032